ISSN 1599-6522

국제법 동향과 실무



www.mofa.go.kr

2020 Vol.19, No.4 통권 제59호
Quarterly Journal

외교부

국제법 동향과 실무 www.mofa.go.kr

2020 Vol.19, No.4 통권 제59호

외교부

국제법 동향과 실무

□□□

www.mofa.go.kr

외교부

www.mofa.go.kr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법 동향과 실무 *인터넷 열람 안내*

www.mofa.go.kr

계간『**국제법 동향과 실무**』에 게재된 전체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를 통해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된 발간부수로 인하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처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전화: (02) 2100-7536
전송: (02) 2100-7967
전자우편: shkwon15@mofa.go.kr

국제법 동향과 실무 논문 모집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의 논문을 모집하오니, 국제법학계, 외교부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고의사:** 매분기말의 전월 초(2월초, 5월초, 8월초, 11월초)까지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통고
- **원고작성:** 한글(HWP) 또는 MS-Word로 작성한 원고로 A4용지 15매 내외 (글자크기: 12, 줄간격: 160)
  기타 인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한국제법학회의 논총기고요령을 참조
- **원고제출:** 매분기말의 전월 말(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논문 파일을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e-mail이나 우편으로 제출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계간지담당자 앞
전화: (02) 2100-7536
전송: (02) 2100-7967
전자우편: shkwon15@mofa.go.kr

- **게재결정:**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외교부 국제법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법 동향과 실무

www.mofa.go.kr

2020 Vol.19, No.4 통권 제59호
Quarterly Journal

외교부

▶▶▶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20 Vol.19, No.4 통권 제59호
Quarterly Journal

Contents

특집: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출제 소감 ····· 최태현 7
-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 11
-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Agoria국 변론서 ····· 오세영, 오지석, 오수연, 민준홍 17
-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Naradon국 변론서 ··· 오세영, 오지석, 오수연, 민준홍 42
-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Agoria국 변론서 ····· 홍형석, 임효은, 남철희 68
-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Naradon국 변론서 ····· 홍형석, 임효은, 남철희 91
-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후기 ····· 오시진 115

I. 조약체결 및 국제회의 동향

- 2020년 3/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 121
- 2020년 3/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 122

II. 논문 및 연구보고서

-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상 전통지식의 이용 및 보호 ····· 김두수 127

III.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유엔 문서

- 총회 ····· 139
  - 국제형사재판소 보고서에 관한 결의
  - 코로나19 대응 총회 특별회기에 관한 결의
  - 글로벌공급망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선원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 안전보장이사회 ····· 140
  - 리비아 상황 관련 결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상황 관련 결의
- 인권이사회 ····· 141
  - 2020년 벨라루스 대통령선거 전후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
  - 베네수엘라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
  -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의 증진에 관한 독립전문가 위임에 관한 결의
  - 인권과 개별적 강제조치에 관한 결의
  -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

Contents

• 사무총장 ····· 145
-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법의 교육·연구·보급 및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유엔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구체적인 행동과 더반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이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세계적 요청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국제사법재판소 ····· 147
- *1955년 「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위반 혐의 (이란 v. 미국)* 사건, 선결적 항변에 관한 공개심리 종결 및 심의 시작
- *콩고민주공화국 영토 내 군사활동 (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 전문가 감정 결정
- *콩고민주공화국 영토 내 군사활동 (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 전문가 임명
- 유엔 총회·안보리, ICJ 재판관 5인 선출

• 국제해양법재판소 ····· 168
- 영상연결(video link)을 통한 심리와 회의 개최를 위해 재판소 규칙 개정
- 재판소 소장 및 부소장 선출
- 재판부 재구성
-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인도양 해양경계 분쟁*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부, 선결적 항변에 관한 심리 개최 예정

• 상설중재재판소 ····· 177
- *우크라이나 군함 및 수병 구금 관련 분쟁 (우크라이나 v. 러시아)*에 관한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 예비절차에서 심리하기로 결정

• 국제형사재판소 ····· 182
- ICC 전심재판부 I, 소추부의 절차종결 결정에 대한 코모로의 사법 재검토 요청 기각
- ICC 상소심재판부, Ali Abd-Al-Rahman의 구금 지속 결정
- Abd-Al-Rahman Case: 공소사실 확인 심리, 2021년 2월 22일로 연기
- Situation in Kenya: Paul Gicheru, ICC 증인에게 부정하게 영향을 미친 혐의로 ICC에 인도
- ICC 전심재판부A, Paul Gicheru의 공소사실 확인을 위한 심리 개최
- Ongwen Case: ICC 1심재판부IX, 2021년 1월 12일 판결 선고 예정

IV.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국내판례

• 국제법 관련 국내법 ····· 195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출입국관리법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제법 관련 국내판례 ····· 202
–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관련 국적법 조항 부분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판결
–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에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등도 포함된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결
–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본 대법원 판결

V. 국제법 관련 새소식

• 외교부 소식 모음 ····· 219
•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 소통 ····· 265
• 국제법 관련 새로 나온 학술간행물 소개 ····· 267
•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 270
•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 강의시리즈 ····· 275
•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 277

특집: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출제 소감 / 최태현 7
-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11
-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Agoria국 변론서 / 오세영, 오지석, 오수연, 민준홍 17
-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Naradon국 변론서 / 오세영, 오지석, 오수연, 민준홍 42
-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Agoria국 변론서 / 홍형석, 임효은, 남철희 68
-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Naradon국 변론서 / 홍형석, 임효은, 남철희 91
-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후기 / 오시진 115

2020년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출제 소감

최 태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출제의 의도 및 목적

이번 모의재판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주로 고려한 점은 현행 국제법상 아직 국제판례나 국가실행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충분히 존재하지 않아 법리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쟁점들을 다루자는 것이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이론과 실제가 충분할 정도로 축적되지 않아 법리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범위가 불분명한 분야에서의 국제법적 쟁점을 다루는 경우 분쟁의 양당사국들은 자신의 입장이 특히 유리하지도 또는 특히 불리하지도 않다고 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고수하는 국제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이에 의존하여 자국 주장의 정당성을 옹호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궁극적으로 일반시험과 같이 정답을 맞추거나 정답을 제시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 시험대회가 아니다. 이러한 경연대회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설득력있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자국의 주장이나 변론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법논리적으로 모순없이 일관성과 치밀성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점검받고 평가받는 기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된 국제법상의 법리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영역에서야말로 분쟁의 양 당사국은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대하여 좀 더 유리하게 인식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련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난 국제법적 법리를 끌어다 사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법리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자국의 입장을 좀 더 설득력있게 주장하기 위하여 논지를 전개하는 능력과 현재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국제법적 현상을 인식한 바탕 위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때로는 기존 법리를 분석하거나 때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리를 개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II. 문제의 구성

이번 모의재판 문제에서 제시된 사건은 그 주요부분을 시리아 내전과 2002년 ICJ판례인 '체포영장사건'에서 차용하였다.

최근 시리아 내전의 발발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시리아 및 이라크 영토 내에서 이슬람 수니파의 극단주의 무장세력이자 테러조직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SIL), 일명 'IS국가'가 설립되었다. 이후 미국은 이라크 및 시리아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는 ISIL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수행하였는데, 이라크 영토 내에 소재하고 있는 ISIL에 대한 공습에는 처음부터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 덴마크, 캐나다 등 다수의 서방국가들이 참여했으나, 시리아 영토 내에 소재하고 있는 ISIL에 대한 공습에는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소수의 아랍국가들만 참여하였다. 2015년에 캐나다, 터키, 프랑스, 호주 등이 뒤늦게 가세하기는 하였지만, 시리아 영토내에 소재하는 ISIL에 대한 공습의 경우,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다른 참여국들의 기여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2015년 11월 13일 발생한 ISIL 파리 연쇄테러사건으로 인하여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라크 영토 내에 소재하는 ISIL에 대한 공습에는 참여하면서도 시리아 영토 내에 소재하는 ISIL에 대한 공습을 반대했던 국가들도 점차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공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하여간 시리아 영토 내에 소재하는 ISIL을 상대로 한 시리아 이외의 국가가 행한 공습의 경우 그 국제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 그리하여 미국의 이러한 공습은 시리아에 대한 침략행위라고 보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다. 반면, 시리아가 아닌 '이라크' 영토 내에 소재하는 ISIL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의 공습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의한 개입"(intervention by invitation)에 해당하므로 이들 공습국들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는 자국 영토 내 에 소재하는 ISIL에 대한 미국 등의 공습에는 동의를 표명한 바가 없다.

이번 모의재판 문제는 이러한 배경 하의 시리아 내전 사건에 2002년 4월 ICJ가 판결을 내린 '소위 체포영장사건'의 내용을 가미한 후, 적절히 내용을 각색하여 출제하였다. 잘 알다시피 이 판례는 벨기에가 콩고민주공화국의 현직 외무장관인 Yeridia에 대해 그가 '중대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벨기에 법원의 치안판사가 '절대적 보편관할권'에 의거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콩고민주공화국이 자국의 현직 외무장관에게 벨기에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행위는 국제법, 특히 국가면제의 법리와 외교적 면제의 법리를 위반한 행위라고 하여 벨기에를 상대로 ICJ에 제소한 사건이다. 다만, 이번 모의재판 문제에서는 그 원인이 되는 범죄를 '침략범죄'로 변경하여 침략범죄가 현행 국제법상으로 보편주의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범죄인지 여부와 침략범죄에 대해서도 '절대적 보편관할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다.

이번 모의재판 문제에서는 타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테러단체의 무력공격에 대한 무력대응이 침략행위인지 또는 자위권 행사인지 여부 외에, 침략범죄와 관련하여 제3국의 국내법원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심지어 '절대적 보편관할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세 가지 사항을 실체적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그동안 국제법상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ICJ결정과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안보리결의가 먼저 채택된 이후 ICJ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라는 절차적 쟁점도 가미하였다. 결국 이번 모의재판 문제에서는 최종적으로 네 가지 국제법상 쟁점들을 포함시켰다.

III. 문제의 특징

이번 모의재판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ICJ에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 분쟁의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을 일방적으로 제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양국 간 분쟁회부합의(Compromis)에 의해 공동으로 ICJ에 사건을 회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원고국 또는 피고국이 없고, 분쟁(사건)의 일방국과 타방국이 있을 뿐이다.
2. Naradon국이 이 사건을 일방적으로 ICJ에 회부하였다면, Agoria국은 분명히 ICJ의 재판관할권에 대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회부가 Compromis에 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선결적 항변 제기문제도 양국이 함께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본안의 경우에는 Naradon국이 Agoria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여 제소하는 듯한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Agoria국에게 선결적 항변 제기의 기회를 먼저 부여하기 위하여 Agoria국에게 먼저 변론의 기회를 주게 되었다.
3. 앞에서도 이미 살펴 보았지만, 이 문제는 실체적 쟁점뿐만 아니라, 관할권 존부에 관한 절차적 쟁점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절차적 쟁점을 분석하기에 따라 매우 광범위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서는 절차적 쟁점으로 다루어야 할 세 가지 사항들을 미리 Compromis에서 제시함으로써, 재판관할권에 관한 변론을 진행함에 있어 이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III. 후기

제출된 서면변론서를 보건대, 대부분의 팀들은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쟁점 자체는 그런 대로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하여 각 쟁점과 관련된 문헌들은 나름대로 잘 찾았다고 보인다. 다만, 각 쟁점에 대해 서술하는 과정에서 용어 및 법적 표현의 정확성,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논증의 치밀성, 반론 제기의 적절성 및 충분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완전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각 쟁점과 관련된 국제법적 논리 및 실행이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기존의 법리를 이용하거나 기존의 법리를 개발함으로써 또는 최근의 국제적 경향이나 각국의 실행을 찾음으로써 자국의 변론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동안 국제법 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기회가 많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각 팀의 변론서에서 제시된 진술 및 분석의 수준은 그런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정도였다고 사료된다.

구두변론에 있어서는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한 팀과 그렇지 않은 팀 간의 우열이 다소 분명히 드러났다. 구두변론은 서면변론서를 기초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서면진술의 수준을 뛰어 넘는 변론기술이 요구된다.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실제로 중요한 실전기술은 구두변론을 전개하는 기술이다. 서면변론의 수준이 이미 채점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위팀들 간에 구두변론을 하게 되므로, 구두변론 단계는 서면변론서에 써있는 대로의 발표를 그대로 청취함으로써 평가를 하는 단계가 아니다. 구두변론에 있어서는 각 팀은 자국의 입장을 구두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받기도 하지만, 주어진 쟁점에 대한 자국 입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적 개념과 논리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고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받는다. 그리하여 구두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관으로부터 수시로 구두변론인이 진술한 각 용어 및 표현의 의미와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매번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이번 모의재판에서의 구두변론에서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수준은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즉석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모의재판에서 구두변론을 한 각 팀의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와 국제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정도는 그런대로 무난하였다고 본다.

아무튼 이번 모의재판대회에 예년에 비해 폭발적일 만큼 훨씬 더 많이 참여해 준 각 팀이 보여준 열성과 노고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고, 이러한 후기의 내용이 앞으로 국제법 모의재판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후 개최될 모의재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높은 수준에서의 변론을 전개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2020년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침략행위의 결정과 침략범죄에 대한 절대적 보편적 관할권 행사가능성
(Naradon v. Agoria)

1. Agoria국(Federal Republic of Agoria)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서 국토면적이 약 20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약 1억 5천만 명의 국가이다. Agoria국은 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하면서 국민의 70%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넘는 OECD회원국이다.

2. Doppstan국(Democratic Republic of Doppstan)은 Agoria국의 남쪽 국경선 이남에 인접하여 있는데, 국토면적 약 4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약 2천만 명의 이슬람국가로서 역시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이다. 국민의 95% 이상이 온건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Doppstan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6천 달러가 채 안 되는 개발도상국이다.

3. 한편 Naradon국(the Kingdom of Naradon)은 왕정국가로서 Doppstan국의 동쪽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국토면적은 12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약 8천만 명의 국가로서 Doppstan국과 마찬가지로 그 국민의 98% 이상이 온건한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슬람국가이다. Naradon국은 세계 제1위의 산유국일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금 등 광물자원도 풍부한 국가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지만 OECD회원국은 아니다. Naradon국은 오래전부터 Doppstan국과 동일한 종교를 통하여 연대감을 함께 하면서 최고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1985년에는 양국 간에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Doppstan의 동맹국이기도 하다.

4. Doppstan의 국가원수인 Hassani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권좌를 유지하면서 독재정치를 계속하여 왔다. 그 결과 Doppstan국의 정부관리들은 부패하게 되었고, 경제사정은 점차 악화되어 갔다. 이에 Hassani 정권에 반대하는 군중들의 집회가 늘어났다. 그러던 중 2016년 6월 10일 최초로 국민 100만여 명이 넘는 군중집회가 열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였다. 그 이후 Hassani 독재에 항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고조되었다.

5. 2016년 7월 4일 Doppstan 국내에서의 민주화운동이 최고조로 격렬해지자, Hassani 정권은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들에게 발포를 하였고, 이후 수개월 동안 Hassani 군대에 의한 무자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폭압과 인권말살을 피해 Doppstan국 국민 약 50만명이 주변국가로 피신함으로써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사태도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의 여론이 들끓자, Agoria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러한 사태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 해 11월 10일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함)는 UN헌장 제39조에 기초한 결의 제3000호를 통해 Doppstan국 내의 사태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하고 Doppstan국에게 이러한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그 후 Agoria국은 이러한 사태에서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Hassani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 사태를 회부하자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안하였지만, 일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6. Doppstan국 군대와 민주화운동을 벌이는 국민들이 조직한 저항(반란)단체들 간의 무력충돌이 격렬해진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반란단체 중 하나가 Doppstan국 북동부지역에서 약 4만 평방킬로미터(전국토의 약 10분의 1)의 지역을 장악하였다. 2017년 3월 30일 이 반란단체는 스스로를 이슬람 원리주의를 추종하는 알코란국(Alcoran State) 또는 "AS"라고 칭하면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UN회원국 중 어떠한 국가도 이를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고 있다.

7. 동년 4월 30일 이후 AS는 주변국인 Agoria국, Doppstan국, Naradon국에 대하여 1~2개월 간격으로 대상 국가를 바꾸어 가면서 대상 국가 내에서 소규모의 테러와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에 주변국 3국은 AS를 테러단체로 지정하였고, 특히 Doppstan국은 동년 9월 7일 국내법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AS의 진압과 제거에 온 힘을 다하였으나, AS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AS장악지역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8.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년 12월 12일 Doppstan국은 AS를 퇴치·제거하기 위해 주변국인 Agoria국과 Naradon국에게 Doppstan과의 조율 하에 AS를 공습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Agoria국은 Doppstan국과 함께 공습에 참여하는 것은 Doppstan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사태를 묵인·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Doppstan국으로부터의 협력·공조 요청 또는 조율 요청을 계속 거부하여 왔다.

9. 그러자 Doppstan국의 외무장관은 그해 12월 25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 "우리 Doppstan국 정부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 존재하는 테러조직인 AS의 진압, 퇴치 및 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이 Doppstan국 영토의 일부인 AS장악 지역을 공습하는 경우에는 Doppstan국과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공습은 우리 Doppstan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 후에도 Doppstan국 정부는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Doppstan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조치는 Doppstan국에 대한 공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여 왔다.

10. 한편 Doppstan국과 상호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있는 Naradon국은 Doppstan국의 공습 요청에 응하여 Doppstan국과의 조율 하에 AS에 대한 공습을 하여 왔다.

11. 2018년 2월 26일 AS가 Agoria국의 수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에 미사일 200여기를 발사하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여, 군사시설 및 민간인 시설을 대파하였고, 이러한 공격으로 군인 450명, 민간인 500여명이 살상되었다.

12. 2018년 3월 5일 안보리는 결의 제3003호를 채택하여, "AS의 대량의 미사일 발사행위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에 해당한다. … UN회원국들에 대하여 AS의 통제 하에 있는 Doppstan국 영토에 대하여 국제법(특히, UN헌장, 국제인권법,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도법)에 부합되게 필요한 모든 조치(all necessary measures)를 취할 것을 요청(call upon)한다"고 하였다.

13. Agoria국이 AS에 대한 무력공격을 개시하기 전, Agoria국 정부는 Doppstan국 정부에게 AS를 진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oppstan국 정부는 스스로 AS장악지역에 대해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2017년 12월 25일자 자국 외무장관의 성명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14. Doppstan국 정부의 이러한 거듭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3월 12일 보수당 출신의 Agoria국 대통령인 Tedkapo는 안보리 결의 제3003호에 근거하여 AS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렸다. 이에 Agoria국 군대는 2개 보병사단과 공군 전투기 50대를 동원하여, AS와의 경계를 넘어 무력공격을 개시하였다. 거의 1개월간의 전투 끝에 Agoria국 군대는 AS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절반 가까운 부분을 점령한 후 그곳에 주둔하면서 대치를 계속하고 있었다.

15. 4월 12일 Doppstan국은 Agoria국 군대의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 및 주둔 행위는 Doppstan국과 조율에 의하지 않고, 즉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경을 넘어 무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Doppstan국에 대한 침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안보리에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해 달라는 의제를 상정하였다.

16. 4월 17일 이에 대해 안보리는 결의 제3006호를 채택하여,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자위권행사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로 하고, 장악지역에 더 이상 계속 주둔한다면 평화의 파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즉시 국경너머로 철군할 것을 권고하였다.

17. 안보리 결의 제3006호가 채택된 지 2주일이 지난 후인 5월 1일 Agoria국은 군대를 철수시키면서, Agoria국의 UN주재대사는 UN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여, Agoria국이 그동안 행한 무력행사의 적법성을 옹호하였다.

> "Doppstan 국내에 존재하는 AS라는 테러조직은 주변국인 우리나라(Agoria)뿐 아니라 양국의 동맹국들을 포함한 여러 다른 국가들에도 위협이 되었다. 이 경우처럼 위협이 존재하는 국가의 정부가 테러조직이 행하는 공격에 자국 영토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의사가 없거나(unwilling), 능력이 없는(unable) 경우, 공격을 당한 주변 국가들은, UN헌장 제51조에 반영된 바와 같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에 따라 테러조직의 공격에 대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Doppstan국의 체제는 AS라는 테러조직에 대하여 스스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Agoria국은 AS의 추가적인 공격으로부터 Agoria국 국민을 보호하고

AS의 지속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Doppstan 국내에서 필요하고도 비례에 맞는 군사적 조치로서 대응하였다."

이에 대해 Doppstan국 및 Naradon국 등 여러 국가들은 즉각 '테러조직'의 무력공격에 대한 무력대응은 UN헌장 제51조상의 적법한 자위권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침략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18. 그 다음날인 5월 2일 Doppstan국은 Agoria국의 Doppstan국 영토에 대한 공격 및 주둔 행위는 1974년 채택된 UN총회결의 제3314(XXIX)호인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 침략행위이므로, 안보리에 침략행위가 있었다는 결정(determination)을 내려 줄 것을 의제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안보리에서의 논의 결과, 5월 5일 이 안건은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oppstan국 및 Naradon국 등 여러 국가들은 Agoria국의 당해 행위는 침략행위였다고 계속 주장하여 왔다.

19. 201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개시되었다. Doppstan국은 ICC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다. 따라서 ICC규정의 비당사국에 대한 침략과 관련하여 ICC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ICC규정 제15조 *bis* 제5항에 따라, Doppstan국은 ICC가 Agoria국 대통령의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Doppstan국은 자국법원에 Tedkapo를 침략범죄로 기소해 놓은 상태지만, Tedkapo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랜 내전으로 사법부의 기능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20. 한편, Agoria국에서는 동년 9월 2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노동당 출신의 Ogumason이 당선되었다. 이에 Doppstan국과 오랜 동맹관계에 있었던 Naradon국은 Tedkapo가 전직 국가원수가 되자, Naradon국은 자국의 국내법원에서 Tedkapo를 침략범죄로 재판하고자 하였고 이에 수사를 개시하였다. 9월 16일 치안판사인 Marceo판사가 Tedkapo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이후 Naradon국은 Agoria국에게 Tedkapo의 신병인도를 요구하였다. Agoria국과 Naradon국간에는 아직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21. Naradon국은 2010년 1월 15일에 ICC규정의 당사국이 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 ICC이행법률인 "국제범죄처벌법"(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national Crimes 2010)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ICC의 관할범죄인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에 대해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in absentia*) 또는 절대적 보편관할권(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을 채택하였다. 그 후 2010년 6월 12일 우간다 캄팔라에서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요건을 새로 마련한 ICC 개정문(Amendment)이 채택되자, Naradon국은 2016년 5월 5일 이 개정문도 비준하였고, 이에 따라 그해 5월 20일 위 이행법률을 개정하여 관할대상 범죄로서 침략범죄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Naradon국 이행법률이 정하고 있는 '침략범죄의 구성요건'은 ICC의 침략범죄 개정문의 구성요건보다 다소 완화되어 규정됨으로써 침략범죄의 해당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Naradon국의 ICC이행법률은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22. Agoria국은 ICC규정의 당사국이나 캄팔라 개정문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9월 20일 Agoria국의 외무부장관은 Tedkapo에 대한 Naradon국의 범죄인인도를 거부하는 동시에, Naradon국의 국내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보편주의의 대상범죄에 침략범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더욱이 침략범죄에 대해 절대적 보편관할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Marceo판사의 체포영장 발부의 국제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3. 2018년 9월 28일 Agoria국의 외무장관은 UN총회 연설에서 AS 테러조직에 대한 군사행동이 적어도 침략범죄는 아니라고 하는 안보리의 결정들(제3006호 결의 채택 및 2018년 5월 2일자 결의안의 부결)이 있었던 만큼, Doppstan국이 이를 침략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안보리의 결정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24. 그후 Naradon국과 Agoria국은 빈번히 Tedkapo의 범죄인인도 문제로 대립하여 왔고, 1년 이상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 국민 간 상대국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고, 양국 간의 반목상태가 점차 고조되어 왔다.

25. 이에 2019년 10월 10일 양국 외무장관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회담을 열었으나, 양국 정부는 외교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방식을 모색해 보기로 합의하였다. 11월 10일 Naradon국이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Agoria국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ICJ가 Agoria국의 침략행위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안보리가 침략행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ICJ는 이 쟁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Agoria국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 "Agoria국의 침략행위 존재 여부에 대한 ICJ의 판단은 UN헌장 제24조와 제7장의 규정에 따른 UN안보리결의의 내용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안보리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 ICJ는, 1) litispendence(*lis alibi pendens*: 중복절차 회피) 원칙의 적용, 2) 정치문제이론(political question doctrine)의 적용으로 인하여, 그리고 3) ICJ는 안보리 결의의 효력에 대해 사법심사권(power of judicial review)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Naradon국의 이와 관련한 청구취지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Naradon국은 "ICJ와 안보리는 그 직무와 성격이 서로 다른 UN의 주요기관이므로 ICJ의 결정이 안보리 결의의 내용과 상충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ICJ는 이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기 위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6. 12월 1일 양국의 외무장관은 다시 회동하였는데, Naradon국은 Agoria국의 위와 같은 주장의 적법성 여부를 양국의 청구사항의 첫 번째로 하고, 이러한 쟁점의 해결을 전제로 하여, ICJ가 나머지 쟁점들도 함께 다루자는 제안을 하였다. 결국 양국은 양국간 발생한 법률문제들을 ICJ에 회부하기로 하는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 Compromis)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의 원본 1부를 ICJ 사무처장(Registrar)에

게 송부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면, 양국은 변론서를 202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ICJ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7. 이 특별협정에서 Naradon국과 Agoria국은 다음과 같은 청구사항에 대하여 ICJ가 재판하여 이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1. Naradon국은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ICJ가 결정해 주기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미 이와 관련된 안보리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 ICJ가 Naradon국의 이러한 청구취지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 결정하는 데 법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
> 2. 만일 위 1의 청구사항이 부정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Agoria국의 AS에 대한 무력대응이 국제법상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침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3. 만일 위 2의 청구사항에 대해 ICJ가 침략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Naradon국의 국내법원이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행 국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 4. 청구사항 3의 연장선상에서, Naradon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Agoria국민인 Tedkapo에 대하여 침략범죄를 이유로 Naradon국의 국내법원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행 국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8. 또한 이 특별협정에서는 양국 중 어느 국가가 먼저 구두변론을 할 것인지에 대해, Agoria국이 ICJ의 재판적격성 존재 여부에 관한 쟁점을 먼저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여, Agoria국이 먼저 변론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9. 위 특별협정에서 양국이 요청한 청구사항들(제27항에 기재된 사항들) 중, 이 모의재판에서는 제1, 2, 3, 4의 청구사항을 모두 다룬다.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청구사항에 대해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두 번째 및 세 번째 청구사항의 앞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건들이 마치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여, 양국은 제1, 2, 3, 4의 청구사항에 대해 모두 변론하고 필요한 반론도 제기한다.)

30. Agoria국, Doppstan국 및 Naradon국 3국은 모두 UN회원국이며, ICJ규정의 당사국이다. 나아가 3국은 2016년 6월 10일 당시 이미 1948년 집단살해방지협약, 1949년 전쟁법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다. 이외에도 3국은 이미 2016년 6월 10일 당시, 테러방지를 위한 협약들을 포함하여 "인도 아니면 기소"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 국제협약들의 당사국이다.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Agoria국 변론서

오세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석 (서울대학교 경영학),
오수연 (서울대학교 정치학), 민준홍 (서울대학교 경제학)

017-Agoria

국제사법재판소

Agoria국 변론서

2020년 09월 21일 재판소 서기국에 접수

침략행위의 결정과 침략범죄에 대한 절대적 보편적 관할권 행사가능성

(the Kingdom of Naradon/Federal Republic of Agoria
: Jointly Submitted by a Special Agreement)

2020년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

내용 목차

판례 색인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 요약

사실 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론

I.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가 아니라는 안보리 결정이 내려져 있으므로 ICJ는 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본 사안에서 안보리의 결정으로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적어도 침략행위가 아님이 입증되었다.

2. ICJ는 안보리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1) ICJ와 안보리 간에는 '중복절차 회피' 원칙이 적용된다.
2) 가사 '중복절차 회피' 원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미 확정된 안보리 결정이 있는 사안을 ICJ가 다시 다루는 것은 사법심사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
3) ICJ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본 사안에서의 안보리 결정은 '구속력 있는' 결정이므로 Naradon국의 청구는 수리불가능하다.

II. Agoria국의 AS에 대한 무력대응은 국제법상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로서 침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Agoria국의 무력대응은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1) Agoria국의 무력대응은 AS의 무력공격에 대한 것이므로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의 행사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1) UN헌장의 해석에는 목적론적 해석과 사후실행이 고려돼야 한다.
(2) Doppstan국의 일부 지역을 장악한 채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AS는 '사실상의(de facto) 정부'에 준하는 단체이므로, Agoria국은 AS의 공격에 대하여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가사 AS가 '테러조직'에 불과하더라도, 사적 개인·집단(테러조직)의 공격에 대해서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Doppstan국은 Agoria국에 적대행위를 한 자국 내 AS를 진압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므로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자위권 행사로서 정당화된다.

(5) Agoria국은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Agoria국의 무력대응은 관습국제법에 따른 자위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3) Agoria국이 자위권 행사의 방안으로 무력공격을 선택한 것은 '비례적·필요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1) AS의 지속적 무력위협과 2016년 11월 10일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 제3000호에 따라 Agoria국이 무력공격을 자위권 행사 방안으로 선택하기 위한 필요성이 충족되었다.

(2) Agoria국이 자위권 행사의 형태로 무력공격을 선택한 것은 AS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비례성을 충족하는 대응 방식에 해당한다.

2. 가사 AS의 공격에 대한 Agoria국의 대응행위에 대하여 자위권을 원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무력행사이다.

1)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침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UN헌장 제42조 및 제48조와 본 사안에서 채택된 UN안보리 결의 제3003호에 따른 적법한 무력행사이다.

3) 전면적인 적대행위 상황에서는 무력행사의 여지가 폭넓게 인정된다.

III. ICJ가 Agoria국의 침략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하더라도, Naradon국의 국내법원은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Agoria국은 캄팔라 개정문을 비준하지 않은 바, Agoria국의 '침략행위'의 존재만으로 Tedkapo의 '침략범죄' 가 입증되지는 않으며 Naradon국이 당해 사건에 '침략범죄'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2. 가사 Tedkapo의 침략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편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3. 가사 Tedkapo의 침략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Tedkapo가 Agoria국의 국가대표의 자격에서 수행한 것으로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바, Naradon국의 국내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1) Tedkapo의 행위는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행한 것으로 관습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인 주권면제의 대상이다.

2) Tedkapo의 침략범죄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권면제가 인정된다.

IV. 청구사항 III의 연장선상에서, Naradon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Agoria 국민인 Tedkapo에 대하여 침략범죄를 이유로 Naradon국의 국내법원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국제법에 위배된다.

1. 절대적 보편관할권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1) 국제법상 보편관할권의 형성은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2)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정당성은 다수의 판례 및 학설에서 부정되었다.
3)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적용은 궐석재판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국제법상 원칙 및 Naradon국의 국내법률에도 위반이다.

2. 절대적 보편관할권이 국제법상 인정받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건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결론 및 해결방안

판례색인

■ 조약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45.
Covenant of the International League, 192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2004.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98.

The Montre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1971.
The New York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l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
The New York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1979.
The New York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1997.
The New York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1999.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1973.
The Rom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1988.

The Vienna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1988.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1980.

■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및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Anglo-Iranian Oil Co. case (jurisdiction), I.C.J. Reports 1952, p. 134.

Arrest Warrant cas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I.C.J. Reports 2000.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Judgment, I.C.J. Reports 2005.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7, paragraph 2, of the Charter), Advisory Opinion of 20 July 1962, I.C.J. Reports 1962, p. 168.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 v. Italy (Greece intervening)), Judgement, I.C.J. Reports 2012.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 16.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Dissenting Opinion of Judge Sir Robert Jennings. I.C.J. Reports 1986, p. 545.

Oil Platform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3.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Libyan Arab Jamahiriya v. United Kingdom),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1998, p. 9.

■ UN 문서

Commentary of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U.N. Doc. A/6309/Rev.1., [1966] 2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69.

U.N. Doc. A/RES/3314(XXIX).

U.N. Doc. S/2014/695 (23 September, 2014).

U.N. Doc. S/RES/1368 (September 12, 2001).

U.N. Doc. S/RES/1373 (September 28, 2001).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reaties*, Official Records, First Session*, A/CONF.39/C.1/SR.10, 1968.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repared on the Basis of Comments and Observations of Governments," UN Doc. A/65/181 (2010.4).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II, Part. 1 (1980).

■ 국내·국외 문헌

1. 단행본

김영석,『국제법』(박영사, 2010).
정인섭,『신국제법강의』10판 (서울: 박영사, 2020).

佐藤哲夫,『国際組織法』(東京: 有斐閣, 2005).
近藤航,「国際組織法から観た自衛権:「テロリストに対する自衛権」に関する一考察」,『一橋法学』17巻 3号(2018.11).
何鳴,「アフガニスタン攻撃とイラク攻撃の合法性と妥当性-アメリカの攻撃行為は国際法上の自衛権格子になるか-」,『文教大学国際学部紀要』14巻 1号(2003.7).
田岡良一,『国際法上の自衛権』(東京: 勁草書房, 1964).

D. W. Bowett. *Self-Defence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Mancherster University Press, 1958).
Ian Brownlie, "The Use of Force in Self-Defenc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7 (1961).
John Bassett Moore,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 II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6).
Manuel R. Garcia-Mora,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Hostile Acts of Private Persons against Foreign States*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2).
Oliver Dörr & Albrecht Randelzhofer, "Ch. I Purposes and Principles, Article 2(4)" in Bruno Simma (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Vol.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Tetsuo, Sato, *Evolving Constit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Theodore J. H. Elsen, *Litispendence Betwee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Security Council* (1986).
Y.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se*, 5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Robert Kolb, *Ius contra bellum: le droit international relatif au maintien de la paix: précis*, 2e édition (Bâle: Helbing Lichtenhahn, 2009).

2. 논문

도경옥,「시리아 내 ISIL 공습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국제법학회논총』제61권 제1호 (2016. 3), 대한국제법학회.
박영길,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 개념의 재검토",『법학연구』, 제12권 3호 (2009).

Ashley S. Deeks, “Unwilling or Unable”: Toward a Normative Framework for Extra-Territorial Self-Defense”,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2, No.3, (2012).

Chanaka Wickremasinghe, “Immunities Enjoyed by Officials of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Malcolm D. Evans (ed.),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 Press, 2003).

D. W. Bowett, “Jurisdiction: Changing Patterns of Authority over Activities and Resources”,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3 (1982).

H. F. Van Panhuys, “In the Borderland Between the Act of State Doctrine and Questions of Jurisdictional Immunity”,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13, No. 1193 (1964).

H. Lauchterpacht, “Revolutionary Activities by Private Persons Against Foreign State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No.1 (1928).

Robert B. von Mehren,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 Award on the Merits in Dispute between Texaco Overseas petroleum Company/California Asiatic Oil Company and the Government of the Libyan Arab Republic (Compensation for Nationalized Property)”,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17, No. 1 (1978).

Norman G. Printer Jr. “The use of Force against Non-State Actors under International Law: An Analysis of the U.S. Predator Strike in Yemen”, *UCL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Foreign Affairs*. Vol. 8, No. 2 (2003).

Oscar Shachter, “The Right of States to Use Armed Force”, *Michigan Law Review*, Vol. 82, No. 5 (1984).

3. 기타 자료

“Universal criminal jurisdiction with regard to the crime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Resolution of Seventeenth Commission*,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e (2005).

관할권 진술

Agoria국과 Naradon국은 2018년 3~4월 Doppstan국 영토 내 Alcoran State 장악지역에서 이루어진 Agoria국 군대의 행위, 그리고 이를 명령한 Agoria국 전직 대통령 Tedkapo에 대해 동년 9월 16일 재판관할권을 행사한 Naradon국의 행위를 둘러싼 양국 간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해 2019년 12월 1일 체결한 특별협정(compromis)의 제출을 통해 본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규정 제40조 1항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ICJ에 회부하였다. 이미 본 분쟁에 대한 UN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결정이 내려져 있는 바, 당해 재판소는 본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당해 재판소가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있으며, 따라서 나머지 쟁점들의 경우 관할권 관련 쟁점의 해결을 전제로 당해 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하는 바이다.

제기된 문제 요약

1.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안보리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 ICJ가 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2. ICJ가 Agoria국의 침략행위를 판단하는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Agoria국의 AS에 대한 무력대응을 국제법상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로 볼 것인지 또는 침략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3. ICJ가 Agoria국의 침략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Naradon국의 국내법원이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4. Naradon국에 소재하지 않은 Agoria국민 Tedkapo에 대하여 침략범죄를 이유로 Naradon국의 국내법원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행 국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 관계의 진술

Doppstan의 국가원수 Hassani 대통령이 30년간 독재정치를 계속한 결과 2016년 6월 10일의 대규모 집회 등 독재에 항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고조되었다. 이에 Hassani 정권은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하였고 국제사회는 이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11월 10일 안보리는 UN헌장 제39조에 기초한 결의 제3000호를 통해 Doppstan국 내의 사태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하고 당국에 사태의 종식을 촉구하였다.

한편 Doppstan국 내 반란단체 중 하나가 Doppstan국 전체 영토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북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2017년 3월 30일에 이슬람 원리주의를 추종하는 Alcoran State(이하 "AS")를 선포하였으며 어떤 UN회원국도 이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다. 4월 30일 이후 AS가 주변국인 Agoria국, Doppstan국, Naradon국을 상대로 소규모 테러와 약탈을 자행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AS를 테러단체로 지정, Doppstan국은 동년 9월 7일 "테러방지법"을 제정, 시행했으나 AS 장악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동년 12월 12일 Doppstan국은 Agoria국과 Naradon국에게 자국과의 조율 하에 AS에 대한 공습을 요청했으나 Agoria국은 그러한 요청에 협조할 경우 자칫 Doppstan국 내의 인권유린사태를 묵인·조장할 우려가 있어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Doppstan국 외무장관은 12월 25일에 공습에 앞서 자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칠 것을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강조했다. 반면 Naradon국은 상호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있는 Doppstan국과의 조율 하에 공습을 해 왔다.

2018년 2월 26일 AS는 Agoria국의 수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에 미사일 200여기를 발사하여 각종 시설을 대파하였고 군인과 민간인 950여명을 살상했다. 동년 3월 5일 안보리는 결의 제3003호를 채택하여 AS의 대량 미사일 발사행위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이라 선언하고 UN회원국들에게 AS 통제 하의 Doppstan국 영토에 대해 국제법에 부합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Agoria국은 Doppstan국에게 AS 진압을 요구했지만 AS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동년 3월 12일 Agoria국 대통령 Tedkapo는 안보리 결의 제3003호에 근거해 AS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렸고 Agoria국의 군대는 AS 장악지역의 절반가량을 점령 및 주둔하였다. 이에 동년 4월 12일 Doppstan국은 Agoria의 무력행사가 자국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경을 넘어 무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침략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해달라는 의제를 안보리에 상정했다. 동월 17일 안보리는 결의 제3006호를 채택해 자위권 행사여부와는 별개로 Agoria국 군대의 철군을 권고하였다. 이에 Agoria국은 동년 5월 1일 군대를 철수시키면서 자국 UN대사를 통해 UN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국의 무력행사가 적법한 행위임을 옹호했고, Doppstan국과 Naradon국은 이에 반박했다. 그 다음날 Doppstan국은 Agoria국의 무력행위가 1974년 채택된 UN총회결의 제3314호의 '침략'에 해당하므로 침략행위가 있었다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의제로 상정했으나 동월 5일 이 안건은 부결되었다.

201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C")에서 침략범죄에 관한 관할권 행사가 개시되었으나 Doppstan국은 ICC규정 당사국이 아닌 바, Doppstan국은 ICC가 Agoria국의 대통령인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자국 법원에 Tedkapo를 기소했지만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오랜 내전으로 인해 사법부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Agoria국에서 동년 9월 2일 새로운 대통령 Ogumason이 당선됨에 따라 Tedkapo가 전직 국가원수가 되자, Naradon국은 자국법원에서 그의 침략범죄 혐의를 재판하고자 수사를 개시, 16일 치안판사 Marceo가 Tedkapo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Naradon국은 Agoria국에게 그의 신병을 요구했다. 양국 간 범죄인인도조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다.

Naradon국은 2010년 1월 15일 ICC규정 당사국이 되었으며 ICC이행법률인 "국제범죄처벌법"을 제정, ICC관할범죄에 대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채택했다. 동년 6월 12일에 채택된 캄팔라 개정문을 Naradon국은 2016년 5월 5일에 비준했고, 20일에는 이행법률을 개정하여 관할대상 범죄에 침략범죄를 추가했다. 해당 법률은 침략범죄에 대해 개정문보다 완화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궐석재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Agoria국은 ICC규정 당사국이지만 캄팔라 개정문은 비준하지 않았다. 2018년 9월 20일 Agoria국의 외무장관은 Naradon국의 범죄인인도요청을 거부하는 동시에 Marceo판사의 체포영장 발부의 국제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2018년 9월 28일 Agoria국의 외무장관은 UN총회 연설에서 AS에 대한 군사행동이 적어도 침략범죄는 아니라고 하는 안보리 결정들을 근거로 자국의 군사행동이 침략행위라는 Doppstan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양국은 대립을 거듭하며 반목상태가 고조되던 와중 2019년 10월 10일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으나 외교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11월 10일 Naradon국은 이 분쟁을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Agoria국은 이미 침략행위의 존재를 부인하는 안보리 결정이 내려져 있음을 근거로 ICJ의 관할권을 부인한 반면, Naradon국은 ICJ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12월 1일 양국 외무장관은 재차 회동하여 위 쟁점을 비롯한 양국 간 법률문제들을 ICJ에 회부하기로 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였다.

변론의 요약

첫째, ICJ는 본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본 사안에서 안보리의 결정으로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적어도 침략행위가 아님이 입증되었다. ICJ와 안보리 간에는 '중복절차 회피' 원칙이 적용되고, 이미 확정된 안보리 결정이 있는 사안을 ICJ가 다시 다루는 것은 사법심사에 해당하므로 금지되며, ICJ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ICJ는 안보리 결정이 이미 내려진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또한, 본 사안에서의 안보리 결정은 '구속력 있는' 결정이므로 Naradon국의 청구는 수리불가능하다.

둘째, Agoria국의 AS에 대한 무력대응은 국제법상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로서 침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Agoria국의 무력대응은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Agoria국의 무력대응은 AS의 무력 공격에 대한 것이므로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이는 UN헌장의 해석에는 목적론적 해석과 사후실행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무력공격'의 의미 및 자위권의 요건 또한 이러한 원칙에 맞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Doppstan국의 일부 지역에서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AS는 '사실상의(de facto) 정부'에 준하는 단체이므로 Agoria국은 AS의 공격에 대하여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사 AS가 '테러조직'에 불과하더라도, 사적 개인·집단(테러조직)의 공격에 대해서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Doppstan국은 Agoria국에 적대행위를 한 자국 내 AS를 진압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므로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자위권 행사로서 정당화된다. 가사 Agoria국이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Agoria국은 UN헌장 제51조가 보장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goria국의 무력대응은 관습국제법에 따른 자위권의 행사요건인 긴박한 필요성에 따라 허용되는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마지막으로 Agoria국이 자위권 행사의 방안으로 무력공격을 선택한 것은 '비례적·필요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가사 AS의 공격에 대한 Agoria국의 대응행위에 대하여 자위권을 원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무력행사이다.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Doppstan국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어렵게 하지 않았으며, UN총회 결의 3314호의 내용상 Doppstan국에 대한 침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goria국의 행위는 침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UN헌장 제42조 및 제48조와 본 사안에서 채택된 UN안보리 결의 제3003호에 따른 적법한 무력행사이다. 또한, 전면적인 적대행위 상황에서는 무력행사의 여지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ICJ가 Agoria국의 침략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하더라도, Naradon국의 국내법원은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먼저 Agoria국의 '침략행위'의 존재만으로 Tedkapo라는 개인의 '침략범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 한편 Agoria국은 캄팔라 개정문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개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략범죄의 구성요건은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이는 Agoria국이 침략범죄의 법적 성격에 대해 보편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이를 기준으로 보편적 관할권을 창설할 수 없다. 하물며 이보다 더욱 완화된 수준의 Naradon국의 ICC 규정 이행법률에 따른 침략범죄의 구성요건을 본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하다. 가사, Tedkapo의 침략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편관할권 행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침략범죄를 보편관할권의 행사 대상으로 보는 국제법적 법리는 확립된 바 없다.

나아가 가사, Tedkapo의 침략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당시 Tedkapo가 Agoria국의 국가대표의 자격에서 수행한 것으로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바, Naradon국의 국내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넷째, Naradon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Agoria 국민인 Tedkapo에 대하여 침략범죄를 이유로 Naradon국의 국내법원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국제법에 위배된다. 먼저 절대적 보편관할권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국제법상 보편관할권의 형성은 피의자가 부재할 때의 관할권은 고려하지 않았다.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조약은 범죄 혐의자가 관할권 행사 국가의 영토에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정당성이 여러 국제판례 및 국가실행에서 부정되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재판소 및 상당수 국가들은 형사관할권은 영토에 대해 배타적인 개념이므로 자국 영토 바깥으로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적용은 궐석재판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는 국제법 및 Naradon국의 국내법률에도 위반이다. 피의자 부재 상태에서의 체포영장 발부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가사 절대적 보편관할권이 국제법상 인정받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침략범죄를 다루는 본 사안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변론

I.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가 아니라는 안보리 결정이 내려져 있으므로 ICJ는 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본 사안에서 안보리의 결정으로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적어도 침략행위가 아님이 입증되었다.

Agoria국의 외무장관이 2018년 9월 28일 UN총회 연설에서 밝혔듯, 2018년 4월 17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3006호는 Agoria국 군대의 철군을 권고하면서도 그 이유를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라서가 아닌, 단지 군대의 지속적 주둔이 평화의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데에서 찾았다.[1] 또한, 2018년 5월 2일에 Agoria국의 행위가 침략행위였다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Doppstan국이 상정한 안건이 부결되었다는 것은,[2] 안보리가 Agoria국의 행위를 침략행위로 보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안보리는 제3006호 결의안을 채택하고 Doppstan국의 안건을 부결시킴으로써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적어도 침략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2. ICJ는 안보리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1) ICJ와 안보리 간에는 '중복절차 회피' 원칙이 적용된다.

'중복절차 회피(litispendence)' 원칙이란 동일 당사자들에 동일 청구원인에 기하여 동일 쟁점에 관한 절차가 서로 다른 국제분쟁해결절차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피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은

1)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5.
2)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16.

ICJ와 안보리 간에도 적용된다.[3] 이는 1923년 Corfu 사건 이후에 국제연맹규약의 해석 및 국제법의 여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세워진 Committee of Jurists에 의해 지지되었고, 이후 국제연맹규약 제15조 1항은 이사회에 제출될 수 있는 분쟁을 "제13조에 따라 중재에 제출되지 않은 파열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였다.[4]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298조 1(c)항 또한 "UN 안보리가 UN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의 경우 선택적 예외 선언에 따라 협약상 강제절차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보리 절차와 여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1952년 Anglo-Iranian Oil Co. 사건에서 Alvarez 재판관이 "만일 사안이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면, 안보리는 해당 사안을 담당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 또한 '중복절차 회피' 원칙이 ICJ와 안보리 간에도 적용된다는 증명이다.[5]

2) 가사 '중복절차 회피' 원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미 확정된 안보리 결정이 있는 사안을 ICJ가 다시 다루는 것은 사법심사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

ICJ는 사법심사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1962년 Certain Expenses 사건에서 ICJ는 "국내적 법체계에서는 종종 입법 혹은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가 존재하지만, UN의 구조상으로는 그러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 UN헌장 초안 작성 당시 ICJ에게 헌장을 해석할 수 있는 최종적인(ultimate)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안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함으로써 ICJ에 의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부정하였다.[6] 1972년 Namibia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를 더욱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의심의 여지 없이(undoubtedly), 재판소는 관련 UN 기관들에 의해 행해진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 혹은 상소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7] 1984년 Nicaragua 사건에서 재판부는 "특정 사안에 대한 안보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해당 사안이 ICJ에서 다뤄지는 것을 막지 않으며, 두 절차는 동등하게(*pari passu*) 추구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안보리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에 이는 ICJ에 의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며, 이미 안보리 결정이 확정된 본 사안과는 상이하다. ICJ의 사법심사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 사안에서도 ICJ의 관할권이 성립할 수 없다.

3) ICJ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ICJ는 '정치문제이론(political question doctrine)'에 의해 본 사안을 판단할 수 없다. ICJ는 법적 문제만을 관할하며, 정치적 문제에 대한 판단은 안보리의 역할이다. 1962년 Certain Expenses 사건에서 Koretsky 재판관은 "재판소에 회부된 사안은 정치적 성격이 우세한 사안이므로, 재판소는 사안의 실체적 문제에 답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재판소의 의견이 정치적 분투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8]

본 사안은 Agoria국의 행위가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달라는 Naradon국의 청구

3) Theodore J. H. Elsen, *Litispendence Betwee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Security Council* (1986), pp. 54-56.
4) Covenant of the International League, Art. 15(1).
5) *Anglo-Iranian Oil Co. case (jurisdiction),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lvarez, I.C.J. Reports 1952,* p. 134.
6)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7, paragraph 2, of the Charter), Advisory Opinion of 20 July 1962, I.C.J. Reports 1962*, p. 168.
7)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 16, para. 89.
8) *Certain Expenses* case, *supra* note 6, *Dissenting Opinion of Judge Koretsky*, p. 254.

에 의해 회부되었다. 그러나 Agoria국은 침략행위를 국제범죄화한 캄팔라 개정문의 당사국이 아닌 바,[9] Naradon국의 청구취지는 Agoria국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즉, 본 사안은 본질적으로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인 성격이 우세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정치문제이론'에 따라 ICJ의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본 사안에서의 안보리 결정은 '구속력 있는' 결정이므로 Naradon국의 청구는 수리불가능하다.

본 사안에서의 안보리 결정은 이미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력 있는' 결정이므로, Naradon국의 청구취지가 인정되더라도 본 사안은 안보리에 의해 규율되는 사안으로서 수리불가능하다. 1998년 Lockerbie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가 재판청구일 이전에 통과된 안보리 결의 제731호가 있음에도 리비아의 청구의 수리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지만, 이는 해당 결의가 "구속력 없는 단순 권고"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으며,[10] 모든 결의가 수리가능성에 대한 법적 장애물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었다.

안보리의 결정이 단순한 권고적 효력만을 지니는 것인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안보리의 결정이 내려질 때 UN헌장 제7장상의 조항들을 원용했는지 여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971년 Namibia 사건에서 재판부는 "인용된 헌장상의 조항들"뿐만 아니라 "결의안의 문언,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의 논의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안보리 결정의 법적 구속력을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1] 본 사안에서 2018년 5월 2일 Doppstan국에 의해 안보리에 상정되었던 결의안은 Agoria국의 행위가 침략행위인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것으로서,[12] 이는 문언상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UN헌장 제39조에 기초한 결의안임이 명백하다.[13] UN헌장 제39조에 기초한 결의안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인정된다. 해당 결의안이 안보리에서의 논의 결과 부결되었다는 사실은 Agoria국의 행위를 침략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안보리의 입장이 구속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Naradon국의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안보리에 의해 규율되는 바, 본 사안은 수리불가능하다.

II. Agoria국의 AS에 대한 무력대응은 국제법상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로서 침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Agoria국의 무력대응은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1) Agoria국의 무력대응은 AS의 무력 공격에 대한 것이므로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1) UN헌장의 해석에는 목적론적 해석과 사후실행이 고려돼야 한다.

본 사안에서 Agoria국의 행위는 UN헌장 제51조(이하 "51조")에 따른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이때 51조는 목적론적 해석 방법에 따른 해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설립문

9)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22.

10)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Libyan Arab Jamahiriya v. United Kingdom),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1998*, p. 9, para. 44.

11) *Namibia* case, *supra* note 7, p. 16, para. 114.

12)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18.

13) UN Charter, Art. 39.

서에 대한 해석 방법은 문언해석과 함께 목적론적 해석 및 사후의 실행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14] 이는 1971년 Namibia 사건의 권고적 의견에서 ICJ가 UN헌장 제27조 제3항에 대한 해석방식으로 채택한 것이기도 하다.[1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 단서(이하 "5조 단서")도 이를 뒷받침한다.[16] 5조 단서는 동 협약이 "국제기구의 관계규칙을 침해함이 없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국제법위원회에 따르면 이 조항은 조약법의 특정 맥락이 국제기구의 규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한다는 의미이다.[17] 이는 국제기구가 갖는 역동성(dynamics)을 고려한 결과였다. 한편 빈 조약법 회의는 "관계규칙"의 범위에 국제기구의 설립문서와 함께 사후 실행을 통해 확립되어 국제기구를 구속하는 규칙 또한 포함된다고 보았다.[18] 즉, UN헌장은 설립 당시의 상황이 주로 반영된 문언주의적 해석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속적 변화를 반영한 목적론적 해석과 사후 실행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UN의 실질적 기능을 보장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이때 UN헌장에서 목적론적 해석 및 사후의 실행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떤 것인지가 문제시 될 수 있으나, 헌장 제51조는 분명히 이에 해당한다. 제51조는 동 헌장 제2조 4항 및 제7장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당해 조항들은 집단안전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UN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19] 따라서 해당 조항들은 국제기구의 역동적 성격을 반영하는 조항이라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당해 조항들에는 목적론적 해석 및 사후 실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2) Doppstan국의 일부 지역을 장악한 채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AS는 '사실상의(de facto) 정부'에 준하는 단체이므로, Agoria국은 AS의 공격에 대하여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UN헌장 제2조 제4항은 모든 회원국에게 무력행사금지의무를 부과한다. 비국가행위자가 사실상 국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목적론적 해석의 측면에서 해당 조항의 회원국은 UN회원국 뿐 아니라 사실상의 정부도 포함한다.[20] 본 사안에서 AS는 Doppstan국 북동부지역의 일부를 장악한 채 스스로를 독립국가라 선포하였고, Doppstan국 역시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한 이상[21] 이들이 사실상의 정부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자위권을 규정한 UN헌장 제51조는 동 헌장 제2조 4항의 무력사용금지의무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22] 따라서 무력사용금지의무를 지는 주체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타국에 무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국은 자위권을 원용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2018년 2월 26일 AS가 Agoria국의 주요 도시에 대하여 미사일 200기를 발사한 행위는 동 헌장 2조 4항을 위반하는 무력행사로서 동 헌장 제51조가

14) Tetsuo, Sato, *Evolving Constit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 232.
15) *Namibia* case, *supra* note 7, p. 22, para. 22.
16)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 5.
17) U.N. Doc. A/6309/Rev.1., [1966] 2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69, p. 191.
18)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reaties, *Official Records, First Session*, A/CONF.39/C.1/SR.10, 1968, p. 57, para. 40,
19) 佐藤哲夫,『国際組織法』(東京: 有斐閣, 2005), p. 107.
20) Oliver Dörr & Albrecht Randelzhofer, "Ch. I Purposes and Principles, Article 2(4)" in Bruno Simma (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Vol.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213-214; D. W. Bowett. *Self-Defence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Mancherster University Press, 1958), pp. 153-154.
21)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s. 6, 13.
22) 近藤航,「国際組織法から観た自衛権:「テロリストに対する自衛権」に関する一考察」,『一橋法学』17巻 3号(2018.11), p. 160.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 규정한 '무력공격'에 해당한다. 따라서 Agoria국은 이에 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가사 AS가 '테러조직'에 불과하더라도, 사적 개인·집단(테러조직)의 공격에 대해서 UN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사 AS가 Doppstan국 및 Naradon국의 주장처럼 테러조직에 불과하더라도 Agoria국은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테러조직도 UN헌장 제2조 제4항에 따른 무력사용금지의무를 질 수 있다. 안보리 역시 이와 유사한 취지로 테러에 대한 자위권을 인정하는 결의를 잇달아 채택했다.[23] Kolb 역시 테러조직과 같은 비국가행위자도 무력행사능력을 가진다면 무력사용금지의무에 복종해야 한다고 밝혔고,[24] ICJ 재판관들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제시했다. 2005년 콩고와 우간다 간의 Armed Activities 사건에서 Kooijmans와 Simma 재판관은 콩고 내에 소재하는 반(反) 우간다 세력을 상대로 한 우간다의 자위권 주장에 대하여 이웃 국가에 소재하는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무력공격이 소재국에 귀속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무력공격으로서 자위권 원용 사유라고 밝혔다.[25]

즉, 무력불행사 의무에 복종해야 할 주체가 이를 위반하여 무력을 행사한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UN헌장 제51조에 따른 무력공격에 해당하는 바, Agoria국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Doppstan국에 소재하는 비국가행위자인 AS의 무력공격이 Doppstan국에 귀속되지 않더라도 AS에 의한 무력공격이 무력사용금지의무에 위반하는 이상, 스스로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 Agoria국은 동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Doppstan국은 Agoria국에 적대행위를 한 자국 내 AS를 진압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므로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자위권 행사로서 정당화된다.

비록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의 행사 대상인 비국가행위자의 소재국에 무력공격이 귀속되지 않더라도 해당 비국가행위자의 소재국이 당해 행위자에 의한 위협을 억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자위권의 행사가 정당화된다. Lauchterpacht는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독점적 관할권 행사를 주장하려면 그러한 권한의 행사가 타국의 존재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없음을 전제한다고 보았다.[26] 이처럼 국가의 영토 보전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타국의 자위권 행사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묵인의무에 대한 위반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27] 즉, 테러조직과 같은 비국가행위자에 대해 소재국이 이를 진압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 이는 '타국의 존재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의 독점적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1814년에서 1817년 사이 플로리다에 대한 미국의 침공에 대하여 국무장관 Adams가 주스페인 미국 대사에게 '스페인에 대한 적대가 아닌 자위권의 행사'라고 밝힌 이후,[28] 1837년 Caroline

23) U.N. Doc. S/RES/1368 (September 12, 2001): U.N. Doc. S/RES/1373 (September 28, 2001).

24) Robert Kolb, *Ius contra bellum: le droit international relatif au maintien de la paix: précis*, 2e édition (Bâle: Helbing Lichtenhahn, 2009), p. 240.

25)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Judgment, I.C.J. Reports 2005,* p. 314, para. 30; Separate Opinion of Judge Kooijmans, p. 337; Separate Opinion of Judge Simma, para. 12.

26) H. Lauchterpacht, "Revolutionary Activities by Private Persons Against Foreign State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No.1 (1928), p. 106.

27) Bowett, *supra* note 20, p. 60.

호 사건에서 보다 구체화 되었다. Caroline호 사건에서 미국이 캐나다 독립을 지원하는 자국 내 무장반도의 진압에 실패하자, 영국은 자위권을 원용하여 지원에 사용된 Caroline호를 파괴했다. 이러한 영국의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영국의 자위권 원용 주장 및 사과를 수용함으로써 사안을 종결시켰다.[29] 이로써 양국은 외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영토 내 비국가행위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자의 소재국은 이를 진압할 의사를 갖고 구체적 실행에 나설 의무를 가지며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국가는 피해국의 자위권 행사로 인한 영토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30]

이후 이스라엘, 터키, 러시아 등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다.[31] 이렇듯 한 세기가 넘는 국가 관행이 있었으며 최근 미국은 시리아 정부와의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시리아에 소재하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이하 "ISIL")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미국은 국제법 하에서 개별 국가는 고유한 권리로서 갖는 자위권에 따라 위협에 맞서 방어행위를 취할 수 있으며 위협이 소재한 국가가 이를 억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관계로 무력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므로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공격 역시 자위권에 따른 무력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32]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여 캐나다, 호주 등 시리아 내 ISIL 공습에 참여하는 여러 서방국가도 공습의 주된 법적 근거를 의사와 능력의 부재에 따른 자위권에 두고 있다.[33]

상술했듯 UN헌장 제51조의 해석에는 이러한 사후 실행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비국가행위자 소재국이 당해 행위자에 의한 위협을 억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위협을 당하는 국가는 당해 비국가행위자를 향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폭넓은 국제사회의 실행으로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당해 비국가행위자의 위협이 그것의 소재국에 귀속되지 않더라도 소재국이 이를 진압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소재국의 영토 내에서 비국가행위자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동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의 행사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34] 본 사안에서 Doppstan국도 Agoria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자국 내에서 적대행위를 하는 비국가행위자인 AS를 진압할 의사와 능력이 부재함을 보였으므로,[35] Agoria국이 Doppstan국 내 AS에 무력공격을 가한 것은 자위적 조치에 해당한다.

(5) Agoria국은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Agoria국은 UN헌장 제51조에 따라 개별적 자위권 뿐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AS에 대한 Agoria의 무력 공격은 정당화된다. 현행 UN헌장에서 개별 국가에게 주어지는 자위권은 사회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36] 따라서 국제공동체의 생존권으로서 기능하는 집단적 자위권은 권리인 동시에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적인 의무가 될 것이다.[37]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

28) John Bassett Moore,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 Ⅱ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6), pp. 406-407.
29) Bowett, *supra* note 20, p. 59.
30) Manuel R. Garcia-Mora,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Hostile Acts of Private Persons against Foreign States*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2), p. 116.
31) 도경옥,「시리아 내 ISIL 공습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국제법학회논총』제61권 제1호 (2016. 3), 대한국제법학회, 117면.
32) U.N. Doc. S/2014/695 (23 September, 2014)
33) 도경옥, *supra* note 31, 108면.
34) Ashley S. Deeks, ""Unwilling or Unable": Toward a Normative Framework for Extra-Territorial Self-Defense",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2, No.3, 2012. pp. 486~487.
35)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13.
36) 何鳴,「アフガニスタン攻撃とイラク攻撃の合法性と妥当性-アメリカの攻撃行為は国際法上の自衛権格子になるか-」,『文教大学国際学部紀要』14巻 1号(2003. 7), 49~51면.
37) 川島武義,『川島武義著作集第一巻』(東京: 岩波書店, 1982), 226~228면.

Jennings 재판관은 집단적 자위권은 공격당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않으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다른 국가를 돕는 행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자신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설시하여 집단적 자위권이 권리와 의무의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했다.[38]

본 사안에서 AS는 Doppstan국의 영토를 장악한 채 Agoria국뿐만 아니라 Naradon국과 Doppstan국에 대해서도 테러행위를 저질러 국제평화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Doppstan국은 자국과의 조율을 전제로 AS 공습을 요청하였으므로[39] 피해 당사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청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그 발동요건으로 피해당사국의 도움 요청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데 본 사안의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피해당사국인 Doppstan국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됨은 명백하다. 즉, AS에 대한 무력공격은 단순히 Agoria국의 권리 보호를 넘어 국제평화수호의 의무를 다하는 활동이므로 권리와 의무의 양면적 속성을 갖는 집단적 자위권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Agoria국의 무력대응은 관습국제법에 따른 자위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가사 AS의 공격에 대하여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AS의 공격으로 인해 Agoria국에 '긴박한 위난'이 발생한 이상 Agoria국은 관습국제법에 근거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위권에는 UN헌장에 의한 자위권 외에도 관습국제법에 따른 자위권이 있다.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양 권리가 별개의 것임을 분명히 했다.[40] 따라서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습국제법에 따른 자위권이 인정되면 AS에 대한 Agoria국의 무력공격은 정당화된다. 관습국제법에 따른 자위권은 긴급피난과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이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자위권 행사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41]

이는 자위권에 대한 국제 관행에서도 확인된다. 1837년 Caroline호 사건에서 미국 국무장관 Webster는 자위권 발동의 요소로 필요성과 긴박성만을 제시할 뿐 자위권 행사 대상이 위법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42] 뿐만 아니라 1807년 덴마크 함대 사건, 1817년 Amelia섬 사건, 1873년 Virginius호 사건 당시 영국 측의 주장, 1886년 Bering Strait fishries 사건, 1940년 Oran and Mers -el-Kebir 사건들은 모두 자위권 원용의 요소로서 긴박한 필요성만을 요구했다.[43]

이처럼 국제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그로부터 법적확신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 1986년 Nicaragua 사건의 판시에 따라,[44] 긴급피난과 동일한 의미로서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 긴박한 필요성만을 요구할 뿐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관습국제법상의 자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Doppstan국은 자국의 영토의 일부인 AS 점령지역에 대한 통제권한을 상실했고 이 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차지한 AS는 주변 국가에 대해 테러, 무력행사 등 각종 공격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AS가 속한 지역이 비록 Doppstan국의 영토이고 Doppstan국이 AS의 행위에 책임이 없으며

---

38) *Military and Pu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Dissenting Opinion of Judge Sir Robert Jennings. I.C.J. Reports 1986*, p. 545.

39)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8.

40) *Nicaragua* case, *supra* note 38, *Judgment*, para. 176.

41) Ian Brownlie, "The Use of Force in Self-Defenc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7 (1961), p. 186.

42) 田岡良一,『国際法上の自衛権』(東京: 勁草書房, 1964), p. 41.

43) *Ibid*, pp. 48-83.

44) *Nicaragua* case, *supra* note 38, *Judgment*, para. 184.

아무런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Agoria국은 AS의 침해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급박한 필요에 따라 자위권을 원용하여 Doppstan국의 영토인 AS 장악지역에 무력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3) Agoria국이 자위권 행사의 방안으로 무력공격을 선택한 것은 '비례적·필요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무력사용의 방식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만족하여야 한다. 필요성의 원칙이란 무력대응이 현재의 침해를 저지·격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즉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며, 비례성의 원칙이란 무력대응이 자위의 목적에 비례하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5] Agoria국이 처한 상황 및 그 대응 방식은 이러한 원칙을 모두 충족시켰다.

(1) AS의 지속적 무력위협과 2016년 11월 10일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 제3000호에 따라 Agoria국이 무력공격을 자위권 행사 방안으로 선택하기 위한 필요성이 충족되었다.

본 사안에서 AS는 2017년 4월 30일 이후부터 Agoria국을 향해 지속적으로 테러를 자행하였으며 2018년 2월 26일에는 Agoria국의 수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에 미사일 200여기를 발사하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46] AS의 이런 행위는 그 규모가 크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적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ICJ 역시 2003년 Oil Platform 사건, 2005년 콩고와 우간다 간의 Armed Activities 사건에서 공격 행위가 축적되면 이것이 자위권 행사를 위한 무력공격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47] Doppstan국은 이미 AS 장악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인정한 바, Agoria국이 직접 무력사용을 하지 않고서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즉, 본 사안처럼 지속적 무력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AS를 향한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필요성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안에서 Agoria국은 Doppstan국과의 조율을 통해 자위권 행사에 나설 수 없었다. 안보리는 결의 제3000호를 채택하여 Doppstan국 내의 사태가 평화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48] 당해 결의는 Doppstan국 내에서 벌어지는 평화에 대한 위협을 조속히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으나 Hassani 정권은 Agoria국이 AS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한 2018년 3월 12일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으며 당해 정권은 결의 제3000호에 따라 요구된 '사태 종식'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만약 이때 Agoria국이 자위권 행사를 위해 Doppstan국과 협의했다면 이는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지정한 사태를 촉발시킨 채 결의 제3000호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세력과 협력하는 것이 된다.

개별 회원국은 UN 헌장 제6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헌장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동 헌장 제39조에 따른 결의 제3000호가 평화에 대한 위협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Hassani 정권과의 협력은 안보리의 적법한 요구를 따르지 않는 세력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 즉, AS의 전면적 적대행위로 인해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발생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적법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정권과 협력하지 않은 것이 국제법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45)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10판 (서울: 박영사, 2020), 1143-1144면.
46)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s. 6, 11.
47) *Oil Platform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3*, para. 64; *Armed Activities* case, *supra* note 25, para. 146.
48)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5.

(2) Agoria국이 자위권 행사의 형태로 무력공격을 선택한 것은 AS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비례성을 충족하는 대응 방식에 해당한다.

본 사안에서 Agoria국은 AS로부터 직접적 침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자위권적 조치로서 병력을 동원했다. 국제법적으로 자위권 행사의 비례성 위반을 심사할 때는 당해 조치가 목적에 비례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49] AS가 Agoria국에 대해 지속적·전면적 적대행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Agoria국으로서는 이들의 군사 활동 자체를 억제해야 했다. 즉, AS의 적대행위를 억제해야 하는 Agoria국의 목적을 고려할 때 Agoria국의 조치가 비례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양적비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2003년 Oil Platform 사건에서 ICJ는 미국 국기를 게양한 배를 격침시킨 미사일의 근원지를 공격한 것이 비례성을 충족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50] 즉, 무력공격의 근원지에 대한 자위권 상의 공격은 비례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본 사안에서 AS는 Agoria국을 향해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AS의 영역 전체가 미사일 발사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 공격이 이뤄진 상황에서 AS 영역의 절반을 차지한 Agoria국의 자위권 발동 행위가 비례성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AS의 공격에 대한 Agoria국의 대응행위에 대하여 자위권을 원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무력행사이다.

1)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침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Naradon국의 주장처럼 AS가 무력행사금지의무를 지지 않고, AS의 피해국으로서 Agoria국이 자위권을 원용할 수 없더라도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적법하다. 먼저 UN헌장 제2조 제4항은 무력행사 금지원칙의 보호법익으로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을 제시한다. 본 사안에서 AS가 장악한 Doppstan국의 일부 지역은 당해 국이 확인한 바와 같이 Doppstan국의 통제력이 상실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Agoria국의 무력공격이 Doppstan국에게 국가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어렵게 하는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동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행사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무력행사이다.

더욱이,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Doppstan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1974년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총회 결의 3314호 '침략의 정의'에서 규정한 침략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Texaco 사건에서 중재재판부는 여러 체제의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UN 총회의 결의는 관습국제법이 되기 위한 법적확신을 갖는다고 판단했는데,[51] 총회 결의 3314호는 만장일치로 처리되었으므로[52] '침략의 정의'는 관습국제법으로서 국제법적 법원성을 갖는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 제1조는 침략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동조 (a)에서 1조의 국가는 UN 회원국일 필요가 없으며 국가로서의 승인을 요하지도 않는 '사실상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53] 즉 침략의 대상은 사실상의 국가이면

---

49)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II, Part. 1 (1980), p. 69, para. 121.

50) *Oil Platforms* case, *supra* note 47, pp. 197-198, para. 76-77.

51) Robert B. von Mehren,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 Award on the Merits in Dispute between Texaco Overseas petroleum Company/California Asiatic Oil Company and the Government of the Libyan Arab Republic (Compensation for Nationalized Property)",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17, No. 1 (1978), p. 30, para. 87.

52) U.N. Doc. A/RES/3314(XXIX), p. 142.

53) *Ibid.*, p. 143.

족하다. 그렇다면 본 사안에서 AS에 대한 Agoria국의 무력 공격은 그것이 AS에 대한 침략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AS가 '사실상의 국가'에 해당하는 이상 Doppstan국에 대한 침략을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UN헌장 제42조 및 제48조와 본 사안에서 채택된 UN안보리 결의 제3003호에 따른 적법한 무력행사이다.

가사 본 사안에서 AS에 대한 무력공격이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UN헌장 제42조 및 제48조와 본 사안 안보리 결의 제3003호에 따라 이는 적법한 무력행사에 해당한다. 동 헌장 제42조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며 헌장 제48조 제2항은 이것이 회원국의 조치를 통해 이행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본 사안의 UN안보리 결의 제3003호는 AS 통제 하의 Doppstan국 영토에 대해 '국제법에 부합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안보리가 회원국의 무력사용을 허가한 소말리아(1993), 유고(1995), 동티모르(1999), 라이베리아(2003), 코트디부아르(2004) 등과 동일하다.[54] 즉,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회원국의 무력사용을 허가한 이상 Doppstan국 영토 내의 AS에 대한 Agoria국의 무력공격은 헌장과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며 침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전면적인 적대행위 상황에서는 무력행사의 여지가 폭넓게 인정된다.

Dinstein에 따르면 전면적인 적대행위 상황에서 필요성의 문제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 피침략국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기 어렵다.[55] 특히 Schachter는 공격의 대상이 된 국가에게는 결코 평화적 분쟁해결 절차를 모색해야 한다는 이유로 침략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이 요구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56] 엄격한 적법성에 대한 요구는 단발적인 무력 공격의 존재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며 자위권이 발동된 이후에는 자위권 행사의 상대방이 끼치는 해악이 사라질 때까지 폭 넓은 무력행사의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57]

본 사안에서 Agoria국을 향한 AS의 공격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AS의 미사일 공격은 Agoria국을 향한 대규모의 전방위적 공격이었다. Agoria국에 대한 이와 같은 근본적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평화적 수단까지 모두 고려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Agoria국에게는 자국의 생존을 위하여 폭넓은 자위수단의 선택이 보장되어야 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Agoria가 Doppstan국 내의 AS를 향해 무력공격을 단행한 것은 적법하다.

III. ICJ가 Agoria국의 침략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하더라도, Naradon국의 국내법원은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Agoria국은 캄팔라 개정문을 비준하지 않은 바, Agoria국의 '침략행위'의 존재만으로 Tedkapo의 '침략범죄'가 입증되지는 않으며 Naradon국이 당해 사건에 '침략범죄'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54)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20), 1131면.
55) Y.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se*, 5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 262.
56) Oscar Shachter, "The Right of States to Use Armed Force," *Michigan Law Review*, Vol. 82, No. 5 (1984), p. 1635.
57) Norman G. Printer Jr. "The use of Force against Non-State Actors under International Law: An Analysis of the U.S. Predator Strike in Yemen," *UCL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Foreign Affairs*. Vol. 8, No. 2 (2003), p. 343.

국가의 침략행위와 개인의 범죄인 '침략범죄'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따라서 Agoria국의 침략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Tedkapo 개인의 침략범죄가 성립함을 이끌어낼 수 없다. 무엇보다 침략범죄의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ICC 캄팔라 개정문은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는데, Agoria국은 캄팔라 개정문을 비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58] 나아가 이는 Agoria국이 침략범죄의 법적 성격에 대해 보편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에 따르면 조약은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제3국에게 그의 동의 없이 아무나 권리를 창설하지 못한다.[59] 한편 ICC규정 제121조 5항은 개정문이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관할권은 개정문을 받아들이지 않은 당사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60] 하물며 이보다 더욱 완화된 수준의 Naradon국의 ICC규정 이행법률에 따른 침략범죄의 구성요건을 본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하다.

2. 가사, Tedkapo의 침략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편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침략범죄는 보편관할권의 대상으로 확립되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보편관할권의 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아직 해적행위뿐이다. Bowett는 보편관할권의 적용 대상으로 전혀 논란이 없는 국제법상의 범죄행위로 해적행위만을 들어 엄격하게 제한하였다.[61] 보편관할권의 적용 대상이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제노사이드, 테러범죄, 고문범죄, 항공기납치 범죄, 마약범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62] 침략범죄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법리는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바 없다.

3. 가사, Tedkapo의 침략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Tedkapo가 Agoria국의 국가대표의 자격에서 수행한 것으로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바, Naradon국의 국내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1) Tedkapo의 행위는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행한 것으로 관습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인 주권면제의 대상이다.

주권국가는 외국 법정에 스스로 제소하거나 자발적으로 응소하지 않는 한 외국 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으며 타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63] 이러한 주권면제는 국가간 주권평등 원칙에서 비롯되며, 현재 각국의 실행을 통해 확립된 관습국제법상의 권리이다. 이 같은 주권면제론은 19세기 이래 여러 나라의 판례를 바탕으로 관습국제법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1972년 '국가면제에 관한 유럽협약', 2004년 UN총회의 '주권국가와 그 재산에 대한 주권면제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협약과 1976년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 1978년 영국의 '국가면제법' 등의 국내법을 통해 지지되었다.[64] ICJ는 2012년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사법면제는 국제 관습법상의 일반 원칙으로서 수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는 UN헌장 제2조 1항에 명시된 국가 주권의 동등성 원칙에서 유래한다고 밝혔다.[65]

---

58)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22.
5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 34.
60)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 121(5).
61) D. W. Bowett, "Jurisdiction: Changing Patterns of Authority over Activities and Resources",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3 (1982), p. 13.
62) 박영길,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 개념의 재검토",『법학연구』, 제12권 3호 (2009), 341면.
63) 정인섭,『신국제법강의』(서울: 박영사, 2020), 238면.
64) *Ibid.*, 239면.
65)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 v. Italy (Greece intervening)), Judgement, I.C.J. Reports 2012*, para. 57.

주권면제는 기본적으로 일국의 재판소는 외국의 권력적 행위 등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세계 각국은 국내법 등을 제정하거나 국내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다.[66] 또한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범세계적 적용을 목적으로 합의된 유일한 국제문서인 '국가 및 국유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UN주권면제협약")' 제5조에 따라 국가는 국가와 그 재산에 대해서 타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67] 한편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연인도 주권면제의 목적상 국가로 간주된다.[68]

한편 Tedkapo는 전직 국가원수로서 그가 행한 침략행위는 Agoria국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기에 물적면제를 향유한다. 물적면제는 공적 행위 자체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현직 국가관리뿐만 아니라 전직 국가관리도 재임 중에 행한 공적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향유하고,[69] 그 국가의 관리나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도 그 국가를 위해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향유한다.[70]

2) Tedkapo의 침략범죄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권면제가 인정된다.

주권면제는 절차상으로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법리로서, 행위의 내용이 심각한 국제법 위반인가의 문제와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ICJ는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이와 같은 주권면제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당시 이탈리아 법원은 피고가 독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행위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행위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독일이 주권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ICJ에 해당 문제가 회부되고 재판소는 설사 그것이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더라도 주권면제의 법리는 별도의 법리로서 독일은 여전히 주권면제의 법리를 향유할 수 있고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을 상대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임을 설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심각한 국제법 위반을 근거로 주권면제가 부인되는 국제법적인 법리가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ICJ는 위 판례에서 주권면제란 성격상 절차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국내법원이 타국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법칙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는 제소의 원인이 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71] 따라서 주권면제의 법리는 강행규범의 내용과 서로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72] 결국 문제의 행위가 강행규범 위반인지 여부는 주권면제의 적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73]

물론 해당 판례는 민사재판에 관한 것이지만 주권평등의 원칙으로부터 유래하는 주권면제의 법리는 형사관할권 행사를 다루는 본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위 판례는 독일이라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주권면제의 향유 주체는 비단 국가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하위기관들과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연인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위 판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주권면제의 법리는 강행규범이나 중대한 국제법의 위반 여부와 별도로 성립하는

66) 김영석, 『국제법』 (박영사, 2010), 93-94면.
67)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2004), Art. 5.
68) 정인섭, *supra* note 63, 242면.
69) Chanaka Wickremasinghe, "Immunities Enjoyed by Officials of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Malcolm D. Evans (ed.),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 Press, 2003) 387, p. 403
70) H. F. Van Panhuys, "In the Borderland Between the Act of State Doctrine and Questions of Jurisdictional Immunity",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13, No. 1193 (1964), p. 1201.
71)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case, *supra* note 65, para. 93.
72) *Ibid., para. 95*
73) *Ibid., para. 97*

절차적 법리이다. 이처럼 Tedkapo 역시 전직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한 '침략행위'에 대해 주권면제를 향유하며 이 같은 주권면제는 국가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권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인정되어야 한다.

IV. 청구사항 III의 연장선상에서, Naradon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Agoria 국민인 Tedkapo에 대하여 침략범죄를 이유로 Naradon국의 국내법원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국제법에 위배된다.

1. 절대적 보편관할권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1) 국제법상 보편관할권의 형성은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국제규범은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인정한 바 없다. 국제법상 중대한 국제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내법적 처벌 관할권을 형성하도록 요구하는 다수의 국제조약은 범죄 혐의자가 해당국 영토에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국제범죄를 규율하는 조약에서 '인도 또는 기소' 원칙이 널리 채택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인도 또는 기소' 원칙에서 일반적 보편관할권이 일정 수준 인정되는 이유는 국제범죄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것인데,[74] 절대적 보편관할권 행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 '인도 또는 기소' 원칙을 택한 다수의 국제조약은 '피의자가 그 영토에 존재하는 경우' 인도하지 않는다면 기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1971년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73년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979년 인질억류방지에 대한 국제 협약, 1980년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1984년 고문방지협약,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997년 폭탄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1999년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 등 다수 국제 조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시적인 문언이다.[75] 이는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의 성립 조건을 해당 국가와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인정하는 관할권 성립의 관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정당성은 다수의 판례 및 학설에서 부정되었다.

ICJ의 Arrest Warrant 사건 당시 재판장 Guillaume은 별도의견에서 인도 또는 기소 원칙은 절대적 보편관할권에 대해 시사하는 것이 없으며, 국제형사법과 국제형사재판소의 발달은 국내법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들의 관할권에 대한 조약 또는 안보리 결정은 국가 법원의 관할권에

74) Commentary of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rt. 8, para. 6.

75) The Montre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of 23 September 1971, Art. 5, para. 2;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of 14 December 1973, Art. 3, para. 2; the New York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of 17 December 1979, Art. 5, para. 2;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of 3 March 1980, Art. 8, para. 2; the New York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l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f 10 December 1984, Art. 5, para. 2; the Rom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of 10 March 1988, Art. 6, para. 4; the Vienna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of 20 December 1988, Art. 4, para. 2; the New York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of 15 December 1997, Art. 6, para. 4; the New York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of 9 December 1999, Art. 7, para. 4.

대한 일체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있다.[76] Lotus 사건 판결에서 PCIJ가 국가들이 관련 규범이 없다면 관할권의 적용에 대해서 넓은 범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판결은 당시 1920년대 조약 체계가 명확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은 낮다. 나아가, 재판부는 "영토에 대해 배타적인 형사관할권 문제의 법적 성격은, 다른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자국 영토 바깥으로 확장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형사관할권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77] 또,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은 2005년 8월 26일자 결의에서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한 국가만이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시했다.[78] UN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국가들은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피의자가 해당 국가의 영역 내에 있어야만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편적 규범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정 범죄에 관하여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국가들 간 합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79]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허용하는 조약은 없으며, 이의 적용이 관습법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법적 확신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적용은 궐석재판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국제법상 원칙 및 Naradon국의 국내법률에도 위반이다.

Naradon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국제조약의 당사국인 바, Naradon국은 피고인의 존재 없이 보편적 관할권에만 근거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먼저 ICC규정 제63조 1항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ICCPR") 제14조 3항(d)에서는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75조 4항(e)와 제2추가의정서 제6조 2항(e)에도 나타나 있다. 물론 해당 조항을 유보한 채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를 비준한 일부 국가들 또한 존재하지만, Naradon국은 ICC규정과 ICCPR은 물론 제네바 4개 협약 또한 유보 없이 비준했으므로,[80]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 바, Naradon국은 자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Tedkapo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재판을 받을 권리'는 비단 기소 이후에만 시작되는 권리가 아닌, 재판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권리로서, 피의자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체포영장 발부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콩고와 벨기에 간의 Arrest Warrant 사건에서 해적행위를 제외하면 그 어떤 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도 범죄자가 자국 영토 내에 들어오지 않는 한 행사될 수 없는 것이며, 벨기에의 체포영장 발부 및 배포는 범죄자가 영토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할 수 없는 사법작용이라는 ICJ재판소장 Guillaume, Ranjeva, 그리고 Rezek의 개별의견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81] Naradon국이 국내법률로도 궐석재판을

76) *Arrest Warrant cas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Separate Opinion of Judge Guillaume, I.C.J. Reports 2000*, para. 11

77) *Ibid*, para. 14-15.

78) "Universal criminal jurisdiction with regard to the crime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Resolution of Seventeenth Commission*,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e (2005), para. 3(b).

79)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repared on the Basis of Comments and Observations of Governments," UN Doc. A/65/181 (2010.4).

80)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30.

금지하고 있는 것은 Naradon국 스스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자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Tedkapo에 대한 Naradon 국내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현행 국제법 위반을 구성한다.

2. 절대적 보편관할권이 국제법상 인정받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건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절대적 보편관할권이 국제법상 인정받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이는 침략범죄에는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침략범죄는 다른 중대한 국제범죄와 다르다. 대표적으로 인도 또는 기소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평화와 인류의 안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ILC초안 9조는 침략범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82] 이는 '인도 또는 기소' 원칙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지지하는 논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정당화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침략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제3국인 Naradon국이 자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 Tedkapo에 대한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결론 및 해결방안

위와 같은 이유로, Agoria국은 존경하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도록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침략행위의 결정과 침략범죄에 대한 절대적 보편적 관할권 행사가능성'사건에 관하여,

1. Agoria국의 침략행위가 있었는지 안건은 이미 안보리에 의해 부결된 바, ICJ는 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 결정할 수 없다.
2. ICJ가 Agoria국의 침략행위를 판단하는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도, Agoria국의 AS에 대한 무력대응은 침략행위가 아닌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3. ICJ가 Agoria국의 침략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Naradon국의 국내법원은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ICJ가 Agoria국의 침략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Naradon국의 국내법원은 현재 Naradon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Agoria국민인 Tedkapo에 대하여 침략범죄를 이유로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81) *Arrest Warrant* case, *supra* note 76, *Separate Opinion of President Guillaume*, paras. 9, 12; *Declaration of Judge Ranjeva*, paras. 7, 10-11; *Separate Opinion of Judge Rezek*, paras. 9-10.

82) Commentary of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rt. 9.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Naradon국 변론서

오세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석 (서울대학교 경영학),
오수연 (서울대학교 정치학), 민준홍 (서울대학교 경제학)

017-Naradon

국제사법재판소

Naradon국 변론서

2020년 09월 21일 재판소 서기국에 접수

침략행위의 결정과 침략범죄에 대한 절대적 보편적 관할권 행사가능성

(the Kingdom of Naradon/Federal Republic of Agoria
: Jointly Submitted by a Special Agreement)

2020년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

내용 목차

판례 색인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 요약

사실 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론

I.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안보리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에도 ICJ는 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ICJ가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는 안보리 결의와 상충되지 않는다.

2. 가사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가 아니라는 안보리 결정이 내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ICJ와 안보리는 그 직무와 성격이 서로 다른 UN의 주요기관이므로 ICJ는 동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1) ICJ와 안보리 간에는 '중복절차 회피'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ICJ의 재판절차와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절차는 별개로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3) ICJ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ICJ가 안보리 결의에 대해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3. 본 사안에서의 안보리 결정은 '구속력 있지' 않으므로 Naradon국의 청구는 수리가능하다.

II. Agoria국의 무력 행사는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침략행위이다.

1. Agoria국을 공격한 AS는 테러조직에 불과하며 AS의 테러행위를 이유로 Agoria국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1)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는 관습국제법상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Doppstan 국에 대한 침략행위에 불과하다.
   2)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는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Doppstan국에 대한 침략행위에 불과하다.

2. 가사 비국가행위자인 AS의 테러행위가 자위권 원용 사유가 될 수 있더라도, 이것이 Doppstan국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3. 가사 테러단체인 AS에 대한 자위권이 인정되더라도,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는 적법한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1)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비례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Agoria국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1)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는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2) 가사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가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당해 행위는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III. ICJ가 Agoria국의 침략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Naradon국의 국내법원은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습국제법의 지위를 가지는 뉘른베르크 원칙에 명시된 침략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Agoria국의 침략행위를 실질적으로 지시한 Tedkapo의 행위는 침략범죄를 구성한다.

2. 침략범죄는 보편관할권의 행사 대상인 중대한 국제위법행위로, Naradon국은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국내법원은 보편관할권에 기해 중대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침략범죄는 보편관할권이 인정되는 중대한 국제범죄이다.
(1) 뉘른베르크 원칙에 따라 침략범죄는 보편관할권의 행사 대상이다.
(2) '보편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에 따르면 Tedkapo의 침략범죄는 보편관할권의 행사 대상이다.
(3)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ILC초안'에 따라 침략범죄에 대해서 보편관할권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는 자신의 침략범죄에 대해서 주권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1) Tedkapo의 행위는 침략범죄에 해당하는 권한남용으로 국가원수의 적법한 기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바, 주권면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에 따르면 Tedkapo의 행위는 그의 전직 국가원수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주권면제로부터 배제된다.
3) 침략범죄는 강행규범 위반이며 강행규범은 다른 국제법 원칙들에 우선하므로 강행규범 위반으로 발생하는 보편관할권은 주권면제에 대해 우선한다.
4) 국제범죄를 저지른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주권면제 부인은 국제사회의 여러 실행에서도 나타난다.

IV. 청구사항 III의 연장선상에서, Naradon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Agoria 국민인 Tedkapo에 대하여 침략범죄를 이유로 Naradon국의 국내법원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국제법에 위배된다.

1.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행사는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다.

1)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적용을 금지하는 조약이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행사는 다수 국가들이 채택하여 국내법으로 인정된 바 있다.

2.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행사는 오히려 국제법상 장려된다.

1) Naradon국의 절대적 보편관할권 행사는 인도 또는 기소(aut dedere aut judicare)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절대적 보편관할권은 국제법적 원칙이 진화한 결과다.

3. Tedkapo가 저지른 침략범죄는 국제법상 Naradon국의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대상에 포섭된다.

결론 및 해결방안

판례 색인

■ 조약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1945.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45.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98.

■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및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Judgement, I.C.J. reports 2005, p. 168.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s 1984, p. 392.
Oil Platform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3, p. 183.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Libyan Arab Jamahiriya v. United Kingdom),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1998, p. 9.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United States of America v. Iran), Judgment, I.C.J. Reports 1980, p. 3.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7, paragraph 2, of the Charter), Advisory Opinion of 20 July 1962, I.C.J. Reports 1962, p. 163.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 16.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6, p. 226.

Lotus Judgement, 1927, PCIJ, Series A No 10, p.19.

Prosecutor v. Tadic (1995), 35 I.L.M. 32.

Bundesgerichtshof, 21.2.2001, 3 STR 372/00, 20 (Solokovic Case).

Case of Al Adsani v. U.K.,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Rozakis and Caflisch Joined by Judges Wildhaber, Costa, Cabral Barreto and Vajić,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01), 32 E.H.R.R. 273, p. 30.

Colozza v. Italy, Judgement,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mjanjuk v. Petrovsky (1985), 603 F. Supp. 1468; 776 F. 2d. 571.

Former Syrian Ambassador to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case, *Case No. 2 BvR 1516/96 (1997), 115 ILR 595, German Constitutional Court.*

Guatemala Genocide case (Rigoberta Menchu et al. v. Ríos Montt et al.), Judgement of Constitutional Court of Guatemala, Exp 1904-2013 (2013).

The Hissène Habré case, *Judgement of the Extraordinary African Chambers (EAC) in Senegal* (2016).

Trial of Carl Krauch and Twenty-two Others, United States Military Tribunal, Nuremberg, 1947-1948.

Trial of Gauleiter Artur Greiser, Supreme National Tribunal of Poland, 1946.

Trial of Takashi Sakai, Chinese War Crimes Military Tribunal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Nanking, 1946.

Regina v. Bow Street Metropolitan Stipendiary Magistrate and others, Ex parte Pinochet Ugarte (No. 3), 2 W.L>R. 82, U.K. (1999).

Samantar case (Bashe Abdi Yousuf et al. v. Mohamed Ali Samantar), Judgement of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560 U.S. 305 (2010).

■ UN 문서

HRC, Views under Article 5(4) of the Optional Protocol, *Human Rights Commission,* U.N. Doc. CCPR/C/18/D/16/1977.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t its 95th plenary meeting, (A/RES/95(I), 1946).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t its 67th plenary meeting 67/1 (A/RES/67/1, 2012).

ILC,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II(2) (A/51/10, 1996).

ILC, "Preparation of a Draft Code of Offenc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CN.4/5, 1949), p.218.

ILC, Fourth report on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CN.4/727, 2019), p. 24-54.

ILC, Report on the work of its forty-eighth session, 6 May – 26 July 1996,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10,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II (A/51/10, 1996), p. 19.

U.N. Secretary-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repared on the Basis of Comments and Observations of Governments: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A/65/181, 29 July 2010).

■ 국내·국외 문헌

1. 단행본

Bianchi, Andrea, "Ferrini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talian Court of Cassation, March 11, 2004,"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9 (2005).

Cassese, Antonio, *International Law* (London: Oxford, 2002).

Dinstein, Y., *War, Aggression and Self-Def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Kadelbach, Stefan, "T.he Identification of Fundamental Norms," in Tomuschat, Christian and Jean-Marc Thouvenin (Eds.), *The Fundamental Rules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Jus Cogens and Obligations Erga Omnes*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6).

Macedo, S. et alia, *The Princeton Principles on Universal Jurisdic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ogram in Law and Public Affairs, 2001)

Rosenne, Shabtai,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65).

Sato, Tetsuo, *Evolving Constit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Yanev, Lachezar D., *Theories of Co-perpetration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Leiden: BRILL, 2018).

The Trial of German Major War Criminal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sitting at Nuremberg, Germany, Vol. 22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1946).

Corten, Olivier, *Le droit contre la guerre: l'interdiction du recours à la force en droit international contemporain* (Paris : Editions Pédone, 2014).

2. 논문

박병도,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 『국제법학회논총』, 제49권 제2호 (2004.8).

Christenson, Gordon A., "Jus Cogens: Guarding Interests Fundamental to International Society,"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8 (1988).

Kelsen, Hans, "Collective Security and Collective Self-Defence under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2 (1948).

Murphy, Sean D., "Self-Defense and the Israeli wall Advisory Opinion: An *Ipse Dixit* from the ICJ?",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9, No. 1 (January 2005).

Myjer & White, "The Twin Towers Attack As Unlimited Right to Self-Defence," *Journal of Conflict and Security Law*, Vol. 7, No. 1 (April 2002).

Pierson, Charles, "Pinochet and the End of Immunity: England's House of Lords Holds that a Former Head of State Is Not Immune for Torture," *Templ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Journal*, Vol. 14, No. 263 (2000).

Schachter, Oscar, "The Right of States to Use Armed Force," *Michigan Law Review*, Vol. 82 No. 5 (1984).

Toner, Paul J., "Competing Concepts of Immunity: The (R)evolution of the Head of State Immunity Defense," *Pennsylvania State Law Review*, Vol. 108, No. 899 (2004).

3. 기타 자료

Belgium, Act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Grave Breach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New Zealand, International Crimes and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ct (2000), Section 8, Art. l(c)(iii).
Spain, Law on Judicial Powers (1985).

관할권 진술

Agoria국과 Naradon국은 2018년 3~4월 Doppstan국 영토 내 Alcoran State 장악지역에서 이루어진

Agoria국 군대의 행위, 그리고 이를 명령한 Agoria국 전직 대통령 Tedkapo에 대해 동년 9월 16일 재판관할권을 행사한 Naradon국의 행위를 둘러싼 양국 간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해 2019년 12월 1일 체결한 특별협정(compromis)의 제출을 통해 본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규정 제40조 1항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ICJ에 회부하였다. 이에 따라 당해 재판소는 ICJ규정 제36조 1항에 의해 본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제기된 문제 요약

1.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안보리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 ICJ가 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2. ICJ가 Agoria국의 침략행위를 판단하는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Agoria국의 AS에 대한 무력대응을 국제법상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로 볼 것인지 또는 침략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3. ICJ가 Agoria국의 침략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Naradon국의 국내법원이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4. Naradon국에 소재하지 않은 Agoria국민 Tedkapo에 대하여 침략범죄를 이유로 Naradon국의 국내법원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행 국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의 진술

Doppstan국의 국가원수 Hassani 대통령이 30년간 집권하던 중 2016년 6월 10일 대규모 집회가 발생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Hassani 정권의 대응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UN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11월 10일 UN헌장 제39조에 기초한 결의 제3000호를 통해 Doppstan국 내 사태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하고 당국에 사태 종식을 촉구했다. 이에 Agoria국은 Hassani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C")에 회부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Doppstan국 내 반란단체 중 하나가 Doppstan국의 북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2017년 3월 30일 이슬람 원리주의를 추종하는 Alcoran State(이하 "AS")를 선포했으며 이를 국가로 승인한 UN회원국은 없다. 이후 AS가 주변국인 Agoria국, Doppstan국, Naradon국을 상대로 소규모 테러와 약탈을 자행하면서 이들은 AS를 테러단체로 지정하였다. Doppstan국은 동년 9월 7일 "테러방지법"을 제정·시행하며 진압에 온 힘을 다하였으나 AS 장악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동년 12월 12일 Doppstan국은 Agoria국과 Naradon국에게 자국과의 조율 하에 AS에 대한 공습을 요청했으나 Agoria국은 이를 계속 거부했다. Doppstan국 외무장관은 동년 12월 25일 AS 장악지역에

대한 공습에 나설 경우 자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공습은 Doppstan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강조했다. 이러한 Doppstan국의 요청에 대해 Agoria국이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반면 Naradon국은 상호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있는 Doppstan국과 조율 하에 공습을 해 왔다.

한편 2018년 2월 26일 AS는 Agoria국의 수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에 미사일 200여기를 발사하여 각종 시설을 대파했고 군인과 민간인 950여명을 살상했다. 동년 3월 5일 안보리는 결의 제3003호를 채택하여 AS의 대량 미사일 발사행위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이라 선언하고 UN회원국들에게 AS 통제 하의 Doppstan국 영토에 대해 국제법에 부합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Agoria국은 Doppstan국에게 AS 진압을 요구했으며 Doppstan국 정부는 AS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한 것과는 별개로 2017년 12월 12일자 자국 외무장관의 성명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결국 동년 3월 12일 Agoria국 대통령 Tedkapo는 안보리 결의 제3003호에 근거해 AS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렸고 Agoria국 군대가 AS 장악지역의 절반가량을 점령했다. 이에 동년 4월 12일 Doppstan국은 Agoria국의 무력행사가 자국의 동의 없이 국경을 넘어 무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침략행위라는 의제를 안보리에 상정했다. 동년 4월 17일 안보리는 결의 제3006호를 채택해 자위권 행사여부와는 별개로 Agoria국이 해당 지역에 계속 주둔한다면 이는 평화의 파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철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Agoria국은 결의 제3006호가 채택된 지 2주가 지난 5월 1일에서야 자국 군대를 철수시키는 한편 자국 UN대사를 통해 UN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국의 무력행사가 적법한 행위라고 옹호했고, Doppstan국과 Naradon국은 이에 반박했다. 다음날 Doppstan국은 Agoria국의 무력행위가 1974년 채택된 UN총회 결의 제3314호의 '침략'에 해당하므로 침략행위가 있었다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의제로 상정했으나 동년 5월 5일 부결됐다.

2018년 7월 17일 ICC에서 침략범죄에 관한 관할권 행사가 개시되었으나 Doppstan국은 ICC규정 당사국이 아닌 바, Doppstan국은 ICC가 Agoria국의 대통령인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자국 법원에 Tedkapo를 침략범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랜 내전으로 인해 사법부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Agoria국에서 2018년 9월 2일 Ogumason이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Tedkapo가 전직 국가원수가 되자, Naradon국은 자국법원에서 그의 침략범죄 혐의를 재판하고자 수사를 개시했다. 동년 9월 16일 치안판사 Marceo는 Tedkapo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Naradon국은 Agoria국에게 그의 신병을 요구했다. 하지만 Agoria국과 Naradon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다.

Naradon국은 2010년 1월 15일 ICC규정 당사국이 되었으며 ICC이행법률인 "국제범죄처벌법"을 제정, ICC관할범죄에 대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채택했다. 그후 2010년 6월 12일에 채택된 캄팔라 개정문을 Naradon국은 2016년 5월 5일에 개정문도 비준했고, 동년 5월 20일에는 이행법률인 "국제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관할대상 범죄에 침략범죄를 추가했다. 해당 법률은 침략범죄의 구성요건을 ICC의 침략범죄 개정문의 구성요건보다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침략범죄의 해당 가능성을 높였지만, 궐석재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Agoria국은 ICC규정 당사국이지만 캄팔라 개정문은 비준하지 않았다. 2018년 9월 20일 Agoria국의 외무장관은 Naradon국의 범죄인인도를 거부하는 동시에 Marceo판사의 체포영장 발부의 국제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2018년 9월 28일 Agoria국의 외무장관은 UN총회 연설에서 AS에 대한 군사행동이 적어도 침략범죄는 아니라고 하는 안보리 결정들을 근거로 자국의 군사행동이 침략행위라는 Doppstan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양국이 대립하던 중 2019년 10월 10일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으나 외교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년 11월 10일 Naradon국은 본 분쟁을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Agoria국은 이미 안보리 결정이 있으므로 ICJ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Naradon국은 ICJ와 안보리는 그 직무와 성격이 서로 다른 UN의 주요기관이므로 ICJ는 본 분쟁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년 12월 1일 양국 외무장관은 다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Naradon국은 ICJ 관할권에 대한 주장의 적법성 여부를 청구사항의 첫 번째로 하고 해당 쟁점의 해결을 전제로 ICJ가 나머지 쟁점들을 함께 다룰 것을 제안했다. Agoria국이 이를 수락하여 양국 간 발생한 법률문제들을 ICJ에 회부하는 특별협정이 체결되었고, 본 분쟁이 ICJ에 회부되었다.

변론의 요약

첫째, ICJ는 본 사안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ICJ가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는 안보리 결의와 상충되지 않는다. 일국의 행위가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이 안보리에서 부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안보리가 침략행위의 부존재를 결정했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ICJ와 안보리 간에는 '중복절차 회피'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두 기관의 절차는 별개로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ICJ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ICJ가 안보리 결의에 대해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 바, ICJ와 안보리는 그 직무와 성격이 서로 다른 UN의 주요 기관으로서 ICJ는 동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또한, 안보리가 침략행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ICJ가 안보리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에서의 안보리 결정은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므로 ICJ의 관할권은 여전히 성립하며 Naradon국의 청구는 수리가능하다.

둘째,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침략행위이다. 먼저, Agoria국을 공격한 AS는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에 불과하며 따라서 자위권의 행사 요건인 개별 국가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무력공격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바, AS의 테러행위를 이유로 Agoria국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자위권 발동 요건은 관습국제법 상 자위권 행사와 UN 헌장 제 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 모두에 적용된다. 가사, 이처럼 비국가행위자인 AS의 테러행위가 자위권 원용 사유가 될 수 있더라도 Agoria국이 자위권 발동 대상인 AS가 아닌 Doppstan국 영토에 대해 무력공격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한편, 가사 테러단체인 AS에 대한 자위권이 인정되더라도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는 적법한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Agoria국은 Doppstan국과의 '조율 하에'AS에 대한 공습하는 대안을 통해 AS의 공격에 대해 대처할 수 있었던 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으므로 필요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Agoria국은 AS의 공격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Doppstan국 영토에 광범위한 무력공격을 대대적으로 감행한 바, 비례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셋째, Naradon국의 국내법원은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Agoria국의 침략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관습국제법의 지위를 가지는 뉘른베르크 원칙에 명시된 침략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Agoria국의 침략행위를 실질적으로 지시한 Tedkapo의 행위는 침략범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침략범죄는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 대상인 중대한 국제위법행위로, Naradon국은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법원은 보편관할권에 기해 중대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뉘른베르크 원칙과 보편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 그리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ILC 초안에 따르면 침략범죄는 보편관할권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는 자신의 침략범죄에 대해서 주권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Tedkapo는 행위는 그가 국가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이루어졌지만, 이는 침략범죄에 해당하는 권한 남용으로 국가원수의 적법한 기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바, 주권면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의 침략범죄가 전직 국가원수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주권면제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은 프린스턴 원칙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무엇보다 그가 행한 침략범죄는 강행규범 위반인 한편, 강행규범은 다른 국제법 원칙들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그가 강행규범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보편관할권은 그가 전직 국가원수로서 주장하는 주권면제에 우선적으로 성립한다. 실제로 이처럼 국제범죄를 저지른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주권면제 부인은 미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러 실행에서도 나타난다.

넷째, Naradon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Agoria국민인 Tedkapo에 대하여 침략범죄를 이유로 Naradon국의 국내법원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국제법에 위배된다. 먼저 절대적 보편관할권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국제법상 보편관할권의 형성은 피의자가 부재할 때의 관할권은 고려하지 않았다.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조약은 범죄 혐의자가 관할권 행사 국가의 영토에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정당성은 판례 및 국가실행에서 부정되었으며, 국제재판소 및 상당수 국가들은 형사관할권은 영토에 대해 배타적인 개념이므로 자국 영토 바깥으로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적용은 궐석재판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국제법 및 Naradon국의 국내법률에도 위반이다. 피의자의 부재 상태에서의 체포영장 발부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가사 절대적 보편관할권이 국제법상 인정받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침략범죄를 다투는 본 사안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변론

I.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안보리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에도 ICJ는 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ICJ가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는 안보리 결의와 상충되지 않는다.

특정 안건이 부결되었다는 사실은 그 안건의 반대 내용이 가결된 것과는 다른 법적 효과를 지닌다. 즉, 일국의 행위가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이 안보리에서 부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안보리가 침략행위의 부존재를 결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르면 안보리는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없다. Agoria국의 외무장관은 2018년 9월 28일 UN총회 연설에서 (1) '제3006호 결의 채택'과 (2) '2018년 5월 2일자 결의안의 부결'을 'AS 테러조직에 대한 군사행동이 적어도 침략범죄는 아니라고 하는 안보리의 결정들'이라고 표현하였지만,[1] (1) 제3006호 결의는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자위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2] 이는 침략행위의 부존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2) '2018년 5월 2일자 결의안의 부결' 또한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아직은 침략행위로 판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3] 침략행위의 부존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ICJ의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내려지더라도 이는 안보리 결의와 상충되지 않으며, ICJ는 동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2. 가사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가 아니라는 안보리 결정이 내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ICJ와 안보리는 그 직무와 성격이 서로 다른 UN의 주요기관이므로 ICJ는 동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1) ICJ와 안보리 간에는 '중복절차 회피'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복절차 회피(litispendence)' 원칙이란 동일 당사자들에 동일 청구원인에 기하여 동일 쟁점에 관한 절차가 서로 다른 국제분쟁해결절차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피해야 함을 의미한다. UN해양법협약과 같은 몇몇 조약에 이러한 '중복절차 회피' 원칙을 천명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명시적 조항이 없는 ICJ와 안보리 간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4] 이러한 시각은 1998년 Lockerbie 사건의 선결적 항변에 대해, 재판 청구일 이전에 통과된 안보리 결의 제731호(1992)가 있었음에도 해당 사건이 수리가능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뒷받침된다.[5] 안보리 결정이 구속력을 지니는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1984년 Nicaragua 사건에서 재판부는 "헌장 제39조에 따른 결정 이후에도 안보리의 활동과 재판소의 판결 간에 '필연적인 비일관성'은 없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 사안에 대한 안보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해당 사안이 ICJ에서 다뤄지는 것을 막지 않으며, 두 절차는 동등하게(*pari passu*) 추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6]

2) ICJ의 재판절차와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절차는 별개로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은 조약이 "조약의 문면(terms)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 이러한 원칙에 따라 UN헌장의 문언을 살펴보면,

---

1)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23.
2) *Ibid*, para. 16.
3) *Ibid*, para. 18.
4) Shabtai Rosenne,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65), p. 94.
5)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Libyan Arab Jamahiriya v. United Kingdom),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1998*, p. 9, para. 44.
6)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s 1984*, p. 392, para. 93.

헌장 제24조 1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보리에 부여하고 있을 뿐,[8] 그러한 책임이 '배타적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1962년 Certain Expenses 사건의 재판부도 "헌장 제24조의 '일차적 책임'이라는 문구가 '배타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9] 따라서 ICJ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수 있다.

또한, UN헌장 제12조는 총회의 경우 안보리가 특정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그에 대한 권고를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0] ICJ의 경우에는 헌장상 그러한 제한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1980년 Hostage 사건에서의 재판부 또한 총회와 ICJ의 이러한 차이를 명시함으로써 ICJ를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에 중요하고 때때로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밝혔다.[11] 따라서 안보리가 특정 사건에 대해 결의를 했더라도 ICJ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ICJ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Agoria국은 ICJ가 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만을 내려야 하며, 정치적 문제는 안보리의 관할이라는 '정치문제이론(political question doctrine)'을 근거로 본 사안에 대한 ICJ의 관할권 부재를 주장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ICJ의 관할권은 동 문제에 정치적인 측면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부정되지 않는다. 1996년 Nuclear Weapons 사건에서 재판부는 "본 사안이 정치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로서의 성격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12] 1962년 Certain Expenses 사건에 대한 판결 또한 "UN헌장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크든 작든 정치적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 본질적으로 사법적인 문제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13] 그동안 ICJ는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을 회피한 적은 있어도, 분쟁의 성격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판결을 회피한 적은 없다.

본 사안은 '침략행위'라는 국제범죄의 존부를 판단해달라는 Naradon국의 요청에 의해 회부된 사안인 바, 이는 Agoria국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사법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본 사안이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는 사실로 인해 본 사안에 대한 ICJ의 관할권이 부정되지 않는다.

4) ICJ가 안보리 결의에 대해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UN헌장 제24조에서 안보리가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보리의 권한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그 결정 내용 또한 헌장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안보리의 특정 결정이 그러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ICJ에 의해 판단되어 왔다. 1971년 Namibia 사건에서 재판부는 ICJ가 여타 UN 주요기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기구 혹은 상소기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안보리 결의 제713호에 따라 남아프리카연방과 조약

7)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 31(1).
8) UN Charter, Art. 24.
9)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7, paragraph 2, of the Charter), Advisory Opinion of 20 July 1962, I.C.J. Reports 1962*, p. 163.
10) UN Charter, Art. 12.
11)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ment, I.C.J. Reports 1980*, p. 3, para. 40.
12)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6*, p. 226, para. 13.
13) *Certain Expenses* case, *supra* note 9, p. 155.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할 회원국의 의무는 인도주의적 성격을 띤 조약과 같은 특정 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안보리 결의의 적용범위를 축소시켰다.[14] 이는 ICJ가 명시적 사법심사기구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안보리 결의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결의의 내용을 UN헌장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권한을 가짐을 보여준다. 따라서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가 아니라는 안보리 결정이 내려져 있더라도 ICJ는 Agoria국의 행동이 침략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본 사안에서의 안보리 결정은 '구속력 있지' 않으므로 Naradon국의 청구는 수리가능하다.

본 사안에서 '제3006호 결의 채택'과 '2018년 5월 2일자 결의안의 부결'이 침략행위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은 상술하였다. 그러나 가사 안보리가 침략행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ICJ가 안보리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안보리 결정은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므로 ICJ의 관할권은 여전히 성립하며 Naradon국의 청구는 수리가능하다. 1998년 Lockerbie 사건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재판청구일 이전에 통과된 안보리 결의 제731호가 "구속력 없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리비아의 청구의 수리가능성에 대한 법적 장애물을 형성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15] 즉, ICJ가 안보리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권고적 효력만을 지닌 안보리 결정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안보리의 결정이 단순한 권고적 효력만을 지니는 것인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인지는 안보리의 결정이 내려질 때 UN헌장 제7장상의 조항들을 원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1971년 Namibia 사건에서 재판부는 "인용된 헌장상의 조항들"에 따라 안보리 결정이 구속력을 지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시하였다.[16] 본 사안에서 UN헌장 제39조에 기초한 결정임이 명시된 안보리 결의 제3000호와 달리, Agoria국이 원용한 안보리 결의 제3006호는 어떠한 헌장상의 조항에 따른 결정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즉시 철군을 "권고"하였다.[17] 따라서 Agoria국이 원용한 안보리 결의는 Agoria국의 침략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해당 결의에도 불구하고 Naradon국의 청구는 수리가능하다.

II.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침략행위이다.

1. Agoria국을 공격한 AS는 테러조직에 불과하며 AS의 테러행위를 이유로 Agoria국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1)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는 관습국제법상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Doppstan국에 대한 침략행위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자위권이 인정되기 위해선 개별 국가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는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18] 즉,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존재의 침해행위는 자위권 발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14)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 16, para. 122.

15) *Lockerbie* case, *supra* note 5, p. 9, para. 44.

16) *South Africa* case, *supra* note 14, p. 16, para. 114.

17)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s. 5, 16.

18) Sean D. Murphy, "Self-Defense and the Israeli wall Advisory Opinion: An *Ipse Dixit* from the ICJ?", *American Journal of*

본 사안에서 Agoria국이 자위권 발동의 요건으로 제시한 AS의 무력공격은 국제법 주체성을 갖지 않는 AS에 의해 벌어졌다는 점에서 자위권 발동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2)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는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Doppstan국에 대한 침략행위에 불과하다.

UN헌장 제51조가 규정하는 자위권 발동요건인 '무력공격'은 무력의 불법적 행사를 의미한다.[19] 즉, 동 헌장 제51조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하려면 동 헌장 제2조 4항에 따른 무력행사 금지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동 조항이 금지하는 무력행사의 주체는 UN회원국이다.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무력행사 금지의무가 UN헌장 및 관습국제법으로서 확립된 것이며 UN헌장 제2조 4항은 이러한 의무가 'UN회원국'이 이행해야 할 조약에 따른 법적 의무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시하는 한편, 국가가 아닌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N)'과 반군의 행위가 무력공격에 해당할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20] 이를 볼 때 자위권 발동을 위한 무력공격은 국가에 의한 공격만을 의미하며 국가가 아닌 존재를 자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21]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에 따른 해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분명하다. UN의 설립문서인 UN헌장 역시 조약에 해당하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22] 동 헌장의 문언을 보면 제2조 제4항은 무력행사 금지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제6조는 헌장의 원칙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장 위반에 따른 벌칙 조치를 규정한다. 다시 말해 UN헌장은 UN회원국이 지켜야 할 규정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51조가 회원국의 자위권 발동요건으로서 제시한 '무력공격'은 회원국의 헌장 의무 위반을 예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AS는 UN회원국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도 AS를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고 있다.[23] 즉, 본 재판의 당사국인 Agoria국과 Naradon국 모두로부터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AS가 Agoria국에 무력공격을 감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UN헌장 제2조 4항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지 못하며 따라서 Agoria국은 동 헌장 제51조가 규정하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가사 비국가행위자인 AS의 테러행위가 자위권 원용 사유가 될 수 있더라도, 이것이 Doppstan국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가사 Agoria국에 대한 AS의 공격행위가 자위권 행사의 요건인 무력공격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Doppstan국 영토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할 수 없다. 2005년 콩고와 우간다 간 Armed Activities 사건에서 ICJ는 우간다의 반소에 대해, 콩고 내 우간다 반군세력의 행위가 그들의 소재국인 콩고에 귀속된다고

International Law, Vol. 99, No. 1 (January 2005), p. 63.

19) Hans Kelsen, "Collective Security and Collective Self-Defence under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2 (1948), p. 784.

20)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aras. 186-188.

21) Eric P. Y. Myjer & Nigel D. White, "The Twin Towers Attack As Unlimited Right to Self-Defence," *Journal of Conflict and Security Law*, Vol. 7, No. 1 (April 2002), p. 7.

22) Tetsuo Sato, *Evolving Constit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 231.

23)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6.

볼 수 없으므로 콩고에 대한 우간다의 자위권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4]

본 사안 역시 이와 같다. Doppstan국은 자국이 AS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Doppstan국 스스로도 AS의 테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다.[25] 즉 AS의 행위가 Doppstan국에 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령 Agoria국이 AS에 대한 자위권을 원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자위권 발동의 요건이 되었던 'Agoria국을 향한 무력공격'의 주체인 AS 자체만이 대상이 될 뿐이다. 하지만 Agoria국은 Doppstan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자위권을 원용하며 독자적으로 Doppstan국 영토 Z 내의 AS의 통제 영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는 Agoria국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Doppstan국에 대한 침략행위에 해당한다.

3. 가사 테러단체인 AS에 대한 자위권이 인정되더라도,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는 적법한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1)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비례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Agoria국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1)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는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사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무력공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Doppstan국과의 협의 없이 당해 국가 내에 존재하는 AS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필요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837년 Caroline호 사건에서 미국의 Webster 국무장관이 적절한 자위권이 행사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필요성과 비례성을 제시한 이래 ICJ는 Nicaragua 사건과 Oil Platform 사건 등에서 자위권에 따른 무력수단의 활용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두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해 왔다.[26]

이때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필요성은 피침략국 입장에서 침략을 저지·격퇴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자위권 행사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여타의 수단이 무익한 경우에 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27] Dinstein은 이러한 필요성의 요건을 세분화하여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무력공격의 존재, 당해 무력공격의 고의성, 여타의 구제 수단이 없음이라고 하는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8] 이를 본 사안에 적용할 경우, Agoria국이 Doppstan국과의 협의 없이 자위권 행사의 수단으로 무력수단을 원용하여 Doppsan국 내에 소재하는 AS를 공격하기 위해선 최소한 Doppstan국과의 협의 하에 무력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 양국 간 협의 하에 무력수단의 사용이 가능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Doppstan국은 AS의 탄생 직후 2017년 12월 12일 AS를 소탕하기 위한 공습에 참여할 것을 Agoria국에 공식 요청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5일 외무 장관 성명을 통해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AS 장악지역에 대한 공습은 Doppstan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될 것임을 명백히 표명했고 Agoria국이 AS에 대한 무력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에도 이러한 입장이 유효함을 상기시켰다.[29] 즉, Agoria국은 Doppstan국에 대한 침략행위에 해당

---

24)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Judgement, I.C.J. reports 2005*, p. 168, paras. 146-147.

25)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s. 6, 7.

26) *Nicaragua* case, *supra* note 20, paras. 176, 194; *Oil Platform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3*, p. 183, para. 43.

27) Oscar Schachter, "The Right of States to Use Armed Force," *Michigan Law Review*, Vol. 82 No. 5 (1984), p. 1635.

28) Y.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231-232.

하지 않도록 상호 협의를 거쳐 무력수단을 활용하는 형태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독자적으로 Doppstan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따라서 Doppstan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당해 사건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가 여타의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필요성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

(2) 가사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가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당해 행위는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003년 Oil Platform 사건에서 ICJ는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상 자위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비례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30] 이 사안에서 ICJ는 비례성 요건에 관하여 미사일 발사 원점과 같이 피해 대상과 직접적 관련 있는 대상에 대한 공격은 비례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반면 피해 대상과의 관련성이 적거나, 피해 수준을 광범위하게 넘어서는 수준의 무력행사는 비례성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았다.[31] 이는 비례성의 요건을 양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1986년 Nicaragua사건이나 2005년 콩고·우간다 사건에서도 ICJ는 유사한 입장을 설시한 바 있다.[32] 한편 양적 비례 뿐 아니라 목적의 측면에서도 자위권 행사가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목적의 측면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진행 중인 침략의 격퇴'라는 자위권 행사의 본질적 목적과 비교해 진행 중인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33]

이 기준을 본 사안에 적용하면 Agoria국의 AS에 대한 무력공격은 양적·목적적 측면 모두에서 비례성의 기준을 결여하고 있다. 양적 측면에서 Agoria국의 공격 행위는 비례적인 수준을 넘어선다. Agoria국의 피해가 AS의 미사일 공격에 따른 것인 이상 Agoria국은 당해 미사일 공격이 시행된 원점을 타격하거나, 주요 공군기지를 타격하는 식으로 미사일 공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력수단을 행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Agoria국은 Doppstan국의 영토인 AS 장악 지역의 절반을 차지함으로써, Doppstan국 영토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광범위하게 무력을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Doppstan국의 영토보전 및 주권은 크게 훼손되었다. 이는 Agoria국이 입은 950명의 전·사상자 규모와 비교해 월등히 크며 피해 대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례성 기준 위반이다.

또한, 본 사안의 무력공격은 목적적 측면에서도 비례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질적 측면에서 비례성 원칙의 판단 기준은 당해 행위가 '진행 중인 침략의 격퇴'와 관련성을 맺는지의 문제이다. 본 사안에서 AS의 행위를 진행 중인 침략이라 보더라도 당해 침략은 Doppstan국에 의한 것이 아니다. 즉, Agoria국은 AS에 의한 침략에 대해 자위권을 원용하면서도 정작 자위권에 따른 무력수단은 Doppstan국에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AS에 의한 진행 중인 침략을 격퇴하겠다는 자위권 행사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

29)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s. 9, 13.
30) *Oil Platform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3,* p. 197, para. 76.
31) *Ibid*, pp. 197-198, para. 77.
32) *Nicaragua* case, *supra* note 20, p. 94, para. 176; *Armed Activities* case, *supra* note 24, p. 168, para. 147.
33) Olivier Corten, *Le droit contre la guerre: l'interdiction du recours à la force en droit international contemporain* (Paris : Editions Pédone, 2014), p. 730.

특히 Agoria국은 안보리 결의 제3006호 채택 이후에도 2주간 Doppstan국 영토에 머물렀는데,[34] 이는 AS의 공격과 무관하다. 안보리의 적법한 결의에 따른 철군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2주 가량 Doppstan국 영역 내에 보병 2개 사단 등을 포함한 Agoria국의 무력수단이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AS에 의한 침략의 격퇴라는 자위권의 본래 목적을 초과해서 무력수단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비례성의 기준을 위반한 Agoria국의 행위는 적법한 자위권 행사가 아니며 Doppstan국에 대한 침략행위에 해당한다.

III. ICJ가 Agoria국의 침략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Naradon국의 국내법원은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습국제법의 지위를 가지는 뉘른베르크 원칙에 명시된 침략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Agoria국의 침략행위를 실질적으로 지시한 Tedkapo의 행위는 침략범죄를 구성한다.

뉘른베르크 헌장 제6조 1항은 '평화에 반하는 죄'의 형상으로 "침략의 계획, 준비, 개시, 또는 계속"이라고 침략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제시, 해당 범죄를 계획 및 실행한 지도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짐을 명시하고 있다.[35]

한편 동 헌장에 따른 원칙은 관습국제법의 지위를 향유한다. 먼저 뉘른베르크 원칙은 여러 국가들에게 일반적인 관행으로 원용된다. 뉘른베르크 헌장에 따른 원칙은 다수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법적 실행에서 찾을 수 있다.[36] 나아가 뉘른베르크 원칙에 대한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존재한다. ILC는 국제법상의 개인의 책임과 처벌에 대한 뉘른베르크 원칙이 국제형사법의 초석(cornerstone)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37] 한편 1946년 UN총회 결의 제95호(I)는 만장일치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따른 국제법 원칙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38] 구체적으로 해당 원칙은 법적 원칙의 "확인"으로서 본질적으로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만장일치에 의해 지지가 결의되었으며, 결의에서 누구도 해당 원칙이 단순히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39] 나아가 해당 원칙은 ICJ,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ICTY), 유럽인권재판소(ECHR) 및 다른 여러 국가의 국내법원들에 의해서도 관습국제법의 지위가 확인되었다.[40]

Tedkapo는 Agoria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7년 3월 12일 AS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렸고 이에 Agoria국의 군대가 Dopestan국의 영토에 무력공격을 개시, 일부 지역을 점령한 바, Tedkapo는 국제법적으로 위법한 침략행위를 실질적으로 "개시"한 것으로 뉘른베르크 헌장 제6조 1항에 따른 침략범죄를 저질렀다.

---

34)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16.

35) Nuremberg Tribunal Charter (1945), Art. 6(1).

36) American Tribunals at Nuremberg: *I. G. Farben*, *Krupp*, *High Command*, and *Ministries* case; Supreme National Tribunal of Poland: *Greiser* case; Chinese War Crimes Military Tribunal: *Sakai* case.

37)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eighth session, 6 May – 26 July 1996,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10,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II (A/51/10, 1996), p. 19.

38)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95(I) (1946): "unanimously affirmed the principles from the Nuremberg Charter and judgments."

39) Lachezar D. Yanev, *Theories of Co-perpetration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BRILL, 2018), p. 272

40) Lachezar D. Yanev, *supra* note 39, p. 272.

2. 침략범죄는 보편관할권의 행사 대상인 중대한 국제위법행위로, Naradon국은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국내법원은 보편관할권에 기해 중대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편관할권이란 범죄의 속지적·속인적 관련성이 없어도 범죄의 성질이 '모든 인류의 적(*hostis humani generis*)'으로 인정될 만큼 중대한 국제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는 일종의 역외적 관할권에 관한 원칙이다.[41] Cassese에 따르면 보편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범죄는 보편적 기소 및 억제를 정당화할 만큼 무겁고 중대하며 보편관할권의 행사는 국가의 주권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42]

2) 침략범죄는 보편관할권이 인정되는 중대한 국제범죄이다.

침략범죄는 이러한 중대한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바, ICC규정 제5조 1항에서는 침략범죄를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침략범죄를 보통의 국제범죄를 넘어서는 "최고의 국제범죄(supreme international crime)"이라고 평가했다.[43] 이는 UN헌장 제2조 4항에서 비롯되는 무력사용 금지원칙의 위반이기도 하다.

(1) 뉘른베르크 원칙에 따라 침략범죄는 보편관할권의 행사 대상이다.

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판결의 원문을 보면 재판소는 스스로의 관할권이 보편관할권에 기초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44] 한편 동 재판에서 재판소는 뉘른베르크 헌장 제6조 1항에 근거하여 독일의 침략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독일 지도자들의 침략범죄 성립을 판시한 뉘렌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의 관할권은 보편관할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판례를 통해 침략범죄는 보편관할권 행사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Tedkapo의 침략범죄 역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 대상이다.

이외에도 침략범죄에 대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의 보편관할권 행사는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관할권 행사에 비견되기도 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UN사무총장의 1949년 보고서에서는 뉘른베르크 재판소의 관할권을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관할권의 행사에 비유했다.[45] 이는 50년 후 '구유고슬라비아 내 국제인도법 침해에 대한 UN전문가위원회'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2) '보편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에 따르면 Tedkapo의 침략범죄는 보편관할권의 행사 대상이다.

Bassiouni 교수를 비롯한 국제형사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합의한 '보편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이하 "프린스턴 원칙")'은 비록 아직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보편관할권의 국제적 적용에 대한 발전된 논의를 함축하고 있다.

---

41) 박병도,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 『국제법학회논총』, 제49권 제2호 (2004.8), p. 179

42)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Law* (London: Oxford, 2002), p. 261

43) *The Trial of German Major War Criminal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sitting at Nuremberg, Germany,* Part. 22 (22 August 1946-1 October 1946), p. 421.

44) *Ibid*, p. 444: "The signatory Powers created this Tribunal, defined the law it was to administer, and made regulations for the proper conduct of the Trial. In doing so, they have done together what any one of them might have done singly; for it is not to be doubted that any nation has the right thus to set up special courts to administer law."

45) "Preparation of a Draft Code of Offenc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49, A/CN.4/5), p. 218.

프린스턴 원칙 제1원칙에 따르면 보편관할권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이나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국적, 그리고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와의 연결성과 상관없이 오로지 범죄의 성질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범죄 관할권"이다.[46] 이어서 제2원칙을 보면 그러한 국제법 하의 중대한 범죄로 '평화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peace)를 규정하고 있다.[47] 상술한 바 있듯,[48] 뉘른베르크 헌장 제6조 1항에 따르면 침략범죄가 이 같은 평화에 반하는 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3)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ILC초안'에 따라 침략범죄에 대해서 보편관할권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ILC초안(이하 '초안') 제8조 주석은 모든 경우에 침략범죄에 대한 국내법원의 관할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동 초안에서 제17조부터 제20조에 해당하는 여타 국제범죄와는 달리 제16조에 해당하는 침략범죄의 경우 ICC의 배타적인 관할권이 성립하며 국내법원의 관할권은 배제된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침략범죄와 여타 범죄가 다르게 취급받는 유일한 이유는 개인의 침략범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침략행위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법원이 타국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국제관계 및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함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타국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국내법원이 개인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Agoria국의 행위가 침략행위라는 ICJ결정이 내려져 있을 경우, Tedkapo의 행위에 대한 Naradon국 국내법원의 판단은 Agoria국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위법성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침략범죄를 여타 범죄와 다르게 취급할 실익이 사라진 바, 다른 중대한 국제범죄 행위와 마찬가지로 침략범죄에 대해서도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는 자신의 침략범죄에 대해서 주권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1) Tedkapo의 행위는 침략범죄에 해당하는 권한남용으로 국가원수의 적법한 기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바, 주권면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국가원수는 여전히 그가 재직 중에 행한 공적인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면제를 향유할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남용은 국가 원수의 적법한 기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49] 또한, 전직 국가원수의 사적인 행위에 대해 면제를 거부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원수면제 이론의 근거인 주권평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인권을 증진하려는 국제공동체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도에 반한 죄, 고문 및 기타 국제범죄는 한 국가의 공적인 기능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ICJ는 2000년 Arrest Warrant 사건에서 "관할권의 면제는 특정한 기간 또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특정인을 모든 형사책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50]

---

46) *The Princeton Principles on Universal Jurisdiction* (Stephen Macedo ed., 2001), p. 28.
47) *Ibid.*
48) Naradon국 변론서, III. 2. 2).
49) Charles Pierson, "Pinochet and the End of Immunity: England's House of Lords Holds that a Former Head of State Is Not Immune for Torture," *Templ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Journal*, Vol. 14, No. 263 (2000), p. 323.

한편 관습국제법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는 뉘른베르크 헌장 제7조는 "피고의 공적 지위, 국가원수 또는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 여부는,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책임을 완화하는데 고려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51] 이에 따라 Tedkapo의 침략범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가 해당 범죄를 '(전직) 국가원수'라는 공적 지위에서 저질렀다는 사실로 인해 그의 국제법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물론 이는 관할권이 성립하여 재판이 개시된 후에 피고에 대한 형사책임의 면제나 감형을 막는 취지이지만, 해당 헌장의 취지와 문언상 '책임'이라는 단어의 포괄적인 의미를 고려하였을 때 이는 주권면제에 대한 예외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2)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에 따르면 Tedkapo의 행위는 그의 전직 국가원수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주권면제로부터 배제된다.

앞서 프린스턴 원칙에 따라 각국은 국제공동체가 공동으로 비난하는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국내법원이 보편관할권을 행사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는 점을 보였다.[52] 동 선언의 배경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체에 매우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를 그의 정치적·군사적·통치적 지위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직 국가원수에게는 단지 일시적으로 절차적 면제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공적인 권한이 종료된 후 보편관할권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된다.[53] Tedkapo는 전직 국가원수로서 그의 공적 지위는 종료되었으며 그의 침략범죄가 보편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국제법상의 중대한 범죄임은 앞서 밝힌 바 있다.[54]

3) 침략범죄는 강행규범 위반이며 강행규범은 다른 국제법 원칙들에 우선하므로 강행규범 위반으로 발생하는 보편관할권은 주권면제에 대해 우선한다.

강행규범이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국제법상 어떠한 일탈도 허용할 수 없는 규칙들로, 침략범죄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조약규정과 관습국제법에 의해 중대한 국제범죄로 인정된 바, 강행규범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ILC는 1996년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에서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너무나도 중요하여 그 위반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범죄라고 인정되는 국제의무의 위반에 기인하는 국제위법행위"의 예로 침략행위를 들었으며, ILC는 침략 금지, 고문 금지, 제노사이드 금지, 반인도범죄 금지, 아파르트헤이트와 인종차별 금지, 노예제 금지, 자기결정권, 그리고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들을 이 같은 강행규범으로 인정하였다.[55]

오늘날 국제법에서는 개별 국가 차원의 의사표시나 합의를 이유로 하는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상위규범의 존재가 확립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보호하려는 추세는 불가역적이라고 볼 수 있다.[56] 이렇듯 강행규범은 국제법이 보호하는 상위 규범인 바, 이에 대한 위반을 행한 전직

---

50) *Arrest Warrant Cas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Judgement, I.C.J. Reports 2000*, para. 60.
51) Nuremberg Tribunal Charter (1945), Art. 7.
52) *The Princeton Principles*, *supra* note 46, p. 49.
53) Paul J. Toner, "Competing Concepts of Immunity: The (R)evolution of the Head of State Immunity Defense," *Pennsylvania State Law Review*, Vol. 108, No. 899 (2004), p. 908.
54) Naradon국 변론서, II. 2.
55) Dire Tladi, *Fourth report on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2019, A/CN.4/727), pp. 24-54.
56) Stefan Kadelbach, "The Identification of Fundamental Norms," in Tomuschat, Christian and Jean-Marc Thouvenin (Eds.), *The Fundamental Rules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Jus Cogens and Obligations Erga Omn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6), p. 29; Gordon A. Christenson, "Jus Cogens: Guarding Interests Fundamental to International Society," *Virginia Journal of*

국가원수에게까지도 주권면제의 법리를 근거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

ECHR의 2001년 Al Adsani v. U.K. 사건에서 강행규범은 여타의 국제법 원칙들보다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기에 주권면제의 법리도 이에 향보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57] 한편 1992년 Siderman de Blake v. Republic of Argentina 사건에서 미 연방 항소법원은 강행규범은 국제법상 최고의 지위를 향유함을 확인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상의 강행규범은 같은 지위의 강행규범에 의해서만 수정(derogation)이 가능하고, "모든 국제법에 적용되는 우위(supremacy of *jus cogens*)"를 가지며, "이와 충돌하는 국제법 내용들을 무효화한다"는 것을 미국의 Restateme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58] 한편 2001년 ILC 국가책임법 초안에 따라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법적 효과를 해석할 경우 국가의 관할권 면제가 부인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으며,[5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강행규범 위반을 상정하여 주권면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60]

4) 국제범죄를 저지른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주권면제 부인은 국제사회의 여러 실행에서도 나타난다.

2000년 Pinochet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칠레의 전직 국가원수인 피노체트의 국제범죄에 대해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발생지에 상관없이 보편관할권이 성립함을 판시하였으며,[61] 같은 맥락에서 원용된 1985년 Demjanjuk v. Petrovsky 사건에서 미 연방 항소법원은 전 나치의 교도관이었던 피고에 대하여 "보편성 원칙"은 너무나 중대하여 국제적으로 비난 받는 행위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밝혔다.[62] 한편 ICJ는 2002년 Arrest Warrant 사건에서 외교장관에 대해 외교장관 공직이 종료되면 외국 정부의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가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63] 같은 맥락에서 Tedkapo와 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직위인 국가원수의 경우에도 공직이 종료된 이상 무조건적 면제를 향유할 수는 없다.

2016년 5월 차드공화국 전직 대통령이었던 Hissène Habré도 전직 국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세네갈 사법부의 아프리카 특별 재판부에 의해서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그리고 성폭력과 강간을 위시한 고문 등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유죄가 인정되어 종신형이 선고되었다.[64] 한편 2017년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에서는 1980년대에 제노사이드와 인도에 반하는 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 Efraín Ríos Montt에 대해 자국 법원에서 재판 진행했다.[65] 미국 연방대법원의 Samantar 사건에서는 소말리아의 전직 수상이 연루

International Law, Vol. 28 (1988), pp. 586-587, 614.

57) Al Adsani v. U.K.,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01), 32 E.H.R.R. 273, p. 30,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Rozakis and Caflisch Joined by Judges Wildhaber, Costa, Cabral Barreto and Vajić.

58) Restatement (Third) of Foreign Relations Law § 102, Comment k: "norms that have attained the status of *jus cogens* prevail over and invalidate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conflict with them."

59) Andrea Bianchi, "Ferrini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talian Court of Cassation, March 11, 2004,"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9 (2005), p. 247

60) *In Re Former Syrian Ambassador to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unreported), 10 June 1997,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ase No. 2 BvR 1516/96.

61) *Regina v. Bow Street Metropolitan Stipendiary Magistrate and others, Ex parte Pinochet Ugarte (No. 3)*, 2 W.L>R. 82, U.K. (1999): "The jus cogens nature of the international crime of torture justifies states in taking universal jurisdiction over torture wherever committed."

62) *Demjanjuk v. Petrovsky (1985)*, 603 F. Supp. 1468; 776 F. 2d. 571: "This "universality principl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ome crimes are so universally condemned that the perpetrators are the enemies of all people."

63) *Arrest Warrant* case, *supra* note 50, para. 61.

64) *The Hissène Habré case*, *Judgement of the Extraordinary African Chambers (EAC) in Senegal* (2016).

65) *Guatemala Genocide case (Rigoberta Menchu et al. v. Ríos Montt et al.), Judgement of Constitutional Court of Guatemala, Exp 1904-2013* (2013),

되었던 고문 행위와 관련하여 전직 수상의 면제가 부인된 바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강행규범 위반은 주권국가에 의한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며 범죄적 맥락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법상 주권행위에 근거한 주권면제를 부인하고 있는 일련의 판례의 경향성을 언급하였다.[66]

IV. 청구사항 III의 연장선상에서, Naradon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Agoria 국민인 Tedkapo에 대하여 침략범죄를 이유로 Naradon국의 국내법원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국제법에 위배된다.

1.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행사는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다.

1)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적용을 금지하는 조약이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법상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약이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국내법에 근거한 절대적 보편관할권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은 행위이다. Lotus 사건에서 상설국재중재재판소는 터키에 소재하지 않은 프랑스인에 대한 터키 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하며, 국외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에 대해 국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가들은 특별한 금지규정이 없는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누린다고 판시하였다.[67] 따라서 보편관할권 행사의 대상과 방법은 본질적으로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한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행사는 금지보다도 인정될 여지가 크다.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한 절대적 보편관할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국내법적 근거를 만드는 입법이 국제법적 의무로 널리 인정되는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68]

Van den Wyngaert 재판관은 Arrest Warrant 사건 반대의견에서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인류에 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가능케 하는 국내법 제정을 제한하는 국제법은 없으므로 Lotus 사건 판결에 의해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치외법권에 의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69] 조약 및 관습법에서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적용이 제한되는 규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Naradon국이 국내법에 근거해 자국에 존재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자국 내 수사 및 기소, 체포영장 발부와 인도요청 등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UN인권위원회는 피의자가 스스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장소에 있을 권리를 거부하는 경우 합당한 법적 절차의 진행을 위해 피의자의 존재 없이 형사관할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70] ECHR 또한 피의자의 부존재가 형사절차를 마비시키는 경우 증거인멸, 공소시효 만료 등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형사관할권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71] 이와 같이 중대한 국제 범죄에 대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보편관할권의 적용에 대한 법적 확신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당해 사건의 침략범죄에도 적용된다.

---

66) *Samantar case (Bashe Abdi Yousuf et al. v. Mohamed Ali Samantar), Judgement of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560 U.S. 305 (2010).
67) *Lotus Judgement*, 1927, PCIJ, Series A No 10, p.19
68) *ILC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Art. 8.
69) *Arrest Warrant* case, *supra* note 50, Dissenting Opinion of Judge Van den Wyngaert, para. 51.
70) U.N. Doc. CCPR/C/18/D/16/1977, para. 14.1.
71) *Colozza v. Italy*, Judgement,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ara. 29.

2)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행사는 다수 국가들이 채택하여 국내법으로 인정된 바 있다.

ICC규정을 비롯하여 국제법상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행사가 배제되지 않음에 따라 국내적 실행을 살필 수 있다. ICC규정은 중대한 국제범죄의 수범자가 면제를 향유하지 않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목적을 명시하였다.[72]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다수의 국가가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하여 국내법으로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행사를 적용한 바 있다.

벨기에는 1993년 국제인권법상 중대한 위반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을 적용하여 국제범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지향하는 국제법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받았다.[73] 뉴질랜드는 2000년 국제범죄 및 국제형사재판소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인정한 바 있다.[74] 독일 또한 "국제범죄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는 불간섭의 원칙에 대해 논하기 어렵다"며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75] 스페인은 1985년 사법조직법에 따라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인정한 바 있다.[76]

2.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행사는 오히려 국제법상 장려된다.

1) Naradon국의 절대적 보편관할권 행사는 인도 또는 기소(*aut dedere aut judicare*)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로티우스가 *aut dedere aut punire* 원칙을 논한 이후로 '면제에 대한 반대(fight against impunity)'는 국제범죄의 처벌에서의 핵심 관심사였다. 1949년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4차 제네바 협약 제146조는 협약에 포함된 전쟁범죄에 대하여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 내에서 기소하거나 다른 국가로 피의자를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도 또는 기소(aut dedere aut judicare)' 원칙으로 확립되어 관습국제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2년 국내 및 국제적 수준의 법치주의에 대한 고위급 UN총회에서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국제인도법에 대한 위반과 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대한 면제가 허용되지 않도록 하며, 그러한 범죄가 적절히 수사 및 처벌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가 국내법 및 국제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였다.[77]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한 인도 또는 기소의 의무는 국제적 의무로 관습법적 지위를 가지며 모든 국가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ICJ는 Arrest Warrant 사건에서 다수의 국제 협약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인도 또는 기소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 경우 "국가들로 하여금 형사관할권을 확장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78] 또 Judge Van den Wyngaert는 반대의견에서 보편관할권의 법적 정당성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국제적 단죄에 있으며, 그러한 범죄의 피의자가 제3국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존재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79] Agoria국은 Tedkapo가 저지른 중대한 침략범죄에 대해 기소할 의사가 없는 경우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제3국으로 인도하여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 Agoria국은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하여 수사

72)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eamble.
73) *Belgium Act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Grave Breach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74) *New Zealand International Crimes and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ct* (2000), Section 8, Art. l(c)(iii).
75) *Bundesgerichtshof*, 21.2.2001, 3 STR 372/00, 20 (Solokovic Case).
76) *Law on Judicial Powers* (1985), Art. 23(4).
77)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7/1 (24 September 2012), para. 22.
78) *Arrest Warrant* case, *supra* note 50, para. 59.
79) *Arrest Warrant* case, *supra* note 50, Dissenting Opinion of Judge Van den Wyngaert, para. 46.

및 기소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단죄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설사 Agoria국은 침략범죄를 자국 법원의 관할범죄로 규정하지 않아 Tedkapo를 기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형사관할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도 또는 기소 원칙을 따라 Agoria국은 인도의 의무를 진다. Naradon의 Tedkapo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는 따라서 Agoria국이 인도 또는 기소 원칙에 부합하도록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Doppstan국의 사법부가 내부 혼란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보호주의에 근거한 형사관할권 행사가 어렵다. 따라서 Tedkapo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은 보편관할권의 행사를 통해 제3국에서만 가능하다. Naradon국은 Doppstan국의 동맹국으로서, Doppstan국과 함께 AS 격퇴를 위한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Naradon국은 Doppstan국을 대상으로 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다른 제3국보다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 절대적 보편관할권은 국제법적 원칙이 진화한 결과다.

절대적 보편관할권은 ICC규정의 목적인 '면책에 대한 반대(fight against impunity)'에 부합하는 법개념으로, 프린스턴 원칙 등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을 논하는 다수의 국제법 학설은 이와 관련된 방향의 국제법 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ICC규정 전문에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불처벌을 막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의를 다진다"고 언급되어 있다.[80] 프린스턴 원칙과 카이로 원칙에서는 보편관할권의 법적 정당성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 면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범죄 피의자들이 제3국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ICC규정은 단순히 국가적 실행과 법적 확신이 겸비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규범 발전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제범죄에 대한 면제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그 지향점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다수의 국가가 동의하여 ICC규정이 통과되고, 캄팔라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적 실행이 없더라도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행사는, 그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국제법적 기제가 없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간 관할권의 문제가 처벌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중론이다. ICTY의 Tadic case에서도 "국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짓밟은 자들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정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81]

3. Tedkapo가 저지른 침략범죄는 국제법상 Naradon국의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대상에 포섭된다.

이상의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입법례는 대상 범죄로서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들고 있다. 동일하게 중대한 국제범죄로 정의되는 침략범죄가 절대적 보편관할권의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82] 침략범죄에 대한 판단 중 국가의 침략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주권면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침략행위가 있었다고 ICJ가 판단하는 경우 그와 연관된 개인의 침략범죄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주권면제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80)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eamble.
81) *Prosecutor v. Tadic* (1995), 35 I.L.M. 32, para. 58.
82) Naradon국 변론서, III. 2. 3).

본 사안에서 Naradon국은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궐석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Naradon국의 국내법률, 그리고 국제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재판절차에 대한 절대적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어야할 것이나,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기소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단계는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적인 절대적 보편관할권 행사는 다수 국가에서 이미 법률로써 허용되고 있다.[83] Arrest Warrant 사건에서 일부 재판관은 재량적 보편관할권, 즉 범죄혐의자가 소재하는 국가가 그를 다른 나라에 '인도 아니면 소추'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가지는 보편관할권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84] 즉, '인도 아니면 소추' 공식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들이 분명히 범죄자가 영토 내에 현재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만, 벨기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금지 규칙은 형사관할권이 영토국의 동의 없이 다른 국가 영토 내에서 행사될 수 없다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벨기에의 체포영장은 벨기에 내에서의 Yerodia의 체포를 목표로 한 것이며, 제3국의 재량 하에 제3국에서의 체포를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다른 국가의 승인 없이 그 영토내에서 자신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85] Naradon국 또한 국제법상 허용되는 테두리 내에서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한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Tedkapo에 대한 수사 및 체포영장 발부, 기소는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형사관할권 행사이며, Agoria국으로 하여금 Tedkapo가 침략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는 행위로 국제법적 정당성을 가진다.

결론 및 해결방안

위와 같은 이유로, Naradon국은 존경하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도록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침략행위의 결정과 침략범죄에 대한 절대적 보편적 관할권 행사가능성'사건에 관하여,

1. Agoria국의 침략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안보리 결정이 내려져 있더라도, ICJ는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결정해달라는 Naradon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Agoria국의 AS에 대한 무력대응은 국제법상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가 아닌 불법적인 침략행위이다.
3. Naradon국의 국내법원은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국제법상 중대한 범죄인 침략범죄를 저지른 Agoria의 전직 국가원수 Tedkapo가 Naradon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Naradon국의 국내법원은 그에 대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83) *U.N. Secretary-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repared on the Basis of Comments and Observations of Governments: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A/65/181, 29 July 2010), p. 29.

84) *Arrest Warrant* case, *supra* note 50, Joint Separate Opinion of Judge Higgins, Koojimanns, Buergenthal, para. 57.

85) *Ibid*, para. 54.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Agoria국 변론서

홍형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효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남철희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036-Agoria

국제사법재판소

Agoria국 변론서

2020년 09월 21일 재판소 서기국에 접수

침략행위의 결정과 침략범죄에 대한 절대적 보편적 관할권 행사가능성

(the Kingdom of Naradon/Federal Republic of Agoria
: Jointly Submitted by a Special Agreement)

2020년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

내용 목차

■ 관할권 진술

I. 국제사법재판소는 당해 분쟁에 관하여 수리가능성이 없다.

1. 당해 분쟁은 중복절차 회피 원칙의 적용에 따라 ICJ는 수리가능성을 가지지 않는다.

2. 당해 분쟁은 정치문제이론의 적용에 따라 ICJ는 수리가능성을 가지지 않는다.

1) 특정한 분쟁이 정치적 분쟁에 해당할 경우, ICJ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2) 당해 분쟁은 고도로 정치적인 분쟁에 해당한다.

3. ICJ는 안보리 결의의 효력에 대해 사법심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따라 ICJ는 수리가능성을 가지지 않는다.

1) ICJ는 안보리 결의와 상충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ICJ는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ICJ는 안보리 결의에 대해 사법심사권이 없으므로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 변론

I.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UN헌장 제51조에 명시된 자위권의 행사이다.

1.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적법한 대상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1) AS의 공격은 UN헌장 제51조 소정의 '무력공격'에 해당한다.
2)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 원칙"은 확립된 원칙이고,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적정하다.

2.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필요성과 비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1)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필요성을 갖추었다.
2)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비례성을 갖추었다.

3.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자위권 행사의 다른 요건도 충족하였다.

1)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즉각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2) Agoria국은 무력사용 후 안보리에 이를 보고하였고, 적시에 종료하였다.

II. 설령 Agoria국의 행위가 침략행위이어도, Tedkapo의 지시는 국가면제를 향유한다.

1. 전직 국가원수도 재임 기간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물적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

2. Tedkapo의 AS 공격 지시는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

1) Tedkapo의 AS 공격 지시는 국제법상 공적 행위의 기준에 부합한다.
2) 국제범죄도 공적 행위가 될 수 있다.

3.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물적 면제의 예외는 국제법상 확립되지 않았다.

III. Naradon국이 Tedkapo의 침략행위에 대해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를 행사한 것은 국제법상 부적법하다.

1. 침략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법상 인정되기 어렵다.

1) 침략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2) Naradon국의 ICC이행법률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2. Naradon국이 Tedkapo가 Agoria국 내에 소재함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Agoria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1) '인도 아니면 기소' 의무는 범죄자의 법정지국 소재를 요건으로 하므로, 당해 분쟁에 적용될 수 없다.
2)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침략행위에 대해서 인정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판례 색인

■ 조약

국제사법재판소규정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45.
국제연합헌장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45.
국제형사재판소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2002.

■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및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국제 판결>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 July 2000., Judgement, I.C.J. Reports 2005.
Arrest Warrant of 1 I April 2000 (Democru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Judgment, I.C.J.

Reports 2002.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Preliminary Objections, PCIJ, Series A, No. 6.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5 March 1996, I.C.J. Reports 1996.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South West Africa, Second Phase, Judgment, I.C.J. Reports 1966.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Libyan Arab Jamahiriya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4 April 1992, I.C.J. Reports 1992.

〈국내 판결〉

Bartle and the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and Others, Ex Parte Pinochet, R v. [1998] UKHL 41; [2000] 1 AC 61; [1998] 4 All ER 897; [1998] 3 WLR 1456 (25th November, 1998)

〈권고적 의견〉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dvisory Opinion, I. C. J. Reports 2004.

■ UN 문서

Document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an Francisco 1945 Vol. XIII. Doc 664 . N/ 2/33 . 29 May 1945.

R. Ago, “Addendum to the Eighth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0, Vol. II.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Letter dated 17 March 1978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Israel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17 March 1978, S/PV.207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Letter dated 23 September 201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23 September 2014, S/2014/695.

United Nation Security Council, Identical letters dated 8 September 2015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France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and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9 September 2015, UN Doc. S/2015/745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Letter dated 9 September 2015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Australi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9 September 2015, S/2015/69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Letter dated 10 December 2015 from the Chargé d'affaires a.i. of the Permanent Mission of Germany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10 December 2015, S/2015/94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Letter dated 7 June 2016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Belgium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9 June 2016, S/2016/523

United Nations, Rome Conference press release L/ROM/22, 17 July 1998.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0, vol. II.

■ 국내·국외 문헌

<단행본>

- 국내 -

김대순,『국제법론』, 제18판(서울: 삼영사, 2015)

박찬운,『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도서출판 한울, 2009.9.)

- 국외 -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with supplement (N.J. : Lawbook Exchange, 2000).

Manual R. Garcia-Mora,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Hostile Acts of Private Persons against Foreign States (M. Nijhoff, 1962).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4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논문>

- 국내 -

김석현,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즉각성(immediacy)"『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제4호(2015)

도경옥, "시리아 내 ISIL 공습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1호(2016)

임예준, "국제법상 정부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한 소고",『고려법학』, 제76호(2015. 3.)

최태현, "한국에 있어서의 ICC규정 침략범죄 개정안의 비준과 이행",『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2호(2015.12.)

- 국외 -

Antronio Casses, "Terrorism is Also Disrupting Some Crucial Legal Categories of International Law",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Issue 5, 2001.

Coleman, A. K.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highly political matters”,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 No.1. (2003)

de Hoon, M, “The Law and Politics of the Crime of Agg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2015

Rosalyn Higgins, “Policy Considerations and the International Judicial Process”,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17 (1968)

Wouters, “The Judgem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Arrest Warrant Case: Some Critical Remarks”,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2003).

〈기타 자료〉

Amnesty International, Universal Jurisdiction: 14 principles on the Effectiv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30 April 1999, AI Index: IOR 53/09/992010.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Immunities from Jurisdiction and Execution of Heads of State and of Government in International Law, Session of Vancouver - 2001, 26th August 2001.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Committee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 Final Report on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in Respect of Gross Human Rights Offences. London Conference(2000)

Princeton University Program in Law and Public Affairs, The Princeton Principles on Universal Jurisdiction 28 (2001)

The Cairo-Arusha Principles on Universal Jurisdiction in Respect of Gross Human Rights Offenses: An African Perspective.

최태현, “침략범죄에 대한 ICC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국제법 현안 Brief』, 2018 - 제1호

관할권 진술

■ 선결적 항변

I.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는 당해 분쟁에 관하여 수리가능성(admissibility)이 없다.

1. 당해 분쟁은 중복절차 회피 원칙(litispendence, lis alibi pendens)의 적용에 따라 ICJ는 수리가능성을 가지지 않는다.

중복절차 회피 원칙이란, 이미 사법적 기관에 의해 계류 중이거나 정식으로 제소가 되어 있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또 다른 사법적 기관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국제법적 원칙이다.[1] 즉, 한 사안에

관해 이미 전소법원이 권능을 행사 중이라면 타 법원은 개입할 수 없다. 이 원칙은 현재 국제관습법으로 자리매김했으며, ICJ 역시 인정해오고 있다.

ICJ의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이하 'PCIJ')는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사건에서 중복절차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써 i)동일한 당사자가(same parties), ii)동일한 소송을(identical actions) iii)동일한 성질의 법원(courts of the same character)에 대하여 제기하여야함을 제시한 바 있다.[2] 이러한 중복절차 회피의 원칙에 따라 ICJ는 아래와 같이 수리가능성을 가지지 않는다.

1) 당해 분쟁은 안보리에 계속 중이다.

2018. 5. 2. Democratic Republic of Doppstan(이하 'Doppstan국')은 당해 분쟁에 대해 안보리에 침략행위가 있었다는 결정(determination)을 내려줄 것을 의제로 상정하였고, The Kingdom of the Naradon(이하 'Naradon국') 역시 Federal Republic of Agoria(이하 'Agoria국')의 자위권 주장을 2018. 5. 1. 반박한 바 있다. 이러한 의제 상정 및 반박을 통해 당해 분쟁은 안보리에서 다뤄지고 있다. 물론 2018. 5. 5. 이 안건이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Doppstan국과 Naradon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Agoria국의 행위가 침략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분쟁은 안보리에 계속 중이다.

2) 이러한 상황에서 ICJ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면 중복절차 회피 원칙에 위배된다.

사안에서, i) Naradon국과 Doppstan국은 Agoria국을 대상으로 ii) Agoria국의 행위가 침략행위였음을 iii) 안보리에 제기하였다. Naradon국이 Agoria국의 행위가 침략행위임을 ICJ에 확인하고 있으므로, ICJ와 안보리가 동일한 성질의 법원에 해당할 경우 ICJ의 관할권 행사는 중복절차 회피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사건에서 Cot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이러한 중복절차 회피 원칙의 요건을 다시금 명시하며, 이때의 동일한 성질의 법원이란 사법적 기관뿐만 아니라 준사법적 기관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였다.[3] 안보리는 UN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및 국제법을 적용하는 국제 사회의 대표 기관이므로 준사법적 기관으로 보아야 마땅하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도 같은 의견이다.[4] 따라서 만약 ICJ가 당해 분쟁에 관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의 권한이 중첩되어 두 기관에서 동시에 심리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복절차 회피 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ICJ는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2. 당해 분쟁은 정치문제이론(political question doctrine)의 적용에 따라 ICJ는 수리가능성을 가지지 않는다.

1) 특정한 분쟁이 정치적 분쟁에 해당할 경우, ICJ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ICJ 규정 제36조 제2항은 '법률적 분쟁(legal disputes)'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함으로써

---

1)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Preliminary Objections, PCIJ, Series A, No. 6, p. 20.

2) *Ibid.*

3)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d Hoc Cot, pp. 47-48. para. 8-11.

4)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with supplement* (N.J. : Lawbook Exchange, 2000), pp. 476-477.

정치적 문제와 구분되는 법적 문제만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5] 이는 기타 국제적 기관과는 다르게, 법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영미법에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고유한 정치적 문제들과 법적 분쟁을 구별해오고 있었고, 이는 국제법에까지 적용되어 *Nicaragua* 사건이나,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ICJ의 관할권 행사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에 사용되는 원리로 자리 잡았다.

특히 *Nicaragua* 사건에서는, 안보리는 자체적으로 주어진 정치적 기능(political nature)이 있는 반면, ICJ는 순수한 법적인 기능(purely judicial functions)만을 다루어야한다고 판시하며 ICJ가 아닌 안보리만이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분쟁이 있음을 암시하였다.[6] 비록 이 사건에서는 ICJ가 정치적 문제라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있었던 1986년 이전까지는 자위권 행사 또는 무력행위에 관한 소송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ICJ에서 다루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실제로 아직까지도 여러 학자들은 그러한 소송은 '고도하게 정치적(highly political)'이므로 ICJ의 관할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7] 정치적 문제에 섣불리 ICJ가 개입하게 된다면, 자칫 각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가 및 국제 사회의 존립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특정 분쟁이 정치적 분쟁에 해당할 경우, ICJ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당해 분쟁은 고도로 정치적인 분쟁(highly political disputes)에 해당한다.

정치적 분쟁의 기준에 관하여 대부분의 국제적 분쟁은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그 본질만을 통해서는 구분이 어려우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학자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법적인지 혹은 정치적인지를 판단함으로써 분쟁의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8]

알코란국(Alcoran State, 이하 'AS')은 독재 정치로 혼란했던 Doppstan국에서 발생하여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반란단체이다. AS는 테러와 약탈을 지속하여왔고, Doppstan국으로부터의 독립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Doppstan국은 AS에 공격을 진행하였으나, Agoria국은 이러한 Doppstan국의 행위가 민주화운동을 억누르거나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동참하지 않아왔다. 즉, 당해 분쟁은 폭압과 인권말살을 자행하여 온 Doppstan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분쟁이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끼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수단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당해 분쟁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당해 분쟁은 정치적 분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ICJ는 당해 분쟁에 관하여 판단을 자제하여야 하고,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물론 최근 ICJ가 정치적 분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당해 분쟁은 정치적 분쟁에 해당한다. 당해 분쟁의 주된 쟁점은 1) Agoria국의 AS에 대한 침략행위 여부와 2) Naradon국의 보편적 관할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이다. 1)의 경우 Hassani 대통령의 만행으로 인한 안보리 결의 제3000호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정치적 분쟁에 해당하고, 2) 역시 Agoria국의 범죄인인도 거부가

5) Coleman, A. K.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highly political matters",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 No.1. (2003)

6)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s 1984, pp. 46-47, para. 95.

7) *supra* note 5.

8) Rosalyn Higgins, "Policy Considerations and the International Judicial Process",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17 (1968), p. 74

지속적으로 결렬되는 등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ICJ는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3. ICJ는 안보리 결의의 효력에 대해 사법심사권(power of judicial review)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따라 ICJ는 수리가능성을 가지지 않는다.

1) ICJ는 안보리 결의와 상충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ICJ는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 ICJ의 판결이 안보리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ICJ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ICJ가 안보리와 상충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ICJ는 UN 내에 있는 부속 기관으로 등장하였고, 설립 이후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며 법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왔다. 그 과정에서 UN이 이미 판단한 사안에 대해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어왔지만, ICJ는 안보리가 이미 결의안을 내거나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여 상충되는 판단을 할 권한이 없음을 *Lockerbie* 사건의 잠정조치 명령을 통해 입증하였다.

이 사건에서 ICJ는 재판 청구일 이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관할권 존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관할권 존부 판단을 위해 사건 청구 이전에 나왔던 안보리 결의 제731(1992)호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ICJ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잠정조치 명령이 불가하다고 밝혔고,[9] 이는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 확인됨으로써 선례화되었다.[10] 비록 잠정조치에 관한 판결이지만, ICJ는 본안사건의 수리가능성 여부를 잠정 조치 단계에서도 심사(이른바 일응의 재판적격성(*prima facie* admissibility) 이론)하고, ICJ는 인적 구성에 변화가 없으므로 ICJ는 본안 판단에서도 안보리 결의와 상충될 수 있는 판결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11] 따라서 ICJ의 판단이 안보리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ICJ는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2) ICJ가 당해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 안보리 결의 제3006호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Naradon국이 Agoria국의 무력사용에 대해 ICJ에 재판을 청구한 때는 2018. 12. 1. 이며, 이는 안보리 결의 제3006호 및 침략행위에 관한 결정의 부결이 있은 이후이다. 만약 ICJ가 당해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ICJ의 판결은 Agoria국의 행위가 침략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ICJ가 안보리와 달리 Agoria국의 행위를 침략행위로 해석한다면 ICJ의 판결은 당해 분쟁에 관련된 결의 제3006호에 정면으로 맞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해 분쟁에서 ICJ의 판단은 안보리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ICJ는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2) ICJ는 안보리 결의에 대해 사법심사권이 없으므로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1) ICJ는 안보리 결의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없다.

UN헌장과 ICJ규정은 UN기관의 결정에 대해 ICJ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9)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Libyan Arab Jamahiriya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4 April 1992, I.C.J. Reports 1992, p. 16. para. 40.

10)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 July 2000. I.C.J. Reports 2005, p.19. para. 36.

11)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5 March 1996, I. C. J. Reports 1996, p. 12. para. 33.

않다. 이는 UN과 ICJ 모두의 입장을 통해 확인되었다. 우선 UN헌장 채택과정에서 벨기에가 UN헌장의 해석에 대한 최종권한을 ICJ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위원회는 유엔헌장의 해석권을 기관 각각에게 맡겨두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12] 또한 *South West Africa* 사건에서 ICJ는 다른 UN 기관의 결정에 사법적 심사를 할 권한이 없음(not possess powers of judicial review or appeal)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13] 즉, UN과 ICJ 모두 상대 기관의 결정에 대한 심사 권한을 부인하고 있다.

(2) ICJ가 당해 분쟁에 대해 판결하면 사법적 심사에 해당한다.

안보리는 2018. 4. 17. 안보리가 결의 제3006호를 통해 Agoria국의 무력사용이 이미 평화의 파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Doppstan국과 Naradon국은 침략행위 존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침략행위 존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안보리는 이에 대해서도 부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이 안보리의 일관된 태도에 대해서 ICJ가 판단할 경우, 이는 안보리 결정의 효력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다. ICJ는 UN기관의 사법적 심사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당해 분쟁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기된 문제 요약

1. ICJ가 안보리와 동시에 같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ICJ가 정치문제이론을 근거로 관할권을 회피하여야 하는지 여부
3. ICJ의 판단이 당해 분쟁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와 상충되는지 여부
4. ICJ가 안보리 결정과 상충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5. ICJ가 안보리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권을 가지는지 여부
6. Agoria국에 대한 AS의 공격이 UN헌장 제51조의 무력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7. 테러단체 소재국에 대한 "불의사·불능력 원칙"이 당해 분쟁에 적용되는지 여부
8. Agoria국의 무력사용이 필요하고 비례하였는지 여부
9. Agoria국의 무력사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10. Agoria국이 자위권의 행사를 안보리에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안보리의 권고 이후 즉시 무력사용을 중단하였는지 여부
11.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 Tedkapo의 공격 지시가 국가의 공적 행위로서 물적 면제를 향유하는지 여부
12. Tedkapo의 공격 지시가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인 침략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12) Document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an Francisco 1945 Vol. XIII. Doc 664 . N/ 2/33 . 29 May 1945. pp. 633-634

13)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 33. para. 89.

지 여부
13. Naradon국이 Tedkapo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인도 아니면 기소' 의무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
14. Naradon국이 Tedkapo의 침략행위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권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15. Naradon국의 ICC이행법률이 캄팔라 개정문 비준 여부에 관계 없이 침략범죄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6. Naradon국의 ICC이행법률이 Doppstan국의 비당사국 지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7. 침략범죄에 대해 Naradon국이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 관계의 진술

Naradon국과 Agoria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Naradon국이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를 인도하라며 강요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양국 간의 마찰이 작용하는 탓인데,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8. 3. 12. Agoria국은 Doppstan국 내에서 발호한 테러단체 AS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Doppstan국이 자국 내 테러단체에 대해 완전히 영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AS가 Agoria국에 대량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AS는 세력을 규합한 이래 지속적으로 주변국에 대한 소규모의 테러 및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에 대해 주변국들은 AS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였으나 소재국인 Doppstan국은 AS를 진압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AS의 저항에 밀려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Agoria국의 국가원수인 Tedkapo는, 안보리 결의 제3003호에 근거한 자위권 행사를 개시하였다. AS에 대한 무력사용를 통해 Agoria국은 성공적으로 Doppstan국의 AS 영토를 점령하였고, 주둔과 대치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Doppstan국은 이를 침략행위라고 주장하였고, 안보리에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해달라는 의제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안보리는 결의 제3006호에서 명시적으로 '침략행위의 존재'에 대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음에도 Doppstan국은 지속적으로 Agoria국의 무력사용을 침략행위라 주장하였다.

2018. 5. 1. Agoria국은 UN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어 무력사용의 적법성을 알렸지만, Doppstan국은 2018. 5. 2. 다시 안보리에 '침략행위가 있었다'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의제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안보리에서의 논의 결과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oppstan국 및 Naradon국은 Agoria국의 당해 행위를 침략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 7. 17.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의 관할권 행사가 개시되자, Doppstan국은 ICC규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Tedkapo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국 법원에 Tedkapo를 기소하였다.

한편 Agoria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 Ogumason이 당선되었다. Naradon국은 전직 국가원수가 된 Tedkapo에 대해 침략범죄로 재판하고자 수사를 개시하면서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Agoria국은 ICC규정의 당사국이나 캄팔라 개정문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Naradon국은 캄팔라 개정문을 비준한 ICC규정의 당사국이며, 이에 대한 ICC이행법률을 제정하면서 ICC의 침략범죄 개정문의 구성요건보다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침략범죄의 해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Naradon국과 Agoria국은 Tedkapo의 범죄인인도 문제로 지속적인 반목을 겪었다. 2018. 10. 10. 양국은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으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2018. 11. 10. Naradon국은 이 분쟁을 ICJ에 회부하자고 주장하였다. Naradon국은 이 분쟁의 재판관할권이 ICJ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Agoria국은 이미 안보리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관할권을 부정하였다.

결국, 2018. 12. 1. 양국은 문제를 ICJ에 회부하기로 하는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 Compromis)을 체결하였고, ICJ 사무처장(Registrar)에게 송부하였다.

변론의 요약

첫째, ICJ는 당해 분쟁에 관하여 수리가능성이 없다. ICJ가 당해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 안보리에 분쟁이 계속 중임에도 ICJ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중복절차 회피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당해 분쟁은 Doppstan국 내의 테러단체인 AS가 Agoria국을 무력공격함으로써 촉발된 것으로, AS가 발호한 것이 Hassani 정권의 독재 정치 및 정치적 혼란으로 비롯된 것인만큼 ICJ는 정치문제 이론에 따라 당해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회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ICJ는 UN 기관의 결정에 대해 상충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사법심사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분쟁은 수리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AS의 Agoria국에 대한 공격은 UN헌장 제51조 소정의 '무력공격'에 해당하므로 자위권 행사로 보아야 한다. AS는 테러단체이지만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goria국에 대한 AS의 공격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2018. 2. 26. 대량 미사일 발사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Agoria국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는 '무력공격'에 해당한다.

셋째, '불의사·불능력 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고, 이에 따라 Agoria국이 Doppstan국에 대해 공격을 지시한 것은 문제가 없다. '불의사·불능력 원칙'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Doppstan국은 여러 차례 자국 내 테러단체인 AS에 대하여 통제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원칙에 근거할 때 Agoria국의 Doppstan국에 대한 무력사용은 정당화 될 수 있다.

넷째,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는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평화적 해결 수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행사되었다. 또한 Agoria국은 AS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해 보병 사단 두 개만을 투입하는 등 비례적인 무력을 사용했다. 따라서 Agoria국의 무력 사용은 정당화할 수 있다.

다섯째, Agora국의 무력사용은 AS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제법적으로 연속된 무력공격에 대해서는 무력공격이 예상될 경우, 직전의 무력공격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AS는 지속적으로 Agoria국을 공격한 바, 이에 따라 즉각성 요건은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여섯째,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는 자위권 행사의 다른 요건도 갖추었다. Agoria국은 무력 사용에 대해 보고절차를 이행하였고,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적시에 무력행위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Agoria국은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자위권을 사용하였다.

일곱째,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의 공격 지시는 국가면제를 향유하고, 이에 따라 Naradon국은 Tedkapo에 대하여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Agoria국의 Tedkapo가 전직 국가원수라 하더라도 재직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물적 면제를 향유한다. Tedkapo는 무력 공격 당시 현직 국가원수로서, Doppstan국 내 AS에 대한 무력사용을 '공적 행위'로써 행사하였다. 해당 행위가 국제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적 행위'이므로, Tedkapo의 지시는 물적 면제를 향유한다.

여덟째,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하였더라도 국가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국제관습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Tedkapo의 행위가 강행규범을 어긴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국가면제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홉째, 침략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법상 인정되기 어렵다. 보편적 관할권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다분하므로 주권 평등의 원칙과 어긋남 없이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침략행위는 그 정치적 성격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침략행위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이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열째, Naradon국의 ICC이행법률은 적법하지 않다. ICC의 캄팔라 개정문에 근거하여 2010년 Naradon국은 ICC이행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이행법률은 침략범죄에 대해 캄팔라 개정문보다 완화된 구성요건을 규정한다. 이는 타국의 주권을 근거 없이 침해하므로 적법하지 않다.

열한째, Naradon국은 캄팔라 개정문을 비준하였으나, Agoria국은 캄팔라 개정문을 비준하지 않았다. 캄팔라 개정문은 해당 개정문을 비준 또는 수락하지 않은 국가에까지 침략범죄에 관하여 보편적 관할권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Naradon국은 Tedkapo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열두째, Doppstan국은 ICC비당사국이고, 캄팔라 개정문은 명문으로 ICC규정 비당사국에 대한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피침국이 ICC비당사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Naradon국이 자국의 ICC이행법률을 통해 Tedkapo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

열셋째,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은 조건적 보편적 관할권에 비하여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더욱 크다. 뿐만 아니라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은 타국 국민의 인권 보호 및 국제 범죄의 단죄라는 보편적 관할권의 본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심지어 침략행위는 그 성격이 매우 정치적이다. 그렇기에 침략행위에 대해 이제껏 어떠한 경우에도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한 바 없고, 당해 분쟁에도 인정될 수 없다.

변론

I.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UN헌장 제51조에 명시된 자위권의 행사이다.

1.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적법한 대상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1) AS의 공격은 UN헌장 제51조 소정의 '무력공격(armed attack)'에 해당한다.

(1) AS의 Agoria국에 대한 일련의 공격은 무력공격이 되기에 충분하다.

UN헌장 제2조 제4항은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금하고 있고, 유일한 개별국가의 무력사용으로 자위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자위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UN헌장 제51조는 "UN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위권 발동을 위해서는 '무력공격'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ICJ 역시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 이 같은 원칙을 확인 한 바 있다.[14)]

무력사용이 UN헌장 제51조 소정의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려면,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국가가 입은 무력공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이 무력공격의 수준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 이상의 무력사용(grave forms of the use of force)"을 제시한 바 있다.[15)] AS는 2018. 2. 26. Agoria국의 수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에 미사일 200여 기를 발사하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군인 450명, 민간인 500여 명이 살상되었다. 그 피해 규모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라는 공격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무력공격이 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또한, ICJ는 *Nicaragua* 사건과 *Oil Platform* 사건 등에서 단독으로는 무력공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무력의 사용이라도 이러한 무력사용이 지속될 경우 '무력공격'을 인정하는 견해(이른바 '침격전술론(Nadelstichtaktik)')를 수용하였다.[16)] AS는 2018년의 미사일 공습 외에도 2017년 Agoria국에 대하여 소규모의 테러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바 있다는 점을 볼 때, 침격전술론에 근거해서도 AS의 공격은 상당한 수준 이상으로 무력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테러단체의 공격도 '무력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

AS는 UN회원국 모두로부터 국가승인을 받지 못한 테러단체이지만, 국제법상 테러단체의 공격도 '무력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UN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에 관한 주체를 국가로 한정시키고 있지 않다. 또한, 안보리는 9.11 테러 직후 채택한 안보리 결의 제1368호(2001) 및 제1373호(2001)에서 국제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9.11테러 이후 터키가 쿠르드 노동자당(Partiya Karkerên Kurdistanê, PKK)에 대하여 자위권을 원용하였을 때와 러시아가 체첸(Chechen) 게릴라에게 자위권을 원용하였을 때 다른 국가들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보면 테러단체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많은 국가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인식하고 있다.[17)]

---

14)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Judgment, I.C.J. Reports 2005, p. 58-59. paras. 146, 147.

15)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91. para. 191.

16) 김대순, 『국제법론』, 제18판(서울: 삼영사, 2015), 1631쪽.

물론 ICJ는 *Israeli Wall* 사건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서 헌장 제51조의 '무력공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시키는 듯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동 판결에서 ICJ는 "테러 위협은 이스라엘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지역 내부에서 오는 것이지 그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므로(the threat which it regards as justifying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originates within, and not outside, that territory) 이스라엘은 이들 안보리 결의를 원용할 수 없다(Israel could not in any event invoke those resolutions in support of its claim to be exercising a right of self-defence)"라고 판시하였다.[18] 따라서 ICJ가 '무력공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것은 영토 내부에서 발생한 테러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AS는 Agoria국의 영토 밖인 Doppstan국의 영토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므로 Agoria국에 대한 영토 외부에서의 공격에 해당한다. 따라서 AS의 공격은 무력공격에 해당한다.

설령 *Israeli Wall* 사건의 권고적 의견이 자위권 행사를 국가에 대해서만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의 개별의견에서 여러 재판관이 이러한 ICJ의 태도를 비판하였고,[19] 이는 *Israeli Wall*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20]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학자들은 테러단체에 의한 무력공격도 UN헌장 제51조 상의 무력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21] 특히 최근 ISIL과 같은 테러단체가 국제적 문제가 됨에 따라 여러 국가들은 테러단체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22] 해당 판례가 약 20년 전 판례이고, 이러한 최근의 경향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판례의 판시사항은 테러단체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테러단체인 AS에 대해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적법하다.

2)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 원칙(unwilling or unable doctrine, 이하 불의사·불능력 원칙)"은 확립된 원칙이고,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적정하다.

(1) 불의사·불능력 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다.

테러단체의 소재국(host state)이 테러단체의 공격에 자국 영토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무력행사국이 테러단체 소재국 영토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이른바 불의사·불능력 원칙은 자위권 행사에 따른 소재국의 주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이러한 불의사·불능력 원칙은 '1세기가 넘는 국가관행에 따라'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23]

국제법상 특정한 원칙이 국제관습법이 되려면 국가들의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불의사·불능력 원칙은 이를 모두 갖추었다. 이스라엘[24]로부터

17) 도경옥, "시리아 내 ISIL 공습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1호(2016), 111쪽

18)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dvisory Opinion, I. C. J. Reports 2004, p. 62. para. 139

19) *supra* note 10, Separate Opinion of Judge Simma, para. 4-15; Separate Opinion of Judge Kooijmans, Paras. 6-31.

20) *supra* note 18, Separate Opinion of Judge Higgins, pp. 83-84. paras. 33-35.

21)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4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206-208; Antronio Casses, "Terrorism is Also Disrupting Some Crucial Legal Categories of International Law",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Issue 5, 2001, pp. 996-997. 등

2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dentical letters dated 8 September 2015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France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and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9 September 2015, UN Doc. S/2015/745 등. 이외에도 영국,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를 원용하고 있다.

23) Ashley Deeks, "Unwilling, or Unable: Toward a Normative Framework for Extra-Territorial Self-Defence",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52. No.3.(2012), p. 501.

시작되어 미국[25], 독일[26], 호주[27] 등은 해당 원칙을 인정하는 명시적 선언을 하였고, 벨기에[28] 등 역시 묵시적 동의를 표한 바 있다. 즉, 당해 원칙에 대한 일반적 관행은 존재한다. 또한, 안보리 결의 제1368호(2001)와 제1373호(2001) 등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 역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므로[29], 해당 원칙에 대한 법적 확신 역시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불의사·불능력 원칙을 국제법적으로 원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2) 불의사·불능력 원칙에 따를 때, Agoria국의 Doppstan국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적정하였다.

불의사·불능력 원칙에 따를 때, Doppstan국은 AS의 테러행위를 막을 수 없는(unable) 국가에 해당한다. Doppstan국은 AS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AS를 규제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음에도 AS를 소멸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Doppstan국은 명백히 AS의 테러행위를 막는 것이 불가능한 국가이다. 불의사·불능력 원칙에 따를 때 Doppstan국과 같이 테러행위를 막는 것이 불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영토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Agoria국의 Doppstan국 영토에 대한 무력사용은 국제법상 적법한 것이다.

물론 Doppstan국이 주변국에 대하여 요청에 의한 개입(intervention by invitation) 요청을 하였지만, Agoria국이 이를 무시한 채 무력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oppstan국의 Hassani 대통령과 그 정부는 타국의 개입을 요청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오늘날 특정 국가의 정부가 대내적으로 실효적인 권력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국가가 합헌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해당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정부는 그 국가의 유효한 정부라고 보기 어렵다.[30]

Hassani 대통령과 정부는 30년간 독재정치를 계속하고 국민들에게 발포하였다. 이에 따라 안보리 역시 결의 제3000호를 통해 이러한 Hassani 대통령을 규탄하였으므로 Hassani 정부는 합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대외적 실효성 역시 잃었다. 따라서 Hassani 정부는 Doppstan국의 적법한 정부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Doppstan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개입' 요청도 적법하지 아니한 정부에 의한 것이고, 이에 따라 Agoria국이 Hassani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력을 사용한 것은 적법하다.

2.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필요성과 비례의 요건(principle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을 충족하였다.

무력사용이 자위권이 되려면 필요성과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위권 개념의 기초가 된 *Caroline* 사건을 통해 도입된 필요성 및 비례성 개념은, ICJ 역시 *Nicaragua* 사건에서 "국제관습법에서 잘 확립된

24)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Letter dated 17 March 1978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Israel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17 March 1978, S/PV.2071

25)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Letter dated 23 September 201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23 September 2014, S/2014/695.

2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Letter dated 10 December 2015 from the Chargé d'affaires a.i. of the Permanent Mission of Germany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10 December 2015, S/2015/946

27)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Letter dated 9 September 2015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Australi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9 September 2015, S/2015/693

28)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Letter dated 7 June 2016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Belgium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9 June 2016, S/2016/523

29) Manual R. Garcia-Mora,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Hostile Acts of Private Persons against Foreign States (M. Nijhoff, 1962), p. 116.

30) 임예준, "국제법상 정부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한 소고", 『고려법학』, 제76호(2015. 3.), 411-417쪽

한 개의 특별한 규칙에 의하면, 무력공격에 비례하고 또 그것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만 (Only measures which are proportional to the armed attack and necessary to respond to it) 이 자위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고 판시한 내용을 통해 재확인하였다.[31] Agoria국의 공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필요성과 비례성을 모두 갖추었다.

1)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필요성(necessity)을 갖추었다.

필요성은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력사용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나 무익할 것을 요구한다. 사안에서 Agoria국은 지속적으로 Doppstan국 정부에게 AS를 진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Doppstan국은 AS 진압과 관련된 유의미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고, 이에 Agoria국 국민들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즉, Tedkapo가 공격을 지시한 2018. 3. 12. 무력사용 외에 Agoria국이 AS의 무력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따라서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2)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비례성(proportionality)을 갖추었다.

ICJ는 자위권 행사의 비례성을 판단함에 있어 많은 경우 무력 격의 양과 무력 사용의 양을 비교하는 이른바 양적 비례의 기준을 사용한다. 실제로 *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엘살바도르의 무장반군이 니카라과로부터 받은 지원의 규모는 확실치 않지만, 이러한 문제의 미국의 행위들은 지원에 비례하지 않는다 (Whatever uncertainty may exist as to the exact scale of the aid received by the Salvadorian armed opposition from Nicaragua, it is clear that these latter United States activities in question could not have been proportionate to that aid)"고 하여 무력 공격과 이에 대한 무력사용 사이의 양적 비교를 실시하였다.[32] 또한 안보리 역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에 대한 자위권 원용에 대하여, 그러한 자위권 행사에 따른 사상자 수를 비교하였다.[33] 이러한 양적 비례의 기준에 따라,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Agoria국은 자국민 약 1,0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보병 사단 2개 및 공군 전투기 50대 정도만을 투입한 바, 이는 무력공격에 비례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비례성 요건을 '무력사용의 행위와 무력사용의 목적이 비례할 것(relationship between that action and its purpose)'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34] 그러나 이 같은 기준으로 보아도 Agoria국의 무력 사용은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였다. Agoria국은 Tedkapo의 공격을 통해 AS 장악 지역의 절반을 점령함으로써 AS가 무력 공격을 할 여지를 차단하였다. 즉, AS의 무력공격 저지라는 목적 달성에 Agoria국의 무력 사용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따라서 어느 기준으로 보나 비례성 원칙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자위권 행사의 다른 요건도 충족하였다.

1)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즉각성(immediacy) 요건을 충족하였다.

ICJ의 여러 판례는 자위권의 행사가 무력공격에 대하여 즉각적일 것을 요구하는데, Agoria국의 무력사

31) *supra* note 15, p. 84. para. 176.
32) *Ibid.* p. 122, para. 237
3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5 April 1996, S/PV.3653, p. 10.
34) R. Ago, "Addendum to the Eighth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0, vol.II, part 1, p. 69, para. 121.

용은 이러한 요건도 충족하였다. 즉각성은 무력공격과 무력사용 간에 부당한 시간적 지체(undue time-lag)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모든 지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35] 많은 학자들은 계속되는 일련의 단편 공격(a series of successive and different acts of armed attacks)이 있고, 이에 따라 추가 공격이 예상될 때에는, 최후의 공격이 종료된 후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36] 이를 사건의 누적(accumulation of events)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국가실행은 이스라엘과 미국 등 수도 없이 많다.[37]

당해 분쟁에서 AS는 2017. 4. 30. 이후 소규모의 테러와 약탈을 반복적으로 자행하였고, 이후 2018. 2. 26.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진행했다. 즉, 1년 간 지속된 AS의 공격으로 비추어 볼 때 Agoria국은 AS의 추가적인 공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AS의 최종적인 공격 후 Agoria국이 공격을 늦춘 것도 Doppstan국과 평화적 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Agoria국이 미사일 공격 2주 이후에 공습을 진행한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2) Agoria국은 무력사용 후 안보리에 이를 보고하였고, 적시에 종료하였다.

UN헌장 제51조는 자위권 행사 시 행사국은 이를 안보리에 즉시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goria국은 2018. 5. 1. UN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여 무력사용의 적법성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UN에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를 보고하였다.

또한, UN헌장 제51조는 안보리가 실효적 조치를 하기 전까지만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는 Agoria국 군대가 철수하기 전까지 어떠한 형태의 실효적 조치도 취한 바 없다. 물론 안보리 결의 제3006호를 채택하긴 하였으나, 이는 권고적 성격에 불과한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Agoria국의 철군은 적시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Agoria국의 무력사용에 대해서는 자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II. 설령 Agoria국의 행위가 침략행위이어도, Tedkapo의 지시는 국가면제를 향유한다.

1. 전직 국가원수도 재임 기간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물적 면제(immunity ratione materiae)를 향유할 수 있다.

일국의 재판소가 외국 또는 외국재산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들을 서로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국가면제는 인적 면제(immunity *ratione personae*)와 물적 면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인적 면제는 외국의 고위 정부 대표자(high rank officials)가 그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인정되지만, 물적 면제는 대표자의 행위가 국가의 '공적 행위(official acts)'인 경우 퇴임 이후에도 지속된다. *Pinochet*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노체트가 더 이상 외국의 국가원수가 아니므로 그의 인적 면제는 당연히 부인되지만, 재임 기간 중의 그의 범죄행위가 칠레를 대표한 공적 행위로서 물적 면제의 대상이 되는지는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38] 즉, 전직 국가원수의 행위도,

35) 김석현,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즉각성(immediacy)"『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제4호(2015), 55쪽
36) *supra* note 34, p. 70, para. 122.
37) 김석현, 前揭書, 61-69쪽
38) Bartle and the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and Others, Ex Parte Pinochet, R v. [1998] UKHL 41; [2000] 1 AC

그러한 행위가 국가의 '공적 행위'의 일환이었던 경우에는 퇴임 이후에도 물적 면제를 향유한다.

2. Tedkapo의 AS 공격 지시는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

1) Tedkapo의 AS 공격 지시는 국제법상 공적 행위의 기준에 부합한다.

공적 행위의 기준에 관련하여, 국제법상 여러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비록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이기는 하나, 공적 행위에 의미에 관하여 유의미한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위법행위 책임에 관한 초안(The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은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외견상의 권위(apparent authority)를 제시하였다.[39] 반면 IDI 결의 등은 공적 행위의 요건으로 외견상 권위와 더불어 그 행위가 '단지 개인적인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배타적으로 수행된 행위(performed exclusively to satisfy a personal interest)'가 제시하였다.[40] 즉, 공적 행위의 기준이 국제법상 명시적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Tedkapo의 행위는 이 모든 기준으로 판단해볼 때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 Tedkapo는 명백히 국가원수로서 AS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였고, AS의 미사일 공격 직후 공격을 지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의도도 자국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edkapo의 공격 지시는 안보리결의 제3003호에 근거한 것으로 공적 성격이 매우 뚜렷하다. 이처럼 Tedkapo의 공격 지시는 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Tedkapo의 행위는 물적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

2)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도 공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국제범죄가 공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많은 국제범죄는 실제로 공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학자들은 대부분의 국제범죄가 국가 정책의 일부로써 고위 공직자들에 의해 자행되므로 공적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41] ICJ의 *Arrest Warrant* 사건에서 Wyngaert 재판관이 제기한 반대 의견에서도 "침략행위와 같은 특정한 국제범죄 같은 경우 '공적 행위' 말고는 어떤 범주에도 포함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국제범죄가 공적 행위의 하나임을 인정하였다.[42]

침략행위는 그 성격상 다른 국제범죄들에 비해, 공적인 성격이 더 크다.[43] UN헌장 상 자위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진 못하였더라도, 과거 피침략국이 침략국을 공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침략행위가 공적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면제를 향유한다고 보고 있다. ILC 역시 1996년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법전 초안에 대한 주해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44] 따라서 Tedkapo의 공격 지시가 침략행위에 해당하여 국제범죄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Tedkapo의 국가면제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61; [1998] 4 All ER 897; [1998] 3 WLR 1456 (25th November, 1998)

39)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0, vol. II, part II, para. 76.

40)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Immunities from Jurisdiction and Execution of Heads of State and of Government in International Law, Session of Vancouver - 2001, 26th August 2001, Article 13.

41) Wouters, "The Judgem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Arrest Warrant Case: Some Critical Remarks",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2003), pp. 253-267.

42) Arrest Warrant of 1 I April 2000 (Democru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Judgment, I.C.J. Reports 2002, Dissenting Opinion of Judge Van Den Wyngaert, p. 161, para. 36.

43) de Hoon, M, "The Law and Politics of the Crime of Agg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2015,

44) 최태현, "한국에 있어서의 ICC규정 침략범죄 개정안의 비준과 이행",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2호(2015.12.), 31쪽

3)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에 따른 물적 면제의 예외는 국제법상 확립되지 않았다.

일부 학자와 일부 국가의 국내 판결 등은 침략범죄와 같은 강행규범 위반에 대하여 국가면제, 특히 그 중에서도 물적 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ICJ는 2012년 *Arrest warrant* 판결을 통해 강행규범에 대한 물적 면제의 예외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해당 판결은 부수적 의견(*obiter dictum*)에서 "국제법상 당사국 법원은 재직 중에 사적 권한으로 행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재직 전 또는 재직 후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 전직 외교부 장관을 판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45] 이는 반대해석에 따라 재직 중 공적 권한으로 행한 행위는 예외 없이 소추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부수적 의견은 판결 이유와 엄격히 구분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46] ICJ는 전직 국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공무원의 재직 중 행위가 공적 행위라면 예외 없이 국가면제를 향유한다고 직접 판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판결 이후 이러한 판결과 배치되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되었다고 간주할 만한 어떠한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Tedkapo의 공격 지시가 침략행위에 해당하여 강행규범을 위반하였을지라도, 이러한 사실이 국가면제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III. Naradon국이 Tedkapo의 침략행위에 대해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in absentia)를 행사한 것은 국제법상 부적법하다.

1. 침략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법상 인정되기 어렵다.

1) 침략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범죄지, 범죄자 및 희생자의 국적 등과 어떤 관련성도 없이 범죄의 성질에 근거하여 발동하는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보편적 관할권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제법의 대원칙인 주권 평등의 원칙(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보편적 관할권 관할범죄의 범위에 관련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침략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은 인정되기 어렵다. 침략행위는 정치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47], 지금껏 보편적 관할권의 대상이 되어왔던 해적행위, 인도에 반한 죄, 고문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이는 심각한 국제범죄의 근절이라는 보편적 관할권의 취지와 침략행위 금지가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적 행사를 위한 국제사면위원회의 14원칙[48] , ILA의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최종보고서[49],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카이로-아루샤 원칙[50] 등은 침략범죄를 보편

45) *supra* note 42, Judgment, I.C.J. Reports 2002, p. 26. para. 61. 원문은 다음과 같다 : Provided that it has jurisdi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 court of one State may try a former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another State in respect of acts committed prior or subsequent to his or her period of office, as we l as in respect of acts committed during that period of office in a private capacity.

46) 김대순, 『국제법론』, 제18판(서울: 삼영사, 2015), 97쪽.

47) *supra* note 43,

48) Amnesty International, Universal Jurisdiction: 14 principles on the Effectiv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30 April 1999, AI Index: IOR 53/09/992010, Article 1.

49)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Committee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 Final Report on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in Respect of Gross Human Rights Offences. London Conference(2000), Article 2.

50) The Cairo-Arusha Principles on Universal Jurisdiction in Respect of Gross Human Rights Offenses: An African Perspective, Article 4.

적 관할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이는 다른 국제법 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보편적 관할권이 침략행위에까지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1945년 이루어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헌장을 근거로 침략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뉘른베르크 장은 지나치게 과거의 일인데다가, 세계 2차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본 상황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뉘른베르크 헌장의 국제법적 의미가 큰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의적 의미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Naradon국의 ICC이행법률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2012년 통과된 캄팔라 개정문은 ICC가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원칙 하에 침략범죄의 구성요건 및 관할권 개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는 ICC이행법률을 개정하고 있고, Naradon국 역시 ICC이행법률인 "국제범죄처벌법"(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national Crimes 2010)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국제범죄처벌법은 과도한 입법으로 인해 국제법의 대원칙인 주권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 우선 국제범죄처벌법은 침략범죄에 대하여 캄팔라 개정문의 구성요건보다 완화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침략범죄 기준의 완화는 ICC가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국의 행위를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화하여 소추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위법하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자의적인 구성요건의 완화를 국제법상 문제되는 행위로 보고 있다.[51]

또한, Naradon국은 캄팔라 개정문에 근거하여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위법하다. 캄팔라 개정문은 그 양해사항(Understaning) 5에서 개정문이 특정 국가의 국내사법관할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52] 물론 양해사항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개정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참고자료가 됨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양해사항은 적어도 침략행위에 관해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다고 볼 수 있고, Naradon국은 이 캄팔라 개정문을 근거로 하여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더불어, Agoria국은 캄팔라 개정문을 비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Naradon국은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였는데, 이 역시 위법하다. 개정조문을 채택한 캄팔라결의 제1항은 개정조문이 ICC규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문 제2문은 개정조문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는 개정조문과 관련된 ICC관할권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goria국이 캄팔라 개정조문을 비준하지 않았다면 Naradon국은 캄팔라 개정조문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실제로 적지 않은 국가들은 이와 같은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53]

뿐만 아니라 Naradon국은 Doppstan국이 ICC규정의 비당사국임에도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였는데, 이 역시 위법하다. 캄팔라 개정문 제15조 bis 제5항은 명시적으로 ICC규정 비당사국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비당사국이 침략국인지 피침국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므로, 피침국이 ICC규정 비당사국인 경우에도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ICC규정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해당 비당사국이 ICC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승인

51) 최태현, 前揭書, 16-18쪽
52) United Nation, Rome Conference press release L/ROM/22, 17 July 1998. p. 22. para. 4.
53) 최태현, "침략범죄에 대한 ICC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국제법 현안 Brief』, 2018 - 제1호, 2-3쪽

할 경우 ICC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제15조 bis 제1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결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분쟁에 관하여 ICC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고 그러므로 Naradon국도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Naradon국이 Tedkapo가 Agoria국 내에 소재함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Agoria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1) '인도 아니면 기소' 의무(*aut dedere aut judicare*)는 범죄자의 법정지국 소재를 요건으로 하므로, 당해 분쟁에 적용될 수 없다.

Agoria국과 Naradon국은 집단살해방지협약, 전쟁법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 고문방지협약 및 테러방지를 위한 협약 등 '인도 아니면 기소' 의무를 규정한 여러 협약의 당사국이다. 이러한 인도 아니면 기소 의무를 보편적 관할권과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 둘은 범죄자의 법정지국(forum state)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주류적 견해는 이러한 '인도 아니면 기소' 의무의 요건으로 범죄자의 법정지국 소재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견해를 반증할만한 다른 국제법적 관습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54] 당해 분쟁에서 Tedkapo는 Naradon국에 소재하지 않은 바, '인도 아니면 기소' 의무는 당해 분쟁에 적용되기 어렵다.

2)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침략행위에 대해서 인정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법정지국에 용의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법정지국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인 주권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제사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벨기에는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국제인도법위반범죄처벌법(Loi relative aux violations graves du 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에 규정한 이후 수많은 외교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2003년 벨기에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 보편적 관할권의 개념을 축소시킨 바 있다.[55] 이후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국내 입법에 도입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독일이 ICC이행법률을 개정하여 일부 범죄에 대해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였으나 여기에도 침략범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즉,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뒷받침할 만한 국가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이 같은 문제로 인하여, 많은 학자들은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편적 관할권의 통일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프린스턴 원칙(Princeton Principles)은 원칙 1에서 '보편적 관할권은 이 원칙에서 정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고발된 사람에 대해 그가 사법기관 앞에 현존하는 것을 전제로(provided the person is present before such judicial body)' 각국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56] 이외에도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했던 여러 원칙(국제사면위원회의 보편적 관할권 14원칙,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국제법협회의 최종보고서,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카이로 아루샤 원칙 등)에서도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를 명시적으로 긍정한 예는 없다. 따라서 부재형 보편적

54) 박찬운,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도서출판 한울, 2009.9.), 66-70쪽.
55) 上揭書, 160-171쪽.
56) Princeton University Program in Law and Public Affairs, The Princeton Principles on Universal Jurisdiction 28 (2001). Article 1.

관할권에 관한 법적 확신 역시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사안에서 Naradon국은 Tedkapo에 대해 침략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Tedkapo가 Agoria국에 소재하는 동안 행해진 일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어떠한 관행이나 조약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Naradon국의 이러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명백히 위법하다. 특히 이러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침략범죄에 관한 것이었는데, 침략범죄에 대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지지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Naradon국이 Tedkapo에 대하여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한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결론 및 해결방안

위와 같은 이유로 Agoria국은 존경하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도록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침략행위의 결정과 침략범죄에 대한 절대적 보편적 관할권 행사가능성 (the Kingdom of Naradon/Federal Republic of Agoria: Jointly Submitted by a Special Agreement) 사건에 관하여,

1. Agoria국이 행한 공격은 UN헌장 제51조 소정의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침략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Tedkapo는 국제법상 국가면제를 향유하고, 이에는 어떠한 형태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3. Naradon국이 Tedkapo를 처벌하기 위하여 Tedkapo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행위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상기 내용을 정히 청구함.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Naradon국 변론서

홍형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효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남철희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036-Naradon

국제사법재판소

Naradon국 변론서

2020년 09월 21일 재판소 서기국에 접수

침략행위의 결정과 침략범죄에 대한 절대적 보편적 관할권 행사가능성

(the Kingdom of Naradon/Federal Republic of Agoria
: Jointly Submitted by a Special Agreement)

2020년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

내용 목차

■ 관할권 진술

I. 국제사법재판소는 당해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다.

II. ICJ는 당해 분쟁에 관하여 수리가능성을 지닌다.

1.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ICJ가 결정하는 것은 중복절차 회피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 당해 분쟁과 관련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이미 종료되었다.
2) 설령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ICJ는 안보리와 동시에 같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2. Agoria국의 행위에는 정치문제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1) 정치문제이론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원칙이다.
2) 당해 분쟁은 법적 분쟁에 해당한다.

3. ICJ는 안보리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권이 있다.

1) 당해 분쟁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는 ICJ의 판단과 관련이 없다.
2) 설령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ICJ는 안보리 결의와 상충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안보리 결의에 대하여 사법 심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 변론

II. Agoria국의 AS에 대한 공격은 UN헌장 상 자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1.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적법하지 아니한 대상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1) 테러단체의 공격은 UN헌장 제51조 소정의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S는 자위권 원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Agoria국이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 원칙"에 근거하여 자위권을 원용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

2.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 을 결여하였다.

1)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필요성을 결여하였다.
2) Agoria국의 무력 사용은 비례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3.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자위권 행사의 다른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1)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즉각성'을 결여하였다.
2) Agoria국은 자위권의 행사를 즉각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종료 역시 지체하였다.

4.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UN헌장에 어긋나고, 침략행위에 해당한다.

IV. Tedkapo는 국가면제를 향유하지 않으므로 Naradon국의 형사재판관할권 행사는 적법하다.

1. 전직 국가원수는 인적 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2. Tedkapo의 침략행위는 공적 행위와 무관한 것이므로 물적 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3.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Tedkapo는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1) 침략행위 금지는 강행규범에 해당한다.
   2)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V. Naradon국이 Tedkapo에 관하여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주권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1. 침략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1) 침략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국제관습법상 허용된다.
   2) Naradon국의 ICC이행법률이 침략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을 규정한 것은 국제법상 적법하다.

2. 침략범죄에 대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 역시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1) Naradon국의 Tedkapo에 대한 영장 발부는 궐석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 행사는 적법하다.

판례 색인

■ 조약

국제사법재판소규정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45.
국제연합헌장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45.
국제형사재판소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02.

■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및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ICJ 판결>

Adjud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8 April 1993. I. C. J. Reports 1993.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 July 2000., Judgment, I.C.J. Reports 2005.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New Application : 2002)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Rwanda),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s 2006.
Arrest Warrant of 1 I April 2000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Judgment, I.C.J. Reports 2002.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Judgment, I.C.J. Reports 1970.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Preliminary Objections, PCIJ, Series A, No. 6.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5 March 1996, I.C.J. Reports 1996.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S. S. Lotus(Fr. v. Turk.), 1927 p.C.I.J.(ser. A.) No. 10.
South West Africa, Second Phase, Judgment, I.C.J. Reports 1966.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ment, I. C. J. Reports 1980.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Libyan Arab Jamahiriya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4 April 1992, I.C.J. Reports 1992.

〈국내 판결〉

Bartle and the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and Others, Ex Parte Pinochet, R v. [1998] UKHL 41; [2000] 1 AC 61; [1998] 4 All ER 897; [1998] 3 WLR 1456 (25th November, 1998)
Decision of the Swiss Federal Criminal Court (Décision du 25 juillet 2012 Cour des plaintes), 2012.7.21. (File no. BB.2011.140)
Ferrini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ecision of Italian Court of Cassation, Judgement No. 5044, 11 March 2004.
Perfecture of Voiotia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se No. 11/2000, Areios Pagos, 4 May 2000.
Yousuf v. Samantar, 552 F.3d 371 (4th Cir. 2009) pp. 19-22. III.B.

〈권고적 의견〉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dvisory Opinion, I. C. J. Reports 2004.

■ UN 문서

R. Ago, “Addendum to the Eighth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0, vol.II.

United Nations,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Memorandum by the Secretariat, A/CN.4/596.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10 (A/67/10).

United Nations, Rome Conference press release L/ROM/22, 17 July 1998.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 II.

■ 국내·국외 문헌

<단행본>

- 국내 -

김대순, 『국제법론』, 제18판(서울: 삼영사, 2015)

박찬운,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도서출판 한울, 2009.9.)

- 국외 -

T. Ruys, ‘Armed Attack’ and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Evolutions in Customary Law and Practice (Cambridge: Univ. Press, 2010)

<논문>

Dapo Akande & Marko Milonovic, “The Constructive Ambiguity of the Security Council’s ISIS Resolution”, EJIL: Talk!(2015)

Odermatt, J. “Patterns of avoidance: political questions before international courts” Forthcoming in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in Context, vol.14, No.2. 2018.

X. philippe, “The principles of universal jurisdiction and complementarity: how do the two principles intermesh?”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88, No.862, 2006, p. 388.

김석현, “자위권 행사로서의 무력사용의 제한 - 필요성과 비례성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4호(2013.12.)

김석현,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즉각성(immediacy)” 『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제4호(2015)

도경옥, “시리아 내 ISIL 공습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1호(2016)

라인균, “국제연합 (UN) 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 원리: 로커비사건과 관련하여”.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1호(2005. 4.)

백지혜, 『국가공무원의 외국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기타 자료〉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Immunities from Jurisdiction and Execution of Heads of State and of Government in International Law, Session of Vancouver - 2001, 26th August 2001.

Princeton University Program in Law and Public Affairs, The Princeton Principles on Universal Jurisdiction 28 (2001).

최태현, "침략범죄에 대한 ICC관할권 행사개시 결정",『국제법 현안 Brief』, 2018 - 제1호.

관할권 진술

I.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는 당해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다.

The Kingdom of the Naradon(이하 'Naradon국')과 Federal Republic of Agoria(이하 'Agoria국')는 모두 UN회원국 및 ICJ규정의 당사국이다. 따라서 양국은 ICJ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34조 제1항과 UN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제9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또한 양국은 합의한 청구사항에 대하여 ICJ에 회부하기로 하는 특별 협정(Special Agreement: Compromis)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ICJ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라 ICJ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지닌다.

II. ICJ는 당해 분쟁에 관하여 수리가능성(admissibility)을 지닌다.

1.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ICJ가 결정하는 것은 중복절차 회피 원칙(litispendence, lis alibi pendens)에 위배되지 않는다.

ICJ의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이하 'PCIJ')에 따르면 중복절차 회피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동일한 당사자가(same parties), ii)동일한 소송을(identical actions) iii)동일한 성질의 법원(courts of the same character)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한다.[1][2] 그러나 다음의 이유에 따라 당해 분쟁을 ICJ에 제소하는 것은 중복절차 회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1) 당해 분쟁과 관련된 UN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이하 '안보리')의 결정은 이미 종료되었다.

당해 분쟁에서 2018. 5. 2. Democratic Republic of Doppstan(이하 'Doppstan국')은 Agoria국의 Doppstan국 영토에 대한 공격 및 주둔 행위에 대하여 안보리의 결정을 요구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따라서 당해

1)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Preliminary Objections, PCIJ, Series A, No. 6, p. 20.

2) 라인균, "국제연합 (UN) 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 원리: 로커비사건과 관련하여".『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1호(2005. 4.), 65쪽

분쟁에 관한 안보리의 결정 절차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시심리 가능성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ICJ는 안보리와 동시에 같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Diplomatic & Consular Staff 사건의 판결에서 ICJ는 관련 안보리 결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지시하였으며, 본안 판결까지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에서 ICJ는 i) 잠정조치 명령을 내린 이후 안보리 결의 제461호(1979)에서 이사국 중 어느 누구도 ICJ와 안보리의 동시심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ii) ICJ규정에 UN 심리 사건에 대한 심사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iii) ICJ가 법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핵심적 기관임을 UN헌장 제36조 제3항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ICJ가 안보리와 동일 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3)]

이후 ICJ는 *Nicaragua* 사건에서도 위 *Diplomatic & Consular Staff* 사건의 판례를 원용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ICJ는 안보리가 그에 부여된 정치적 성질(political nature)의 기능이 있는 반면 ICJ는 순수한 사법적 기능(purely judicial functions)을 행사하므로, 두 기관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개별의 그러나 보충적인(separate but complementary)' 기능을 행사한다."고 판시하며 안보리와 ICJ가 같은 사건에 대하여 판단이 가능함을 인정한 바 있다.[4)] 더불어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의 잠정조치[5)]와 *Application of Genocide Convention* 사건의 잠정조치[6)]에서도 *Nicaragua* 사건의 판례를 인용하였다. 즉, ICJ와 안보리가 동시에 같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사실이다.

따라서 설령 안보리가 Agoria국의 무력행위에 대하여 아직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ICJ가 당해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보리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두 기관은 동시에 각각의 고유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CJ의 관할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2. Agoria국의 행위에는 정치문제이론(political question doctrine)을 적용할 수 없다.

ICJ는 ICJ규정 제3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서 재판소의 관할을 "법률적 분쟁(legal disputes)"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ICJ는 *Nicaragua* 사건 판결에서 '안보리는 정치적 성격의 기능, ICJ는 사법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구분한 바 있다.[7)] 이와 같은 ICJ의 입장을 정치문제이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를 들어 정치문제이론은 당해 분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정치문제이론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원칙이다.

ICJ가 정치문제이론을 이유로 회피해야 하는 분쟁은 '정치적' 분쟁에 한한다. 그러나 ICJ는 국제법상

3)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ment, I. C. J. Reports 1980, pp. 22-23. para. 40.

4)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s 1984, pp. 46-47, para. 95.

5)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 July 2000. I.C.J. Reports 2005, p.19. para. 36.

6) Adjud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8 April 1993. I. C. J. Reports 1993, pp.18-19. para. 33.

7) *supra* note 4.

발생되는 대부분의 분쟁이 법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의 혼합체임을 인식하고 있다. ICJ는 어떤 사안이 법적인 분쟁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린 바 없으며 ICJ가 본안 판단에 있어서 사안이 '법적이지 않다', 혹은 '정치적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관할권을 회피한 사례는 없다. [8]

실제로 앞서 언급한 *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어떤 사건이 단지 정치적 의미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그것이 무력사용의 중대한 요소들과 결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제기되어온 사건을 회피한 적은 없었다"고 직접적으로 판시하여 정치문제이론의 적용을 극도로 제한한 바 있다.[9]

Diplomatic & Consular Staff 사건 판결에서도, ICJ는 이란 정부가 '본 사안이 정치적 소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단순히 관할권을 회피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이란 정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10] 따라서 특정 분쟁의 정치적 성격을 이유로 ICJ의 수리가능성을 배척한다면 *Diplomatic & Consular Staff* 사건에서 ICJ가 명시하였듯이 ICJ에 '광범위하고도 부당한 제한(far-reaching and unwarranted restriction)'을 부과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문제이론은 당해 분쟁이 극도로 정치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당해 분쟁은 법적 분쟁(legal dispute)에 해당한다.

당해 분쟁의 발생 및 경과에 정치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해 분쟁이 Agoria국의 공격 지시가 침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Naradon국이 Agoria국에 대하여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고려하면 당해 분쟁은 법적 분쟁으로 분류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Agoria국의 무력행위에 대한 Naradon국의 대응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Naradon국은 Tedkapo의 범죄인인도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Agoria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양국 국민 간 상대국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며 반목이 심화되었고, 2019. 10. 10. 양국 외무 장관은 외교 교섭을 통해 더 이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뒤이어 양국이 ICJ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결정하게 된 순간, 양국은 당해 분쟁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ICJ는 당해 분쟁이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권 행사를 배척할 수는 없고, 당해 분쟁을 법적 분쟁으로 보아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ICJ는 안보리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권(power of judicial review)이 있다.

1) 당해 분쟁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는 ICJ의 판단과 관련이 없다.

당해 분쟁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는 ICJ의 결정과 상충될 여지가 없다.

(1) ICJ는, *Lockerbie* 사건의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에 관한 판단에서 ICJ 재판 청구일인 1992. 3. 3. 보다 늦은 안보리 결의 제748(1992)호와 제883(1993)호는 재판 청구 당시에 이미 존재가 확인된 관할권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1] 즉, ICJ의 관할권 존부 기준은 재판

8) Odermatt, J. "Patterns of avoidance: political questions before international courts" *Forthcoming in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in Context*, vol.14, No.2. 2018, p. 15

9) *supra* note 4, p. 47. para. 96.

10) *supra* note 3, p. 21. para. 37.

11)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Libyan Arab Jamahiriya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 C. J. Reports 1998, pp.18-20. paras. 37-38. 42. 44.

청구일이다. 당해 분쟁의 재판 청구일은 2018. 12. 1. 으로, 재판 청구일 이전의 안보리 결정은 안보리 결의 제3003호와 제3006호이다. 이 중 제3006호는 Agoria국의 무력사용이 자위권 행사인지에 대한 판단을 별개로 하고, 단순히 철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ICJ가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제3006호에서 안보리가 결정을 유보한 내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안보리 결의 내용과 상충될 수 없다.

더불어 UN헌장 제39조는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평화의 파괴와 침략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 제3006호가 Agoria국의 행위가 평화의 파괴에 해당한다고 결의한 내용이라고 해석하여도, 안보리가 Agoria국의 무력사용을 '침략행위'로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Agoria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침략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ICJ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에 상충되지 않는다.

(2) 안보리 결의 제3006호는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므로 관할권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Lockerbie 사건에서 ICJ는 안보리 결의 제731(1992)호는 단순한 권고(mere recommendation)이므로 수리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12] 당해 분쟁의 경우에도, 관련 안보리 결정인 안보리 결의 제3006호는 Agoria국이 Doppstan국 지역의 주둔을 지속할 경우 평화의 파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철군할 것을 단순히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 제3006호는 이 결의가 명시한대로 철군에 대한 권고적 성격을 띠는 결의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며, 해당 무력사용이 침략행위로 간주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ICJ가 수리가능성을 결정하는데 결의 제3006호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ICJ는 관할권을 가진다.

2) 설령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ICJ는 안보리 결의와 상충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안보리 결의에 대하여 사법 심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1) ICJ는 안보리 결의와 상충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ICJ는 *Lockerbie* 사건의 선결적 항변에서 미국이 주장한 'ICJ는 안보리결의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ICJ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ICJ의 관할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ICJ는 이 사항을 본안 판단 사항이라고 하여 결정을 유보하였다.[13] 이는 ICJ가 안보리와 상충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ICJ가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Lockerbie* 사건의 잠정조치는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는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의 잠정조치에서도 인용되었다.[14] 그러나 이러한 판례들은 잠정조치에서의 ICJ의 태도를 확인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판례가 본안 판단과 관련된 당해 분쟁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2) 더 나아가, ICJ는 안보리 결의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ICJ는 *South West Africa* 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서, 'ICJ가 사법적 기능을 행사하

12) *Ibid,* pp. 19-20. paras. 43-44.
13) *Ibid.*
14) *supra* note 5.

는 도중 안보리 혹은 총회 결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법적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유를 결정하면서 해당 이의(objections) 제기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15] 물론 당해 사건에서 ICJ는 ICJ가 안보리 결의를 대상으로 국제법 혹은 UN헌장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ICJ가 이를 소 제기 이유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은 ICJ가 안보리 결의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16] 더 나아가 ICJ가 안보리 결정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것은 '사법심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은 아직까지 없다.

또한 안보리가 정치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UN의 중요기관이라 할지라도, 안보리의 그러한 권한에 관하여 ICJ가 아무런 통제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안보리의 활동은 UN헌장 전문 및 제2조,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명백히 UN헌장 및 일반국제법, 강행규범 등에 구속되나, ICJ는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ICJ는 안보리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고 보아야 한다.[17]

특히 국제평화의 유지 및 인권의 보호는 UN헌장 제1조에 명시된 바 UN의 본질적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헌장 제7장에 명시된 안보리의 개입 권한과 회원국에 대한 비군사적 제재는 국가의 주권 및 자치에 민감한 영향을 준다. UN헌장 제7장에 근거한 회원국에 대한 제재는 회원국의 권리 침해를 반드시 수반하고, 군사적 제재의 경우 최고 법익인 회원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성까지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는 법적인 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UN헌장 제1조 제1항과 제7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ICJ는 안보리에 대하여 적법성의 통제라는 별도의 보충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ICJ는 안보리가 정치적 권능을 헌장의 목적과 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18] 따라서 ICJ는 당해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제기된 문제 요약

1. ICJ가 안보리와 동시에 같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ICJ가 정치문제이론을 근거로 관할권을 회피하여야 하는지 여부
3. ICJ의 판단이 당해 분쟁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와 상충되는지 여부
4. 관련 안보리 결의의 권고적 성격이 ICJ의 관할권 행사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
5. ICJ가 안보리 결의와 상충되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6. ICJ가 안보리 결의에 대해 사법심사권을 가지는지 여부

15)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 33. para. 89.
16) *Ibid.*
17) 라인균, 前揭書, 68-69쪽
18) 라인균, 前揭書, 67-71쪽

7. Agoria국에 대한 AS의 공격이 UN헌장 제51조의 무력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8. 테러단체 소재국에 대한 “불의사·불능력 원칙”이 당해 분쟁에 적용되는지 여부
9. Agoria국의 무력사용이 필요하고 비례하였는지 여부
10. Agoria국의 무력사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11. Agoria국이 자위권의 행사를 안보리에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안보리의 권고 이후 즉시 무력사용을 중단하였는지 여부
12.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 Tedkapo가 인적 면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3.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 Tedkapo의 공격 지시가 국가의 공적 행위로서 물적 면제를 향유하는지 여부
14. Tedkapo의 공격 지시가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인 침략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15. Naradon국이 Tedkapo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궐석재판에 해당하는 지 여부
16. Naradon국이 Tedkapo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권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17. Naradon국의 ICC이행법률이 캄팔라 개정문 비준 여부에 관계 없이 침략범죄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8. 피침략국인 Doppstan국이 ICC규정 비당사국이라는 사실이 ICC관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9.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Naradon국이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 관계의 진술

Agoria국과 Naradon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Agoria국이, Naradon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오랜 동맹관계에 있는 Doppstan국에게 동의 없는 무력사용을 개시하여 지역의 일부분을 점령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근 더욱 악화되었다.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Agoria국과 Naradon국은 모두 Doppstan국에 인접하여 있는데, Doppstan국은 Hassani 정권의 독재정치와 인권유린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해 안보리는 결의 제3000호를 발표하여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였고, 국민들은 민주화운동을 벌였다.

그 중 독립을 선포한 반란단체인 알코란국(Alcoran State, 이하 ‘AS’)는 Doppstan국 국토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장악하기에 이르렀지만, 국가로서 승인받지는 않았다. 세 국가는 모두 AS를 테러단체로 지정하였고, Doppstan국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AS의 진압과 제거에 힘써왔다. Doppstan국은 자국 외무부장관의 성명을 통해 외국이 AS 장악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Doppstan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 Doppstan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임을 경고해왔다.

2018. 2. 26. AS가 Agoria국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자, 2018. 3. 5. 안보리는 결의 제3003호를 채택하여 UN회원국들에게 국제법에 부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Doppstan국은 계속해서 외무 장관의 성명서를 상기시켰지만, 2018. 3. 12. Agoria국의 대통령인 Tedkapo는 공격명령을 내려 2개 보병사단과 공군 전투기 50개를 동원한 무력사용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개월 간의 전투가 이어졌고, AS가 장악한 지역 절반 가까운 부분을 점령한 채 대치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Doppstan국이 안보리에 Agoria국의 침략행위 사실을 주장하자, 안보리는 2018. 4. 17. 결의 제3006호를 채택하여 Agoria국의 무력사용이 평화의 파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철군할 것을 권고하였다. 2주일 후인 2018. 5. 1. Agoria국은 UN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며 무력사용의 적법성을 옹호하였으나, Doppstan국과 Naradon국은 이에 침략행위라며 계속해서 반박해왔다. 2018. 5. 2. Doppstan국은 안보리에 침략행위 관련 의제를 상정하였지만,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2018. 7. 17.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에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개시되었지만, ICC규정 당사국이 아닌 Doppstan국은 자국법원에 Tedkapo를 침략범죄로 기소하였다. 이후 Agoria국에서는 Tedkapo를 잇는 새로운 대통령 Ogumason이 당선되었고, Naradon국은 국내법원에서 Tedkapo를 침략범죄로 재판하고자 수사를 개시하였다. Naradon국은 Tedkapo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지만, Agoria국과 Naradon국 간에는 아직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다.

Naradon국은 ICC규정 및 캄팔라 개정문의 당사국이고, 국내 이행법률인 "국제범죄처벌법"(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national Crimes 2010)을 적용 중이다. 이 법은 침략범죄에 대해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Agoria국 역시 ICC규정의 당사국이지만, 캄팔라 개정문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Agoria국과 Naradon국은 Tedkapo의 범죄인인도 문제로 대립해왔으며, 2018. 10. 10. 양국 외무장관이 회담을 열었으나 적절히 해결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2018. 11. 10. Naradon국은 이 분쟁을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다. Agoria국은 이미 안보리의 결정이 있으므로 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Naradon국은 그 직무와 성격이 다르므로 ICJ는 관할권을 가진다며 맞섰다.

결국, 2018. 12. 1. 양국은 문제를 ICJ에 회부하기로 하는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 Compromis)을 체결하였고, ICJ 사무처장(Registrar)에게 송부하였다.

변론의 요약

첫째, ICJ는 당해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UN회원국이자 ICJ규정의 당사국인 Naradon국과 Agoria국은 협의 하에 양국의 청구사항을 ICJ에 회부하기로 하는 특별 협정을 체결하였다.

둘째, ICJ는 당해 분쟁에 관하여 수리가능성을 가진다. 안보리에 계속중인 사안을 ICJ가 다루는 것은 중복절차 회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당해 분쟁은 법적 분쟁이므로 ICJ가 관할권을 갖는다. 또한 ICJ는 안보리 결의와 상충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사법심사 역시 가능하다. 따라서 ICJ는 수리가능성을 가진다.

셋째, 테러단체의 공격은 UN헌장 제51조의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UN과 ICJ는 자위권은 국가 간에 적용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테러단체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국제관습법조차

성립하지 않아 근거가 없다.

넷째, 테러단체 소재국에 대한 "불의사, 불능력 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 아니다. 이러한 원칙은 ICJ와 안보리가 인정한 바 없고, 극히 적은 국가만이 인정하여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여지도 없으며, 대다수의 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설령 "불의사불능력 원칙"이 적용가능하다고 하더라도, Agoria국은 Doppstan국과의 조율 없이 영토주권을 침해하여 '요청에 의한 개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력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섯째,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Agoria국은 AS의 공격에 대해 평화적 분쟁 해결이 가능함에도 무력을 사용하였고, 그 수준 또한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여섯째, Agoria국은 자위권의 행사를 안보리에 즉각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Agoria국은 무력사용 후 3개월이 지나고서야 UN에 보고하였고, 그조차도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하여 적법하지 않다.

일곱째, Agoria국은 안보리가 실효적 권고를 하였음에도 그 무력사용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다. Agoria국은 안보리 결의 제3006호 채택 이후 2주 간 군대를 철수하지 아니하였다.

여덟째, 따라서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의 행사가 아니며, UN침략정의 결의 제1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침략행위로 보아야 한다.

아홉째, Tedkapo는 전직 국가원수이므로 인적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Naradon국의 국내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

열째, Tedkapo의 공격 지시는 물적 면제의 요건인 '공적 행위'가 아니며, 이에 따라 Tedkapo의 공격 지시는 물적 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Tedkapo가 저지른 침략행위는 국제법상 국제범죄로서 국가의 공적 행위가 될 수 없으며, 공적 행위라 할지라도 면제가 부인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열한째, Tedkapo의 공격 지시가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침략행위 금지는 ILC와 ICC규정, ICJ가 모두 인정하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다. 강행규범에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자리 잡혀 있다.

열두째, Naradon국이 Tedkapo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주권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며 ICJ 역시 각 국가의 재량을 인정한 바 있고, 이는 침략행위에 관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열셋째, Naradon국의 ICC이행법률이 침략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을 규정한 것은 국제법상 적법하다. 실제로 국제 사회의 여러 나라가 ICC이행법률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UN은 2012년 ICC규정을 개정함으로써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했다. 이때에, Agoria국의 캄팔라 개정문 비준 여부 및 Doppstan국 비당사국 지위는 Naradon국의 보편적 관할권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열넷째, 침략범죄에 대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 역시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Naradon국의 Tedkapo에 대한 영장 발부는 궐석 재판과 별개이고, ICJ는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비난할 수 있는 국가관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Naradon국은 계속해서 Agoria국에게 범죄인인도를 요청해왔으므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변론

I. Agoria국의 AS에 대한 공격은 UN헌장 상 자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1.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적법하지 아니한 대상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1) 테러단체의 공격은 UN헌장 제51조 소정의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S는 자위권 원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원칙적으로 자위권은 국가 간에 적용되는 권리이다.

UN헌장 제2조 제4항은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금하고 있고, 유일한 개별 국가의 무력사용으로 자위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자위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UN헌장 제51조는 "UN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위권 발동을 위해서는 '무력공격'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ICJ 역시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19]

ICJ에 따르면 테러단체의 공격은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반군들의 행위에 대하여 무력공격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20] 이는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21] 학자들은 이러한 ICJ의 태도를 두고 ICJ가 무력공격의 주체로서 테러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22] 특히 *Israeli Wall* 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헌장 제51조는 국가가 타국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경우(armed attack by one State against another State)에 고유의 자위권이 존재함을 승인하고 있다." 라고 판시하여 자위권이 국가 간의 권리임을 확인하였다.[23] 따라서 테러단체의 공격은 UN헌장 제51조 소정의 '무력공격'이 될 수 없다.

Naradon국과 Agoria국을 포함한 모든 UN회원국은 AS를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는 바, AS는 국제법상 국가가 아닌 테러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AS의 공격은 '무력공격'이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Naradon국이 AS의 공격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테러단체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영토 외부에서 테러행위가 시작된 경우에는 테러단체의 공격도 무력공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해당 주장은 *Israeli Wall* 사건에서 "(테러)위협은 이스라엘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지역 내부에서 오는 것이지 그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므로(the threat which it regards as justifying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originates within, and not outside, that territory) 이스라엘은 안보리 결의를 원용할 수 없다(Israel could not in any event invoke those resolutions in support of its claim to be exercising a right of self-defence)."라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한 것인데,[24] 이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반박

19)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Judgement, I.C.J. Reports 2005, p. 58-59. paras. 146, 147.

20) *supra* note 4.

21) *supra* note 19.

22) 도경옥, "시리아 내 ISIL 공습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1호(2016), 111쪽

23)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dvisory Opinion, I. C. J. Reports 2004, p. 62. para. 139.

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논리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테러단체에 대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부 판례의 개별의견 등을 통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25]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원용되기 어렵다. ICJ가 *Israeli Wall* 사건에 대해 판단할 당시는 9.11 테러 이후로, 테러단체에 대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은 학자들의 주장과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하여 이미 제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ICJ는 이 문제를 명백히 회피하였고, 이는 당시 Kooijmans 재판관의 별개의견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26] 즉, 테러단체에 대한 자위권 원용 가능성이 화두가 된 이후에도 ICJ는 그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척한 것이다. 따라서 테러단체에 대한 자위권 원용의 법리가 관습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 Agoria국이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 원칙(unwilling or unable doctrine, 이하 불의사·불능력 원칙)"에 근거하여 자위권을 원용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

(1) 불의사·불능력 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 아니다.

국가가 아닌 테러단체에 대한 무력사용은 반드시 테러 단체 소재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영토주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들은 테러단체 소재국이 테러단체의 공격에 자국 영토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의사가 없거나(unwilling) 능력이 없는 경우(unable)에만, 무력행사국은 테러단체에 대해 자위권을 원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불의사·불능력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Agoria국이 Naradon국에 대하여 2018. 5. 1. 주장한 법리 역시 이 같은 불의사·불능력 원칙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의사·불능력 원칙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ICJ는 이 원칙을 인정하는 어떠한 명시적 판결도 내린 바 없고, 안보리 역시 이를 인정하는 결의를 한 바 없다. 또한, 불의사·불능력 원칙을 원용한 국가는 극히 적다. 특히 이와 같은 불의사·불능력 원칙은 테러단체를 방지할 능력이 없는 국가가 무력행사를 감내해야 할 책임까지 부담하게 하므로 공평에 맞지 아니하다.[27]

뿐만 아니라 국제법 학자들은 불의사·불능력 원칙의 개념이 모호하고, 악용의 가능성이 커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28] '테러 단체의 무력공격을 방지할 의사나 능력'의 의미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므로, 무력 행사국은 해당 원칙에 따라 보다 쉽게 자국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고, 이러한 무력사용국은 대개 강대국이므로 해당 원칙은 강대국의 무분별한 무력사용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의사·불능력 원칙은 적법한 원칙이라고 볼 수 없고, Agoria국은 Doppstan국에 대해 자위권 행사를 원용할 수 없다.

(2) 설령 불의사·불능력 원칙이 국제법상 확립되었다 할지라도,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

설령 불의사·불능력 원칙이 국제법상 확립되었다 할지라도, UN헌장 제78조에 명시된 주권평등의 원칙(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이 국제법의 준칙임을 고려할 때, 이 원칙은 각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테러단체 소재국이 테러단체의 무력사용을 방지할

24) *Ibid.*
25) *supra* note 23, Separate Opinion of Judge Higgins, pp. 83-84. paras. 33-35.
26) *supra* note 23, Separate Opinion of Judge Kooijmans, pp. 97-98. para. 35.
27) 도경옥, 前揭書, 120쪽
28) 도경옥, 前揭書, 119쪽

의사가 있고, 그 국가가 국제사회의 원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테러단체 소재국에 대하여 무력사용을 원하는 국가는 '요청에 의한 개입(intervention by invitation)'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다.[29]

Doppstan국은 AS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AS의 진압과 제거에 총력을 다했다. 또한, Doppstan국은 AS를 퇴치·제거하기 위하여 주변국에 AS를 공습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Naradon국은 Doppstan국과의 조율 하에 AS를 공격하였지만, Agoria국은 이를 반복적으로 묵인한 채 Doppstan국에 대해 공격을 진행하였고, 이후 반복되는 Doppstan국의 경고 역시 무시하였다. 이는 요청에 의한 개입을 무시한 채 Doppstan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여 공격을 진행한 것이므로 국제법상 허용될 수 없다.

물론 Tedkapo의 공격 지시가 안보리 결의 제3003호로부터 비롯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안보리가 군사적 강제조치를 결의하는 경우 안보리는 "헌장 제7장에 따른(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혹은 "회원국들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authorize Member States to use all necessary means)"와 같은 명시적 표현을 사용한다.[30] 즉, "국제법에 부합되게 필요한 모든 조치(all necessary measures)를 취할 것을 촉구(call upon)"한다는 결의 제3003호의 표현은 군사적 제재를 허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ISIL의 파리 테러 이후 안보리 결의 제2249호가 결의 제3003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고 미국이 이 결의를 근거로 시리아에 대하여 공격을 진행하였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를 전례 없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31] 따라서 Agoria국은 불의사·불능력 원칙의 정당화 근거로 안보리 결의 제3003호를 원용할 수 없다.

2.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을 결여하였다.

무력사용이 자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위권 개념의 기초가 된 *Caroline* 사건을 통해 도입된 필요성 및 비례성 개념은, ICJ 역시 *Nicaragua* 사건에서 "국제관습법에서 잘 확립된 한 개의 특별한 규칙에 의하면, 무력공격에 비례하고 또 그것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들만(Only measures which are proportional to the armed attack and necessary to respond to it) 이 자위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고 판시한 내용을 통해 확인되었다.[32] Agoria국의 공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필요성과 비례성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다.

1)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필요성(necessity)을 결여하였다.

필요성은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력사용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적 해결방법이 있을 경우 무력사용은 금지된다. Doppstan국은 지속적으로 Agoria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Doppstan국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는 Doppstan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Doppstan국에게 AS와 관련된 당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Agoria국은 평화적 분쟁 해결 수단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무력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Agoria국의 행위는 필요성을 결여한 무력사용으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

29) 요청에 의한 개입이란, 테러 단체 소재국의 명시적인 동의에 입각한 타국의 군사적 지원은 국제법상 적법하다는 것으로, 그 적법성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으나 오늘날 실제 국가들의 관행에 비추어 인정되고 있다.

30) 도경옥, 前揭書, 122쪽

31) Dapo Akande & Marko Milonovic, "The Constructive Ambiguity of the Security Council's ISIS Resolution", *EJIL: Talk!* (2015)

32)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 84. para. 176.

2) Agoria국의 무력 사용은 비례성(proportionality)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무력행사의 비례성은 무력사용의 행위와 무력사용의 목적이 비례할 것(relationship between that action and its purpose)을 요구하는 것이다.[33] 자위권 행사의 목적이 무력공격을 저지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무력사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무력사용은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34]

Agoria국이 AS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위권 행사는 처벌(punish)의 개념이 아니다.[35] 자위권 행사의 목적은 자국 국민의 보호 및 침략의 저지일 뿐이다. 따라서 Agoria국은 AS의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무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Agoria국은 2개 보병사단을 투입하고, 공군 전투기를 50대 동원하는 등의 공격을 개시하였다. 1개월간 전투를 계속하고, AS 장악지역의 절반 가까운 부분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이는 미사일 공격이라는 AS의 공격 방식을 고려할 때, 침략의 저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비례성을 결여하였고, 자위권은 성립될 수 없다.

물론 2차 대전 이후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침략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의 연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무력복구(reprisal)과 자위권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불필요한 침략 전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인정될 수 없다.

3.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자위권 행사의 다른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1)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즉각성(immediacy)'을 결여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자위권의 인정 요건으로 타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직후 또는 아무리 늦더라도 그 공격이 종료되기 전에(while the attack is still going on, and not after it has ended) 자위권의 행사가 개시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즉각성' 요건은 UN헌장 제51조 소정의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if an armed attack occurs)'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ion, 이하 'ILC') 역시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 작업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자위권을 다루면서 '무력공격에 대한 무력적 저항이 즉각적으로(immediately)'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36]

자위권 행사의 즉각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력공격과 무력사용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a close proximity in time)"이 인정되어야 한다.[37] 즉, 피해국의 무력사용은 무력공격 후 지체 없이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일회성의 단편적 공격에 대한 무력대응으로서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러한 즉각성의 요건은 엄격히 적용된다.[38] 사안에서 Agoria국은 AS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있고 2주 뒤에야 공격을 시작하였다. 과거 영국이 자국 영토에 침입한 예멘의 항공기를 하루가 완전히 지난 후 격추하자 안보리가 이 같은 영국의 무력사용을 비난한 국제법적 관행을 고려할 때,[39] 이는 자위권 행사의 즉각성을 결여하

33) R. Ago, "Addendum to Eighth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0, vol.II, part 1, p. 69, para. 121.

34) 김석현, "자위권 행사로서의 무력사용의 제한 - 필요성과 비례성을 중심으로",『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4호(2013.12.), 38쪽

35) 김석현, 前揭書, 39쪽

36) *supra* note 23, p. 70. para. 122.

37) T. Ruys,*'Armed Attack' and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Evolutions in Customary Law and Practice* (Cambridge: Univ. Press, 2010), p. 99.

38) 김석현,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즉각성(immediacy)"『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제4호(2015), 55쪽

였다.

물론 국제법상 계속되는 일련의 단편 공격에 대해서는 이러한 즉각성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이른바'accumulation of events')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격이 모두 무력공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40] AS는 2017. 4. 30. 이후 반복적으로 소규모의 테러와 약탈을 자행하였으나 이는 무력공격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Agoria국은 2018. 2. 26. 일회적인 단편 공격만을 겪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Agoria국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즉각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음에도 지체하여 무력을 행사하였으므로, Agoria국의 자위권 행사는 위법하다.

2) Agoria국은 자위권의 행사를 즉각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종료 역시 지체하였다.

UN헌장 제51조는 자위권 행사국이 자위권 행사 사실을 즉각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Measures taken by Members i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f self-defence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Nicaragua* 사건에서 ICJ 역시 "보고가 없다는 것은 문제의 국가가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그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여 안보리 보고의 중요성을 명시하였다.[41] 그러나 Agoria국은 무력사용 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UN에 보고하였고, 그 보고도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바, Agoria국의 보고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또한, UN헌장 제51조는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만(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무력사용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무력 사용국은 안보리가 조치하면 무력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Agoria국은 안보리가 결의 제3006호를 채택하였음에도 2주 간 군대를 철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적법하지 않다.

4.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UN헌장에 어긋나고, 침략행위에 해당한다.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UN헌장 제51조 소정의 자위권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Agoria국이 Doppstan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UN침략정의결의(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314 (XXIX) (Definition of Aggression)) 제1조는 침략을 "국가가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혹은 본 정의에 명시된 것처럼 UN헌장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UN헌장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므로, Agoria국의 무력사용은 명백히 침략행위에 해당한다.

II. Tedkapo는 국가면제를 향유하지 않으므로 Naradon국의 형사재판관할권 행사는 적법하다.

1. 전직 국가원수는 인적 면제(immunity *ratione personae*)를 향유할 수 없다.

Tedkapo는 2018. 9. 2.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국제법상 현직 국가원수는 인적

39) S/RES/188(1964), para. 2.
40) 김석현, 前揭書, 62쪽
41) *supra* note 4, para. 200.

면제를 향유하나, 전직 국가원수는 국가면제 가운데 인적 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국제법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는 *Pinochet* 사건에서 영국 상원대법원은 전직 국가원수였던 Pinochet가 더는 외국의 국가원수가 아니므로 인적 면제는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42] ICJ 역시 *Arrest Warrant* 사건에서 외무장관이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인적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43] 따라서 Agoria국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는 인적 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2. Tedkapo의 침략행위는 공적 행위와 무관한 것이므로 물적 면제(immunity *ratione materiae*)를 향유할 수 없다.

국가면제 중 물적 면제는 외국의 행위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전직 국가원수의 행위가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물적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 이 같은 공적 행위의 기준에 대하여, 외견상 국가적 권위가 있는 경우 공적 행위라는 견해, 사적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한 행위는 사적 행위라는 견해 등이 대립하나, 공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44]

다만 국제법상 국제범죄는 국가의 공적 행위가 될 수 없다. 국제범죄는 국가의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Arrest Warrant* 사건의 공동개별의견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제시하고 있고,[45] UN사무국의 검토보고서[46]와 ILC보고서[47] 역시 같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국제범죄가 국가의 공적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되었다.

설령 국제범죄가 공적 행위라 할지라도 이는 면제가 부인되어야 하는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ILC보고서는 "물적 면제에 관한 예외는 국제범죄를 공적 행위로 보지 않거나 면제가 부인돼야 하는 공적 행위로 간주돼야 하는 이론 중에서 선택해야만 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48] 이는 공적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물적 면제가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IDI(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역시 결의 제13조에서 국제범죄는 공적 행위 여부에 상관없이 물적 면제가 부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확인하였다.[49]

사안에서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 Tedkapo는 침략행위를 저질렀다. 침략행위는 국제법상 명백한 국제범죄로서, 이러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Tedkapo의 행위는 물적 면제의 대상이 되는 '공적 행위'가 될 수 없고, 설령 공적 행위라 할지라도 물적 면제는 부인되므로, 이에 따라 Tedkapo는 물적 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

42) Bartle and the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and Others, Ex Parte Pinochet, R v. [1998] UKHL 41; [2000] 1 AC 61; [1998] 4 All ER 897; [1998] 3 WLR 1456 (25th November, 1998)

43) Arrest Warrant of 1 I April 2000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Judgment, I.C.J. Reports 2002, p. 25. para. 61.

44) 백지혜, 『국가공무원의 외국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3년, 66쪽

45) *supra* note 43, Joint Separate Opinion of Judges Higgins, Kooijmans and Buergenthal, p. 89. para. 85.

46) United Nations,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Memorandum by the Secretariat, A/CN.4/596, para. 191.

47)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10 (A/67/10), paras. 126-130.

48) *Ibid.*

49)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Immunities from Jurisdiction and Execution of Heads of State and of Government in International Law, Session of Vancouver - 2001, 26th August 2001, Article 13.

3.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Tedkapo는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1) 침략행위 금지는 강행규범에 해당한다.

강행규범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을 통해 명시적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ICJ 역시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 강행규범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50]

침략행위 금지가 강행규범에 해당한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다. ILC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관한 보고서에서 강행규범의 예시로 침략행위 금지(an unlawful use of force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를 들고 있다.[51] 또한, 강행규범 자체를 규율한 것은 아니나 강행규범을 전제로 한 국제범죄를 규율하는 ICC규정 역시 침략범죄를 재판소의 관할범죄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침략행위 금지는 강행규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52] ICJ가 침략행위 금지의 강행규범성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판결을 내린 적은 없으나, *Barcelona Traction Co.* 사건에서 강행규범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의 하나로 침략행위 금지(the outlawing of acts of aggression)를 명시한 것도 침략행위 금지의 강행규범성을 뒷받침한다.[53]

2)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 국가면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선 Pinochet 사건에서 재판부는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하며 강행규범에 대한 국가면제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은 *Nezzar* 사건에서 "법질서에 의해 보호되는 국제법의 기본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contrary to fundamental values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은 국가면제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54] *Samantar* 사건에서의 미국 제4순회항소법원 역시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55] 민사재판이기는 하나, 이탈리아 대법원의 *Ferrini* 사건[56]과 그리스 대법원의 *Distomo* 사건[57]도 강행규범 위반에 대한 국가면제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각국 국내법원의 판결로 비추어볼 때, 강행규범 위반에 대한 국가면제 부인의 법리는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이 모두 있으므로 국제 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ICJ는 *Arrest Warrant* 사건에서 현직 외교부 장관에 대하여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면제 성립의 예외를 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해 판결에서 전직 국가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면제 예외의 가능성을

---

50)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New Application : 2002)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Rwanda),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s 2006, pp. 31-32. para. 64.

51)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 II, p. 248..

52)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icle 5

53)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Judgment, I.C.J. Reports 1970, p. 33. para. 34.

54) Decision of the Swiss Federal Criminal Court (Décision du 25 juillet 2012 Cour des plaintes), 2012.7.21. (File no. BB.2011.140), para 5.4.3. 원문은 다음과 같다 : "In such case, it would be difficult to admit that conduct contrary to fundamental values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can be protected by rules of that very same legal order(immunity ratione materiae)"

55) Yousuf v. Samantar, 552 F.3d 371 (4th Cir. 2009) pp. 19-22. III.B.원문은 다음과 같다 : "American courts have generally followed the foregoing trend, concluding that jus cogens violations are not legitimate official acts and therefore do not merit foreign official immunity"

56) Ferrini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ecision of Italian Court of Cassation, Judgement No. 5044, 11 March 2004, para. 9.

57) Perfecture of Voiotia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se No. 11/2000, Areios Pagos, 4 May 2000, p. 17.

명시적으로 부인한 바는 없다. 다만 해당 판결은 "국제법상 당사국 법원은 재직 중에 사적 권한으로 행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재직 전 또는 재직 후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 전직 외교부 장관을 판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58] 그러나 이는 재직 중 사적 권한에 의한 행위를 소추할 수 있다는 일반론을 제시한 것일뿐, 전직 국가원수의 재직 중 공적 행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의 판시는 아니다.

설령 당해 판결이 전직 국가원수의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면제의 예외를 부정한 판례라 할지라도, ICJ의 판결은 선례 구속성의 원칙(*stare decisis*)이 적용되지 않는다.[59] 또한, 당해 판결의 반대의견은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 국가면제의 예외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60]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더불어 강행규범은 모든 국가를 위한 의무로써 앞으로 이러한 강행규범이 보다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면,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가면제 부인의 법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Agoria국의 Doppstan국에 대한 무력사용이 침략행위라면, 이는 강행규범 위반이고, 이에 따라 Tedkapo는 국가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III. Naradon국이 Tedkapo에 관하여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in absentia*)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주권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1. 침략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1) 침략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국제관습법상 허용된다.

범죄지, 범죄자 및 희생자의 국적 등과 어떤 관련성도 없이 범죄의 성질에 근거하여 발동하는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다.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제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특히 재판관할권과 판결의 집행 등의 사법관할권은 보편적 관할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이는 *Lotus* 사건에서 PCIJ가 국제법상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각국은 입법관할권과 사법관할권은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라고 판시하였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61]

이렇듯 국가주권에 따라 인정되는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특히 이는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에 대하여 인정된다. 국제범죄의 개념에 관하여 통일된 기준이나 판례는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침략행위는 국제범죄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우선 국제범죄가 강행규범 및 대세적 의무와 밀접한 개념임을 고려할 때, 침략행위도 국제범죄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많은 학자들과 미국의 대외관계법 등도 침략행위를 국제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62] 이에 따라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으나 보편적 관할권에 관하여 권위 있는 원칙으로 인정받는 프린스턴 원칙(Princeton Principles)은 원칙 2에서 침략행위(crimes against peace)를 관할범죄로 규정하고 있다.[63] 이러한 사실들

58) *supra* note 43, p. 26. para. 61. 원문은 다음과 같다 : Provided that it has jurisdi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 court of one State may try a former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another State in respect of acts committed prior or subsequent to his or her period of office, as we l as in respect of acts committed during that period of office in a private capacity.

59) South West Africa, Second Phase, Judgment, I.C.J. Reports 1966, p. 45.

60) supra note 43,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l-Khasawneh, p. 98. para. 7.

61) S. S. Lotus(Fr. v. Turk.), 1927 P.C.I.J.(ser. A.) No. 10. p. 18. part. C.

62) Jordan J. Paust, International Criminal Law(Carolina Academic Press, 1996), p. 11.

63) Princeton University Program in Law and Public Affairs, The Princeton Principles on Universal Jurisdiction 28 (2001). Article 2

을 종합할 때, 침략행위가 보편적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적 확신을 갖춘 국제관습법이라고 볼 수 있다.

2) Naradon국의 ICC이행법률이 침략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을 규정한 것은 국제법상 적법하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규정')은 전문 및 제1조, 제17조에서 보충성의 원칙(complementarity)을 규정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국내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ICC의 관할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이러한 원칙을 고려할 때 ICC규정 당사국은 ICC규정 관할범죄에 관하여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64] 실제로 이에 따라 독일, 네덜란드,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ICC이행법률에서 ICC 관할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침략범죄가 ICC의 관할범죄인지에 관하여, 2012년 ICC규정의 개정을 통해 ICC가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를 통해 ICC는 적어도 ICC규정의 당사국이 침략범죄를 저지른 경우 관할권을 가질 수 있고, 이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ICC규정의 당사국 역시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당해 개정문의 양해사항(Understanding) 5는 '개정문이 어느 한 국가가 국내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65] 그러나 양해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에 불과하고, 침략행위를 보다 폭넓게 처벌하고자 하는 개정문의 취지를 고려할 때, ICC규정 당사국은 자국 법원에서 침략행위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편적 관할권 행사 시 침략국의 캄팔라 개정문 비준 여부는 관할권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개정조문을 채택한 캄팔라결의 제1항은 개정조문이 ICC규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조항 제2문은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범죄는 ICC관할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2문은 '개정'에 적용되는 조항일 뿐, '발효'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캄팔라 개정문은 ICC규정 당사국이 침략행위에 관하여 ICC관할권 배제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15조 *bis* 제4항(이른바 opt-out 조항)을 두고 있는데, ICC규정 제121조 제5항 제2문을 캄팔라 개정조문에도 적용한다면, 이 opt-out 조항의 의미는 몹시 퇴색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캄팔라 개정조문의 비준 여부가 ICC의 관할권 행사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따르고 있다.[66] 따라서 Agoria국이 캄팔라 개정문을 비준하지 않은 사실은 ICC의 관할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피침략국인 Doppstan국이 ICC규정의 비당사국인 사실 역시 ICC의 관할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ICC규정 제12조 제3항은 ICC규정의 비당사국일 지라도 해당 국가가 ICC회부에 동의할 경우 ICC는 임시적으로 관할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물론 캄팔라 개정문 제15조 bis 제5항은 ICC 비당사국에 대한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ICC규정 제12조 제3항이 일반규정(default rule)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제12조 제3항은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제15조 *bis* 제5항은 피침국이 명시적으로 ICC 관할권을 승인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사안에서 피침국인 Doppstan국은 ICC 관할권을 2018. 7. 17. 승인하였다. 또한 Doppstan국의 국내법원은 내전으로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바, ICC규정 제17조 상의 보충성의 원칙 역시 충족하였다. 따라서 ICC가 관할권을

64) X. philippe, "The principles of universal jurisdiction and complementarity: how do the two principles intermesh?"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88, No.862, 2006, p. 388.
65) United Nations, Rome Conference press release L/ROM/22, 17 July 1998. p. 22. para. 4.
66) 최태현, "침략범죄에 대한 ICC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국제법 현안 Brief』, 2018 - 제1호, 2쪽

행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Naradon국의 ICC이행법률이 캄팔라 개정문이 규정한 침략범죄의 구성요건보다 폭넓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 역시 문제가 없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국가는 사법관할권에 있어 폭넓은 자유를 지니고, 이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역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침략범죄에 대한 확실한 단죄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캄팔라 개정조문을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캄팔라 개정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행법률의 구성요건이 ICC규정보다 넓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요컨대, Agoria국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Naradon국이 자국의 이행법률에 따라 Agoria국의 침략행위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Naradon국의 Tedkapo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적법하다.

2. 침략범죄에 대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 역시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1) Naradon국의 Tedkapo에 대한 영장 발부는 궐석재판(trial *in absentia*)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궐석재판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의 준칙이고, Naradon국 역시 이 같은 원칙을 국내형법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궐석재판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이 법정에 불출석한 채로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ICJ 역시 *Arrest Warrant* 사건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재판 당시에 그 관할 하에 반드시 소재해야 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매우 사려깊은 인권보장책은 될 수 있지만 관할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궐석재판과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 문제는 별개임을 명시하였다.[67] 따라서 아직 영장 청구 단계에 불과한 Tedkapo의 사례는 궐석재판과 무관하고,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 문제에 해당할 뿐이다.

2)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 행사는 적법하다.

관할행사국에 용의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관할권 행사를 인정하는 이른바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은 범죄자의 법정지국 소재를 전제로 하는 이른바 조건부 보편적 관할권에 비하여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소재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무분별한 행사는 인권의 보호 및 국제범죄의 단죄라는 보편적 관할권의 본래 목적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Arrest Warrant* 사건에서 Higgins, Kooijmans 재판관 등은 범죄인 부재 상황에서도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해 수사하고 범죄인인도를 행사하는 것을 비난할 수 있는 국가관행(state practice)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68] 심지어 Wyngaert 재판관은 이와 같은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이 ICC규정의 보충성 원칙에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즉,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69]

따라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은 특정한 조건하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Higgins 재판관 등은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적법한 행사를 위해,

---

67) *supra* note 43, Joint Separate Opinion of Judge Higgins, Kooijmans, Buergenthal, pp. 80.-81 para. 56.
68) *supra* note 43, Joint Separate Opinion of Judge Higgins, Kooijmans, Buergenthal, p. 80. para. 54.
69) *supra* note 43, Dissenting Opinion of Judge Van Den Wyngaert, p. 162.

각국의 면제특권을 존중할 것, 용의자 국적국의 관할권을 존중할 것,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 중대한 범죄에 대해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적용할 것 등을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70] 이러한 입장은 국제범죄를 단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편적 관할권의 범위를 점차 확장하는 최근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즉,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Arrest Warrant* 사건의 개별의견과 같은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를 때, Naradon국의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 행사는 타당하다. 우선 국제적으로 침략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또한 Naradon국은 지속적으로 Agoria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하여 Agoria국의 관할권을 존중하고자 노력했지만, Agoria국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Naradon국이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충분히 적법하다.

물론 현재 침략행위에 대해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적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캄팔라 개정문이 발효된 것이 2017년 경임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것이고, 침략범죄의 중대성과 보편적 관할권의 취지를 고려하면 침략행위에도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및 해결방안

위와 같은 이유로 Naradon국은 존경하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도록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침략행위의 결정과 침략범죄에 대한 절대적 보편적 관할권 행사가능성 (the Kingdom of Naradon/Federal Republic of Agoria: Jointly Submitted by a Special Agreement) 사건에 관하여,

1. Agoria국은 국가 원수 Tedkapo의 지시에 따라 국제법상 국제범죄의 하나인 침략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Agoria국은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원용할 수 없다.
2. Tedkapo는 국제법상 어떠한 형태의 국가면제도 향유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침략행위를 조각시킬 수도 없다.
3. Naradon국이 Tedkapo를 처벌하기 위하여 Tedkapo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행위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기 내용을 정히 청구함.

70) *supra* note 43, pp. 80~81. paras. 59~60.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후기

오 시 진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이사, 삼육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국제법 모의재판은 어떠한 의의를 가질까? 오늘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국제법 모의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국제법의 지배 혹은 국제법치주의의 함양과 고양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국제법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이란 적어도 국제법을 따르겠다는 의식과 그 내재화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법의 지배 상태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의 지배 상태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래되었다. 국제사회에 재판소를 설치하여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스 2세에 의해서 소집된 1899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법으로 중재(arbitration)가 논의되었고 결과적으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설립되었다. 1907년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처음으로 상설사법재판소 개설 사안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1919년 국제연맹체제에서 상설국제법원(PCIJ)이 설치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이후 UN체제는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국제연맹 당시의 상설국제법원(PCIJ)을 국제사법재판소로(ICJ)로 발전시켜 국제법의 실행과 이행 측면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다양한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은 많은 국제 현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법에 따라 국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국제법을 내재화하여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언제인가는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참여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이번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은 많은 함의를 지닌다. 한국의 앞날을 책임질 대학(원)생들이 국제법을 공부하고 변론서를 작성하여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전 세계적 국제법의 지배 상태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의 참가자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정에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의식했던 하지 않았던, 국제사회의 기준이자 규범인 국제법의 지배 상태는 국제법이 법규범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참가자들은 국제사회의 일원인 세계시민이 되어 본 것이다.

여기서는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에 대한 실무 진행자 입장에서 개략적인 설명과 소감을 적도록 하겠다.

2. 모의재판의 개요

제12회를 맞은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외교부 주최 대한국제법학회 주관으로 2020년 10월 10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문제는 7월 6일에 공고되었고, 참가신청은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받았다. 올해는 67팀이 신청을 하여 모의재판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워크샵은 8월 1일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어 8월 28일에 온라인으로 녹화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였다. 서면변론서 접수는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되었고, 67팀의 신청팀 중 47팀이 제출하였다.

10월 10일 경연대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ZOOM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재판관님들은 연세대학교 광복관에 모였지만, 본선 진출팀은 ZOOM으로 참여하였다. 본선에 올라온 8개 팀은 오전과 오후 두 번의 경연대회를 진행하였고, 승점제에 따라 승점 점수가 높은 두 팀이 최종 결선에 오르게 되었다. 시상은 최우수상 1팀(600만원)과 우수상 1팀(400만원) 그리고 최우수변론상 1인(100만원) 선정되었다. 그러나 본선진출팀 전원은 사실 모두 승자였다. 47개 팀에서 8팀이 선정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입상을 하지 못한 6개 팀은 팀별로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현황	
신청	67
서면변론서제출	47
본선진출	8
결선	2

3. 코로나19 사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그 계획 시작점에서부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야 했다. 사실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취소해야 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결국은 ZOOM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나, 이 또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화 될 때, 서면심사를 2회 혹은 3회 진행하는 모델도 고려하였고, 최종 결론만 대면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운영위는 본 대회의 취지를 고려하여 ZOOM으로 경연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이와 유사한 대회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였고, 공정성을 위해 여러 개의 화면을 활용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ZOOM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었으나, 경연대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4. 문제 출제

모의재판의 문제는 이미 1월에 의뢰가 되었었다. 국제법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추천을 받고 여러

논의 걸쳐 한 분에게 의뢰를 하였다. 출제된 문제를 기존 출제자들이 한 번 검토하였고, 문제를 개선하였다.

출제된 문제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었다. 정답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실 양방향에서 주장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서면 변론서는 상당히 잘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제법학 수업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학부생들이었다.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한 학생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

5. 워크샵

8월 28일 워크샵은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김성원 교수님은 모의재판 대회를 전체적으로 개관하며 핵심 사안을 설명해주셨다. 필자는 이번에 바뀌게 된 승점제를 중심으로 경연대회 규칙을 설명하였다. 박현석 교수님은 변론서 작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안을 설명해주셨다. 또, 2019년 최우수상 수상팀의 김민수 학생과 2016년 최우수상 수상팀의 장석우 학생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6. 모의재판 규칙

올해에는 모의재판 규칙에 변경이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경연대회를 대면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기 위함도 있었지만, 구두변론을 총점제가 아니라 승점제로 바꾼 것이 규칙 변경의 핵심 사안이었다. 총점제를 고수할 경우 서면평가 점수와 두 번의 구두 변론 총점을 합하게 되는데, 두 번의 구두 변론에서 1승 1패한 팀이 2승한 팀에 비하여 총점이 높아서 혹 부당하게 느끼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아직까지 본 국제법 모의재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 운영위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채점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8.1.3** 구두변론은 승점제로 한다. 구두변론의 승점이 동점일 경우 총점 점수로 승자를 결정한다. 총점 점수는 변론서 점수와 구두변론 점수의 합으로 결정된다. 경연(본선과 결선 포함)의 평가 기준은 변론서 점수와 구두변론 점수의 비율을 1:2로 한다.

7. 변론서 심사위원과 재판관

변론서 심사위원은 해당 문제에 전문성을 갖는 3인으로 구성되어, 변론서를 함께 논의하여 평가하였다. 본선 재판관은 정동은 전 대사님, 박병도 교수님, 정진석 교수님, 소병천 교수님, 김상걸 박사님, 김성원

교수님, 백범석 교수님, 이기범 박사님, 김원희 박사님, 이혜영 박사님, 이재강 변호사님, 장석영 박사님이 수고해주셨다. 결선 재판관으로는 장신 교수님, 최태현 교수님, 이근관 교수님, 이성덕 교수님, 안국현 외교부 국제법규과장님이 수고해주셨다. 이들 모두 국제법의 전문가이시며, 본 모의재판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분들이었다.

8. 나아가며

국제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이 있다.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변호사시험에 비중이 높은 과목에 집중하여, 국제법과 같은 선택과목은 관심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모의재판을 보니 국제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로스쿨에서는 국제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학부와 대학원생 사이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와 같은 공모전에 더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67개 팀이 신청하고 47개 팀이 변론서를 제출한 것은 달리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한편, 변호사가 될 로스쿨 학생들도 국제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소양은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은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일본과 여타 서양 국가들이 국제법을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국제법도 과연 법인지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다. 그것은 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에 달린 사안이다.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정치적인 영역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약자일수록 법을 잘 알아야 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점은 공통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제법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라며, 후기를 줄이도록 하겠다.

I. 조약체결 및 국제회의 동향

• 2020년 3/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121
• 2020년 3/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122

2020년 3/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I. 2020년 3/4분기 신규 발효조약 목록

○ 2020년도 7-9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조약 중 발효된 조약은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 고시류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II. 조약별 개관

1.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07월 18일 비슈케크에서 서명
- 발효일: 2020년 08월 27일 (조약 제2460호)
- 관보게재일: 2020년 10월 05일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항공당국의 명칭을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의 항공당국의 명칭을 교통통신부에서 교통도로부로 변경함
-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일방적 운항은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간 합의 후 항공당국의 승인에 의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III. 고시류 조약

1.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 각서교환일자 및 장소: 2020년 01월 05일 / 2020년 01월 05일 카이로에서 교환
- 발효일: 2020년 07월 01일 (고시 제931호)
- 관보게재일: 2020년 07월 15일

2.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20년 08월 27일 나이로비에서 서명
- 발효일: 2020년 08월 27일 (고시 제933호)
- 관보게재일: 2020년 09월 16일

2020년 3/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I. 2020년 3/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목록

○ 2020년도 3/4분기 대한민국 정부가 신규로 가입한 다자조약은 다음과 같다.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II. 협약 개관

1.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발효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2년 06월 24일 (베이징에서 채택)
- 발효일 : 2020년 04월 28일
- 기탁처 : WIPO 사무총장

● 우리나라 관련사항
- 가입서 기탁일 : 2020년 04월 22일
- 발효일 : 2020년 07월 22일
- 관보게재일 : 2020년 07월 21일

● 주요내용
-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특별히 부여된 배타적 권리 및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에 관해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부여함
-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에 대해 인격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방송권 등의 권리를 향유함.
- 이 조약상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실연이 고정된 연도의 말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50년의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함.
- 체약당사자는 실연자의 실연과 관련해서 실연자에게 허락받지 않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함.

2.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발효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 (파리에서 채택)
- 발효일 : 2018년 07월 01일
- 기탁처 : OECD 사무총장

●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20년 05월 13일
- 발효일 : 2020년 09월 01일
- 관보게재일 : 2020년 08월 31일

● 주요내용
- 이 협약은 둘 이상의 당사국 사이에 시행 중이고, 그러한 각 당사국이 이 협약의 적용 대상

이 되기를 희망하는 협정으로 기탁처에 통보한 대상조세협정을 수정하기 위한 것임.

-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할 때 대상조세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경우,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대상조세협정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함.
- 납세자는 한쪽 또는 양 체약지역 모두의 조치가 대상조세협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조치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한쪽 체약지역이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지역 기업의 이윤을 그 한쪽 체약지역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 포함된 이윤이 두 기업 간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 설정되었을 조건이었을 경우 그 한쪽 체약지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지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부과된 세액에 적절한 조정을 하도록 함.
- 이 협약은 다섯 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에 시작되는 3개월의 기간 만료 후 다음 달 1일에 발효됨.

II. 논문 및 연구보고서

•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상 전통지식의 이용 및 보호
/ 김두수 127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상 전통지식의 이용 및 보호

김 두 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I. 머리말

2010년 10월 29일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부속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1]는 현재 비준국이 128개국이며,[2] 북한도 2019년 10월 1일 동 의정서에 비준하여 2019년 12월 30일부터 당사국이 되었다. 동 의정서의 비준은 처음에는 유전자원이 풍부한 제공국 입장에 있는 개도국들 및 최빈개도국들이 적극적이었으나, 현재는 이용국 입장의 선진국들도 다수 비준하게 되었다. 동 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이용하는 이용자는 관련 국가의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한 법제상의 규제를 받는다.[3] 따라서 이용자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의 개별 ABS 법제에 관하여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의정서의 이행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사항들[4] 중 하나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개념 및 그 보호를 위한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나아가 현재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추가적인 논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아래에서는 CBD 및 나고야의정서상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개념과 보호체계, 그리고 WIPO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 공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식 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2) https://absch.cbd.int/ (2020년 12월 1일 최종 접속).

3)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상 완전한 이용국의 입장은 아니지만 이용국의 입장에 가까운 이행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국내이행법인 유전자원법(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17일 제정되어 2018년 8월 18일부터 실질적으로 발효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 대한 영문 안내책자로는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 Guide to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in the Republic of Korea* (Genetic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and Ministry of Environment, 2018)가 있다.

4)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주요 쟁점 사항들에는 국가책임기관 등의 국내이행체계를 위한 국가 관할기관의 지정,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을 승인하는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절차,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공유나 분쟁해결방법 등을 약속하는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이 상업적 이용인지 비상업적 이용인지 여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여부, 처벌의 정도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박영사, 2018), pp.20,24 참조; 또한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상 주요 이용국들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법제 분석과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 대한 비교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3호(2019.11), pp.92-97 참조.

II.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개념과 보호

1. CBD와 전통지식

1) 전통지식의 정의

CBD 및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국제협상 과정에서 전통지식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의 확립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면서도 전통지식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이 없이 조항에서 다룸으로써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CBD 제8조 (j)호는 "국내입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온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보전 및 유지하고, 이러한 지식·기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이들의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5]라고 규정하여,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직접적인 정의 규정은 아니지만, 전통지식의 의미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CBD 제8조 (j)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으로, 본 조항에 의하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온 IPLC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은 존중·보전 및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지식·기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되어야 하며, 그 지식·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은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본 규정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의미와 본 규정의 목적이나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이익 공유'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또는 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 및 이익 공유의 기초적 내용은 CBD 제15조상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6] 그리고 이와 함께 중요한 내용은 CBD와 나고야의정서 양자가 모두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협정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과 다른 점은 이들이 지적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7] '생물다양성'

5) CBD 제8조(현지내 보전) (j)호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j) Subject to its national legislation, respect, preserve and maintain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relevant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promote their wider application with the approval and involvement of the holders of such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and encourage the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6) 그런데 개인과 IPLC를 모두 인정하여 공동의 권리(communal rights)를 인정하는 'CBD 체제'와는 달리, 개인의 권리(individual rights)에 초점을 둔 '지적재산권 체제' 사이에는 고유한 차이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Patricia Birnie, Alan Boyle and Catherine Redgwel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Oxford Univ. Press, 2002), p.139 참조.

7) 각국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한 제품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해당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강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또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들 국가조치가 신규발명품의 특허권을 보장하는 TRIPs협정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최원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 간의 충돌과 조화", 「법학논집」 제19

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CBD나 나고야의정서가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양자는 이익 공유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통상조약의 성질을 가지고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근본적으로는 통상조약보다는 국제환경조약으로서의 성질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양 조약의 목적에 관한 규정인 CBD 제1조와 나고야의정서 제1조를 보아도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양 조약이 공통적으로 생물다양성[8]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9] 및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라는 세 가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자체도 결국은 앞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순기능적으로 활용되도록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 전통지식의 보호 : CBD상 접근(제15조) 및 이익 공유(제19조)

국제사회에서 포괄적 의무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포함하는 생물유전자원은 CBD 제15조에 따라 접근되도록 해야 하고, CBD 제19조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ABS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행체계는 나고야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BD 제15조(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따라 국가는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 자신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대한 국가입법 활동을 수행한다.[10] 그리고 CBD 제19조(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따라 생명공학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및 이익에 대하여 제공자와 이용자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11]

권 제2호(2014.12), p.462 참조.

8) CBD 제2조는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을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해양 및 그 밖의 수중 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 간의 변이성을 말한다.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9) CBD 제2조는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을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0) CBD 제15조(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1. 국가가 자신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입법에 따른다.
2.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체약당사국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이 조와 제16조 및 제19조에 언급된 체약당사국이 제공하는 유전자원은 그 자원의 원산국인 체약당사자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이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4.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경우, 그 접근은 상호 합의된 조건과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5.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그 자원을 제공하는 체약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체약당사국의 사전통고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6.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체약당사국이 제공한 유전자원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를 그 체약당사국의 완전한 참여와 가능한 경우 그 체약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개발·수행하도록 노력한다.
7. 각 체약당사국은 연구·개발의 결과와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그 밖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정체계를 통하여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공유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11) CBD 제19조(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1. 각 체약당사국은 생명공학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이 그러한 연구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가능한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 안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체약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국이 제공한 유전자원에 근거한 생명공학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및 이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초위에서 그러한 당사국의 우선적인 접근을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접근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3.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생명공학에 기인한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한 이전·취급 및 사용의 분야에서 특히 사전통고승인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명시하는 의정서의 필요성과 그 양식을 검토한다.

2. 나고야의정서와 전통지식

나고야의정서는 CBD와 마찬가지로 '전통지식'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모조약인 CBD의 연계 후속조약으로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그리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나고야의정서가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미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이행사항'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율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나고야의정서상 전통지식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은 없으나,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BS)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나고야의정서상의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12] 및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13]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제7조)

나고야의정서 제7조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으로의 접근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들에게 국내법에 따라 IPLC가 보유한 해당 전통지식으로의 접근시 해당 IPLC의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이나 승인 및 그 참여에 따라 접근이 되고,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4] 나고야의정서 제7조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면, 동 의정서 제6조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는 이들 적용대상인 양자의 규율체계가 대부분은 ABS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지만, 보유자인 IPLC라는 특수적인 측면이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갖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고야의정서 제7조는 동 의정서 이행체계상의 핵심적인 내용인 MAT에 기반하여 IPLC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해당 'IPLC'의 'PIC' 또는 '승인 및 참여'와 함께 접근되었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해당 국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시 IPLC가 그 승인에 관여해야 한다는 점이고, 해당 국가는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제5조)

나고야의정서 제5조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5] 이러한 제공

4. 각 체약당사국은 직접 또는 제3항에 언급된 생물체를 제공하는 자신의 관할아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요구하여 그 생물체를 도입하는 체약당사국이 생물체를 다루는 데 필요로 하는 사용 및 안전규정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물체를 도입하는 체약당사국에게 관계되는 특정 생물체의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12) 나고야의정서, 제7조.

13) 나고야의정서, 제5조.

14) 나고야의정서, 제7조
"국내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또는 승인과 참여에 따라 접근되고,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15) 나고야의정서 제5조
"1. 협약 제15조 제3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유전자원 이용 및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
2.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확립된 권리에 관한 국내 입법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상호합의조건에 근거하여 해당 공동체와 공정하고 공평

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공유의 의무는 연성법의 성질을 보여 온 그동안의 국제환경 조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다루는 PIC과 함께 CBD의 핵심 사항이다.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는 CBD 제1조[16]가 규정하고 있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 가지 목적들 중 하나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CBD 제1조와 마찬가지로 나고야의정서 제1조[17]도 그 세 가지 목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과 함께 바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8] 특히 이익 공유를 통하여 CBD는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얻는 이익, 그것이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간에 생물다양성의 부국과 공동체에게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이익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나고야의정서에서 보다 더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이익의 공유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러한 이익을 생성한 관리절차, 과학적 연구절차, 개발절차에 기여한 모든 이들과 공유하여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는 '형평의 원칙'에서도 도출된다.[19]

그러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는 CBD에서의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정책적인 이행과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채[20]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익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다.[21] 그리고 나고야의정서 제5조가 주로 유전자원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만, 특히 동조 '제5항'에서는 IPLC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문맥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제5조 제5항은 제7조와 함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조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조항은 함께 고려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나고야의정서 제5조 제5항은 IPLC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이용될 경우 'MAT'에 따라 'IPLC와의 이익 공유'를 보장하는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 의정서 제5조 제5항은 제7조와 함께 간접적으로 나고

하게 공유되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3. 위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4. 이익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하며, 부속서에 열거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그러한 지식을 보유하는 토착지역공동체들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

16) CBD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추구될 것인 바, 유전자원과 유전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한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기술의 적절한 이전 및 적절한 재원제공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17) 나고야의정서 제1조(목적)
"이 의정서의 목적은,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유전자원과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한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그리고 적절한 기금조성을 포함한 방법 등을 통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이다."

18) CBD 및 나고야의정서의 세 가지 목적의 내용에 관한 고찰에 관하여는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의 법적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7.11), p.163 참조.

19) 토마스 그레이버 외, 「나고야의정서 해설서」 (국립생물자원관, 2014), p.94.

20) 김두수, *supra* note 18, p.159 참조.

21) CBD 제15조 7항
"7. 각 체약당사국은 연구·개발의 결과와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그 .밖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정체계를 통하여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공유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야의정서 하에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은 이러한 지식을 개발한 해당 'IPLC의 소유'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문맥에서 주권 국가인 당사국이 아닌 '오직 IPLC와의 이익 공유'를 구상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를 따르고 있다.[22]

III.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논의 동향

1. 이용과 출처 공개

1)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

출처표시 의무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있어서 WIPO 회원국들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개도국은 출처공개 의무화에 대해 특허출원시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명세서에 기재하고, PIC과 정당한 이익공유의 증거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심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출원 자체가 취소되어 더 이상 특허심사가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특허출원인 및 특허청의 부담, 혁신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 논의의 의의

전통지식은 과거에는 국제사회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해 왔으나,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원칙이자 규범으로 확립되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이용자에 대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여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3]

3) 국가재량과 혼선의 발생

현재 나고야의정서는 '출처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국가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어, 제공국 입장과 이용국 입장에 따라 규정이 달라 국가마다 출처공개 여부가 상이하므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특허 출원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를 요구하는 제공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해당 국가의 ABS 법제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24]

2. WIPO의 논의

WIPO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를 국제규범화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2019년 WIPO 제40차 '지적재산권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속(민간전승) 정부간위원회(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를 위해 국제문서초안("지적재산권과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법률문서초안, Draf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22) 이와 동일한 견해에 관하여는 M. Buck and C. Hamilton,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0(1), 2011, p.48 참조.

23) 여기에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란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시 제공국이나 원산지 등 출처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24) 예를 들면, 인도와 같은 유전자원 부국은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상용화나 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연관된 특허출원시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특허법(Patent Amendment Act, 2005) 제25조 참조.

Resources)이 제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본 국제법률문서의 목적은 첫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관련된 특허제도의 효능정도, 투명성 및 질을 향상시키고, 둘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신규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창의적이지 않은 발명에 대해 특허가 잘못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25]

2) 개념 정의

본 국제법률문서는 용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신청인'(Applicant)이란, 해당 법률에 따라 특허권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거나 해당 신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기소하는 다른 사람으로서 국가 관할 사무소(Office)의 기록을 보여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② '신청'(Application)이란 특허를 부여받기 위한 신청을 의미한다. ③ '체약 당사국'(Contracting Party)은 이 국제법률문서에 대한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를 의미한다. ④ '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는 해당 유전자원을 현지 내(*in situ*)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⑤ '[중요하게/직접적으로] 기초하여'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청구된 발명의 개발에 필요하거나 중요하게 작용했어야 하고, 청구된 발명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특정한 특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⑥ '유전물질'은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기타 기능적 유전 단위를 포함하는 기원의 물질을 의미한다. ⑦ '유전자원'[26]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지는 유전물질을 의미한다. ⑧ '현지 내 상태'(*in situ* conditions)는 유전자원이 생태계와 자연서식지 내에 존재하고, 길들여지거나 재배된 종의 경우에 그 '고유한 특성을 개발한 환경'에서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⑨ '사무소'(Office)란 특허의 부여를 위탁받은 체약 당사국의 해당 당국을 말한다. ⑩ 'PCT'는 1970년 특허협력조약(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1970)을 말한다. ⑪ '유전자원의 공급원천'은 신청자가 연구센터, 유전자은행,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관한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의 다자체제, 또는 기타 유전자원의 현지 외 수집(*ex situ* collection)이나 저장소와 같은 유전자원을 획득한 모든 공급원천을 말한다. ⑫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공급원천'이란 신청자가 과학문헌,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특허 출원 및 특허 간행물과 같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획득한 모든 공급원천을 말한다.[27]

3) 출처공개 요건

특허 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중요하게/직접적으로] 기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각 체약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①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IPLC, 또는 ② 관련 정보가 신청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의 관련 전통지식의 공급원천[28]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본 국제법률문서 제3.1조 및 제3.2조의 정보가 신청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각 체약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그 효력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다.[29]

그리고 각 체약 당사국의 사무소(Offices)는 특허 신청인에게 출처공개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허 신청인이 제3.1조 및 제3.2조에 언급된 최소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잘못되었거나 부정확한 출처공개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25) 국제법률문서초안, 제1조.
26) '유전자원'의 개념 정의는 CBD의 문맥에 따라 이해되는 용어에 따른 것으로 인간유전자원을 포함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하였다.
27) 국제법률문서초안, 제2조.
28) 국제법률문서초안, 제3.2조.
29) 국제법률문서초안, 제3.3조.

야 한다.[30] 체약 당사국은 사무소에 출처공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31] 나아가 체약 당사국은 출처공개된 정보를 '기밀정보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한 특허 절차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32]

4) 예외 및 제한

본 국제법률문서 제3조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체약 당사국은 특별한 경우에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예외 및 제한'을 채택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정당한 예외 및 제한이 동 국제법률문서의 이행 또는 다른 국제조약과의 상호 지원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33]

5) 불소급의 원칙

본 국제법률문서는 불소급의 원칙을 도입하여, 체약 당사국이 체약 당사국의 비준 또는 가입 이전에 존재하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체약 당사국이 동 국제법률문서에 대한 비준 또는 가입 이전에 제출한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동 국제법률문서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34]

6) 제재 및 구제

본 국제법률문서는 제재 및 구제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서, 체약 당사국은 신청인이 동 국제법률문서 제3조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를 취하되,[35] 신청인에게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구제책을 지시하기 전에 제3조에 기술된 최소정보를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36] 결국 중요한 것은 특허 취소[37]를 위한 출처공개 불이행에 대한 해당자의 '부정한 의도'[38]의 존부 증명과 이러한 부정한 의도에 대한 국가 내 분쟁해결제도의 마련[39]이라고 볼 수 있다.

7) 정보관리체계

본 국제법률문서는 체약 당사국들의 특허 출원 관련 정보관리체계(Information Systems)들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 총회(Assembly)가 주도하고 '하나 이상의 기술실무그룹'(technical working groups)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체약 당사국 총회가 '의무적'으로 기술실무그룹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으로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 정보관리체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체약 당사국들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정보관리체계(DB 등)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40] 다만 체약 당사국들에게 정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그리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갖춘 정보관리체계는 특허 출원의 검색 및 조사를 위해 사무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41] ③ 그리고 이러한 정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국제법률문서 체약 당사국 총회는 '하나 이상의 기술실무그룹'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는 정보관리체계 내용(content)의 최소 상호 운용성 표준 및 구조의 개발과[42] 전통지식에 관한 관련 정보공유에 관한 원칙들 및 양식들의 개발을 위함이다.

30) 국제법률문서초안, 제3.4조.
31) 국제법률문서초안, 제3.5조.
32) 국제법률문서초안, 제3.6조.
33) 국제법률문서초안, 제4조.
34) 국제법률문서초안, 제5조.
35) 국제법률문서초안, 제6.1조.
36) 국제법률문서초안, 제6.2조.
37) 국제법률문서초안, 제6.3조.
38) 국제법률문서초안, 제6.4조.
39) 국제법률문서초안, 제6.5조.
40) 국제법률문서초안, 제7.1조.
41) 국제법률문서초안, 제7.2조.
42) 국제법률문서초안, 제7.3조 (a).

8) 유보 불허

동 국제법률문서는 유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43] 체약 당사국들의 강한 결속을 요할 뿐 아니라, 어느 하나의 규정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어느 한 규정에 대하여 유보를 허용하는 경우 조약 전체의 통일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출처공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의의

나고야의정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중요 이슈 중 하나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인데, 나고야의정서에서는 특허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들의 관심도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인해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고, 국가에 따라서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특허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특허에 대한 권리를 제공국에 귀속시키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특허법 체계와는 차별화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더불어 전통지식 관련 특허가 중요한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변화를 숙지하여 특히 해외 교역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44]

IV.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나고야의정서의 국제적 이행으로 유전자원 제공국의 영향이 커질 경우 출처공개가 우선 고려될 가능성도 충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점과 달리 기존의 국내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화의 공개 여부와는 조금 논점이 다른데, 즉 정부가 이미 관련 전통지식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일정한 측면에서는 일면 출처 공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전통지식의 '일부공개 또는 부분 공개'는 필요한 듯 보인다.

특히 전통지식의 소유자의 권리를 투명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용자의 이용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을 유전자원등록처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과 같이 전통지식도 유전자원등록처나 또는 일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WIPO 국제법률문서 초안에서와 같이 출처 공개시 '전통지식의 성질이나 특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 아닌 전통지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고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체약국 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처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지식의 목록화나 분류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는 있을 것이다.

43) 국제법률문서초안, 제18조.

44) 강명수,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 관련 특허: 한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1호(2017.3), p.166.

III.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유엔 문서

- 총회 139
- 안전보장이사회 140
- 인권이사회 141
- 사무총장 145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국제사법재판소 147
- 국제해양법재판소 168
- 상설중재재판소 177
- 국제형사재판소 182

총 회

I. 주요 결의

제75차 유엔총회 회기 중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 초 사이에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 국제형사재판소 보고서에 관한 결의
- 코로나19 대응 총회 특별회기에 관한 결의
- 글로벌공급망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선원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II. 주요 내용

1. 국제형사재판소 보고서에 관한 결의 (Resolution 75/3.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ES/75/3)

2020년 11월 2일, 유엔 총회는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불처벌 종식과 인권 증진 역할을 인정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피고인 체포와 관련해 각국이 재판소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총회는 또한 ICC로마규정에 가입한 123개국에 환영 의사를 표하고,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게 지체없는 가입을 촉구했다. 총회는 아울러 2020년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ICC로마규정 당사국총회에서 새로운 소추관(Prosecutor)과 6명의 새로운 재판관 선출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2. 코로나19 대응 총회 특별회기에 관한 결의 (Resolution 75/4.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A/RES/75/4)

2020년 11월 5일, 유엔 총회는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3일과 4일에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 수준의 고위급 특별 세션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총회는 또한 개막식 부분에 총회 의장, 사무총장,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비동맹운동(NAM) 의장의 성명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총회는 아울러, 이번 특별회기에 일반토론 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관련 유엔 기관장의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3. 글로벌공급망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선원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Resolution 75/17.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challenges faced by seafarers as a result of the COVID-19 pandemic to support global supply chains, A/RES/75/17)

2020년 12월 1일, 유엔 총회는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글로벌공급망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선원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각국 정부가 선원의 여행 및 송환 노력을 가속화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 선원의 교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 총회는 또한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기간 동안 안전한 선원 교대 및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의정서를 이행할 것을 장려했다.

안전보장이사회

I. 주요 결의

2020년 9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 리비아 상황 관련 결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상황 관련 결의

II. 주요 내용

1. 리비아 상황 관련 결의 (The situation in Libya, S/RES/2542 (2020))

2020년 9월 15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 상황 관련 결의를 채택하고 유엔 리비아지원단(UNSMIL)의 임무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찬성 13, 기권 2, 반대 0). 안보리는 또한 리비아지원단에게 국가 주인의식 원칙(the principles of national ownership)에 따라 완전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설명했다. 여기에는 '리비아정치협정'의 이행 촉진, 분쟁 후 지역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 지원, 인권 및 인도법 위반 모니터링 및 보고, 그리고 요청시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대응 지원 제공 등이 포함된다.

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상황 관련 결의 (The situat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S/RES/2552 (2020))

2020년 11월 12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상황 관련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유엔평화유지군(MINUSCA)의 임무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MINUSCA의 임무와 관련하여 민간인에 대한 보호, 평화 프로세스 지원, 선거 준비 등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안보리는 또한 MINUSCA의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무장단체의 존재와 그들이 야기하는 위협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정치·안보·제도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유지했다.

참고: 안보리 채택 결의 목록 (2020.09~2020.11)

S/RES/2552 (2020)	12 November 2020	The situat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S/RES/2551 (2020)	12 November 2020	The situation in Somalia
S/RES/2550 (2020)	12 November 2020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udan and South Sudan
S/RES/2549 (2020)	5 November 2020	The situat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S/RES/2548 (2020)	30 October 2020	The situation concerning Western Sahara
S/RES/2547 (2020)	15 October 2020	The question concerning Haiti
S/RES/2546 (2020)	2 October 2020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RES/2545 (2020)	25 September 2020	Identical letters dated 19 January 2016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Colombi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2016/53)
S/RES/2544 (2020)	18 September 2020	UNITAD
S/RES/2543 (2020)	15 September 2020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S/RES/2542 (2020)	15 September 2020	The situation in Libya

인권이사회

I. 주요 결의

인권이사회 제45차 정기회기(2020.9.14.~2020.10.7.)에서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2020년 벨라루스 대통령선거 전후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
- 베네수엘라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
-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의 증진에 관한 독립전문가 위임에 관한 결의
- 인권과 개별적 강제조치에 관한 결의
-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2020년 벨라루스 대통령선거 전후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 (Resolution 45/1.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Belarus in the run-up to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and in its aftermath, A/HRC/RES/45/1)

2020년 9월 18일, 인권이사회는 2020년 벨라루스 대통령선거 전후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벨라루스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의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인권이사회는 본 결의를 통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2020년 대통령선거 관련하여 벨라루스의 인권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연말까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찬성 23, 반대 2, 기권 22)

2. 베네수엘라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 (Resolution 45/20.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A/HRC/RES/45/20)

2020년 10월 6일, 인권이사회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모든 국제인권법 위반과 인권 침해를 강력히 비난하고, 베네수엘라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이전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베네수엘라가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및 독립국제사실조사단(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이 제시한 권고사항을 완전하게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이사회는 본 결의를 통해 독립국제사실조사단의 수임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찬성 22, 반대 3, 기권 22)

[참고] 유엔 베네수엘라 인권상황 보고서 관련 국내외 반응

* 출처: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2020.9.21.)

2019.9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요청으로 베네수엘라 인권 상황을 조사해온 독립 국제 사실조사단(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은 2020.9.16 “베네수엘라 인권 상황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 베네수엘라에서 납치, 강금, 고문, 살해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및 국제 범죄가 발생해 왔으며,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들은 인도에 반

1) 유엔인권이사회의 정기회기는 1년에 최소 3회 이상, 기간은 1년에 최소 10주 이상 개최된다.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4주간), 6월(3주간), 그리고 9월(3주간)에 정기회기를 개최하며, 특별회기는 이사국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횟수에 제한 없이 개최된다.

하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마두로 대통령, 내무장관, 국방장관 등 베네수엘라 고위급 인사들이 관여되어 있다고 결론내린바 있음.

상기 "베네수엘라 인권 상황 보고서"* 관련 주요 반응 및 국제컨택그룹(ICG: International Contact Group Venezuela)의 공동선명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베네수엘라 유엔 인권 보고서에 대한 주요 반응

○ 마두로 정권 주요 인사들은 상기 보고서는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사주하여 편향되게 작성된 것이라고 비난함.

- Jorge Arreaza 외교장관은 거짓으로 가득차 있는 금번 보고서는 어떠한 정밀한 방법론에 근거하지도 않았고, 베네수엘라에 적대적인 허구의 대표단 및 미국에 종속된 국가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인권을 정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

· 2019.12.2 우리는 이념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화되고 취조적인 활동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강조

- Diosdado Cabello 제헌의회 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금전적인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를 정치적인 승리로 포장하여 활용하려는 의도라 주장

○ 반면, 과이도 국회의장 등 베네수엘라 야권은 상기 보고서를 적극 홍보하면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강화중임.

- 과이도 국회의장은 금번 보고서는 마두로 정권이 초래한 국민들의 고통을 전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을 제공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 정부 관계자, 인권운동가들에게 감사하며, 잔혹한 독재정권의 공격에 저항해온 국민들을 유엔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 또한, 정의와 자유 회복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며, 베네수엘라 군대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은폐하고 공모자가 될 것인지, 민주적 전환에 동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미국 및 주요 국제기구도 유엔 보고서에 기술된 베네수엘라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미 국무부 Michael Kozak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마두로 정권이 자행한 인도주의에 반하는 끔찍한 범죄 행위들을 기술하고 있는 바, 전세계가 이러한 잔학 행위들을 종식시키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언급

- OAS는 사무국 명의 성명을 통해, 보고서에 기술된 인권 침해 범죄 사실들 및 국제형사재판소 형사 절차 진행 권고 등 보고서 내용들을 지지하며, 개개인의 생사에 관련된 인권 사안인 만큼 지체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

· 또한, 야권을 탄압·제거하는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한 정권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바, 국제사회는 부정 선거를 통해 정권이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

-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베네수엘라 당국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베네수엘라측의 12.6 선거에 참관단 파견 초청을 수용할 것인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유엔은 총회 또는 안보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참관단을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2) 국제컨택그룹(ICG: International Contact Group Venezuela) 공동성명 발표

○ ICG 국가들은 9.17 장관급 화상회의 개최 후, 베네수엘라 12월 선거에 대한 입장 및 상기

유엔 인권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담은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ICG 회원국들은 베네수엘라 위기 해결의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오직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며 공정한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를 통한 평화적·민주적 방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함.
- ICG 회원국들은 국제 기준에 맞는 선거 요건 보장 및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신뢰할 만한 협상 진행을 촉구하며, 최근 정치범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여타 범죄인들에 대한 석방도 요구함.
- 현재로서 베네수엘라 선거는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보며, 의미 있는 선거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할 것임.
- 베네수엘라측이 국제사회에 베네수엘라 선거 참관단 파견을 요청한 것은 환영하지만, 현재 선거 일정상 참관단 파견을 위한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요건 보장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시간 및 정치적 공간도 부족함.
- 또한, ICG 회원국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베네수엘라의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인도적 지원 관련 인적·물적 접근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함.
- 한편, 유엔 인권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유엔 OHCHR 및 조사단의 노력을 지지하며, 금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

○ 한편, 마두로 정권은 상기 공동성명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정신과 상반되는 개입주의적인 것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베네수엘라는 ICG내 어떠한 국가보다도 엄격한 선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3.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의 증진에 관한 독립전문가 위임에 관한 결의 (Resolution 45/4. Mandate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promotion of a democratic and equitable international order, A/HRC/RES/45/4)

2020년 10월 6일, 인권이사회는 결의 45/4 채택을 통해 주제별 특별절차 중 하나인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의 증진에 관한 독립전문가'의 위임을 갱신하고, 활동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이사회는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의 증진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2011년 인권이사회 결의 18/6을 통해 처음 설치됐다. (찬성 22, 반대 15, 기권 10)

4. 인권과 개별적 강제조치에 관한 결의 (45/5. Human rights and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A/HRC/RES/45/5)

2020년 10월 6일, 인권이사회는 "인권과 개별적 강제조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개별적 강제조치가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negative impact of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의 위임을 갱신하고, 활동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본 특별절차는 2014년 인권이사회의 결의 27/21을 통해 처음 설치됐다. (찬성 27, 반대 5, 기권 5)

5.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 (45/7.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A/HRC/RES/45/7)

2020년 10월 6일,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를 투표없이 채택하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 이해관계자 간

의 협력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특히, 지방정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지방정부와 지방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작용과 지식 교환을 장려했다.

[참고] 제45차 유엔 인권이사회, 우리 정부 주도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 컨센서스 채택
* 출처: 주 제네바 대표부(2020.10.07.)

제4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상정한 "지방정부와 인권(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결의를 10.6.(화)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습니다. 동 결의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포함한 4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범지역적 지지 하에 채택되었습니다.

백지아 대사는 결의안 소개 발언을 통해, 인권 보호·증진에 있어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을 바탕으로 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동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는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주도하여 채택된 첫 번째 결의로서, 2013년 최초 채택된 이래 올해까지 총 5차례 컨센서스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직전 결의에 비해 1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신규 참여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인권 보호·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무총장

I. 국제법 관련 보고서

이번호에서는 2020년 9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발표된 국제법 관련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법의 교육·연구·보급 및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유엔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구체적인 행동과 더반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이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세계적 요청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II. 주요 내용

1.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A/75/340, 2020년 9월 9일 배포)

본 보고서는 유엔 총회 결의 74/19의 364항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유엔 총회는 결의 74/19를 통해 사무총장에게 제75차 회기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본 결의의 이행을 포함하여 해양 및 해양법과 관련된 발전 사항과 이슈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을 요청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다루며,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319조에 따라 해양법협약 당사국에도 제출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유엔과 유엔 전문기관, 기금 및 프로그램, 그리고 해양법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 내에서의 해양 및 해양법과 관련된 최근의 주요 발전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국제법의 교육·연구·보급 및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유엔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United Nations Programme of Assistance in the Teaching, Study, Dissemination and Wider Appreciation of International Law, A/75/389, 2020년 10월 13일 배포)

유엔 총회 제75차 회기를 위해 제출된, "국제법의 교육·연구·보급 및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유엔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는 유엔 총회 결의 74/185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고 기간 동안 국제법의 교육·연구·보급 및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유엔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과 2021년에 계획된 활동, 관련 행정 및 재정적 영향 등을 다루고 있다.

3.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구체적인 행동과 더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이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세계적 요청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A global call for concrete action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and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and follow-up to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75/561, 2020년 10월 30일 배포)

본 보고서는 유엔 총회 결의 74/137에 따라 유엔 총회 제75차 회기에 제출됐다. 보고서에서 사무총장은 인종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더반 선언 후속조치 메커니즘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이 취한 조치의 예를 설명했다. 사무총장은 고착된 구조적·체계적 인종주의와 인종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정치적 의지와 보다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사무총장은 특히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직면해 있는 집단과 지역사회에 인종차별의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권고했다.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 *1955년「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위반 협의 (이란 v. 미국)* 사건, 선결적 항변에 관한 공개심리 종결 및 심의 시작

2020년 9월 21일, *1955년「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위반 협의 (이란 v. 미국)* 사건에 대한 공개심리가 종결됐다. 본 사건의 공개심리는 2020년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렸다. 본 심리는 미국의 선결적 항변에 따른 것이다. 재판소는 공개심리를 종결하고 이제 심의를 시작한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7월 17일, 이란은 미국이 1955년「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에 사건을 신청하였고, 동시에 미국이 5월 8일 제재조치를 포함한 모든 제재 조치의 이행 및 집행을 중단할 것을 골자로 하는 잠정조치 지시를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2018년 10월 3일, 재판소는 이란의 잠정조치 지시 요청에 대해 이란이 주장하는 특정 권리의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취할 것과 분쟁을 심화시키거나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을 양 당사국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지시 명령을 내렸다. 2019년 8월 23일, 미국이 재판소의 관할권 및 소의 수리가능성에 대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소규칙 제79조 제5항에 근거해 이 사건의 본안 절차는 정지됐다.

〈 관련보도자료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 Twitter Account: @CIJ_ICJ YouTube Channel: CIJ ICJ
LinkedIn pag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20/28
21 September 2020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lusion of the public hearing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ourt to begin its deliberation

THE HAGUE, 21 September 2020. The public hearing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case concerning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luded today. The Court will now begin its deliberation.

On 16 July 2018,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nstituted proceedings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with regard to a dispute concerning alleged violations of the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which was signed in Tehran on 15 August 1955 and entered into force on 16 June 1957 ("the 1955 Treaty"). On 23 August 2019,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iled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Pursuant to the Rules of Court,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of the case were suspended.

The hearing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re held at the Peace Palace, the seat of the Court, from 14 to 21 September 2020. During the hearings,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led by Mr. Marik A. String, Acting Legal Advise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as Agent, Counsel and Advocate; and the delega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as led by Mr. Hamidreza Oloumiyazdi, Head of the Centre for International Legal Affair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ssociate Professor of Private Law at Allameh Tabataba'i University, Tehran, as Agent and Advocate.

Requests of the Parties

At the end of the hearings, the Agents of the Parties presented the following requests to the Court: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For the reasons explained during these hearings and any other reasons the Court might deem appropriat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quests that the Court uphold the U.S. preliminary objections set forth in its written submission and at this hearing and decline to entertain the case. Specificall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quests that the Court:
>
> *(a)* Dismiss Iran's claims in their entirety as outside the Court's jurisdiction.

(b) Dismiss Iran's claims in their entirety as inadmissible.

(c) Dismiss Iran's claims in their entirety as precluded by Article XX, paragraph 1 (b) of the Treaty of Amity.

(d) Dismiss Iran's claims in their entirety as precluded by Article XX, paragraph 1 (d) of the Treaty of Amity.

(e) Dismiss as outside the Court's jurisdiction all claims,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the Treaty of Amity, that are predicated on third country measures."

For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respectfully requests that the Court:

(a) reject and dismiss the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b) adjudge and declare:

(i) that th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entirety of the claims presented by Iran; and

(ii) that Iran's claims are admissible."

The Court's decision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will be delivered at a public sitting, the date of which will be announced in due course.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ress releases Nos. 2018/34 of 17 July 2018, 2018/37 of 25 July 2018, 2018/43 of 30 August 2018, 2018/50 of 3 October 2018 and 2019/34 of 30 August 2019,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complete verbatim records of the hearings held from 14 September 2020 to 21 September 2020 are published on the website of the Court (www.icj-cij.org).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rough judgments which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 *콩고민주공화국 영토 내 군사활동 (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 전문가 감정 결정

2020년 9월 22일, ICJ는 *콩고민주공화국 영토 내 군사활동 (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에 대해 ICJ규칙 제67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9월 8일자 명령을 통해 본 사건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결정했다.

이 사건의 진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 12월 19일자 ICJ의 본안 판결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ICJ는 이 판결에서 우간다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상 의무 및 국제법상 여타 의무, 국제관계에서의 무력사용금지원칙과 불간섭원칙의 위반으로 인한 콩고민주공화국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는 한편, 콩고민주공화국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우간다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본 판결에서 ICJ는 양 당사국이 배상 문제에 관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ICJ가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후절차에 맡겨 뒀다.

2015년 5월 13일 콩고민주공화국은 ICJ에 배상 문제의 결정을 요청하며 "ICJ에 대한 새로운 청구"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ICJ는 2015년 7월 1일자 명령에서 비록 양 당사국이 보상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배상 문제에 관한 절차의 재개를 결정했다. 2016년 9월과 2018년 2월 양 당사국은 배상 문제에 관한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2020년 9월 8일자 명령에서, 재판소는 특히 (1)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당사국들을 심리한 후에 법원의 명령을 통해 4인의 독립 전문 감정인을 지명하기로 하고, (2) 2005년 판결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우간다가 국제 의무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콩고민주공화국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기 위해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 범위를 계속 조사하지만, 손해의 일부, 즉 인명 피해, 천연자원 피해,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ICJ규칙 제67조 제1항에 따라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봤다.

본 명령에 따라, 전문가는 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고 사무국에 제출하며, ICJ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당사국에게 통보되고, 당사국은 논평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참고] RULES OF COURT (1978)
Adopted on 14 April 1978 and entered into force on 1 July 1978

Article 67

1. If the Court considers it necessary to arrange for an enquiry or an expert opinion, it shall, after hearing the parties, issue an order to this effect, defining the subject of the enquiry or expert opinion, stating the number and mode of appointment of the persons to hold the enquiry or of the experts, and laying down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Where appropriate, the Court shall require persons appointed to carry out an enquiry, or to give an expert opinion, to make a solemn declaration.
2. Every report or record of an enquiry and every expert opin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parties, which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of commenting upon it.

제67조
1. 재판소는 조사 또는 감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을 심리한 후에 이를 위한 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에는 조사 또는 감정의 대상을 한정하고 조사인 및 감정인의 수와 임명방법을 명시하고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한다. 재판소는 적절한 경우에는 조사인과 감정인이 엄숙한 선서를 하도록 요구한다.
2. 모든 조사보고 또는 조사기록과 모든 감정의견은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며, 당사자들은 그에 대하여 논평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비공식 한글 번역)

〈 관련보도자료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 Twitter Account: @CIJ_ICJ YouTube Channel: CIJ ICJ
LinkedIn pag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20/29
22 September 2020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The Court to arrange for an expert opinion

THE HAGUE, 22 September 2020.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decided, by an Order dated 8 September 2020, to arrange for an expert opin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7, paragraph 1, of its Rules, in the case concerning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It is recalled that, in its Judg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delivered on 19 December 2005, the Court found that Uganda had violated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and that it had violated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as an occupying Power in the

Congolese province of Ituri. The Court found at the same time that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had for its part violated obligations owed to Uganda under the 1961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rties were under an obligation to one another to make reparation for the injury caused. It also decided that, failing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question of reparation due to each of them would be settled by the Court, in a subsequent procedure in the case.

Having received a request from the DRC on 13 May 2015 to determine the amount of reparations owed by Uganda, the Court,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Parties had been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in that respect, decided, by an Order of 1 July 2015, to resume proceedings in the case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reparations. In September 2016 and February 2018, the Parties filed their Memorials and Counter-Memorials on the question of reparations. Following the filing of these pleadings, the DRC and Uganda also submitted their responses to the questions addressed to them by the Court as well as comments on the responses of the other Party.

In its Order of 8 September 2020, the Court decides, *inter alia*, that

> "(1) An expert opinion shall be obtained, which will be entrusted to four independent experts appointed by Order of the Court after hearing the Parties.
>
> (2)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reparation owed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by Uganda for the injury caused as a result of the breach by Uganda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s determined by the Court in its 2005 Judgement, the Court continues to examine the full range of claims and defences to the heads of damage claimed by the Applicant. However, with respect to some of these heads of damage, namely loss of human life, loss of natural resources and property damage, the Court considers it necessary to arrange for an expert opin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7, paragraph 1, of its Rules . . ."

The Order provides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experts and further states that experts will prepare and file with the Registry a written report on their findings and that this report will be communicated to the Parties, which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of commenting on it, pursuant to Article 67, paragraph 2, of the Rules of Court.

In its Order, the Court emphasizes that the decision to arrange for an expert opinion in no way prejudges the amount of the reparation due by either party to the other, nor any other question relating to the dispute brought before the Court, and leaves intact the parties' right to adduce evidence and submit their arguments on those subjects,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and the Rules of Court.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Yusuf; *Vice-President* Xue; *Judges* Tomka, Abraham,

Bennouna, Cançado Trindade, Donoghue, Gaja, Sebutinde, Bhandari, Robinson, Crawford, Gevorgian, Salam, Iwasawa; *Judge* ad hoc Daudet; *Registrar* Gautier.

Judges Cançado Trindade and Sebutinde appended separate opinions to the Order of the Court.

Summaries of the separate opinions are annexed to this press release.

The full text of the Order is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ress releases Nos. 1999/34 of 23 June 1999, 2000/24 of 1 July 2000, 2005/11 of 29 April 2005, 2005/26 of 19 December 2005, 2015/18 of 9 July 2015, 2019/11 of 1 March 2019 and 2019/48 of 13 November 2019, which ar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rough judgments which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Annex to Press Release 2020/29

Separate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1. In his Separate Opinion, Judge Cançado Trindade deems it fit to lay on the records the concerns he has been having along the years with the handling of proceedings on reparations in the present case of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R. Congo *versus* Uganda). Along 29 paragraphs, he addresses three interrelated points, namely: first, the relevance of due compliance with the right to reparations; second, the need of prompt compliance with the right to reparations; and third, the relevance of prompt reparations for grave breaches of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 In the case of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reparations, D.R. Congo *versus* Uganda), Judge Cançado Trindade has always opposed postponing again the hearings on reparations in the present case, and his own position has remained a solitary dissenting one; the ICJ's majority rescheduled the oral hearings on reparations on several occasions. Judge Cançado Trindade recalls that already in his Declaration presented in the ICJ's Order of 11.04.2016, in the present case, he expressed his concern with the undue prolongation of time of proceedings (since 2005) as to the due reparations in the *cas d'espèce*. He has remained very critical of the ICJ. He has always been of the understanding that attention to the prolonged suffering of numerous victims stands well above attention to susceptibilities of contending States.

3. Judge Cançado Trindade recalls that he has been insisting within the ICJ upon the need to proceed promptly to the determination of reparations for the grave breaches of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or a long time. The delays by the ICJ so far are unacceptable to him (para. 1). In his own understanding,

> "there is need to move beyond the unsatisfactory inter-State outlook, if one is to foster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the domain of reparations, in particular collective reparations. Prolonged delays are most regrettable,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s. Already the 'founding fathers' of international law went well beyond the strict inter-State outlook, and were particularly attentive to the duty of prompt reparation for

damages" (para. 2).

4. Judge Cançado Trindade considers that the ICJ is not conditioned or limited by what the parties request or want, not even in the fixing of time-limits. As he has been pointing out within the ICJ time and time again, the Court is not an arbitral tribunal. The ICJ is the master of its own procedure, also in the fixing of time-limits, in the path towards the realization of justice, avoiding the undue prolongation of time (para. 20).

5. The ICJ's present Order of 08.09.2020 finally designates four independent experts to assist the Court in the determination of the reparations, as necessary. Judge Cançado Trindade considers that this could and should have been made a long time ago.

6. He proceeds that it is in jusnaturalist thinking — as from the XVIth century — that the goal of prompt reparation was properly pursued. Legal positivist thinking — as from the late XIXth century — unduly placed the "will" of States above *recta ratio*.

7. Judge Cançado Trindade proceeds that, in this respect, there are relevant passages in the significant references of classic works[1]. Such a duty of reparation for injuries was in his view "clearly seen as a response to an *international need*"[2], in conformity with the *recta ratio*, — whether the beneficiaries were (emerging) States, peoples, groups or individuals. The recta ratio provided the basis for the regulation of human relations with the due respect for each other's rights.

8. In the handling by the ICJ of the present case concerning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reparations), it has already been 15 years since the ICJ delivered its Judgment (of 19.12.2005) on the merits, wherein grave breaches were established by the Court. Judge Cançado Trindade reiterates that

> "yet, the numerous victims still wait for reparations. And this is the third time, in the ongoing proceedings on reparations, that I have deemed it fit to leave on the records my concerns as to the

1) Of, e.g., Francisco de Vitoria (Second Relectio — *De Indis*, 1538-1539); Hugo Grotius (*De Jure Belli ac Pacis*, 1625, book II, ch. 17); Samuel Pufendorf (*Elementorum Jurisprudentiae Universalis — Libri Duo*, 1672; and *On the Duty of Man and Citizen According to Natural Law*, 1673); Christian Wolff (*Jus Gentium Methodo Scientifica Pertractatum*, 1764; and *Principes du droit de la nature et des gens*, 1758); among others, such as the pertinent considerations also of Alberico Gentili (*De Jure Belli*, 1598); Francisco Suárez (*De Legibus ac Deo Legislatore*, 1612); Cornelius van Bynkershoek (*De Foro Legatorum*, 1721; and *Questiones Juris Publici — Libri Duo*, 1737) (paras. 16-17).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The more we do research on the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largely forgotten in our hectic days), the more we find reflections on the victims' right to reparations for injuries, — also present in the writings of, e.g., Juan de la Peña I then (*De Bello contra Insulanos*, 1545); Bartolomé de Las Casas (*De Regia Potestate*, 1571); Juan Roa Dávila (*De Regnorum Justitia*, 1591); Juan Zapata y Sandoval (*De Justitia Distributiva et Acceptione Personarum ei Opposita Disceptatio*, 1609) (paras. 16-17).

2) J. Brown Scott, *The Spanish Origin of International Law — Francisco de Vitoria and His Law of Nations*, Oxford/London, Clarendon Press/H. Milford, 1934, pp. 140, 150, 163, 165, 172, 210-211 and 282-283; and cf. also, Association Internationale Vitoria-Suarez, *Vitoria et Suarez: Contribution des théologiens au Droit international moderne*, Paris, Pédone, 1939, pp. 73-74, and cf. pp. 169-170; A.A. Cançado Trindade, "Prefacio", *in Escuela Ibérica de la Paz (1511-1694) — La Conciencia Crítica de la Conquista y Colonización de América* (eds. P. Calafate and R.E. Mandado Gutiérrez), Santander, Ed. Universidad de Cantabria, 2014, pp. 40-109.

continuing and undue prolongation of time, to the detriment of the victims themselves[3]. *Tempus fugit*" (para. 5, *in* para. 14).

9. Judge Cançado Trindade adds that, in its aforementioned Judgment of 2005, the ICJ was particularly attentive to those grave breaches of massacres of civilians, incitement of ethnic conflicts among groups, forced displacement of persons, among others, having drawn attention to the need of reparation, though unfortunately without setting up a reasonable time-limit for that.

10. In the present case, the ultimate beneficiaries of reparations for damages resulting from grave breaches of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determined by the ICJ itself) are the human beings victimized. They are the *titulaires* of the right to reparations, as subjects of the law of nations, as conceived and sustained, in historical perspective, by the "founding fathers" of international law. This is deeply-rooted in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international law. He considers that as *titulaires* of that right, they have, in the *cas d'espèce*, been waiting for reparations for a far too long time; many of them have already passed away. *Justitia longa, vita brevis* (para. 7).

11. It is critical to Judge Cançado Trindade that, to start with, there has been a focus unduly on compensation only, while the Court should address reparations in all their forms; moreover, one cannot refer unduly and only to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individual victims, but it should bear in mind the complexity of the present case of mass murder, of a considerable high number of victims, and the impossibility of identifying them all. In his opinion, focus should be given to collective rather than individual reparations.

12. In this regard, Judge Cançado Trindade adds that lessons should be drawn from the relevant international case-law on collective reparations in cases of massacres, in particular of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ACtHR)[4],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and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13. In effect, Judge Cançado Trindade recalls in his Opinion that breach of rights and the reparation due form an indissoluble whole. He reiterates that the duty of reparation is deeply and firmly-rooted in the history of the law of nations (*droit des gens*), going back to its origins, when it marked presence in the writings of the "founding fathers" of our discipline, who expressly referred to it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neminem*

3) Cf., earlier on, ICJ, case of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R. Congo versus Uganda, Order of 01.07.2015), Declarat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1-7; ICJ, case of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R. Congo versus Uganda, Order of 11.04.2016), Declarat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1-20.

4) Cf., e.g., A.A. Cançado Trindade, *La Responsabilidad del Estado en Casos de Masacres — Dificultades y Avances Contemporáneos en la Justicia Internacional*, Mexico, Edit. Porrúa/Escuela Libre de Derecho, 2018, pp. 1-104; A.A. Cançado Trindade, *Los Tribunales Internacionales Contemporáneos y la Humanización del Derecho Internacional*, Buenos Aires, Edit. Ad-Hoc, 2013, pp. 7-185; A.A. Cançado Trindade, *El Acceso Directo del Individuo a los Tribunales Internacionales de Derechos Humanos*, Bilbao, Universidad de Deusto, 2001, pp. 9-104.

laedere. It is relevant to face new challenges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from an essentially humanist approach", moving "beyond the unsatisfactory inter-State outlook", thus fostering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the domain of reparations, in particular collective reparations".

14. The *reparatio* seeks to avoid the aggravation of the extreme harm already done to the human victims, with a careful attention to *fundamental human values*. In Judge Cançado Trindade's understanding, contrary to what legal positivism assumes, law and ethics are ineluctably interrelated, and this is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a faithful realization of justice (para. 22).

15. This vision has historically marked presence since the very origins of the law of nations (*droit des gens*), and has never been minimized by the more lucid international legal doctrine, untouched by the misleading distortions of legal positivism. Judge Cançado Trindade adds tha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humanity upholding human dignity, of utmost importance, has been asserted in the jurisprudential construction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tribunals[5].

16. The consolidation of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active as well as passive) of individuals,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 adds Judge Cançado Trindade, — enhances accountability at international level for grave violations of the rights of the human person. Individuals are, — he adds, —

> "also bearers of duti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is further reflects the consolidation of their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and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go hand in hand, giving expression to the formation of the *opinio juris communis* to the effect that the gravity of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human person affects directly basic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para. 25).

17. *Justitia longa, vita brevis*; the time of human justice is not the time of human beings. Judge Cançado Trindade states that the lessons of the "founding fathers" of the law of nations (*droit des gens*) remain as contemporary as ever, and forward-looking in our days. The duty of prompt reparation forms part of their perennial legacy. That legacy is to keep being cultivated[6], so as to face new challenges that contemporary international tribunals face in our days, from an essentially humanist approach (para. 27).

18. In Judge Cançado Trindade's own understanding, one is to move beyond the unsatisfactory

5) He more recently addressed this criticism in his recent study "Reflections on the International Adjudication of Cases of Grave Violations of Rights of the Human Person", originally published at the 9 *Journal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egal Studies* (2018) pp. 98-136, — recently presented by him, in French, as a *magna* lecture at the Law Faculty of the Université Aix-Marseille, in Aix-en-Provence, France, on 30.10.2018, followed by the second lecture, in English, ministered at the Peace Pala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e Hague, on 17.01.2019.

6) On that legacy, cf., recently, A.A. Cançado Trindade, *A Humanização do Direito Internacional*, 2nd. rev. ed., Belo Horizonte/Brazil, Edit. Del Rey, 2015, ch. XXIX ("The Perennity of the Teachings of the 'Founding Fathers' of International Law"), 2015, pp. 647-676.

inter-State outlook, if one is to foster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the domain of reparations, in particular collective reparations. Prolonged delays are most regrettable,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s, and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ce*.

Separate opinion of Judge Sebutinde

Judge Sebutinde is of the opinion that this is not a proper case for the Court to appoint experts under Article 50 of the Statute of the Court and Article 67 of the Rules of Court as it is not a case involving "complex issues" that require technical, scientific or specialized knowledge or expertise that is outside the realm of normal judicial expertise. Judge Sebutinde recalls that in accordance with the well-settled principle of *onus probandi incumbit actori*, it is the duty of the party that asserts certain facts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such facts. Since 13 May 2015, whe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filed its "New Application" requesting the Court to reopen proceedings in order to determine the amount of reparations due to it from the Republic of Uganda, both Parties have had ample opportunity over the last five years to tender whatever evidence they deem necessary or sufficient (including facts, data and methodology) to prove their respective claims. What remains is not for the Court to seek further evidence outside that already submitted by the Parties, but rather to perform its judicial function by examining the evidence already on record and determining the reparations due.

The proposed terms of reference of the experts contained in the Order have the effect of unfairly interfering with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nd tilting the balance in favour of one Party to the detriment of the other,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a fair hearing and equality of arms. Alternatively, the terms of reference have the effect of inappropriately delegating the judicial function to the experts.

– *콩고민주공화국 영토 내 군사활동 (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 전문가 임명

2020년 10월 16일, ICJ는 *콩고민주공화국 영토 내 군사활동 (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에 관한 4인의 전문가를 임명했다. 지난 9월 8일자 명령을 통해 ICJ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주장하는 손해의 일부, 즉 인명 피해, 천연자원 피해,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관련보도자료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 Twitter Account: @CIJ_ICJ YouTube Channel: CIJ ICJ
LinkedIn pag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20/30
16 October 2020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Appointment of experts

THE HAGUE, 16 October 2020.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ppointed experts in the case concerning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By an Order dated 8 September 2020, the Court decided to obtain an expert opinion on some heads of damage claimed by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namely the loss of human life, the loss of natural resources and property damage, and to appoint four independent experts for that purpose (see press release No. 2020/29 dated 22 September 2020).

By an Order dated 12 October 2020, the ICJ appointed the following four experts:

— Ms Debarati Guha-Sapir, of Belgian nationality, Professor of Public Health at the University of Louvain (Belgium), Director of the 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Brussels (Belgium), member of the Belgian Royal Academy of Medicine;

— Mr. Michael Nest, of Australian nationality, Environmental Governance Advisor for the European Union's Accountability, Rule of Law and Anti-corruption Programme in Ghana and former conflict minerals analyst for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projects in the Great Lakes Region of Africa;

— Mr. Geoffrey Senogles, of British nationality, Partner at Senogles & Co., Chartered Accountants, Nyon (Switzerland);

— Mr. Henrik Urdal, of Norwegian nationality, Research Professor and Director of the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Norway).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Yusuf; *Vice-President* Xue; *Judges* Tomka, Abraham, Bennouna, Cançado Trindade, Donoghue, Gaja, Sebutinde, Bhandari, Robinson, Crawford, Gevorgian, Salam, Iwasawa; *Judge* ad hoc Daudet; *Registrar* Gautier.

The full text of the Order is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ress releases Nos. 1999/34 of 23 June 1999, 2000/24 of 1 July 2000, 2005/11 of 29 April 2005, 2005/26 of 19 December 2005, 2015/18 of 9 July 2015, 2019/11 of 1 March 2019, 2019/48 of 13 November 2019 and 2020/29 of 22 September 2020, which ar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rough judgments which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 유엔 총회·안보리, ICJ 재판관 5인 선출

2020년 11월 12일, 유엔 총회와 안보리는 2021년 2월 6일부터 9년 임기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재판관 5명을 선출했다. 재판관으로 Xue Hanqin(중국), Peter Tomka(슬로바키아), Julia Sebutinde(우간다), Yuji Iwasawa(일본) 재판관이 재선임됐고, Georg Nolte(독일)가 신임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2021년 2월, 새로 구성된 재판소는 3년 동안 재임할 재판소장과 재판소부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선출할 것이다.

〈 관련보도자료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 Twitter Account: @CIJ_ICJ YouTube Channel: CIJ ICJ
LinkedIn pag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20/33
13 November 202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Security Council elect five Members of the Court

THE HAGUE, 13 November 2020.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yesterday elected fiv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a term of office of nine years, beginning on 6 February 2021.

Judges Xue Hanqin (China), Peter Tomka (Slovakia), Julia Sebutinde (Uganda) and Yuji Iwasawa (Japan) were re-elected as Members of the Court. Mr. Georg Nolte (Germany) was elected as a new Member of the Court.

The biographies of the re-elected Members of the Court ar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The Court". The biography of the newly elected Member is annexed to this press release.

In February 2021, the Court as newly constituted will proceed to elect from among its Members a President and a Vice-President, who will hold office for three years.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hich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comprises 15 judges, who are each elected to a nine-year term of office and may be re-elected. In order to ensure a measure of continuity in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one third of the membership is renewed every three yea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Statute of the Court, judges are elected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from among persons of high moral character, who possess the qualifications required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for appointment to the highest judicial offices, or are jurisconsults of recognized competence in international law". Article 9 of the Statute further requires that, "in the body as a whole the representation of the main forms of civilization and of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should be assured". No two Members of the Court may be of the same nationality.

Submission of candidacies

All States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Court (currently 193) have the right to propose candidates. However, candidates are not nominated directly by governments but by the national groups i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or, in the case of States not participating in the PCA, by similarly constituted national groups.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which is based in The Hague, was established under the Hague Conventions of 1899 and 1907. Each State party to those Conventions has its own national group, that is to say, a group of up to four jurists who can be called upon to serve as members of an arbitral tribunal under the Conventions. When an election takes place to fill vacancies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ach national group can propose up to four candidates, not more than two of whom may be of its own nationality. The others may be from any other country. The names of candidates must be communica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lection procedure

Members of the Court are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by the Security Council. These organs vote at the same time but independently of one another. This procedure is intended to ensure, as far as possible, that the vote in one organ does not influence the vote in the other. In order to be elected, a candidate must receive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in both organs, that is to say, currently 97 votes in the General Assembly and 8 votes in the Security Council, where no right of veto applies for the purpose of the election

and no distinction is made between the votes of the permanent and non-permanent members of the Council.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elect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 Photo/ Eskinder Debeb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elect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 Photo /Manuel Elias).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참고: 현재 ICJ에 계류 중인 사건 목록 (2020. 12. 13. 기준)

ㅇ 심리 또는 심의 중에 있는 사건 목록

1.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2.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3.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ㅇ 재판 계류 중인 사건 (사건 도입 날짜순)

1.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2.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3.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Nicaragua v. Colombia)
4.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Colombia)
5.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6. Dispute over the Status and Use of the Waters of the Silala (Chile v. Bolivia)
7. Certain Iranian Asse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8.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9.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10.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11.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12. Relocation of the United States Embassy to Jerusalem (Palestine v. United States of America)
13. Guatemala's Territorial, Insular and Maritime Claim (Guatemala/Belize)
14.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Gambia v. Myanmar)

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 영상연결(video link)을 통한 심리와 회의 개최를 위해 재판소 규칙 개정

2020년 9월 25일, ITLOS는 공중보건·안보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 재판소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인 조치로서 심리 또는 회의 개최를 전체 또는 일부 '영상연결'(Video Link)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1조(재판소의 회의) 제7항(신규 조항), 제74조(심리) 제2항(이전 제74조는 제74조 제1항으로 번호를 변경함), 제112조 제5항(신규 조항, 즉시 석방 판결 낭독), 제124조 (판결의 낭독) 제3항, 제135조 제1항 bis(해저분쟁재판부 권고적 의견 낭독)

〈 관련보도자료 〉

ITLOS/Press 306
25 September 2020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Press Release

TRIBUNAL AMENDS RULES TO PROVIDE FOR HEARINGS AND MEETINGS BY VIDEO LINK

On 25 September 2020,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mended its Rules in order to provide that the Tribunal may decide, as an exceptional measure, for public health, security or other compelling reasons, to hold hearings and meetings entirely or in part by video link.

Accordingly, the Tribunal amended the following rules dealing with hearings and meetings: article 41 (meetings of the Tribunal), new paragraph 7; article 74 (hearings), new paragraph 2 (the previous article 74

has been renumbered as article 74, paragraph 1); article 112, new paragraph 5 (reading of prompt release judgment); article 124 (reading of judgment), paragraph 3; and article 135, new paragraph 1 bis (reading of advisory opinion of the Seabed Disputes Chamber).

The amended provisions read as follows:

Article 41, new paragraph 7, of the Rules of the Tribunal

"7. Upon consultations with the Members of the Tribunal, the President may decide, as an exceptional measure, for public health, security or other compelling reasons, to hold meetings entirely or in part by video link."

Article 74, new paragraph 2, of the Rules of the Tribunal

"2. The Tribunal may decide, as an exceptional measure, for public health, security or other compelling reasons, to hold a hearing entirely or in part by video link."

Article 112, new paragraph 5, of the Rules of the Tribunal

"5. The Tribunal may decide, as an exceptional measure, for public health, security or other compelling reasons, that the judgment shall be read at a sitting of the Tribunal accessible to the parties and the public by video link."

Article 124, new paragraph 3, of the Rules of the Tribunal

"3. The Tribunal may decide, as an exceptional measure, for public health, security or other compelling reasons, that the judgment shall be read at a sitting of the Tribunal accessible to the parties and the public by video link."

Article 135, new paragraph 1 *bis*, of the Rules of the Tribunal

"1 *bis*. The Chamber may decide, as an exceptional measure, for public health, security or other compelling reasons, that the advisory opinion shall be read at a sitting of the Chamber accessible to the parties and the public by video link."

The Tribunal decided that the amendments would enter into force forthwith.

– 재판소 소장 및 부소장 선출

2020년 10월 2일, ITLOS 재판관들은 Hoffmann 판사(남아공)를 재판소 소장으로, Heidar 판사(아이슬란드)를 재판소 부소장으로 선출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0~2023년이다. 선거는 혼합형식으로 진행됐다. 재판관 15명은 법정에 출석했고, 6명은 영상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출석했다.

〈 관련보도자료 〉

ITLOS/Press 308
2 October 2020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Press Release

JUDGE HOFFMANN ELECTED AS PRESIDENT OF THE TRIBUNAL AND JUDGE HEIDAR AS VICE-PRESIDENT

Judge Hoffmann (South Africa) was today elected by the members of the Tribunal as President and Judge Heidar (Iceland) as Vice-President for the period 2020–2023. The election took place during the fiftieth administrative session of the Tribunal, which is taking place in a hybrid format, with fifteen judges present in the courtroom and six attending remotely via videolink. The election was held using a secure electronic voting system.

President Hoffmann has been a member of the Tribunal since 2005 and Vice-President Heidar since 2014. Their curricula vitae may be found on the website of the Tribunal.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Tribunal, the President is electe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nd may be re-elected. The President presides at all meetings of the Tribunal, directs its work and supervises its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represents the Tribunal in its relations with States and other entities and is required by the Statute of the Tribunal to reside permanently at the seat of the Tribunal in Hamburg.

The Vice-President assumes the functions of the President in the event of a vacancy in the presidency or of the inability of the President to exercise the functions of the presidency.

- 재판부 재구성

2020년 10월 7일, ITLOS) 함부르크에서 열린 50번째 행정회의에서 재판부을 재구성했다.

재판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임시재판부 외 재판부의 임기는 2023년 9월 30일까지이다.

• 해저분쟁재판부(Seabed Disputes Chamber)
President Judge Chadha
Members Judges Jesus, Bouguetaia, Paik, Gómez-Robledo, Cabello Sarubbi, Kittichaisaree, Kolodkin, Lijnzaad, Duan, and Brown.

• 약식절차재판부(Chamber of Summary Procedure)
President President Hoffmann
Members Vice-President Heidar, Judges Kateka, Kolodkin, and Lijnzaad
Alternates Judges Kulyk and Caracciolo

• 해양경계획정분쟁재판부(Chamber for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President President Hoffmann
Members Vice-President Heidar, Judges Pawlak, Kulyk, Chadha, Lijnzaad, Infante Caffi, Duan, and Caracciolo

• 어업분쟁재판부(Chamber for Fisheries Disputes)
President Judge Pawlak
Members Judges Yanai, Bouguetaia, Paik, Attard, Gómez-Robledo, Cabello Sarubbi, Caracciolo, and Kamga

• 해양환경분쟁재판부(Chamber for Marine Environment Disputes)
President Judge Attard
Members Judges Jesus, Yanai, Kateka, Kittichaisaree, Kolodkin, Infante Caffi, Brown, and Kamga

• 임시재판부(Ad hoc chambers)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임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까지 3개의 임시재판부가 설치된 바 있다.
- *the Case concerning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Exploitation of Swordfish Stocks in the South-Eastern Pacific Ocean (Chile/European Union)*
- *the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 in the Atlantic Ocean (Ghana/Côte d'Ivoire)*
- *the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Mauritius and Maldives in the Indian Ocean (Mauritius/Maldives)*

〈 관련보도자료 〉

ITLOS/Press 309
7 October 2020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Press Release

RECONSTITUTION OF THE CHAMBERS OF THE TRIBUNAL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reconstituted its chambers today during its fiftieth administrative session, which is currently being held in Hamburg.

With the exception of the Seabed Disputes Chamber, which has exclusive jurisdiction in cases relating to Part X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Convention"), disputes brought before the Tribunal are dealt with by the full Tribunal unless both parties agree to refer the dispute to a chamber.

The composition and mandates of the Tribunal's chambers are as follows:

Seabed Disputes Chamber

The Seabed Disputes Chamber has exclusive jurisdiction under Part XI, section 5, of the Convention in either contentious or advisory proceedings over disputes or questions relating to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seabed and ocean floor and the subsoil thereof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The Chamber is composed of 11 judges, who are selected by the members of the Tribunal every three years. The selection process ensures the representation of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and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The Chamber elects its President from among its members. The composition of the Chamber for the period ending 30 September 2023 is as follows:

President	Judge Chadha
Members	Judges Jesus, Bouguetaia, Paik, Gómez-Robledo, Cabello Sarubbi, Kittichaisaree, Kolodkin, Lijnzaad, Duan, and Brown

Four special chambers have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Statute of the Tribunal ("the Statute"); cases may be submitted to them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to a dispute:

Chamber of Summary Procedure

This Chamber is established annually pursuant to article 15, paragraph 3, of the Statute. It may hear and determine a case by summary procedure if the parties so request. The Chamber may prescribe provisional measures if the Tribunal is not in session or a sufficient number of members is not available to constitute a quorum. The Chamber is composed of five members and two alternates, as provided for by the Statute. The President and the Vice-President of the Tribunal are members ex officio of the Chamber;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presides over the Chamber. The Chamber has been constituted as follows for the period ending 30 September 2021:

President	President Hoffmann
Members	Vice-President Heidar, Judges Kateka, Kolodkin, and Lijnzaad
Alternates	Judges Kulyk and Caracciolo

Three further chambers have been establishe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pursuant to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Statute:

Chamber for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The Chamber is available to deal with disputes on maritime delimitation. It consists of nine members and is chaired by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The composition of the Chamber for the period ending 30 September 2023 is as follows:

President	President Hoffmann
Members	Vice-President Heidar, Judges Pawlak, Kulyk, Chadha, Lijnzaad, Infante Caffi, Duan, and Caracciolo

Chamber for Fisheries Disputes

The Chamber is available to deal with disputes concerning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living resources. The Chamber consists of nine members. The composition of the Chamber for the period ending 30 September 2023 is as follows:

President	Judge Pawlak
Members	Judges Yanai, Bouguetaia, Paik, Attard, Gómez-Robledo, Cabello Sarubbi, Caracciolo, and Kamga

Chamber for Marine Environment Disputes

The Chamber is available to deal with disput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 Chamber, consisting of nine members, is composed as follows for the period ending 30 September 2023:

President	Judge Attard
Members	Judges Jesus, Yanai, Kateka, Kittichaisaree, Kolodkin, Infante Caffi, Brown, and Kamga

***Ad hoc* chambers**

In addition to the chambers established by the Tribunal, parties may request the Tribunal to constitute an *ad hoc* chamber for a particular dispute (Statute, article 15, paragraph 2). The composition of the chamber is determined with the approval of the parties, who may also choose judges *ad hoc* if the chamber does not include a judge of the nationality of either or both of the parties. Such an option therefore combines the advantages of a permanent court with those of an arbitral body, but avoids the considerable expense that is often incurred in participating in arbitral proceedings.

To date, three ad hoc chambers have been constituted, dealing with the Case *concerning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Exploitation of Swordfish Stocks in the South-Eastern Pacific Ocean (Chile/European Union)*, the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 in the Atlantic Ocean (Ghana/Côte d'Ivoire)*, and the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Mauritius and Maldives in the Indian Ocean (Mauritius/Maldives)*.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Tribunal's chambers may be found on the website at: https://www.itlos.org/the-tribunal/chambers/.

-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인도양 해양경계 분쟁*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부, 선결적 항변에 관한 심리 개최 예정

2020년 10월 13일,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인도양 해양경계 분쟁*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부는 동 사건에 관해 몰디브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관한 공개심리를 열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을 고려하여, 심리는 특별재판부 판사와 당사국 대표단이 일부 현장 참석과 일부 온라인 참석을 함께하는, 혼합 형식으로 열렸다.

〈 관련보도자료 〉

ITLOS/Press 305
2 September 2020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Press Release

TRIBUNAL TO EMBRACE A HYBRID FORMAT FOR THE HEARING ON PRELIMINARY OBJECTIONS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MAURITIUS AND MALDIVES IN THE INDIAN OCEAN

The Special Chamber formed to deal with the *Disput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of Mauritius and Maldives in the Indian Ocean (Mauritius/Maldives)* will hold its hearing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Republic of Maldives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Special Chamber and to the admissibility of the claims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Mauritius.

The hearing will open on 13 October 2020, as determined by Order of the President of the Special Chamber of 19 May 2020. In ligh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hearing will be held in a hybrid format, combining the physical and virtual participation of both members of the Chamber an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Further to consultations held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Special Chamber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on 1 September 2020, the schedule of the hearing is as follows:

First round of oral argument: 13–15 October 2020 (Hamburg time)

Tuesday, 13 October 2020, 2–3:30 pm, 4–5 pm and 5:30–7 pm: Maldives
Thursday, 15 October 2020, 2–3:30 pm, 4–5 pm and 5:30–7 pm: Mauritius

Second round of oral argument: 17–19 October 2020 (Hamburg time)

Saturday, 17 October 2020, 2–3:30 pm and 4–5 pm (if needed): Maldives
Monday, 19 October 2020, 2–3:30 pm and 4–5 pm (if needed): Mauritius

Public access to the Courtroom will not be permitted but the hearing will be livestreamed on the Tribunal's website. A recorded webcast will be made available under Webcast Archives after the close of each sitting. The verbatim records of the hearing will be published shortly thereafter on the Tribunal's website.

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 *우크라이나 군함 및 수병 구금 관련 분쟁 (우크라이나 v. 러시아)*에 관한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 예비절차에서 심리하기로 결정

2020년 11월 12일, PCA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속서상의 중재절차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소는 2020년 10월 27일자로 발표한 절차명령2호를 통해 러시아가 제기한 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선결적 항변을 재판소의 예비절차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8월 22일, 러시아는 선결적 항변에서 다음과 같이 중재재판소가 본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했다:

(i) 우크라이나의 청구는 "군사행위와 관련된 분쟁"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 (b)에 따라 이러한 분쟁을 배제하기로 선언하였으므로 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 (제298조 제1항 (b)에 근거한 항변)

(ii) 해양법협약 제32조는 영해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항하는 군함 및 기타 정부 선박에 대한 면제를 규정하지 않는다. ("제32조에 근거한 항변")

(iii) 중재재판소는 당사국간의 "주요 분쟁"(main dispute)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러시아가 2019년 5월 25일자 ITLOS 잠정조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 우크라이나의 제소에 대해서도 관할권도 없다.("제290조와 제296조에 근거한 항변")

(iv) 해양법협약 제279조는 "분쟁의 악화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따라서 본 규정은 중재재판소가 러시아가 분쟁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 관할권을 갖는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제279조에 근거한 항변")

(v) 해양법협약 제283조에 명시된 "분쟁당사자는 교섭이나 그 밖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신속히 교환해야 한다"는 요건을 우크라이나가 준수하지 않았다. ("제283조에 근거한 항변")

2020년 9월 7일 절차명령1호 제5(a)항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이 사안에 대한 의견(Observations)을 제출했다. 본 의견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이 "전적으로 선결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을 예비절차에서 다루지 말고 "본안"(merits)에서 함께 다룰 것을 요청했다.

절차명령2호에서 중재재판소는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이 예비절차에서 검토되어야 할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을 예비절차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재판소 절차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본안절차는 중지됐다.

절차명령1호 제5(f)항에 따라, 중재재판소는 이 명령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중재재판소는 우크라이나의 의견을 받은 후 추가 서면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추가 서면 제출에 대한 기한을 결정할 것이다.

사건의 지난 배경을 살펴보면, 본 사건은 2019년 4월 1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군함 세 척 및 24명의 수병이 향유하는 면제와 관련된 러시아와의 분쟁을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상의 중재절차에 회부하면서 시작됐다. 본 재판소는 Donald McRae 재판장(캐나다 및 뉴질랜드)을 포함하여, Gudmundur Eiriksson(아이슬란드), Rüdiger Wolfrum(독일), Vladimir Vladimirovich Golitsyn(러시아), Christopher Greenwood(영국) 등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됐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2019년 4월 16일, 해양법협약 제290조 제5항에 근거하여 ITLOS에 잠정조치를 요청했다. 2019년 5월 25일, ITLOS는 해양법협약 제290조 제1항에 따라 러시아에게 세 척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과 억류되어있는 24명의 수병을 석방하고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ITLOS는 또한, 양 당사국 모두에게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을 명령했다.

〈 관련보도자료 〉

COUR PERMANENTE D'ARBITRAGE —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RESS RELEASE

DISPUTE CONCERNING THE DETENTION OF UKRAINIAN NAVAL VESSELS AND SERVICEMEN (UKRAINE V. THE RUSSIAN FEDERATION)

THE HAGUE, 12 NOVEMBER 2020

Arbitral Tribunal to Hear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Russian Federation in Preliminary Phase

In its Procedural Order No. 2, issued on 27 October 2020, the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the arbitration instituted by Ukraine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has decided to hear the Russian Federation's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Arbitral Tribunal's jurisdiction in a preliminary phase of the proceedings.

On 22 August 2020, the Russian Federation submitted Preliminary Objections and requested that the Arbitral Tribunal hear its objections to the Arbitral Tribunal's jurisdiction in a preliminary phase of the proceedings.

In its Preliminary Objections, the Russian Federation contended that the Arbitral Tribunal does not have jurisdiction:

> (i) because Ukraine's claims relate to a "dispute concerning military activities" and are therefore excluded from the Tribunal's jurisdiction by the operation of declarations made by both Ukraine and the Russian Federation to exclude such disputes pursuant to Article 298(1)(b)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Convention") (the "Article 298(1)(b) Objection");
>
> (ii) because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does not provide for an applicable immunity of warships and other government vessels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in the territorial sea (the "Article 32 Objection");
>
> (iii) because the Arbitral Tribunal lacks jurisdiction over the "main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t also lacks jurisdiction on Ukraine's claims based on the alleged non-complia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with the Order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of 25 May 2019 for the Prescription of Provisional Measures (the "Article 290 and 296 Objection");
>
> (iv) because Article 279 of the Convention "contains no reference to the aggravation of disputes" and therefore does not provide a basis for the Arbitral Tribunal's jurisdiction to adjudicate the Russian Federation's alleged aggravation of the present dispute (the "Article 279 Objection");
>
> (v) because Ukraine has not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 set forth in Article 283 of the Convention that parties to a dispute under the Convention must "proceed expeditiously to an exchange of views regarding its settlement by negotiation or other peaceful means" (the "Article 283 Objection");

In Procedural Order No. 2, the Arbitral Tribunal recalled that Article 11, paragraph 3, of the Rules of Procedure adopted in this arbitration provides that

> [t]he Arbitral Tribunal shall rule on any Preliminary Objection in a preliminary phase of the proceedings, unless the Arbitral Tribunal determines, after ascertaining the views of the Parties, that such Preliminary Objection does not possess an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and should be ruled upon in conjunction with the merits.

On 7 September 2020,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a) of Procedural Order No. 1, Ukraine submitted its Observations on the Question of Bifurcation. In its Observations, Ukraine submitted that the Russian Federation's Preliminary Objections "do not possess an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Ukraine therefore requested that Russia's Preliminary Objections be joined to the merits instead of being addressed in a preliminary phase.

On 21 September 2020,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c) of Procedural Order No. 1, the Russian Federation submitted its Response to the Observations of Ukraine on the Question of Bifurcation.

On 28 September 2020,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d) of Procedural Order No. 1, Ukraine submitted its Reply to the Response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Question of Bifurcation.

In Procedural Order No. 2, the Arbitral Tribunal concluded that it

> considers that the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appear at this stage to be of a character that justifies having them examined in a preliminary phase,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paragraph 3, of the Rules of Procedure, decides that the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be addressed in a preliminary phase of these proceedings.

The Arbitral Tribunal further noted that

> [i]f the Arbitral Tribunal, in delivering its award in the preliminary phase of the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paragraph 7, of the Rules of Procedure, declares that a Preliminary Objection does not possess an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th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paragraph 3, of the Rules of Procedure, that Objection shall be ruled upon in conjunction with the meri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paragraph 4, of the Rules of Procedure,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have been suspen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f) of Procedural Order No. 1, the Arbitral Tribunal has held that

> Ukraine shall file any observat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is Order. Following receipt of these observations, the Arbitral Tribunal will decide whether any further written submissions are needed an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the time limits for such submissions.

Judge Gudmundur Eiriksson appended a Dissenting Opinion to the Order of the Arbitral Tribunal.

Background to the Dispute

The arbitral proceedings were instituted on 1 April 2019 when Ukraine served on the Russian Federation a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1]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he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 refers to a dispute concerning the detention of Ukrainian naval vessels and servicemen.

The five-member Tribunal is chaired by Professor Donald McRae as President (a national of Canada and New Zealand). The other members are Judge Gudmundur Eiriksson (Iceland), Judge Rüdiger Wolfrum (Germany), Judge Vladimir Vladimirovich Golitsyn (Russian Federation), and Sir Christopher Greenwood (United Kingdom).

1) The full title of the document is "Notification under Article 287 and Annex VII, Article 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Statement of the Claim and Grounds on which it is Based".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proceedings is available on the PCA website at https://pca-cpa.org/en/cases/229/.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the PCA,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will from time to time issue press releases,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proceedings. Moreover, procedural orders of the Arbitral Tribunal wi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seven days after they have been notified to the Parties. Further, any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will be made public unless both Parties agree otherwise.

* * *

Background o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e 1899 Hague Convention on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 PCA has 122 Contracting Parties. Headquartered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the PCA facilitates arbitration, conciliation, fact-finding, and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among various combinations of States, State entitie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rivate parties. The PCA's International Bureau is currently administering 7 interstate arbitrations, 101 investor-State arbitrations, and 52 cases arising under contracts involving a State or other public entity, and 2 other disputes. More information about the PCA can be found at www.pca-cpa.org.

Contact: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E-mail: bureau@pca-cpa.org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 ICC 전심재판부 I, 소추부의 절차종결 결정에 대한 코모로의 사법 재검토 요청 기각

2020년 9월 16일, ICC 전심재판부 I은, 2010년 5월 31일 이스라엘 가자지구 주변해역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인도적 물품을 싣고 가던 선박에 대한 공격 사건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범죄 혐의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소추부의 결정에 대한 코모로 정부의 재검토(review) 요청을 기각했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2013년 5월 14일, ICC로마규정 당사국인 코모로는 "2010년 5월 31일 이스라엘 가자지구 주변해역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인도적 물품을 싣고 가던 플로틸라 호에 대한 공격 사건" 관련 상황을 소추부에 직접 회부했다. 2014년 11월 6일, 소추관은 본 사건이 ICC의 추가 조치를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히 중대한'(sufficient gravity)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본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2015년 7월 16일 전심재판부 I은 본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하지 않겠다는 소추관의 2014년 11월 6일 결정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7년 11월 29일, 소추관은 이 공격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이전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였다. 이에 2018년 11월 15일, 전심재판부 I 은 자신의 2015년 7월 16일 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소추관의 2014년 11월 6일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소추관은 이 결정에 대해 상소했고, 2019년 9월 2일, ICC 상소심재판부는 "코모로의 사법 재심사 신청" 사건에 대한 2018년 11월 15일자 전심재판부 I의 결정에 대한 소추부의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상소심재판부는 본 판결에서 전심재판부 I이 소추관의 결정이 실제로 적절한 '최종 결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데 실수가 없었으며, 또한, 소추관이 전심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사안을 어떻게 다뤘는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9월 16일 결정에서 전심재판부 I은 소추관이 2014년 11월 6일 종결 결정을 '진정으로'(genuinely) 재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심재판부 I은 소추관이 2015년 7월 16일 결정의 오류를 수정하지 못했고, 사건의 '중대성' 평가가 새로운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재판부 I은 소추부에게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심재판부 I은 상소심재판부로부터 받은 지침에 근거하여 재판부가 확인한 오류를 시정하도록 소추부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전심재판부 I은 상소심재판부의 법리가 소추관과 전심재판부 사이의 권한 분배를 충분히 명확하게 확립하지 못했다고 봤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6 September 2020

ICC Pre-Trial Chamber I rejects Comoros' request for judicial review of the Prosecutor's decision not to open an investigation

ICC-CPI-20200916-PR1537

Pre-Trial Chamber 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ssued today its decision rejecting the request submitted by the Government of the Comoros seeking a judicial review of the Prosecutor's decision not to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crimes allegedly committed in the context of the 31 May 2010 Israeli interception of the Humanitarian Aid Flotilla bound for the Gaza Strip.

By way of background, on 14 May 2013, the Union of the Comoros – a State Party to the Rome Statute – referred to the ICC Prosecutor the situation concerning 'the 31 May 2010 Israeli raid of the Humanitarian Aid Flotilla bound for Gaza Strip'. On 6 November 2014, the Prosecutor decided not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as she considered that the potential case(s) likely to arise following an investigation would not be of 'sufficient gravity' to justify further action by the ICC. On 16 July 2015, Pre-Trial Chamber I requested the Prosecutor to reconsider her decision, and did so again on 15 November 2018, having found that the Prosecutor had failed to properly reconsider. Pre-Trial Chamber I's decision of 15 November 2018 was confirmed on appeal. On 2 December 2019, following reconsideration, the Prosecutor once again reaffirmed her position that no potential case arising from the situation would be sufficiently grave to justify further action by the ICC.

In the decision issued today, Pre-Trial Chamber I found that the Prosecutor did not genuinely reconsider her 6 November 2014 decision not to investigate. The Chamber found that the Prosecutor failed to correct the errors identified by the Chamber in the 16 July 2015 decision and committed new errors in her assessment of the gravity of the potential case(s).

Nonetheless, the Chamber decided not to request the Prosecutor to reconsider her decision again. Pre-Trial Chamber I held that, based on the guidance received from the Appeals Chamber, it was unclear whether and to what extent it may request the Prosecutor to correct the errors identified by the Chamber. Pre-Trial Chamber I considered that the current jurisprudence of the Appeals Chamber did not establish with sufficient clarity the exact distribution of prerogatives between the Prosecutor and pre-trial chambers.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Judicial Review by the Government of the Comoros'

- ICC 상소심재판부, Ali Abd-Al-Rahman의 구금 지속 결정

2020년 10월 8일, 상소심재판부는 Ali Abd-Al-Rahman의 임시석방(interim release) 요청을 기각한 전심재판부II의 결정을 확정했다. 2020년 8월 14일, 전심재판부II는 수사 또는 재판소 절차가 방해받거나 위험해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Abd-Al-Rahman의 구금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Abd-Al-Rahman의 임시석방을 기각한 바 있다.

상소심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제기한 다섯 가지 상소 사유를 모두 기각하고 전심재판부II의 결정을 확인했다. 상소심재판부는 또한, 전심재판부II의 결정에 오류가 없으며, 수사 및 절차의 완전성과 증인의 안전을 위해 용의자의 구금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8 October 2020

ICC Appeals Chamber confirms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will remain in custody

ICC-CPI-20201008-PR1539

Today, 8 October 2020,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confirmed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I to reject the interim release of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Judge Piotr Hofmański, Presiding judge on this appeal, read a summary of the judgment in open Court.

On 14 August 2020, Pre-Trial Chamber II had rejected Mr Abd-Al Rahman's request for interim release to the territory of the Court's host State, The Netherlands, pending trial, pursuant to article 60(2) of the Rome Statute, the Court's founding treaty. The decision was based on the Pre-Trial Chamber's conclusion that the continued detention of Mr Abd-Al-Rahman detention appeared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investigation or court proceedings are not obstructed or endangered.

Today, the Appeals Chamber rejected all five grounds of appeal raised by the Defence and confirmed the Pre-Trial Chamber's Decision. The Chamber found that the Pre-Trial Chamber did not commit any error in its decision. The judges confirmed that detention of the suspect remained necessary for the integrity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proceedings and the safety of witnesses.

Judge Ibáñez Carranza is appending a separate concurring opinion on the issues of the requalification of the alleged errors presented by Mr Abd-Al-Rahman under the first ground of appeal and on the interpretation of

regulation 51 of the Regulations of the Court under the fifth ground of appeal.

A decision to maintain the detention pending trial is reviewed by the competent Chamber at least every 120 days, and may be reviewed at any time at the request of the detained person or the Prosecutor.

Background: The first warrant of arrest delivered on 27 April 2007 and the second warrant published on 11 June 2020 against Mr Abd-Al-Rahman list 53 counts on the basis of his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llegedly committed in Darfur (Sudan). Mr Abd-Al-Rahman was transferred to the ICC's custody on 9 June 2020, after surrendering himself voluntarily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His initial appearance before the ICC took place on 15 June 2020. The opening of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in this case is scheduled provisionally for 7 December 2020.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is case, check here

Judgment on the appeal of Mr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against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I of 14 August 2020 entitled 'Decision on the Defence Request for Interim Release'

- Abd-Al-Rahman Case: 공소사실 확인 심리, 2021년 2월 22일로 연기

2020년 11월 2일, ICC 전심재판부II는 The Prosecutor v.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사건에 대한 확인 심리의 시작을 2021년 2월 22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심리는 당초 2020년 12월 7일 열릴 예정이었다. 당사자들의 증거제출과 주장을 고려하고, 절차의 전반적인 공정성과 신속성, 용의자의 권리, 피해자·증인 및 그 외 위험에 처한 사람의 보호,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과 전반적인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공소사실 확인 심리를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전심재판부 II는 또한 검찰의 증거 공개에 관한 기한을 정했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 November 2020 | العربية

Abd-Al-Rahman cas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postponed to 22 February 2021

ICC-CPI-20201102-PR1541

Today, 2 November 2020, Pre-Trial Chamber 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decided to postpone the commencement of the confirmation hearing in the case *The Prosecutor v.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to Monday, 22 February 2021. The hearing was initially scheduled to take place on 7 December 2020.

Having considered the parties' submissions and arguments and taken into account the overall fairness and expeditiousness of the proceedings, the rights of the suspect, the protection of victims, witnesses and other persons at risk,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in view of ensuring the safety and overall security of victims and witnesses, the Chamber considered it appropriate to postpone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to 22 February 2021. The Chamber also set a number of deadlines for the disclosure of evidence by the Prosecutor.

The purpose of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establish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the person committed each of the crimes charged. If the charges are confirmed, the case will be transferred to a Trial Chamber, which will conduct the subsequent phase of the proceedings: the trial.

Decision on the Prosecutor's Request for Postponement of the Confirmation Hearing and related deadlines

Background: The first warrant of arrest delivered on 27 April 2007 and the second warrant published on 11 June 2020 against Mr Abd-Al-Rahman list 53 counts on the basis of his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llegedly committed in Darfur (Sudan). Mr Abd-Al-Rahman was transferred to the ICC's custody on 9 June 2020, after surrendering himself voluntarily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His initial appearance before the ICC took place on 15 June 2020.

- Situation in Kenya: Paul Gicheru, ICC 증인에게 부정하게 영향을 미친 혐의로 ICC에 인도

2020년 11월 2일, Paul Gicheru는 ICC 전심재판부II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네덜란드 당국에 인도됐다. 케냐에 근거를 둔 변호사인 Gicheru는 ICC 증인에게 부정하게 영향을 미쳐 사법운영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ICC로마규정 제70조 제1항(c))

재판소는, 네덜란드의 체포 절차가 완료되면 Gicheru를 재판소로 인도하기 위해 네덜란드 당국에 협력을 요청했다.

2015년 3월 10일 Paul Gicheru와 Philip Kipkoech Bett에 대한 체포영장은 비공개로 발부됐고, 2015년 9월 10일 공개됐다. Philip Kipkoech Bett는 아직 미구금 상태이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 November 2020

Situation in Kenya: Paul Gicheru surrenders for allegedly corruptly influencing ICC witnesses

ICC-CPI-20201102-PR1540

Today, 2 November 2020, Mr Paul Gicheru surrendered to the authorities of The Netherlands pursuant to an arrest warrant issued by Pre-Trial Chamber 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the Court"). Mr Gicheru, a lawyer formerly based in Kenya, is suspected of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consisting in corruptly influencing witnesses of the Court.

The Court, through the Registry services, submitted a cooperation request to the Dutch authorities for the arrest and surrender of Mr Gicheru to the Court upon completion of the necessary national arrest proceedings.

Background: The arrest warrant against Mr Gicheru and Philip Kipkoech Bett was issued under seal on 10 March 2015 and unsealed on 10 September 2015. Philip Kipkoech Bett is not in ICC custody.

- ICC 전심재판부A, Paul Gicheru의 공소사실 확인을 위한 심리 개최

2020년 11월 6일, ICC 전심재판부A는 Paul Gicheru의 공소사실 확인을 위한 심리를 행했다. Gicheru는 ICC 증인에게 부정하게 영향을 미쳐 사법운영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 확인은 ICC규칙 제165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11월 3일, ICC는 Paul Gicheru를 네덜란드 당국을 통해 인도받았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6 November 2020

Paul Gicheru makes first appearance before the ICC: confirmation of charges procedure to be conducted in writing

ICC-CPI-20201106-PR1545

On 6 November 2020, Paul Gicheru appeared before Pre-Trial Chamber A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Court"), composed of Judge Reine Adélaïde Sophie Alapini-Gansou, as decided by the President of the Pre-Trial Division in accordance with rule 165(2) of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the "Rules"). Mr Gicheru is suspected of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by corruptly influencing witnesses of the Court.

The hearing was held in the presence of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Mr Gicheru, who represented himself at this hearing, appeared via video-link from the ICC Detention Centre.

The Single Judge verified the identity of the suspect, and ensured that he was clearly informed of the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he is alleged to have committed and of his rights 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CC in a language he fully understands and speaks.

The confirmation of charges procedure will, in principle, be conducted in writing pursuant to rule 165(3) of the Rules. The Single Judge set provisional dates for the procedure. The Prosecution is to file its document containing the charges by 12 February 2021. The Defence may file a list of evidence by 26 February 2021. The parties shall then file written submissions by 15 March; the Prosecution can file its reply to the Defence submissions by 22 March, and the Defence can reply by 29 March 2021.

The purpose of the confirmation of charges procedure 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establish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the person committed each of the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charged. If the charges are confirmed, totally or partly, the case will be transferred to a Trial Chamber, which will conduct the subsequent phase of the proceedings: the trial.

Background: The arrest warrant against Mr Gicheru and Philip Kipkoech Bett was issued under seal on 10 March 2015 and unsealed on 10 September 2015. Philip Kipkoech Bett is not in ICC custody. Mr Gicheru, a lawyer formerly based in Kenya, surrendered on 2 November 2020 to the authorities of The Netherlands. On 3 November 2020, he was surrendered to the ICC custod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necessary national proceedings. On 2 November 2020, the President of the ICC Pre-Trial Division constituted Pre-Trial Chamber A (Article 70), composed of Judge Reine Adélaïde Sophie Alapini-Gansou, to exercise the powers and functions of the Pre-Trial Chamber in this case.

- Ongwen Case: ICC 1심재판부IX, 2021년 1월 12일 판결 선고 예정

2020년 11월 12일, ICC 1심재판부IX는 The Prosecutor v. Dominic Ongwen 사건에 대해 ICC로마규정 제74조에 따라 2021년 1월 12일에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2 November 2020

Ongwen case: Trial Chamber IX to deliver its verdict on 12 January 2021

ICC-CPI-20201112-PR1547

Today, 12 November 2020, Trial Chamber IX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announced that the judgment on conviction or acquittal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Rome Statute in the case *The Prosecutor v. Dominic Ongwen* will be delivered on 12 January 2021 at 10:00 (The Hague local time). The session will be transmitted live through the ICC website. Practical information on attending the session and information materials will be available in due course.

The verdict will be read out in public and will either acquit or convict the accused. The accused before the ICC is presumed innocent. While the Prosecution must prove the guilt of the accused, the Trial Chamber will convict the accused only if it is satisfied that the charges have been proven beyond reasonable doubt. The Chamber bases its decision only on the applicable law and on evidence submitted and discussed before it at the trial.

The Chamber is composed of Judge Bertram Schmitt, Presiding Judge, Judge Péter Kovács and Judge Raul Cano Pangalangan. The three judges ensure the fairness of the trial and that the rights of both parties and of the victims are respected. In response to the verdict, the parties will be able to appeal the decision before the ICC's Appeals Chamber.

Order Scheduling the Delivery of the Judgment

Background: The trial in this case opened on 6 December 2016. Dominic Ongwen is accused of 70 count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llegedly committed in northern Uganda.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ce have completed the presentation of their evidence. The Legal Representatives of Victims also called witnesses to appear before the Chamber. On 12 December 2019, the Presiding Judge declared the closure of the submission of evidence in the case. The closing briefs were filed on 24 February 2020. The closing

statements took place from 10 to 12 March 2020.

Over the course of 231 hearings, the Chamber heard 69 witnesses and experts called by the Office of the ICC Prosecutor, Fatou Bensouda, 54 witnesses and experts called by the Defence team lead by Krispus Ayena Odongo and 7 witnesses and experts called by the Legal Representatives of the Victims participating in the proceedings. The judges ensured the respect of the rights guaranteed by the Rome Statute to each of the parties, including the right to question the witnesses.

A total of 4065 victims, represented by their legal counsels Joseph Akwenyu Manoba, and Francisco Cox, as well as Paolina Massidda, respectively, have been grante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They have expressed their position on matters heard before the Chamber and were authorised to examine witnesses on specific issues.

The Trial Chamber issued 70 oral decisions, and 190 written decisions during the trial phase of the proceedings. The total case record, consisting of the filings of the parties and participants and the Chamber's decision, currently includes more than 1750 filings.

IV.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국내판례

• 국제법 관련 국내법 195
• 국제법 관련 국내판례 202

국제법 관련 국내법

이번 호에는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제정 및 개정된 국내법 중 국제법과 관련이 있는 법을 소개합니다. 소개된 국내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순 서 〉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시행 2020.9.22., 대통령령 제31019호, 2020.9.22., 일부개정)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9.25., 대통령령 제31038호, 2020.9.22., 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9.29., 법무부령 제984호, 2020.9.29., 일부개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10.1., 대통령령 제31071호, 2020.9.2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7.22., 환경부령 제881호, 2020.8.31.,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1.1.21., 법률 제17509호, 2020.10.20., 일부개정)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4.28., 대통령령 제31121호, 2020.10.27., 제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1.19., 해양수산부령 제444호, 2020.11.19., 일부개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11.27., 대통령령 제31192호, 2020.11.24., 전부개정)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11.27., 대통령령 제31171호, 2020.11.24., 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11.27., 환경부령 제891호, 2020.11.27., 일부개정)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12.1., 대통령령 제31217호, 2020.12.1., 일부개정)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시행 2020.9.22., 대통령령 제31019호, 2020.9.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복합부품 집적회로 품목을 종전의 25개 품목에서 35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양허관세로서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가 동일함에도 종전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제1차 정보기술협정 대상물품을 포함한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제2차 정보기술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9.25., 대통령령 제31038호, 2020.9.22.,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17호, 2020.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립 비용의 지원 대상이 되는 유엔참전시설은 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기념관·전시관, 유엔참전용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9.29., 법무부령 제984호, 2020.9.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서식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10.1., 대통령령 제31071호, 2020.9.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에 대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수출

입허가를 받거나 수출입신고를 한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79호, 2020.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등을 수출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부적정하게 수출 또는 수입한 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7.22., 환경부령 제881호, 2020.8.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에 수은폐기물을 추가하고,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과 수은회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등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1.1.21., 법률 제17509호, 2020.10.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바,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지휘서가 아닌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최근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수 국가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 입항 항공기를 차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적발, 보호되는 경우 본국 송환이 지연되어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보호조치 없이 일정기간 안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국명령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출국명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는바,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부받은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방식으로 부과 받은 범칙금을 일시 전액 납부하는 것만 가능하여 납부자가 불편을 겪고 있고, 범칙금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전액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범칙금 미납을 사유로 고발되어 전과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납부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부과 받은 범칙금에 대한 일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4.28., 대통령령 제31121호, 2020.10.27.,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외교부령, 법무부령 및 외교부예규 등으로 나누어져 규정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과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이영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집행의 통일성을 높이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급 주체(제3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는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되,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및 공증문서 등의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함.

나. 발급 절차(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함.
2)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공문서의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함.
3)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다. 발급 거절 사유(제7조)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출한 공문서가 명백하게 거짓이거나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음.

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제8조)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 용이한 일부 공문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마. 서명·직인의 인영 관리(제11조)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문서의 발행기관 등으로부터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미리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1.19., 해양수산부령 제444호, 2020.11.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배출 장소, 배출량 등을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연료유 소모기간이 1년 미만인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배출 시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및 연료유 소모기간이 1년 미만인 국내항해용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정하는 한편,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 안에서 발생한 동물사체 등 폐기물의 해역 배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영해 등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용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11.27., 대통령령 제31192호, 2020.11.24.,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관기관 소속으로 개발협력전략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02호, 2020. 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발협력전략회의의 구성·운영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및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협력전략회의의 구성·운영(제9조)

1) 개발협력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2) 개발협력전략회의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나 임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3) 개발협력전략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

원·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제11조제2항 및 제3항)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안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리고, 중점협력대상국의 정세 변화 등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개발협력평가의 시기 및 환류(제12조제2항 및 제5항)

국제개발협력평가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하되,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의 시기는 시행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법제처 제공>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11.27., 대통령령 제31171호, 2020.11.24., 제정)

• 제정이유

과거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303호, 2020.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순직 국제협력요원 유족의 보상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제2조)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국제협력요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등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함.

나. 순직 심사의 청구 등(제8조)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심사를 청구하려는 유족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부터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교부장관에게 순직 심사를 청구하도록 함.

다. 순직 심사 및 결정(제9조)

외교부장관은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의 순직 심사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순직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순직 여부를 결정한 후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보상 신청(제10조)

순직을 인정받은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의 등록신청을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11.27., 환경부령 제891호, 2020.11.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에 수은폐기물을 추가하고,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과 수은회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등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12.1., 대통령령 제31217호, 2020.1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 합의 이행을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1천700만 미합중국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92억3천100만원을 각각 출연하고, 국제금융공사에 7천139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하는 등 신규 출자 또는 출연을 정하는 한편,

신규 출자 또는 출연을 규정하는 방식을 종전에는 출자 또는 출연이 있을 때마다 국제금융기구의 기금 등 납입대상별로 기존에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출자 또는 출연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입대상별로 출자 또는 출연을 규정한 별표에 신규 출자 또는 출연을 순차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제금융기구 협정 이행에 대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제법 관련 국내판례

이번 호에는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선고 또는 공개된 국내판례 중에서 국제법과 관련이 있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소개된 판례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헌법재판소 판례검색'(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L1.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순 서 〉

-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관련 국적법 조항 부분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기각)
-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에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등도 포함된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8 [구 관습법 위헌소원], 2020. 10. 29., 합헌)
-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관련 국적법 조항 부분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또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국적이탈 신고 시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각]

【판시사항】

가.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국적법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라 하고,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라.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국적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선례를 변경한 사례

【결정요지】

ㅁ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99년 미국 국적의 부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미국과 대한민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이다.

○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병역법상 만 18세가 되는 2017. 1. 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 3. 31.까지 복수국적 중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

○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와 실무에 의할 때, 국적이탈 신고서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들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발급할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대한민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아 이들 서류를 첨부하려면 출생신고부터 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하려 하는데, 위 시행규칙조항에 의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2017. 3. 31.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국적이탈이 제한되는바, 이들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ㅁ 심판대상

○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2014. 6. 18. 법무부령 제81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라 하고,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심판대상이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국적법 시행규칙(2014. 6. 18. 법무부령 제81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관련조항]

국적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ㅁ 결정주문

1.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및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 기간 및 국적이탈 신고 제한

○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는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22세까지,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때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 그러나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의 경우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후인 3월 31일을 시한으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병역법 제2조 제2항, 제8조 참조).

○ 복수국적자는 자진하여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하려 하는 복수국적자는 그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그러나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남성은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한다는 뜻을 위와 같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국적법 제12조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국적법 제14조 제1항 단서 참조).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하나, 실무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국적법 제14조의2 참조).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된 해의 1월 1일이 되기 전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해 3월 31일 이전에, 위 일자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자진하여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선례

○ 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2005. 5. 24. 법률 제749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14조 제1항 단서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등

- 그 후 같은 내용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요지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적극

○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복수국적자인 남성에 대하여 국적이탈의 자유가 예외 없이 제한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절차나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발생하는 제한 등에 대하여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국적법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신고 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절차,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따른 국적이탈 제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복수국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 예컨대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학업이나 경제활동 등의 생활을 하여 왔다면, 그에게 복수국적 취득과 국적이탈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

○ 주무관청이 구체적 심사를 통하여, 주된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고 상당한 기간 대한민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근접하여 국적을 이탈하려는 복수국적자를 배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될 수 있다.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또한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

○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대상자가 겪어야 하는 실질적 불이익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상당히 클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복수국적자가 공직 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업무나 다른 국적국과 이익충돌 여지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직업의 선택이나 업무 담당이 제한되는 데 따르는 사익 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ㅁ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요지

●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국적이탈 신고자에게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데, 실무상 국적이탈 신고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국적이탈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와 외국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하 '기본증명서 등'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 국적이탈 신고자의 대한민국 국적 및 다른 국적 취득 경위, 성별, 부모의 국적 등 그 신고 당시의 구체적 사정이 다양하므로 시행규칙에서 첨부서류의 명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나 증명 취지를 고려하여 지금과 같이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소극

○ 기본증명서 등은 신고자 본인을 특정하고 국적이탈의 전제가 되는 대한민국 국적보유 사실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바,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 수리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국적이탈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정형화되고 신뢰성이 높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바, 가족관계등록법상 기본증명서 등은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대한민국의 공문서로서, 법무부장관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으면서 또한 신뢰성이 확보되는 다른 유형의 서류를 상정하기 어렵다.

○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부담하는 가족관계등록법상 의무이며, 국적이탈 신고 시에 비로소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담은 청구인의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다.

○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 국적이탈 신고자에게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그에게 다소 불편함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그의 국적이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이미선) 요지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소극

○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국적법 조항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병역자원 손실 및 병역부담평등의 원칙 훼손 방지 필요성, 복수국적자에 미치는 규제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판단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국민개병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서 나오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은 헌법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다른 어느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의하더라도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제한을 받을 뿐이다.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된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국방과 병역형평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한 축으로, 국적이탈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적 가치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나름의 조정과 형량을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복수국적자의 부모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자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는 국적이탈 제도에 대하여 여러 방법을 통해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법률의 부지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헌법이 요청한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 설정 없이 개개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섣불리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석태, 문형배) 요지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적극

○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 및 그 실무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생신고 절차를 거친 후 대한민국에 있는 친지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바, 그가 생애 대부분 기간을 외국에 머무르면서 생활해왔다면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생을 원인으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 재외공관 방문의 용이성, 대한민국 법령이나 국어에 대한 이해 정도 등 여건과 상황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결국 포기하는 데 이르도록 할 여지가 있다.

○ 법무부장관은 신고자가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상 기본증명서 등이 아닌 다른 소명서류로 어떤 것을 인정할 것인지 기준을 확립하고, 국적이탈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로서 그것이 충분히 소명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므로 약간의 업무상 부담이 초래될 수는 있으나, 출생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

○ 입법자는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와 같은 경우, 그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국적선택이나 국적이탈에 대한 기간 제한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 제한이 즉시 사라지게 되어,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 2022. 9. 30.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2022. 10. 1.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결정의 의의

○ 종래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국적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던 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결정 및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병합) 결정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한다.

○ 이 결정은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에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출생한 사람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적 부여와 관련하여 속지주의의 태도를 취하는 국가의 국적 또는 다른 한쪽 부모의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소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 중에는 주된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고 상당한 기간 대한민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근접하여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저해하므로 허용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외국에서만 주로 체류·거주하면서 대한민국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위 시기가 경과하면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일률적인 제한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인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들 조항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입법자는 이러한 입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주무관청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출처: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에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등도 포함된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8 [구 관습법 위헌소원], 2020. 10. 29., 합헌)

【판시사항】

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관습법'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관습법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다. 이 사건 관습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판의 대상을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

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등도 포함되므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관습법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존속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관습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습법 성립 전후의 역사적 배경과 관습법으로서 수행해 왔던 역할, 재산권의 대상인 토지의 특성 및 헌법 제9조에 따른 전통문화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다. 비록 오늘날 전통적인 장묘문화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분묘를 모시는 자손들에게 분묘의 강제적 이장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 정서적 애착관계 및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에도 배치되므로, 이 사건 관습법을 통해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사건 관습법은 평온·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률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배제하고 있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등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은 그 범위가 적절히 한정되어 있으며, 단지 원칙적으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거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습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묘기지권은 조상숭배사상 및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우리의 관습으로 형성·유지되어 왔고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는바, 이러한 전통문화의 보호 및 법률질서의 안정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습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관습법의 성립에는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습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관습법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통상의 경우, 법원이 관습법을 발견하고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도 판단하므로, 관습법이 이후 사회의 변화나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위헌적인 것으로 변한 경우 법원이 그 효력 상실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 사건 관습법이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점은 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어 현행 헌법에 따라 별도의 위헌심사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관습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출처: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판시사항】

[1]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취지, 입법연혁,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생부가 단독으로 출생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인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문언에 기재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국적법 제2조 제1항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2205)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수연)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20. 3. 3.자 2019브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2013. 6. 5.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신청인은 2013. 8.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신청외인[(영문 성명 및 한자 성명 생략)]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생년월일 생략) 청주시 소재 (병원명 생략)병원에서 여자아이인 사건본인(사건본인 성명 생략)이 출생하였다.

나. 신청인과 신청외인은 곧바로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관할 주민센터는 사건본인은 혼인 외 출생자이므로 모(모)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국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유부녀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제정 2010. 2. 3.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2-1호),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반려하였다. 관할 주민센터에 의하면, 모가 2009년경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갱신이 불허되었고, 그 후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여권이 아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출입하였기 때문에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모가 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위에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이에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려고 제1심법원에 그 확인을 구하였으나 2019. 4.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원심법원에 항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부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서에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출생증명서 등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위 신고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건본인의 모가 외국인이지만 출생증명서에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모’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고 한다) 제8조에 의하면, 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수리가 거부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이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은 존중되

어야 하며, 혼인과 가족관계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은 자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생활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권 및 아동의 권리는 가족생활의 법률관계 및 그 발생·변동사항에 관한 등록을 규정하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나. 민법은 친생자관계를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로 나누어 규율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는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하는 데 반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모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다(민법 제855조 제1항).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859조 제1항),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한편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도(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인지신고 이외에 별도의 인지방법을 마련하였다. 이때에는 다른 사람의 자녀로 친생추정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사건 예규 제8조).

종래의 가족관계등록 실무에 의하면, 출생신고서에는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가족관계등록법에 생부가 단독으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생모가 자녀의 출산 후 잠적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등으로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 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못 하고 양육하기가 어려운 나머지 버려지는 사태마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즉,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한 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등의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며, 취학연령에 이르러도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 출생기록이 없다 보니 유기, 불법입양,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아이들은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 5. 18.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법률 제13285호)으로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다(이른바 '사랑이법'). 이로써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

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그 개정이유이다. 즉, 의학기술의 발달로 출생한 아동의 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부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생부가 간소한 방법으로 단독으로 인지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이 사건 조항의 취지가 있다. 대신에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고(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3항),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등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게 하는 등 출생신고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되도록 그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4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취지, 입법연혁,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서 생부가 단독으로 출생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인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그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문언에 기재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기록에 첨부된 사건본인과 신청인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신청인의 친딸임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본인의 모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예규 제8조에서 정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다. 이는 모가 외국인으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V. 국제법 관련 새소식

- 외교부 소식 모음 219
-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 소통 265
- 국제법 관련 새로 나온 학술간행물 소개 267
-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270
-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 강의시리즈 275
-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277

새소식 요약

| 기간 : 2020. 9. 1. ~ 2020. 11. 30.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뉴스·공지 > 보도자료] 참조

O 국립외교원은 8월 31일(월) 및 9월 1일(화)에 걸쳐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경쟁과 다자주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0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2020 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를 개최했다.

O 강경화 장관은 9.9.(수)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19:40-21:00(서울시간)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작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정치·안보, 경제, 인적 교류 등 한-아세안 미래 협력방향 및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O 강경화 장관은 9.9.(수)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연이어 화상으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EAS의 협력 성과와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O 2020.9.10.(목)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8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2020.9.8.-10.)에서 우리나라가 2020-2024년 임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이하 '무형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됐다.

O 외교부는 2020. 9. 11.(금) 16:30-17:30간 외교부 청사에서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O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우리의 경험 공유 및 한-미얀마간 보건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화상회의가 9월 11일(금) 오후 개최됐다.

O 외교부는 9.18.(금) 10:00-15:00 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포스트 코로나19 국제정세 전망과 믹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믹타 전문가 대화[MIKTA Academic Dialogue]'를 개최했다.

O 2020.9.9.(수)-12.(토) 간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아세안+3/EAS/ARF)의 결과를 정리한 4개 회의체별 의장성명이 모두 발표됐다.

O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9.17(목,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위원 선거에서 2021-24년 임기(4년) 위원으로 선출됐다.

O 외교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는 계기에 9.18.(금) 10:00-15:00(한국시간)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믹타 전문가 대화[MIKTA Academic Dialogue]'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개최했다.

O 2020.9.21.(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등으로 이루어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우호그룹은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지지하는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새소식 요약

O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은 9.21.(월) 저녁 코로나19 백신 협력 관련 9개국 간 차관급 화상회의에 참여했다.

O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의 주도로 지난 5.12(화)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은 제75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계기 부대행사로 9.23(수) 오전(뉴욕시간)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 감염병 영향의 완화와 미래세대 보호'를 주제로 고위급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O 정세균 국무총리는 9.29.(화) 제75차 유엔총회 계기 개최되는 '코로나19 시대의 개발재원을 위한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활동과 기여에 대해 연설했다.

O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은 2020.9.28.(월) 유엔사업서비스기구[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그레테 파레모(Grete Faremo) 사무총장과 화상면담을 가졌다.

O 9.28(월) 강경화 외교장관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및 외교장관 공동주재로 개최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결과 문서로서 「공동의장성명」 및 「2021-2025 행동계획」이 각각 발표·채택됐다.

O 올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11.21-22, 화상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제3차 주요 20개국 협의체 셰르파 화상회의가 9.29(화)-30(수) 간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최경림 주요 20개국 협의체 국제협력대사(셰르파 임무수행)가 참석했다.

O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10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우리나라 및 아·태지역 24개국 국제법 관련 외교관, 공무원, 변호사, 연구원, 대학원생 등 46명을 대상으로 '2020 서울국제법아카데미'를 개최했다.

O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10.7.(수, 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실시된 2020.10월-2023.9월 임기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선거에서 위원으로 선출됐다.

O 외교부는 10월 12일(월)-13(화)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함께 '글로벌 도전에 대한 다자차원의 대응'을 주제로 「2020 OSCE 아시아 회의(2020 OSCE Asian Conference)」를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O 외교부는 10월 12일(월)-13(화)간 대표적 지역안보협력기구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함께 '글로벌 도전에 대한 다자차원의 대응'을 주제로 「2020 OSCE 아시아 회의(2020 OSCE Asian Conference)」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O 외교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공동주관으로 2020.10.14.(수)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내년 중미통합체제[SICA]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미지역 新협력비전 세미나를 대면·비대면 복합방식으로 개최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 한-중미지역의 새로운 협력 방향과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새소식 요약

O 아프간 군신탁기금(ANATF : Afghan National Army Trust Fund)의 전체이사회가 10.19.(월) 브뤼셀 NATO 본부에서(현지 시각 15:00, 한국 시각 22:00) 대면 및 화상회의가 혼합된 형태로 개최됐다.

O 외교부 국립외교원(원장: 김준형)은 10.22.(목)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인도세계문제협회[ICWA]·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RIS) 간 2+2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O 10.28.(수) 오후 3시(우리시각 밤 11시)에 제네바에서 소집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대사급 회의에서 WTO 일반이사회 의장(David Walker 뉴질랜드대사)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후보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결선 라운드에서 더 많은 득표를 했다고 발표했다.

O 한국은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의 회원국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2018년 덴마크에서 개최된 제1차 P4G 정상회의에 이어 내년 중 제2차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O 서울 소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10.28.(수) 19:00-22:00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9차 총회 및 제1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전 회원국(현 37개국) 각료가 참석하는 연례 각료이사회가 2020.10.28.(수)-29(목) 간『강하고 회복력있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으로의 길(The Path to Recovery: Strong, Resilient, Green and Inclusive)』주제 하에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O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및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주관으로 2020.10.29.(목)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1차 한-환인도양연합[Indian Ocean Rim Association, 이하 IORA] 파트너십 세미나[The 1st ROK-IORA Partnership Seminar]'를 개최했다.

O 외교부는 2020.10.30.(금) 제16차 한-유니세프(UNICEF)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유니세프측에서는 샬럿 고르니츠카(Charlotte Gornitzka) 사무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O 외교부와 교육부는 11.3.(화)-5.(목)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과 함께「제5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를 화상회의로 공동 주최했다.

O 외교부는 11.4.(수) 제5차 한-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인도지원조정실에서는 라메쉬 라자싱감(Ramesh Rajasingham) 긴급구호부조정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새소식 요약

O 외교부는 2020.11.6.(금) 제6차 한-유엔세계식량계획(WFP:World Food Programme) 연례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WFP측에서는 우테 클라메르트(Ute Klamert) 대외협력 사무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O 김판석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는 11.6.(금,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국제공무원위원회(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 위원 선거에서 2021-24년 임기(4년) 위원으로 선출됐다.

O 이태호 제2차관은 2020.11.9.(월)-10.(화)간 화상으로 개최된 제52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O 외교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민관 보건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19 공공외교포럼'을 11.12.(목) 15:00-17:00(한국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O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11.13.(금) 화상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2020년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 대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O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16(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31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했다.

O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18.(수)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O 외교부는 11.24.(화) 20:00 '분쟁하 성폭력 철폐 – 생존자 중심 접근'을 주제로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tion with Women and Peace)'를 대면·비대면 혼합 형식으로 개최했다.

O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개발 지원을 선도하고 있는 '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에 올해 신규로 300만불을 기여하기로 결정했다.

O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MIKTA] 5개국은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재 하에 11.26.(목) 오후 1시(서울시간) 「제1차 믹타 외교-보건 2+2 고위관리회의[SOM]」를 개최하고, 국제보건체계 강화 및 믹타 5개국간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O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을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12.3.(목)-4.(금) 양일간 'UN해양법협약상 지역협력 및 해양환경보호'라는 주제로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대면·비대면 혼합(하이브리드)형식으로 개최했다.

O 지난 11.16(월)-18(수) 사흘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논의 결과가 12.1(화) (한국시간 기준) 최종 확정됐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 : 지정학적 경쟁과 다자주의의 역할 (2020-09-01)

□ 국립외교원은 8월 31일(월) 및 9월 1일(화)에 걸쳐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경쟁과 다자주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0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2020 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를 개최하였다.

□ 강경화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UN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의 강화를 위해 더 큰 책임과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이와 관련 국내 방역 경험의 국제적 공유와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백신 개발 참여 및 UN과 WHO 등 보편적 다자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입장 그룹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8월 31일(월)의 제1세션에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사회로 외국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팬데믹 이후 세계질서의 재구성과 다자주의의 역할 회복"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참석자들은 다자주의 미래와 관련하여 경제적, 안보적, 환경적 상호의존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효과적, 효율적 다자주의의 강화가 현 시점에서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강대국들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대응하여 중견국들이 연대를 통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 ▲지역주의와 글로벌 다자주의 연계 필요성 등이 다자주의 퇴조를 막을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 아차리아(Amitav Acharya) 아메리칸대 교수는 G-0, G-2 시대가 아닌 다양한 국제 행위자들이 자신들이 관심과 역량을 가진 분야에서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G-pIus 시대를 전망

※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 프린스턴대 교수는 G-7이 아닌 한국을 포함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인 D-10 구성 필요성 제시

※ 모든 참석자들이 다자주의와 국제협력관련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기대감 표명

□ 9월 1일(화)의 제2세션에서는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지정학을 넘어서: 다자주의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제하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존의 다자 국제질서 재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대국 헤게모니 중심이 아닌 중견국들간 연대가 견인하는 다자주의, ▲1945년 이후 구축된 다자주의 질서를 21세기 상황과 요구에 맞게 재편할 수 있는 리더십의 필요성, ▲국가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다자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중요한 과제로 지적하였다.

○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기존 다자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한국의 다자외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 다자외교의 가치와 철학적 기반의 정비, ▲중견국으로서 국제공조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과 책임문제에 대한 성찰 및 국민적 지지 확보,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국제 문제와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선택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 2021년 한국정부가 개최하는 PKO 장관급 회의 및 2024-25년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등을 계기로 한국이 주요 다자무대에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 제기

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다자공조체제 가동 필요성 강조 (2020-09-09)

□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가 9.9.(수) 17:45-19:25 (서울시간) 화상으로 개최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등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우리나라는 한중일 조정국으로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에 이어 3국 중 먼저 발언하였으며,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아세안+3가 그간 동아시아 금융위기, SARS와 같은 보건 위기 시마다 다자 공조 체제를 가동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평가하고,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있어서도 과거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아울러 오늘 회의를 통해 올해 4월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이후 이룬 진전을 공유하고, 강력한 다자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협력과 연대를 지속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 강 장관은 우선 지난 4월 정상회의 시 논의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및 ▵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우리측 이행 현황을 소개하면서, 후속조치 이행을 충실히 점검하고, 그간 이룬 진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 보건·의료 협력 관련, 강 장관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정보 공유와 상호 지원의 채널로서 한-아세안 보건대화 신설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역내 조기경보시스템의 강화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6.26.) 계기 출범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Covid-19 ASEAN Response Fund]'에 대한 우리의 100만불 기여 등 우리측 지원 현황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아세안의 팬데믹 대응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아세안국가들의 방역· 의료 물품 구입, 백신개발,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제36차 아세안정상회의(6.26.)시 공식 출범

- 아세안+3 기금 10% 갹출 및 아세안과의 개별 협력기금으로 조성되며 우리의 경우 한-아세안 협력기금에서 기여

○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의 개발 및 치료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 전 세계에 백신이 효율적이고 충분히 보급되기 위한 노력에 동참중이라고 하고, 이를 위한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강 장관은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한 ▵필수 인력의 이동 보장, ▵무역 장벽의 완화, ▵식량공급망의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필수인력 이동 보장을 위해 우리정부가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 '기업인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한 것을 평가하는 한편, 지역 차원의 제도화도 고려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역내 무역·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올해 안에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함으로써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를 수호하는 의미있는 결실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

○ 역내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하여 운영중인 아세안+3 비상쌀 비축제도[APTERR]가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위기 발생 시에도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도[APTERR] : ASEAN+3 간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하는 국제 공공 비축제도

□ 회의 참석자들은 백신 보급 등 코로나19 극복과 역내 경제회복을 위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보건 ▵경제·금융, ▵식량안보 등 아세안+3의 분야별 협력 체제를 적시에 가동하고 확대함으로써 역내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북 간 평화 및 협력에 있어 진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노력에 대해 아세안+3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참석자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속한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남북협력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련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의장국 베트남은 오늘 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의장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이 신남방정책의 목표인 '사람 중심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신남방정책 고도화를 향하여: 한-아세안 미래 협력방향 및 역내 평화 증진 방안 모색 (2020-09-09)

□ 강경화 장관은 9.9.(수)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19:40-21:00(서울시간)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작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정치·안보, 경제, 인적 교류 등 한-아세안 미래 협력방향 및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 한국과 금년도 대화조정국 브루나이의 공동 주재 하에 아세안 10개국 참석, 1997년 출범 이래 연례 개최

□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증진해 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채택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에 따라 협력을 지속한다면 한-아세안 관계가 한층 격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 강 장관은 올해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으로, 앞으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서는 작년 특별정상회의 당시 정상간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 비전통 안보 위협과 관련, 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도 한-아세안 간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초국가범죄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분야들에 있어 우리나라의 기여 현황을 설명했다.

□ 강 장관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언급했다.

□ 강 장관은 아울러, 작년 한-아세안 협력 사업 시행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기금'을 연간 1,400만불로 증액한 이래 금년부터 기술교육훈련 사업*, 재난관리 사업**, 대학 교원 대상 장학생 초청사업*** 등 의미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시작되는 만큼, 이를 통해 아세안의 해당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우리 정부가 3년째 추진중인 신남방정책과 관련, 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측의 새로운 협력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신남방정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 관계가 더욱 호혜적으로 확대·심화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강 장관은 작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우리 정상이 천명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 등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지지해준데 대해 재차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아세안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회의 참석자들은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서도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자제할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했다.

□ 강 장관은 한-아세안 회의 시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우리측 후보(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 자유무역 강화 및 다자주의 회복에 있어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025)*이 채택되었다.

※ 한-아세안 행동계획 :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구체 협력 계획 수록, 매 5개년마다 갱신·채택

□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신남방정책 고도화 추진 시 반영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과의 제반 분야별 협력을 심화하고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강경화 장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 협력 논의 참여 (2020-09-10)

□ 강경화 장관은 9.9.(수)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연이어 화상으

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EAS의 협력 성과와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EAS :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 강 장관은 동아시아 지역이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EAS가 정상이 주도하는 최고위급 전략 포럼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상기하면서,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지역협력구상 등의 역내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 보건 안보, 여성·안보·평화 의제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 특히 올해는 여성·평화·안보 사안을 다룬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올해 EAS 정상회의 계기 동 주제에 관한 성명 채택을 추진 중인바,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 1990년대 보스니아, 르완다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조직적 성폭력을 계기로 2000년 채택 / 무력분쟁 지역 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보호 조치 및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등 촉구

□ 또한 강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대응 과정은 역내 공조와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상 주도 협의체인 EAS에서 감염병 대응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지역 평화 및 안보 유지와 직결됨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도 동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 강 장관은 다수의 장관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과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 강 장관은 지난 일 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남북미 정상들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및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EAS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이 대두된 상황 하에서 ▵방역, ▵보건의료, ▵인도주의 분야 등에서의 남북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 증진 및 남북 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확고한 의지에 대해 설명했다.

○ 여타 참가국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에 있어 조속한 대화 재개 및 남북미 정상들 간 합의사항 이행의 중요성 및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남중국해 문제 관련, 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동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또한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화 공약을 이행하며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 협의가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했다.

□ 회의 참석자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제시된 ▵개방성, ▵포용성, ▵투

명성, ▵국제법 존중 등의 핵심 원칙들을 바탕으로 역내 다양한 구상들을 협력·발전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강 장관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여러 국가들의 지역협력 구상들과 조화롭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상생 번영을 위한 역내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 Pacific, AOIP] : 인도네시아 주도로 인도-태평양 관련 아세안 차원의 단일한 입장 정립 도모 /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19.6월, 방콕) 계기 채택

- (원칙) 경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아세안 중심성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국제법 존중 등을 원칙으로 제시
- (협력 분야) ▵해양 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협력 등

□ 참석국들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 건설적 논의를 지속하고, 올해 EAS 정상회의 계기 채택을 추진 중인 ▵EAS 출범 15주년 기념 하노이 선언 및 ▵여타 성명* 등 적실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 올해 EAS 정상회의 계기 ▵해양 지속가능성 성명, △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성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공동 역량 강화 성명, △여성·평화·안보 성명 등 채택 추진 중.

대한민국, 2020-2024년 임기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국 당선 (2020-09-11)

□ 2020.9.10.(목)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8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2020. 9.8.-10.)에서 우리나라가 2020-2024년 임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이하 '무형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었다.

※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 설립
- 4년 임기의 24개 위원국으로 구성(연임 불가)

○ 이번 선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은 1개 위원국 자리를 두고 한국과 인도 간 접전 끝에 우리나라는 총 178개 협약 당사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146개국 중 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 우리나라의 이번 위원국 당선은 2008년 처음으로 2008-2012년 임기 무형유산위원국에 당선된 이래 세 번째*로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사업 등 그간 한국이 보여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유네스코 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2008-2012년, 2014-2018년(2017년 의장 수임), 2020-2024년 임기 무형유산위원국 수임

- 무형유산위원회는 위원국 수임 이후 연임 불가하며 2년 휴지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는 정부간위원회로서, 이번 위원국 진출로 우리나라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결정,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국제협력 등 주요 논의와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는 2020년 '연등회'(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2022년 '한국의 탈춤(국가무형문

화재 13종목 등)', 2024년 '장(醬) 담그기(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예정

※ 우리나라는 총 20종목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묘 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 단오제(200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 가곡, 대목장, 매사냥(2010),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남북공동, 2018)

□ 우리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 무형유산 위원국으로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을 위한 논의에 지속 기여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 개최 (2020-09-11)

□ 외교부는 2020. 9. 11.(금) 16:30-17:30간 외교부 청사에서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등 평화유지활동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상기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는「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부처 간의 협력 등을 위해 외교부에 설치

□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레바논 및 남수단에 각각 파견중인 국군 평화유지 부대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연장 문제와 더불어,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국내 개최 준비 상황을 논의하였다.

○ (파견 연장)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 우리부대가 철저한 방역 조치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파견 지역내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점, 그리고 성공적 임무수행을 통해 우리부대가 유엔 및 현지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높은 평가 등을 감안,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필요성 확인

※ 국군 평화유지 부대 현황

- 동명부대 :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된 300명 규모의 특전사 중심 부대로, 2007년부터 파견되어 활동중
- 한빛부대 :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된 300명 규모의 공병 중심 부대로, 2013년부터 파견되어 활동중
- 상기 법률에 따라 국군부대의 파견은 1년 단위로 국회의 동의하에 연장 가능

○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 내년도 국내 개최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관련 준비기획단(20.7월 출범)의 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 내실있는 회의 개최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해나가자는 공감대 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평화유지 분야의 장관급 정례회의(2016년 출범)로 각국의 평화유지 관련 공약 점검 및 신규 공약 제시를 목표로 그간 총 3차례(2016년 영국 런던, 2017년 캐나다 밴쿠버, 2019년 미국 뉴욕) 개최(통상 80~130여개국 대표 참석)

- 우리 정부는 유엔측 제안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 하에 4차 장관회의 주최(2021년) 결정(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시(19년 9월) 회의 주최 선언 / 강경화 외교장관, 2019년 3차 장관회의(19.3월) 참석시 동 회의 개최 추진 발표)

○ 이태호 제2차관은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국

으로서, 관련 부처가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장관회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간다는 기조하에, 국제 평화안보에 있어 유엔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인 평화유지활동 관련 기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우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바,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범정부 협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미얀마간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 개최 (2020-09-11)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우리의 경험 공유 및 한-미얀마간 보건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화상회의가 9월 11일(금) 오후 개최됐다.

※ 보편적 건강보장(UHC : Universal Health Coverage) : 모든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

□ 이번 회의는 미얀마 보건체육부측에서 UHC 실현을 위한 우리 경험 공유를 요청해옴에 따라 외교부와 주미얀마대사관이 양측 관계기관 간 업무 협의를 적극 주선함으로써 성사되었으며,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얀마 보건체육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기관이 참석했다.

○ 양측 관계기관은 △UHC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방안,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및 심사평가원 업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양국 간 보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 미얀마측은 우리 지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보건협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코로나19를 계기로 선진적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는 한-미얀마 간 보건협력을 제고하고, 보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얀마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보건외교를 강화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믹타(MIKTA) 전문가 대화' 개최 예정 (2020-09-16)

□ 외교부는 9.18.(금) 10:00-15:00 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19 국제정세 전망과 믹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믹타 전문가 대화[MIKTA Academic Dialogue]'를 개최합니다.

○ 올해 우리나라가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는 계기에 외교부는 이 세미나 개최를 통해 2017년 이래 중단되었던 믹타 회원국 간 학술교류를 다시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 믹타(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로 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하였으며, 상이한 지역·문화권에 속해있는 5개국 간 상호 이해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범지역적·개방적·비공식적 협의체임.

※ 2015년 형성된 믹타 회원국 싱크탱크 간 학술교류 협의체 '믹타 아카데믹 네트워크(MIKTA Academic Network)'는 2017년 제3차 회의이후 중단

□ 이번 화상회의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코로나19 이후 시대 국제질서에서 믹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다자주의와 전세계 보건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 이 행사에서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개회사와 이상환 한국 국제정치학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믹타 5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 외교부는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믹타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활성화하여 코로나19 이후 시대 믹타를 통한 중견국 외교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발표 (보도참고자료) (2020-09-16)

□ 2020.9.9.(수)-12.(토) 간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아세안+3/EAS/ARF)의 결과를 정리한 4개 회의체별 의장성명이 모두 발표되었다.

※ 발표 시기 : ARF 의장성명(9.13.), 한·아세안/아세안+3/EAS 의장성명(9.15.)

□ 상기 4개 의장성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및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 국가들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

○ 한·아세안, 아세안+3, EAS 의장성명에는 ▵백신 공동연구·개발 및 공평한 접근 보장, ▵보건 긴급조치 시행 시 투명성, 비례성 보장 등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역내 교역, 투자 시장 개방 및 필수적 인적 교류 보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포함

- 한·아세안 및 아세안+3 의장성명에서는 백신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역할도 평가

○ ARF 의장성명에서도 ▵안정성·접근성·가용성 있는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다자협력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시장 개방 및 공급망 유지 보장의 중요성 강조

- 또한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별도 채택(9.12.)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협력 증진에 관한 성명'에는 ▵역내 조기경보 체제 강화, ▵공평·공정한 백신 접근권 보장, ▵필수적 인적 교류 유지,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금지 등의 내용 포함

□ 한편,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지역 현안을 둘러싼 주요국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에서도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평가 받는 계기가 되었다.

○ 4개 의장성명에 공통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및 성과 환영,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목표 명시 ▵남·북·미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대화 조속 재개 필요성 반영

※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은 2019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최초 포함

○ 각 급에서 전개된 적극적인 교섭 결과, 의장성명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는 문안이 이례적으로 모든 결과문서에 반영

○ 특히,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의 경우 ▵보건, ▵방역, ▵산림, ▵농업기술 분야 및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일련의 우리 정부 구체 구상 최초 명시

※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의 경우 2019.12

월 부산 개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 의장성명에 처음 언급

□ 상기 의장 성명은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및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한반도 평화가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과도 긴밀히 연계되어있다는 아세안 차원의 인식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의장성명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 우리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백신 개발 및 공평한 접근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과 역내 필수적인 경제 활동의 흐름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문안이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영되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우리 인사 최초 진출 (2020-09-18)

□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9.17(목,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위원 선거에서 2021-24년 임기(4년)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 금번 선거는 9개 공석에 14명이 입후보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창록 교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173개 당사국 중 총 117개국의 지지를 받아 당선

※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18명의 국제인권 전문가 출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당사국의 동 규약 이행 감독 및 권고 담당

□ 우리 인사가 유엔 인권메커니즘 내 핵심기관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진출한 것은 1990년 우리나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가입 이후 최초이다.

○ 동 위원회는 생명권을 비롯해 신체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고문·비인도적 처우 금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각국 이행을 심의하는 주요 인권협약기구

□ 서창록 교수는 인권 NGO인 휴먼아시아 대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위원 및 동 위원회 진정 실무그룹 위원장 등을 역임해오고 있는 인권 전문가로, 금번 당선은 서창록 교수가 전 세계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은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 정부는 국제 인권 보호·증진 노력에 대한 기여의 일환으로 전문성을 갖춘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 인권메커니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바, 서창록 교수의 이번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 인권 보호·증진 노력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유엔 인권메커니즘에서 신혜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정진성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홍성필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및 백태웅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이 활동 중

외교부, '믹타(MIKTA) 전문가 대화' 온라인 생중계 개최 (2020-09-18)

□ 외교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믹타 의장국을 수

임하는 계기에 9.18.(금) 10:00-15:00(한국시간)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믹타 전문가 대화[MIKTA Academic Dialogue]'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믹타(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로 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하였으며, 상이한 지역·문화권에 속해있는 5개국 간 상호 이해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범지역적·개방적·비공식적 협의체임.

□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비대면 방식(화상)으로 초청하여 '포스트 코로나19 국제정세 전망과 믹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국제질서에서 믹타의 중요성, 다자주의와 전세계 보건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 및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5개 지역 동시 연결, 생중계로 진행된 동 화상회의에 믹타 5개국을 포함한 국내외 학계 및 민간분야 전문가, 일반인, 외교단 등 총 275 명이 사전등록

□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번 화상 회의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범지구적 위기 속에서 세계 보건안보를 위한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고 하면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믹타와 같은 중견국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성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상환 한국 국제정치학회장은 이번 회의가 중견국 외교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보건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믹타의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장재복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세미나가 믹타 회원국 간 학술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믹타 파트너십의 외연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이번 화상 회의에서 믹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질서와 믹타를 중심으로 국가간 역학관계 변화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는 한편, 회복탄력성 있는 세계 보건안보를 위해 믹타가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1세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세계질서의 변화, 그리고 믹타'를 주제로 제프리 로버슨 연세대교수(호주), 호르헤 스키아븐 멕시코 경제교육연구소 교수(멕시코)가 발제하였으며, 강선주 외교안보연구소 교수(한국)와 필립스 베르몬테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인도네시아), 푼다 카라데니즈 터키 가지안테프대학교 교수(터키)가 패널로 참석

○ 2세션에서는 '보건안보와 국제보건협력의 다자주의'를 주제로 에비 피트리아니 인도네시아대학교 교수(인도네시아), 에멜 필라달 터키 마르마라대학교 교수(터키)가 발제하였으며 최현진 경희대학교 교수(한국)와 케이틀린 베른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교수(호주), 에리카 루이즈 산도발 멕시코 경제교육연구소 교수(멕시코)가 패널로 참석

□ 코로나19 극복과 보건안보를 위해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다자주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믹타 전문가 세미나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한 역량 있는 중견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2017년 제3차 회의 이후 중단되었던 믹타 회원국 싱크탱크 간 학술교류 협의체인 '믹타 아카데믹 네트워크(MIKTA Academic Network)'를 재개하

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믹타 5개국 주요 연구자들 간 교류와 협력이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화상회의는 유튜브(https://youtu.be/UjQJoF58glg)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추후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유튜브채널 'Korea Public Diplomacy(https://www.youtube.com/user/pdpmofa)'에 주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우호그룹 성명 공동 발표 (2020-09-21)

□ 2020.9.21.(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등으로 이루어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우호그룹**은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지지하는 성명을 공동 발표하였다.

* '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로서 현재 발족을 위한 협의 진행중

** COVAX Facility의 구성과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싱가포르, 스위스 주도로 형성된 유사입장 국가간 협의체(우리나라 포함,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카타르,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 참여)

□ 위 공동 성명은 국제사회의 백신 배분을 위한 다자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호그룹 차원에서 COVAX Facility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COVAX 메커니즘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 정부는 9.15.(화) 국무회의 시 논의된'코로나19 백신 도입방안'에 따라, 1단계로 국민의 60%(약 3,000만 명) 분량 백신을 우선 확보하고, 이 중 20%(약 1,000만 명분)를 COVAX Facility 참여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 이에, 우리 정부는 그간 COVAX Facility 적극 참여 입장을 거듭 밝혀 왔으며, 그 발족을 위한 과정에서 여타 우호그룹 국가들과 함께 건설적 역할을 수행중이다.

※ 9.15.(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시, 해외백신의 단계적 확보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도입방안' 논의 및 대외 발표

※ 우리 정부, COVAX Facility '참여의향서'(6.30.) 및 '참여의향확인서'(8.30.) 제출, 질병관리청장 명의 참여 의사 서한 송부(9.18.)

이태호 제2차관, 코로나19 백신 협력 관련 9개국 차관급 화상회의 결과 (2020-09-22)

□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은 9.21.(월) 저녁 코로나19 백신 협력 관련 9개국 간 차관급 화상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9개 국가) 우리나라, 스웨덴, 캐나다,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튀니지 차관급 인사 참석

○ (2개 국제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CEO 초청 연사로 참여

※ 참석자 : 카린 월렌스틴(Karin Wallensteen) 스웨덴 총리실 차관, 데이비드 모리슨(David Morrison) 캐나다 총리실 외교안보정책 고문, 크리스티안 길레르메-페르난데즈(Christian Guillermet-Fernandez) 코스타리카 외교부

차관, 요하네즈 쓰하이(Yohannes T. Tsehai) 에티오피아 대통령 수석고문, 데이비드 테일러(David Taylor) 뉴질랜드 외교부 COVID 정책조정관, 올리브 시사나(Olive Shisan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사회정책고문, 엠마 아파리치(Emma Aparici) 스페인 총리실 외교국장, 에크미 루지흐(Hechmi Louzir) 튀니지 파스퇴르 연구소장,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Tedros Ghebreyesus) WHO 사무총장, 세스 버클리(Seth Berkley) Gavi 대표(CEO)

□ 7.15. 스웨덴 주도로 코로나19 백신 협력 관련 美 워싱턴포스트 정상 공동기고 참여국*을 중심으로 개최된 이번 화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다자 협력 강화, △ACT-A** 및 COVAX Facility*** 등 세계보건기구 및 세계백신면역연합 중심 세계 백신 공급 메커니즘 발족 노력 평가, △향후 관련 국가 간 공조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캐나다, 에티오피아, 한국, 뉴질랜드,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튀니지(알파벳순) 8개국 정상 공동 명의로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Guarantee Equal Global Access to a COVID-19 Vaccine” 제하 워싱턴포스트 게재(7.15.)

**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코로나19 대응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조속 개발, 공평 배분, 대량 조달 추진을 위해 WHO·EU 집행위원회 등 주도로 올해 4.24. 출범

*** 20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로서 현재 발족을 위한 협의 진행중

□ 이 차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은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퇴치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고, 백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모든 국가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백신에 대해 충분하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자 체제를 통하여 계속 공조해나가자고 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정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할 때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기조 하에, 국내 백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백신 자체 개발, △해외 백신 선구매, △다자 백신 개발 체제 참여 등 다각적 백신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백신의 연구개발과 개도국 보급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IVI]를 소개하고, 우리 정부차원에서 국제백신연구소가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자주의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주도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고위급 화상 회의 개최 (2020-09-23)

□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의 주도로 지난 5.12(화)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은 제75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계기 부대행사로 9.23(수) 오전(뉴욕시간)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 감염병 영향의 완화와 미래세대 보호’

를 주제로 고위급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 Group of Friends of Solidarity for Global Health Security

- 공동의장국(5): 한국, 캐나다, 덴마크, 시에라리온, 카타르 / 40여개국 이상 참여중

○ 이번 회의는 스튜어트 시몬슨(Stewart Simonson) 세계보건기구(WHO) 뉴욕사무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공동의장국 및 각국 고위인사들이 화상으로 참여

□ 강경화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보건뿐만 아니라 평화안보·경제·사회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국가들의 협력 의지가 약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WHO를 비롯한 다자기구체제를 강화해나갈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제 공공재로서의 백신 개발 등 다자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연대,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사회적 연대, 코로나19로 특히 영향받는 미래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세대간 연대"를 강조

□ 카타르 공중보건 장관, 덴마크 보건·고령시민 장관, 시에라리온 보건·위생 장관 등 공동의장국 대표들은 우호국 그룹이 유엔 내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안보 사안 관련 논의를 촉진하는 유용한 플랫폼으로서 활동중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고위급 화상 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 또한,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Fore) 유니세프 사무총장, 캄란 칸 (Kamran Khan) BlueDot* 대표, 아사 레그너(Asa Regner) 유엔여성기구(UN Women) 부총재와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유엔·민간기업·시민단체의 관점에서 아동, 청년, 여성, 기술 등 각 분야별로 감염병의 영향을 완화하고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 BlueDot: IT 기술을 통한 감염병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한 캐나다 기업

○ 이번 행사에는 방탄소년단(BTS)도 특별 연사로 화상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미래세대를 위한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 코로나19의 여파로 유엔 창설 이래 최초로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이 화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고위급 회의는 위기 극복에 있어 연대에 기반한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코로나19로 큰 영향을 받는 아동과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보건안보 개선 노력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해 제고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국 그룹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제 보건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유엔 내 연대와 협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유엔 총회 계기 개최된 개발재원 정상급 회의 참여 (2020-09-29)

□ 정세균 국무총리는 9.29.(화) 제75차 유엔총회 계기 개최되는 '코로나19 시대의 개발재원을 위한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활동과 기여에 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 본 회의는 유엔사무총장-캐나다 총리-자메이카 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정상급 회의*로, 코로나19 시대의 개도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시대의 개발재원 정상급회의(5.28.) 이후 구성된 6개 토의그룹을 통해 마련한 정책제언목록(menu of policy options)을 바탕으로 유엔에서 논의 진행
  - 우리는 두 번째 토의그룹('지속가능한 회복' 토의그룹)에 참여 중

○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으로서,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녹색 전환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역경험 공유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ODA 확대, △국가결정기여*[NDC] 갱신 등을 통한 파리 협정의 충실한 이행, △G20/파리클럽의 채무상환유예조치**[DSSI] 참여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는 파리협정 하 당사국이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우리나라는 2015년에 2030년 감축목표를 제출한 바 있음

**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DSSI)는 73개 저소득국의 공적채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정책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해나가면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태호 제2차관, 유엔사업서비스기구 [UNOPS] 사무총장 화상면담 (2020-09-29)

□ 우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은 2020.9.28.(월) 유엔사업서비스기구[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그레테 파레모(Grete Faremo) 사무총장과 화상면담을 가졌습니다.

※ '유엔사업서비스기구'는 각국 정부, UN기구 및 협력기관들이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프라, 사업관리, 조달 등의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 1973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독립

□ 이 차관은 우리 정부가 개도국들의 전반적인 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사업 이행 과정에서 UNOPS측과 의료기자재 조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개도국들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 의 일환으로 추진 중
  - (사업 내용) 단순 방역물자 지원을 넘어 △의료시설 확충, △진단장비 및 의료기자재 제공, △의료인력 교육, △현지 취약계층 대응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해당국의 코로나19 대응 능력과 감염병 예방역량 강화 지원
  - (대상 국가 및 기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4개국과 △5개 ASEAN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대상국(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및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 또한, 앞으로도 유엔(UN) 조달 절차에 다수의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UNOPS측의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 2019년 우리 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 실적은 약 2.25억불 규모로 전체 규모의 1.13%에 해당

□ 파레모 사무총장은 한국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UNOPS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장기적인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UNOPS는 지속가능 인프라 효과 투자(S3I: Sustainable Infrastructure Impact Investments) 구상을 바탕으로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저비용 주거, △재생에너지, △보건인프라 사업 등을 추진 중

○ 아울러, 올해에도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유엔 조달 참여 절차를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고, 앞으로의 한-UNOPS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 UNOPS측은 STS&P조직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STS&P) 전시회·컨퍼런스'를 2020.11월 중순 공동 주최하여 K-방역을 주제로 의료·방역물품 전시회 및 UN 조달시장 설명회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

제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담 계기 공동의장성명 발표 및 2021-2025 행동계획 채택 (2020-09-29)

□ 9.28(월) 강경화 외교장관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및 외교장관 공동주재로 개최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결과 문서로서 「공동의장성명」 및 「2021-2025 행동계획」이 각각 발표·채택되었다.

□ 우선 「공동의장성명*」은 금번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주요 결과를 공식 정리한 문서로서, △한-메콩 협력 주요 성과 △미래 협력방향 △지역 및 국제정세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및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일정 등에 관한 주요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 Co-Chairs' Statement of the 10th Mekong-ROK Foreign Ministers' Meeting

○ 특히, 동 문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下 한국과 메콩 6개국이 필수적인 인력, 상품, 서비스 등의 이동과 국제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상호 연결성을 회복 및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공약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권 보장이라는 목표에 대한 6개국의 강력한 지지 입장이 반영

○ 이와 함께 작년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한강-메콩강 선언」 및 7대 우선협력분야*를 바탕으로 구체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메콩 협력기금을 재원으로 금년에 추진해 나갈 예정인 신규 협력사업**(총 6개)도 최종 확정하여 「공동의장성명」을 통해 공식 발표

* △문화관광 △인적자원 개발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ICT △환경 △비전통 안보위협

** (캄보디아) 관개체계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 / (라오스) 가뭄지역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토양, 수자원 및 영양관리 / (미얀마) 안전한 작물 생산을 위한 토양, 수질 중금속 오염 평가 / (태국)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 모범사례 및 교훈 공유 / (베트남) 껀터시 기후 위험지도 개발 및 염분 침투 감시체계 제고 / (한국) 한-메콩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 「2021-2025 행동계획*」은 「한강-메콩강 선언」 이행방안 및 한-메콩간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담은 문서로서,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구체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 Plan of Action 2021-2025 on the Mekong-ROK Coope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Mekong-Han River Declaration

※ 지금까지 「2014-2017 행동계획」 및 「2017-2020 행동계획」 채택

○ 우선, '사람' 분야에서는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맞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된 2021년을 기념하고, △한-메콩간 교육·스포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해증진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가 반영

○ '상생번영' 분야의 경우 △농촌 개발을 통한 메콩 국가 국민들의 역량강화, △역내 연계성 제고를 위한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개발 추진에 대한 합의, △중소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ICT 기술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 포함

○ '평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수질·토양오염,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수자원 관리, 생물 다양성 보존 등 메콩 지역내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적시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전염병, 초국경적 범죄,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마약밀수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메콩 미래 평화 공동체 조성 사업」을 통해 불발탄·지뢰 제거와 피해자 지원 및 농촌개발을 연계하여 메콩 지역의 평화·안정과 함께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

□ 상기 결과문서들은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6개국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향후 한-메콩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인바, 외교부는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 문서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제3차 셰르파 회의 결과 (2020-10-01)

□ 올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11.21-22, 화상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제3차 주요 20개국 협의체 셰르파* 화상회의가 9.29(화)-30(수) 간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최경림 주요 20개국 협의체 국제협력대사(셰르파 임무수행)가 참석하였다.

* 각 회원국들의 셰르파는 주요 20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를 위해 정상을 보좌해 ▲의제 관련 의견 수렴, ▲정상선언문 문안 교섭 등 준비 활동 수행

□ 이번 회의는 11월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정상선언문의 내용을 협의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셰르파들은 지난 3월 특별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주요 20개국 협의체 차원의 코로나19 대응과 세계 경제 회복 조치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다수 회원국들은 유례없는 팬데믹 위기에 맞서 주요 20개국 협의체 국가들이 더욱 연대하고 지도력을 발휘해 ▲모두에게 공평하고 충분하게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무역체제 강화,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 등을 통해 더욱 긴밀히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를 해나갈 것을 강조

○ ▲특히 경제적 피해가 큰 저소득국들의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인류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것도 긴요하다고 언급

* 주요 20개국 협의체 재무장관회의(4.15)에서 올해 말까지 저소득국에 대한 공적 채무상환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추가적인 기한 연장 문제 협의 중

□ 최 대사는 방역 노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필

수적 활동을 위한 기업인, 근로자 등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하게 한 우리나라의 대응 경험을 소개하고, 주요 20개국 협의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국경간 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 과정을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주요 20개국 협의체 차원의 규범 수립과 경험 공유를 지속하자고 제안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뿐 아니라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양성평등 실현이 중요하며,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접근성 개선 필요성 등도 언급

□ 주요 20개국 협의체 셰르파들은 이번 회의 결과를 기초로 코로나19 상황 및 세계 경제 현황을 반영한 정상선언문 문안을 마련하여 11월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대응방안을 선언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2020 서울국제법아카데미 개최 (2020-10-06)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10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우리나라 및 아·태지역 24개국 국제법 관련 외교관, 공무원, 변호사, 연구원, 대학원생 등 46명을 대상으로 '2020 서울국제법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 이 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간 화상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강자들은 동아시아 및 전지구적 현안 관련 국제법(총 8과목)에 대한 국내외 저명 학자들의 강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역할,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서울국제법아카데미를 통해 국제법센터는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강화와 아·태지역 국제법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범석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임명 (2020-10-08)

□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10.7.(수, 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실시된 2020.10월-2023.9월 임기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선거에서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 우리 인사의 동 위원회 진출은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2008-14),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2014-20) 이후 금번이 세 번째

○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인권분야 전문성 및 경력, 도덕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갖춘 18명의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 자문 및 인권관련 연구 등을 담당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 위원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의석은 지역별(아프리카·아시아에 각 5석, 중남미·서구에 각 3석, 동구에 2석)로 배분되어 있다.

□ 백범석 교수는 국제인권법 분야 전문가로 인권 관련 정부부처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한국인권재단 감사를 역임하는 등 정부는

물론 학계,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주요 인권 이슈 연구와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온바 있다.

□ 우리 정부는 국제 인권 보호·증진 노력에 대한 기여의 일환으로 전문성을 갖춘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 인권메커니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바, 금번 백범석 교수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 인권 보호·증진 노력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유엔 인권메커니즘에서 신혜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정진성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홍성필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및 백태웅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이 활동 중이며, 금년 9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된 서창록 교수는 내년부터 위원으로 활동 예정

외교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함께 2020 유럽안보협력기구-아시아 회의 및 한-유럽안보협력기구 신기술 안보 회의 개최 (2020-10-11)

□ 외교부는 10월 12일(월)-13(화)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함께 '글로벌 도전에 대한 다자차원의 대응'을 주제로 「2020 OSCE 아시아 회의(2020 OSCE Asian Conference)」를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정치·군사안보, 경제·환경안보, 인간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안보 개념에 기초한 유럽-대서양 국가 간 안보협력기구(57개 회원국)

-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OSCE 아시아협력 동반자국(Asian Partners for Co-operation) 자격으로 참여

○ 이태호 2차관은 10.12(월) 오후 4시 30분 대표적인 지역안보협력기구인 OSCE와 아시아 협력동반자국간 협력 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개막식에서 초국경 도전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다.

※ 아시아협력동반자국 : 한국, 일본, 호주, 태국, 아프가니스탄 5개국

※ 개막식은 OSCE 홈페이지에서 생중계 예정 (www.osce.org/live)

○ OSCE의 회원국과 아시아협력동반자국들은 ▲지역내 신뢰구축조치, ▲초국경 환경 문제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보건 안보 등 유럽과 아시아 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에 대해 논의하고, 유럽과 아시아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외교부는 OSCE 아시아회의 다음날인 10.14(수)에는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신기술이 국제 안보와 테러리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OSCE 신기술 안보 회의」도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OSCE와 신기술 안보 회의 개최를 통해 AI, 암호화폐, 바이오 기술 등 신기술이 국제안보와 테러리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초국경 도전에 대한 다자 차원의 대응 협의 (2020-10-13)

□ 외교부는 10월 12일(월)-13(화)간 대표적 지역안보협력기구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함께 '글로벌 도전에 대한 다자차원의 대응'을

주제로 「2020 OSCE 아시아 회의(2020 OSCE Asian Conference)」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정치·군사안보, 경제·환경안보, 인간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안보 개념에 기초한 유럽-대서양 국가 간 안보협력기구(57개 회원국)

-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아시아협력동반자국(Asian Partners for Co-operation) 자격으로 참여 *

* OSCE 아시아협력동반자국 : 한국, 일본, 호주, 태국, 아프가니스탄 5개국

□ 이태호 2차관은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감염병, 환경 문제, 사이버 위협 등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경과 지역을 초월한 협력과 거버넌스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그린 뉴딜' 및 모범적 코로나19 방역 등 포괄적 안보 강화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소개하였다.

※ 신재현 주오스트리아대사가 화상 회의 주재 (OSCE 본부는 오스트리아 소재)

□ 본 회의에는 OSCE 참여국과 아시아협력 동반자국 대표 및 주요 국제 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군사 범주, 경제·환경 범주 및 인간 범주를 모두 포함하는 OSCE의 "포괄적 안보" 개념에 기초하여 ▲역내 신뢰구축조치, ▲환경 오염 경감, ▲보건 안보를 논의 하고, 유럽과 아시아간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역내 신뢰구축 조치에 대한 유럽 아시아간 관행 공유"를 주제로 개최된 1세션에서 패널 및 참석자들은 ▲동북아 신뢰구축 노력, ▲아프가니스탄의 대테러 노력과 평화협상 과정, ▲OSCE의 정치, 군사 안보 행동규범, ▲사이버 공간의 신뢰구축·규범 논의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초국경적 환경 위협 경감"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서 각국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이전보다 악화된 환경 문제와 재난 재해 상황에 주목하면서, 물 부족 및 기후 변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환경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UN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3세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안보와 정보 접근"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각국 참석자들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연대와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인포데믹 방지 등을 논의하였다. 동 세션에서 우리 질병관리청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역 조치와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 공유 노력 등을 소개하였다.

□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OSCE 아시아회의 논의를 토대로 OSCE 참여국 및 아시아협력동반자국 등과 함께 안보 분야에서 다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중미국가들과 코로나 이후의 동반성장 비전 제시 (2020-10-15)

□ 외교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공동주관으로 2020.10.14.(수)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내년 중미통합체제[SICA]*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미지역 新협력비전 세미나를 대면·비대면 복합방식으로 개최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 한-중미지역의 새로운 협력 방향과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 중미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된 지역기구로서 중미 7개국 및 도미니카 공화국이 회원국

○ 이번 세미나에는 SICA 회원국 7개국*의 외교

부 고위관계자, 미주개발은행[IDB], SICA 사무국, 중미보건장관위원회[COMISCA] 사무총장, 중미국가 주재 우리 현지 공관장 등이 화상으로 참여하였다.

*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 중미지역 주한 외교단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산외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KMDF] 등 국내 전문가들은 대면 참석하였다.

□ 김건 차관보는 동 세미나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최종 라운드에서도 지원해 줄 것을 중미국가 외교부 고위인사들에게 요청하였다.

○ 김 차관보는 중미국가들이 그간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내년도 중미독립 200주년과 SICA 창설 3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을 통해 강화된 신뢰와 협력기반을 토대로 코로나 이후의 협력 비전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한 협력 방향으로 △고위급 교류 확대와 한-SICA 대화협의체 활성화, △중미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는 한국의 맞춤형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이 세미나에서는 한-중미 간 협력의 새로운 토대가 된 한-중미 FTA 발효(2019.10월) 및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20.1월) 등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한-SICA 대화협의체 활성화 등 한-중미 신협력비전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 외교부는 보건의료, 인프라 건설, 친환경, 정보통신기술[ICT], 인적 자원 개발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중미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실질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SICA의 디지털 및 친환경 지역전략과 연계한 협력도 검토해 나가자고 하였다.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 중미 균형개발과 경제 통합에 대한 투자를 위해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 여타 중미 및 국내 발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중미지역의 경제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보건, 인프라, 디지털·그린 산업 등에서 한-중미 간 지속 가능한 협력을 강조했다.

- 특히 한-중미 FTA와 한국의 CABEI 가입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역·투자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지역가치사슬 재편 움직임에 부응하여 상호 호혜적 이익 창출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에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하였다.

○ SICA 사무국측은 그간 한-중미지역 간 그간의 양자적 협력에 대해 앞으로는 한-SICA 차원의 지역적·다자적 협력으로도 강화·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지난 외교부 1차관-주한중남미 외교단 면담(9.28.)에 이은 우리 정부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외교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전통 우방인 중미국가들과 내년 중미 독립 200주년 및 SICA 출범 30주년 등 역사적 계기를 앞두고 SICA 역외 옵서버로는 최초로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로드맵을 논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 향후 중미지역과의 양·다자 협력 강화를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이 수주한 △도미니카 LNG 터널 건설 사업(약 1.98억불),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약 25억불)과 같은 중미지역 국책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이번 세미나가 외교부 중남미국 SNS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어 코로나 이후의 한-중미 협력방향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국민외교타운 출범식' 참석 (2020-10-19)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0.19.(월) 10:30에 서초동 소재 외교타운(舊 외교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외교타운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 이 출범식은 국립외교원과 외교타운* 입주 기관과 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외교타운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정부-국민 간 양방향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는 시대에 국민외교타운이 갖는 의의를 평가하고, ▵향후 국민외교타운의 발전을 위한 직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 '96년 주한외국대사관 사무실 임대목적으로 준공된 외교타운(舊외교센터)은 '19년말 민간위탁관리 종료에 따라 '20.1.1.부터 외교부(국립외교원)가 직접 관리 중

- 국립외교원은 외교타운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및 외교사료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민외교타운'을 조성하고, 국립외교원의 대외교육 기능을 확대한 '국민외교아카데미'를 개소
- 외교타운 입주 기관 및 부서 : 여권·영사민원서비스 관련(영사콜센터, 여권과 민원실), 국민외교 관련(국민외교아카데미관, 국민외교센터(양재센터)), 한·아프리카재단, 재외동포재단(서울사무소), 국제교류재단(KF 데이터센터)

□ 외교부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교타운에 대국민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부의 기능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 (영사) 외교타운에는 여권 및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여권·영사민원실 및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콜센터가 입주해있습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정부의 추가 확인 절차가 없어도, 자국 정부가 발급한 공문서를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제도

○ (교육) 또한, 국립외교원 주도로 외교타운에서 운영되는 '국민외교아카데미*'는 국립외교원과 외교부만이 공급할 수 있는 '외교 컨텐츠'를 기반으로 우리 국민들과 교육·학습의 형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국립외교원은 10.23. 한국유엔협회와 공동 개최하는 '유엔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대학생·일반국민 대상 '국민외교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할 예정이며, 지난 7.16. - 8.20.에 언론진흥재단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언론인 연수과정'을 공동 개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인·기업인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 중

○ (소통) 아울러, 외교타운 내에 추가 개소되는 '국민외교센터'는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오전 공식 출범식에 이어서, 오후 5시부터 외교타운 5층 국민외교아카데미관에서는 외교타운의 첫 공식 대국민 소통 행사로서 국립외교원장 강연회 및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 국립외교원장 강연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국민외교 추진 현황 및 방향에 대한 강연에 이어, 향후 국민외교타운의 비전과 국민외교의 미래에 대해 국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또한, 외교관과의 대화에는 베테랑 외교관부터 20년도 새내기 직원까지 현직 외교관 5명이 출연하여, 외교부·외교관의 모든 것에 대해 국민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앞으로 외교부는 국민외교타운 출범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열려있는 봉사하는 외교부, 국민 중심·국익 중심의 외교부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아프간군신탁기금[ANATF] 전체이사회 개최 (2020-10-20)

□ 아프간 군신탁기금(ANATF : Afghan National Army Trust Fund)의 전체이사회가 10.19.(월) 브뤼셀 NATO 본부에서(현지 시각 15:00, 한국 시각 22:00) 대면 및 화상회의가 혼합된 형태로 개최되었다.

○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의장 자격으로 이번 이사회를 주재하였으며, 미 국방부 부차관보, 아프간 통합안보이전사령부[CSTC-A] 사령관, 아프간 국방부 차관, NATO 회원국 및 기타 ANATF 공여국 28개국 대표가 참석하였다.

※ ANATF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평화정착을 위해 군(軍) 훈련, 병참, 인프라, 지휘·통제체계 등 지원을 목적으로 2006.12월 설립

※ ANATF 이사회 : ANATF의 책임성·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공여국 참여 하 기금 집행상황 등을 감독하는 기구로, 주요 공여국 및 NATO 사무총장이 공동 의장으로 운용하며, 우리나라가 금년도 의장직 수임중

□ 참석자들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이 평화 정착을 위해 내부 협상을 개시한 것을 환영하고, 아프간 정부가 자립을 약속한 2024년까지 아프간 군·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아프간 정부 및 핀란드 정부와 유엔아프간지원단[UNAMA]이 공동으로 주최 예정인 '아프간 공여회의[2020 Afghanistan Conference]'의 핀란드측 특사가 회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였다.

○ 우리 정부 대표로 이번 이사회에 참석한 김영채 아프간·파키스탄 특별대표는 △한국이 2024년까지 ANATF에 지속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아프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른 ANATF 운영 계획을 협의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NATO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것을 평가하였다.

※ 2019.8월 NATO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ANATF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여, 2020.6월 2개 기업이 1백만 유로 규모의 낙찰에 성공

※ '아프간 공여회의[2020 Afghanistan Conference]'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아프간 개발 지원 관련 고위급 회의로, 국제사회의 對아프간 재정지원 및 아프간 개발 관련 진전사항을 논의

□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아프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해 △동의, 다산부대 파병(2002-07), △지방재건팀

[PRT] 운영(2010-14), △양자 ODA 지원 및 △재정지원(2011-현재) 등을 실시해왔다.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평화 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신남방정책 고도화를 위한 인도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플랫폼 확대 (2020-10-23)

□ 외교부 국립외교원(원장: 김준형)은 10.22.(목)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인도세계문제협회[ICWA]·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RIS) 간 2+2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체결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 국립외교원과 인도 뉴델리 인도세계문제협회를 연결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티시에이 라가반(T.C.A. Raghavan) 인도세계문제협회 소장, 사친 차투르베디(Sachin Chaturvedi) 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 소장, 신봉길 주인도 한국대사, 스리프리야 란가나탄(Sripriya Ranganathan) 주한 인도대사,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외교안보를 대표하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인도세계문제협회, 경제통상 분야를 대표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인도 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은 정책대화 및 교류 협력을 제도화하여 신남방정책 고도화 차원에서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연구기관 교류 협력 플랫폼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금번 2+2 정책대화 정례화를 계기로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인도 관계의 발전과 협력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형성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티시에이 라가반 인도세계문제협회 소장, 차투르베디 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 소장 등도 이번 정책대화 출범 계기로 양국 4개 연구기관이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더 긴밀한 연구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게 되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신봉길 주인도 한국대사와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역시 참석하여 양국 4개 연구기관이 정책 대화를 출범시킨 것에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 한-인도 협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결선 라운드 결과 (2020-10-29)

□ 10.28.(수) 오후 3시(우리시각 밤 11시)에 제네바에서 소집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대사급 회의에서 WTO 일반이사회 의장(David Walker 뉴질랜드대사)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후보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결선 라운드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최종 선출을 위해서는 향후 전체 회원국의 컨센서스 도출 과정을 거쳐 합의한 후보를 11.9.(월) 개최되는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환경문제의 외교적 대응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토론회 실시 예정 (2020-10-29)

□ 한국은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의 회원국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2018년 덴마크에서 개최된 제1차 P4G 정상회의에 이어 내년 중 제2차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P4G는 녹색 경제 관련 5대 중점분야(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식량/농업)에서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의무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 P4G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외교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외교의 일환으로 외교부는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들을 진행 중인 가운데,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인 기후환경문제의 외교적 대응을 주제로 11월 22일 및 29일 국민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민토론회의 공식 명칭은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개최 관련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참여사업”으로,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 수행해야 할 외교적 역할 등을 주요 쟁점으로 국민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국민토론회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 분임 토론, 종합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심층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 반영을 검토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외교부는 지난 2019년 11월 17일 및 12월 1일, 재외국민보호를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시행하였으며, 수렴된 국민 의견은 영사조력법 하위법령 입법 및 지침 마련 등에 활용

□ 성, 연령, 지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총 300명의 국민을 선정할 예정이며, 국민토론회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외교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민외교 SNS(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및 모바일앱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11월 15일까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 국민으로 지원하였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선정원칙(성,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야 참여 국민으로 확정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제9차 총회·제13차 이사회 개최 결과 (2020-10-29)

□ 서울 소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10.28.(수) 19:00-22:00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9차 총회 및 제1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 국내 소재 회원국 대표는 GGGI 본부에 직접 참석하였으며, 그외 대표는 화상으로 참여

※ GGGI는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의 건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 및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2010.6월 국내 비영리재단으로 발족, 2012.6월 설립협정 서명을 통해 국제기구로서 발족

※ GGGI는 2015년 이후 총회 및 이사회 동시 개최

○ 반기문 GGGI 총회·이사회 의장 주재로 38개 회원국들은 △Frank Rijsberman 사무총장 재선임(임기 4년), △COVID-19 시대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GGGI의 역할, △2021-2022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등 주요 참석국들은 발언을 통해 같은날(10.28.) 오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언급하신 것을 환영하였다.

○ 이들 참석국들은 한국이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노력을 가속화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고,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6, 영국)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 줄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수석대표: 유연철 기후변화대사/교체 수석대표: 정기용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는 회원국들의 컨센서스로 2021-2022년 임기 총회·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재선임되었으며, 2021-2022년 임기 민간이사로 신부남 前기후변화대사가 선출되었다.

※ GGGI 이사회는 △공여국 5개국, △참여국 5개국, △민간이사 5인, △사무국 소재국(대한민국),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부의장국은 공여국 및 비공여국 각 1개국 수임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GGGI 최대 공여국이자 부의장국 및 감사담당국 수임 국가로서 GGGI가 개도국의 COVID-19 대응 과정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내년도 개최 예정인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보다 나은 지속가능한 재건(building back better and greener)을 지향하는 주요국들과의 그린뉴딜 연대 확산을 위해 GGGI등 국제사회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개최 (2020-10-30)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전 회원국(현 37개국) 각료가 참석하는 연례 각료이사회가 2020.10.28.(수)-29(목) 간 『강하고 회복력있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으로의 길(The Path to Recovery: Strong, Resilient, Green and Inclusive)』주제하에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 올해 각료이사회 의장단 : (의장국) 스페인, (부의장국) 칠레, 일본, 뉴질랜드

○ 2개 분임토의(거시경제 및 무역투자) 및 전체회의로 구성된 이번 각료이사회에 우리나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이 참석하였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29일(목) 20시(한국시각)에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향으로 ①강력한(Powerful) 경기부양정책, ②취약계층 지원(Assistance), ③경제·사회구조 전환(Transformation) 및 ④국가간 정책공조·협력(Harmony) (P, A, T, H)을 제안하였다.

* 의장국 개회사(스페인 외교장관) ▷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발언▷ 10.28 분임토론(재정·통화정책, 무역·투자 촉진) 결과 보고 ▷ 개발·성평등 관련 발제 ▷ 회원국 발언 순으로 진행

① 첫째,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과 강력한(Powerful) 경기부양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국의 경우 4차례 추경 등 올해 총 310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시행 중임을 소개하고, 그 성과로서 금년 3분기 1.9%(전분기 대비) 성장하였

음을 언급하였다.

② 둘째,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Assistance)이 필요함을 상기하면서, 비대칭적인 'K'자 경제회복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의 고용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③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경제·사회 구조 전환기(Transformation)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비대면·디지털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160조원 규모(2021~2025년)의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국가간 정책공조 및 협력(Harmony)을 강조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자주의 정신을 고취하고, 국가간 교역 및 인력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금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 코로나19 위기 상황 하에서 개최된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 무역·투자, 기후변화 등 핵심 현안을 담은 각료성명을 컨센서스로 채택하여 다자주의 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조율 및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기업활동 등 핵심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국경간 인력 이동의 중요성**을 각료성명에 반영하였다.

* 2017-19년에는 의제 내용에 대한 각료 성명 문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무역 등 핵심 문안을 삭제한 형식적인 성명만을 발표하거나, 각료성명 없이 회의만 개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활동과 여타 핵심적인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국경간 이동이 중요함을 확인한다. (We recognize, subject to measures to stop the spread of COVID-19, the importance of the cross-border movement of people necessary for the continuity of business and other ke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 이번 각료성명은 ▲지속가능한 범위 내 경기부양정책 지속, ▲디지털전환 기회 활용 및 도전 대응, ▲고용 친화적 회복 정책 추진, ▲경제·사회·환경 통합적 접근 추진 및 환경적 측면 고려,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과 투자 지속, ▲디지털 조세를 포함한 조세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회원국들은 또한 올해 콜롬비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 코스타리카에 대한 가입 초청*을 환영하였다.

* 콜롬비아, 37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지위 획득(2020.4.28.) / 코스타리카, 경제협력개발기구 신규 가입국(38번째 회원국)으로 최종 결정(2020.5.15.)(가입서 기탁 필요)

외교부, 환인도양 공동체와 상생을 위한 첫걸음을 떼다 (2020-10-30)

□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및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주관으로 2020.10.29.(목)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1차 한-환인도양연합[Indian Ocean Rim Association, 이하 IORA] 파트너십 세미나[The 1st ROK-IORA Partnership Seminar]'를 개최하였습니다.

※ 환인도양연합[IORA]은 인도양 연안 국가들 간 경제·사회 분야협력을 위한 지역협의체로서 한국은 2018년 11월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 가입

- 회원국(22개국) :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몰디브, 호주, 이란, UAE, 예멘, 오만, 남아공, 케냐,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모잠비크,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 대화상대국(10개국)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집트, 터키, 이탈리아

□ 전 세계가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을 겪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시대의 인도양과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을 위한 항해"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IORA 회원국 및 사무국 인사의 사전 녹화 영상 상영과 ▲우리나라 정부·학계·재계 인사와 주한IORA 공관 인사간 현장 토론으로 구성·진행 되었습니다.

□ 이번 세미나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환인도양 협력의 접점을 모색하는 한편, 청색 경제(Blue Economy)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인도양의 발전 방향과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경제 협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 "한-IORA 협력 강화와 신남방정책의 연계"를 주제로 한 1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환인도양 공동체 구성원 간 실질 협력 확대를 통한 신남방정책의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코로나19 국면 하 우리 신남방정책과 환인도양 협력을 연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도전과제 등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 "청색 경제와 환인도양"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남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광활한 인도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각 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이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질 협력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과 환인도양협력"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감염병 확산 이후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 변환이 인도양 지역의 투자 및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정부와 민간기업의 생존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인도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와 환인도양 공동체 간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상호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또한, 이번 세미나는 국립외교원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실시간 중계와 녹화가 진행되어 우리나라와 환인도양 공동체의 협력 방향에 대한 우리 국민과 해외 시청자의 관심 및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상황 하 아동의 보호·건강·교육을 위한 한-유니세프(UNICEF) 협력 강화 방안 논의 (2020-10-30)

□ 외교부는 2020.10.30.(금) 제16차 한-유니세프(UNICEF)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유니세프측에서는 샬럿 고르니츠카(Charlotte Gornitzka) 사무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한-유니세프 정책협의회는 2004년부터 매년 서울과 뉴욕에서 교대로 개최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으로 개최

□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그간 꾸준히 강화되어온 협력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한국 및 유니세프의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정책 방향, △코로나19 대응 협력, △UN개

발시스템 개혁 현황, △우리 기업의 조달 참여 및 우리 국민의 유니세프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양측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기여해온 것을 평가하고,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해 500만불 규모의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니세프를 통해 총 약 1,000만불 규모 지원 중

○ 우리측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우수한 우리 제품이 유니세프 조달시장에 진출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우리 제품의 유니세프 조달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니세프측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 양측은 또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구상' 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성기반(gender-based) 폭력 예방·대응 사업 및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우리 정부는 유니세프 젠더 사업 분야 공여 규모 2위 국가

※ 로힝야 난민 지원 사업은 유니세프측이 우리 민간단체(NGO)와 협업을 통해 수행 중

□ 유니세프측은 한국이 재정기여 뿐만 아니라 유니세프 집행이사국으로서 유니세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데 사의를 표하고, 교육, 보건, 젠더, 혁신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희망하였다.

※ 2019년 우리 정부 및 민간(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유니세프 기여액은 총 1억3천3백만불 규모

※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유니세프 집행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며, 2021-23년 임기 수임 확정(2020.7월)으로 6회 연속 유니세프 집행이사국 진출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유니세프측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전세계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건강·교육 증진을 위해 지속 기여해갈 예정이다.

제5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11.3-5.) (2020-11-03)

□ 외교부와 교육부는 11.3.(화)-5.(목)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과 함께 「제5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를 화상회의로 공동 주최합니다.

○ 이번 회의는 '세계시민교육으로 만드는 연대와 희망(Fostering Solidarity and Hope through GCED)'을 주제로 박백범 교육부 차관, 스테파니아 지아니니(Stefania Giannini)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잭 키누씨아(Zack Kinuthia) 케냐 교육부 차관 등을 비롯한 국내외 교육정책 전문가, 활동가, 교사,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하여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역할을 고찰하고 국제연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 세계시민교육(GCED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2012년 유엔이 주창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을 통해 소개된 개념으로,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포함

-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등 안보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관용과 이해를 배우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

성 부각
-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여 국제연대와 포용 정신을 증진시키고자 우리 주도로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 결성(5.26)

□ 이태호 제2차관은 11.3.(화)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인류애, 관용, 다양성 존중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배우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파하며, 세계시민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한편, 11.5.(목) 개최되는 폐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넥스트 노멀(Next Normal)'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5.26 우리 주도로 출범한 유네스코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은 주유네스코 세르비아 대사가 우호그룹 대표로 동 라운드테이블 패널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입니다.

※ 폐회 라운드테이블 주제 : 우리가 만드는 넥스트 노멀(Next Normal, We Make)
- 케냐 교육부 차관, 주유네스코 세르비아대사, UCLA 교수, 유네스코 평화·지속가능개발·교육국 국장, 세계시민교육 청년네트워크 팀원 등 참여

□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팬데믹 상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현재 직면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교육 관련 대안적 비전 제시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가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한-유엔 협력 방안 논의 (2020-11-05)

□ 외교부는 11.4.(수) 제5차 한-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인도지원조정실에서는 라메쉬 라자싱감(Ramesh Rajasingham) 긴급구호부 조정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유엔 인도지원조정실은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 및 자연재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인도적 구호 활동의 효과를 제고할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었으며, 인도적 행위자들간 협력 강화 및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조정 역할 수행

※ 한-유엔 인도지원조정실 정책협의회 개최 현황 : △제1차(2015.11월, 뉴욕), △제2차(2017.11월, 뉴욕), △제3차(2018.11월, 서울), △제4차(2019.11월, 서울)
-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화상회의로 개최

□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인도적 위기가 유례 없이 악화되고 있다는 공감 하에,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정된 재원과 물류 및 인적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우리측은 유엔 인도지원조정실이 코로나19 글

로벌인도적대응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유엔 공동기금**을 신속히 투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을 선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도적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지원조정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코로나19 글로벌인도적대응계획(Global Humanitarian Response Plan : COVID 19) :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적 수요 및 필요한 대응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지원 계획으로, 2020.3월 필요 재원이 약 20억불 규모였으나, 현재 약 103억불 규모로 증대

** 공동기금(Pooled-Fund) :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및 국별공동기금(CBPF)

- 유엔 인도지원조정실이 자연재해·감염병 등 긴급재난 및 재원 부족 위기에 대해 긴급 구호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운용중인 기금으로서, 각국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조성
- 우리 정부는 올해 중앙긴급대응기금 600만불, 국별공동기금에 855만불(20.11월 기준) 기여중

○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110여개 국가들에 대해 우리 진단키트 및 마스크 등 방역물자를 지원하는 한편, 시리아·예멘 등 만성적 위기와 홍수·사막 메뚜기떼 등 긴급재난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여 전 세계 인도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

□ 유엔측은 한국이 성공적인 방역 경험 공유 및 방역물품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도적 지원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유엔의 인도지원 조정 및 현지 구호 활동을 지원해 준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 이번 한-유엔 인도지원조정실 정책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어, 코로나19가 인도적 환경에 미친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여, 양측간 협력을 보다 긴밀히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6차 한-WFP 정책협의회 개최 (2020-11-06)

□ 외교부는 2020.11.6.(금) 제6차 한-유엔세계식량계획(WFP:World Food Programme) 연례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WFP측에서는 우테 클라메르트(Ute Klamert) 대외협력 사무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세계 최대 인도적 지원 기구이자 우리 정부의 5대 중점 협력 기구중 하나

□ 양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식량위기를 비롯한 인도적 위기가 한층 더 심각해 졌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양측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측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WFP가 식량안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인도적 지원 물자의 수송 및 비상통신도 담당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우리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및 아프리카연합(AU)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진단키트 및 마스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WFP가 우리의 지원물품 수송에 협조해 준 점을 평가

※ 우리 정부는 WHO를 통해 아프리카 24개국에 진단키트를, AU를 통해 28개국에 마스크 지원

○ WFP측은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이 인류 공동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기아 팬데믹(hunger pandemic)'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사막 메뚜기떼 확산으로 인한 식량위기 대응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긴급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시리아·로힝야 난민, 이라크 등 만성적 재난 대응을 위한 지원에도 사의 표명

* 우리 정부는 2020.7월 사막 메뚜기떼 확산으로 식량위기 상황이 악화된 남수단,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파키스탄 등 총 14개국을 대상으로 WFP 및 식량농업기구(FAO)를 통해 4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 및 WFP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정책 방향, △아프가니스탄 경제·사회 지원 사업, △유엔 개발시스템 개혁 이행현황, △우리 기업과의 협력 및 우리국민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현재 진행중인 한-WFP간 협력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교적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 극복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2020년 기준 △아프가니스탄 경제·사회 지원, △농식품부의 아중동 4개국 우리쌀 지원, △취약국에 대한 식량안보 지원 분야 등에서 총 20개 협력 사업 진행중

○ 우리측은 WFP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WFP의 활동과 평화와의 연계에 대해 평가받은 만큼, 향후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 한편 WFP측은 최근 긴급구호 및 개발협력 현장에서 ICT, 드론 및 블록체인 등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하였으며, 우리측은 최근 우리 기업들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향후 이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

□ 우리는 2015년부터 매년 WFP와 정책협의회를 개최, 양측 간 협력을 점검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해 왔는바, 코로나19 대응 인도적 위기 상황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의 논의 및 우리의 WFP 집행이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WFP와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 정부는 2011-12년간, 2015년, 2019-21년간 WFP 집행이사국으로 활동중

유엔 국제공무원위원회(ICSC)에 우리 인사 최초 진출 (2020-11-07)

□ 김판석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는 11.6.(금,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국제공무원위원회(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 위원 선거에서 2021-24년 임기(4년)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 우리 인사가 유엔 시스템 전체의 급여 체계 등을 조정하는 국제공무원위원회에 진출한 것은 199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이후 최초이다.

○ 동 위원회는 15명의 개인자격 위원으로 구성된 유엔 총회 산하 기관으로, △급여 조정, 일비 지급 및 직위구분 관련 의사결정, △기타 보상·인사 사안 관련 유엔 총회 권고 등 유엔 직원의 근무조건 등을 규율 및 조정하는 유엔 인사·행정 분야의 주요 위원회

□ 김판석 교수는 인사혁신처장, 대통령 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 아시아행정학회(AAPA) 회장,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유엔 행정전문가위원회(CEPA) 위원 등을 역임한 인사행정 전문가로, 금번 선출은 인사·행정 분야에 있어서 김 교수의 전문성과 역량이 국제 사회의 충분한 인정을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 김 교수의 이번 국제공무원위원회 진출은 유엔 운영 과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우리나라 인사의 유엔 예산·행정 분야 제반 위원회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차관, 제52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 참석 (2020-11-11)

□ 이태호 제2차관은 2020.11.9.(월)-10.(화)간 화상으로 개최된 제52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 DAC 회원국 장·차관,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시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재원, △더 나은 녹색 회복, △더 나은 개발협력의 이행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

* OECD DAC은 OECD 회원국 중 30개 주요 공여국으로 구성된 그룹이며, 우리나라는 2009.11월 가입, 2010년부터 회원국 활동

** DAC 고위급회의는 회원국 각료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회의로 매 2-3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제52차 회의는 2017년 이후 3년만에 개최

□ 이 차관은 11.10.(화) '더 나은 녹색 회복' 세션 기조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 '더 나은 녹색 회복'을 위해 ①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개발협력 지형에 친환경적이고 회복력 있는 방식으로 적응하기 위한 기술과 혁신 추진, ②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 및 혁신적 개발재원 활용, ③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원칙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역량 및 주인의식을 존중하는 파트너십 제시

* '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합의된 개발효과성 원칙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12.6월 출범한 다주체 개발협력 협의체
- 우리나라는 출범시부터 참여하였으며 '19.8월부터 운영이사국으로 활동중

○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으로 △5.1억불 상당의 ODA(공적개발원조) 기여,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COVAX AMC* 기여 공약 등을 소개하고, 2021년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형 뉴딜'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 제시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친환경적 회복과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기여 의지 표명

* COVAX AMC(COVID-19 Vaccines Advance Market Commitment): 공여국들의 재정공약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과 선구매 계약을 체결, 개발 성공시 해당 백신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방식

□ 회원국들은 이번 고위급회의 결과문서로 성명서(communique)를 채택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이 DAC의 최우선과제임을 재확인하고,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①즉각적 지원, ②더 나은 녹색 회복 방안, ③개발효과성 등 3가지 측면에서의 DAC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올해 DAC 가입 10주년을 계기로,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지원을 위한 DAC 차원의 논의에 지속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 아시아 역내 보건협력 방안 모색 (2020-11-13)

□ 외교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민관 보건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19 공공외교포럼'을 11.12.(목) 15:00-17:00(한국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포럼은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및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지역보건협력의 발전방향과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이라는 주제 하에 역내 보건협력 분야에서의 도전과 기회, 향후 방향성을 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이번 포럼에 비대면 방식(화상)으로 참석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 의료협력 모범 사례와 국제보건협력의 미래, △코로나19 대응 아시아 역내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장재복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에서 이번 공공외교포럼을 통해 아시아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역내 민관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각국의 구체적인 대응 사례와 국가 간 보건협력에 관한 건설적인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대화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제1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의료협력 사례와 국제보건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지영미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 특별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Mario C. Villaverde 필리핀 보건부 차관, Peninah Oberdorfer 태국 치앙마이대학 소아과센터장,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우즈베키스탄정부 보건고문) Laziz Tuichiev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국립의대 총장이 패널로 참석

○ 제2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아시아 역내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최윤희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바이오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윤태영 보건산업진흥원 총괄팀장, Tri Yunis Miko Wahyono 인도네시아대학 공공보건학부 전염병학과장, Jimmy Susanto 인도네시아 Kalbe Farma 선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석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극복을 위한 지역 보건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개최된 이번 공공외교포럼은 다양한 분야 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민관 보건협력 플랫폼 구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앞으로도 외교부는 아시아 역내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민간 교류를 촉진하고, 국내외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는 쌍방향 공공외교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번 회의 주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은 추후 외교부 공공문화 외교국 유튜브 채널 'Korea Public Diplomacy(KOREAZ)'에 게재됩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2020-11-13)

□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11.13.(금) 화상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2020년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 대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였다.

※ APEC은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정책대화 및 협의를 통해 운영되는 역내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올해는 말레이시아가 의장국 수임 중이며, 2021년 의장국은 뉴질랜드)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APEC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해 기존 활동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의 기반을 유지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정상회의·각료회의 준비 및 핵심 성과물 작업 동향을 점검하였으며, 무역·투자, 경제기술협력, 인터넷·디지털 경제 등과 관련한 산하위원회의 2020년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2021년 사업을 승인하였다.

※ 산하 위원회별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 무역투자위원회[CTI] 연례보고서 :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필수인력의 이동(우리 제안) 및 필수품 교역 원활화 이니셔티브, 「보고르목표 최종평가 보고서」 발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진전사항 보고 등
-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경제기술협력 보고서 : 2020년 핵심의제 관련 활동(여성 경제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라세레나 로드맵」이행계획 승인, 우리나라 주도 「포용성 정책 사례집」 발간 승인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정보 공유·도전과제 파악 활동
- 경제위원회[EC] 경제정책 보고서 : '구조개혁과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한 역내 현황 분석, 회원국 관련 정책 이행상황

※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 : 인터넷·디지털 경제 역내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7년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되었으며, 역내 협력이 필요한 11개 핵심 분야를 제시(디지털 인프라 개발, 상호운용성 증진 등)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동 로드맵의 이행을 위한 작업 계획을 승인

○ 특히 회원국들은 향후 20년간(2021~2040) APEC의 활동 방향을 제시할 'APEC 미래비전'* 최종 문안에 잠정 합의하고, 이를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 그간 회원국들은 '미래비전 화상 고위관리회의'에서 미래비전의 핵심 요소(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질적 성장) 협력 방향 및 목표 시한(2040년)을 설정하고, 구체 문안 협의 진행(총 11차)

□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올해 마련된 APEC 주요 로드맵 이행·작업 계획을 환영하면서, 향후 로드맵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또한 APEC 활동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APEC 미래비전'과 정상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들이 우호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였다.

○ 아울러 올해 정상회의가 아태지역 구성원들에게 역내 경제발전을 위한 APEC의 노력과 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APEC 각료회의·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존 APEC 성과를 토대로 향후 APEC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APEC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APEC 합동각료회의 참석 결과 (2020-11-17)

□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16(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31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하였다.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무역·투자 원활화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

○ 올해 의장국 말레이시아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통상 장·차관급들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외교·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무역투자 논의 진전 방안(세션1) 및 △포용성, 디지털경제, 혁신적 지속가능성(세션2)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하였다.

※ 올해 APEC 주제 :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Optimising Human Potential towards a Resilient Future of Shared Prosperity-Pivot, Priorities, Progress)

○ 이 성명은 △필수품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지지, △미래비전*(APEC Post-2020 Vision, 가제) 채택 환영,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혁신을 위한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 촉진, △구조개혁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작성된 2020년 경제정책보고서 주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강화 등을 담고 있다.

*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 선언(1994)의 기한이 도래하자, 향후 20년간 2040년까지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

- (미래비전 핵심요소) ①(무역투자) 지역경제통합,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달성, 구조 개혁 등, ②(혁신·디지털 경제) 혁신 기술개발 촉진, 디지털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③(포용적·지속가능 성장) 질적 성장 추구,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대응

□ 유명희 본부장은 세션1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APEC 역내 무역투자 관련 논의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해, 무역 제한적인 비관세조치가 영구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관련, 우리측 제안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국 필수인력 이동

정책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등의 지속적인 협력이 역내 인적 연결성 증대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 APEC 미래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등에도 무역투자의 혜택이 전달되고, 다자통상시스템의 기능 회복을 위한 WTO 개혁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태호 제2차관은 세션2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포용성 증진 차원에서, 특히 APEC 차원에서 구조개혁과 여성의 역량강화 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 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했다.

○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포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노력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언급했다.

* 우리나라는 WHO가 주도하는 글로벌협력체(ACT-Accelerator) 및 촉진이사회에 적극 참여중

○ 아울러, 디지털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혁신의 핵심 요소임을 주목하고, 우리나라도 △소비자 보호 촉진, △개인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협력 등 디지털 경제 활성화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 마지막으로, 녹색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초국경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을 밝히고, '더 낫고 더 푸른 재건(build back better and greener)'을 위한 국제사회 결속을 위해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소개하였다.

*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 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 가속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 P4G 회원국(12개국) : 덴마크,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칠레, 콜롬비아, 케냐, 남아공,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에티오피아, 한국 (APEC회원국은 밑줄)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서 필수품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통해 우리 업계의 경제활동 정상화를 돕고, APEC 창설국이자 협력의제를 주도해온 핵심 기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APEC을 포함한 다자·복수국간 국제협의체에서 논의를 주도해나가며 국제 공조를 추구할 예정이다.

유엔 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2020-11-18)

1.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18.(수)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음.

2.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였음.

3. 작년 제74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시,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

체로 유지된 가운데 아래를 포함한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되었음.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한 조치의 국제인권법 등 합치 필요성 강조 등

○ 한반도 상황 관련,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강조', △남북대화 포함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중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 △각국에 남북대화·국제납치 등 북한내 인도적·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독려 등.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예정 (2020-11-23)

□ 외교부는 11.24.(화) 20:00 '분쟁하 성폭력 철폐 – 생존자 중심 접근'을 주제로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tion with Women and Peace)'를 대면·비대면 혼합 형식으로 개최합니다.

○ 작년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는 우리 정부가 2018년 출범시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의 일환으로, 전세계 분쟁하 성폭력 철폐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Action with Women and Peace Initiative)

- 목적 : 분쟁하 성폭력 대응 포함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국제 기여 확대
- 내용 : △국제회의 개최(2019.7월 1차 회의 개최), △분쟁하 성폭력 대응 관련 개발협력사업 추진

※ 11.24.(화)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련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면·비대면 혼합형 방식으로 회의 개최(사전 초청대상자에 한해 50명 이내 현장 참석(롯데호텔), 나머지는 화상 플랫폼으로 참여)

□ 여성·평화·안보 주도국, 국제기구, 학계 주요 인사 및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지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서의 분쟁하 성폭력 대응 현황, 생존자 중심 접근 제고를 위한 노력과 향후 도전과제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 행사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개회사와 함께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 △로드 아흐마드(Lord Ahmad) 영국 국무상, △재클린 오닐(Jacqueline O'Neill) 캐나다 여성·평화·안보 대사, △프라밀라 패튼(Pramila Patten) 분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2018년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인 드니 무퀘게(Denis Mukwege) 박사 및 나디아 무라드(Nadia Murad),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 유엔난민기구 특사 등이 연사로 참석하여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 아울러,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을 통해 동 이슈 관련 미래세대들의 창의적인 목소리를 공유하는 순서도 있을 예정입니다.

□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분쟁하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국제논의의 장을 활성화하여,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도하는 다자외교의 주요 분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감염병혁신연합[CEPI] 가입 (2020-11-25)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개발 지원을 선도하고 있는 '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에 올해 신규로 300만불을 기여하기로 결정하였다.

○ 남영숙 주노르웨이대사는 리처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 대표와 11.24.(화) 화상 서명식을 개최하고,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에 서명

○ 정부는 항공권연대기금인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 2020-22년간 매년 300만불을 감염병혁신연합에 기여할 계획

*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 탑승권 1매당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조성 / 국제사회의 질병퇴치 활동 지원

-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하여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 and Immunization, Gavi)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 기여해 왔으며, 금년에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신규 기여를 포함하여 약 2,100만불 기여

□ 감염병혁신연합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17년 출범한 보건 전문 기구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모더나社, 아스트라제네카社 등 총 9개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지원중이다.

○ 특히,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노비오社)의 국내 임상시험을 위해 연구비 690만불(약 8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 생산 관련 시설 사용 계약도 체결

□ 우리 정부는 세계보건총회 및 유엔총회 등 계기 코로나19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감염병혁신연합 가입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 및 공평한 접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우리 정부의 감염병혁신연합 기여는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 1천만불 기여 공약에 이어, 백신 개발과 보급에 적극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COVAX AMC는 공여국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과 선구매 계약을 체결, 개발 성공시 개도국에 백신을 지원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이 추진중인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COVAX Facility]'의 한 축

믹타 외교-보건 2+2 고위관리회의[SOM] 첫 개최 (2020-11-26)

□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MIKTA] 5개국은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재 하에 11.26.(목) 오후 1시(서울시간) 「제1차 믹타 외교-보건 2+2 고위관리회의[SOM]」를 개최하고, 국제보건체계 강화 및 믹타 5개국간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한국은 20.2월-21.2월간 의장국 수임

- 그간 17차례 외교장관회의, 9차례 고위관리회의, 5차례 국회의장회의 등 개최 및 코로

나19 팬데믹에 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4.9) 등 공동성명·발언 70여회 시행

○ 올해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믹타 5개국 외교 및 보건 고위관리회의[SOM] 대표들이 처음 함께 모인 회의입니다.

□ 믹타 외교 및 보건 SOM 대표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유사한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WHO와 국제보건규칙[IHR]을 중심으로 한 현행 국제보건체계의 개선·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공히 강조하면서, 향후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및 감염병 및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경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외교 및 보건 채널간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첫 회의를 통해 5개국 외교-보건 당국간 연계를 통한 보건안보 공조 강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다양한 계기에 5개국 외교 및 보건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2+2 형태의 협의를 각급에서 지속해나가자고 했습니다.

○ 정홍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한국이 2020-23년 WHO 집행이사국으로서 국제보건체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COVAX Facility]' 참여 및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 기여 공약 등 백신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및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증대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 회원국 외교 및 보건 SOM 대표들은 믹타가 올해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다자협력 강화를 위한 중견국 간 연대의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5개국 외교-보건 당국 간 긴밀한 소통·협력 하에 보건안보 분야에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건 위기의 장기화로 국제보건협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지역을 대변하는 중견국의 외교 및 보건 당국간 연계를 통해 보건안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제재판관들에게 들어보는 해양환경보호의 길 (2020-11-30)

□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을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12.3.(목)-4.(금) 양일간 'UN 해양법협약상 지역협력 및 해양환경보호'이라는 주제로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대면·비대면 혼합(하이브리드)형식으로 개최합니다.

○ 외교부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법 관련 국제학술행사로, 해양법 현안에 대한 학계와 실무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해양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96.10월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

※ 이 회의에서는 11.24.(화) 0시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

- ▲현장 참석자 인원 제한, ▲연설시간 외 현

장 참석자 마스크 착용, ▲좌석별 거리($4m^2$ 당 1명) 확보·손세정제 비치 등

□ ITLOS 재판관, 학계 주요 인사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국가들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양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주변국과의 협력에 있어 해양법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 행사에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의 축사 및 백진현 ITLOS 재판관(전 ITLOS 소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부소장, △마르키얀 쿨릭(Markiyan Kulyk) 외 2인의 ITLOS 재판관, △페마라주 라오(Pemmaraju S. Rao) 전 국제사법재판소 임시재판관, △닐뤼퍼 오랄(Nilüfer Oral) 싱가포르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학계와 실무자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해줄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UN해양법협약 상 국가들의 협력 의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제도화한 모범 사례, △분쟁수역 내 해양과학조사 협력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및 규율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 △해양환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 외교부는 이번 학술회의가 국제해양법 현안에 대한 유관기관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제해양법 규범 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국내외 해양법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해도 시대의 새로운 표준 개발 (2020-12-01)

□ 지난 11.16(월)-18(수) 사흘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논의 결과가 12.1(화) (한국시간 기준) 최종 확정되었다.

○ 금번 총회 종료 후, 회의록 초안 회람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 역시 원안대로 공식 확정되었다.

○ 상기 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해역을 지명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S-130)을 개발한다.
- 둘째, 기존 표준(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evolutionary process)을 보여주는 출판물(publication)로서 남는다.
- 셋째, 필요시, 해역의 속성 정보를 어떻게 표시할 지에 관한 지침 개발을 검토한다.

※ IHO(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세계 각국이 국제수로 업무와 해상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및 표준화를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현재 93개 회원국 가입

- 제2차 IHO 총회는 당초 2020.4.21.~24.간 모나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어,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
- 총회에는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장(현 주보스톤총영사)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 국방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동북아역사재단, 동해연구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수로학회가 자문위원으로 참석

※ S-23(Limits of Oceans and Seas, 해양과 바다의 경계): 국제수로기구(IHO)가 전세계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명칭을 부여한 발간물로

서 '일본해(Japan Sea)' 단독표기중

* 2017년 제1차 총회에서 우리측 제안대로 'S-23 개정문제에 관해 사무국 참여하에 관련국간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협의 결과를 3년뒤 총회에 보고한다'고 결정된 후, 당사국(한·일·북) 및 옵서버(미·영)로 구성되어 2019.4월, 10월 두차례 개최

□ 금번 총회에서 IHO가 일본해를 단독 표기중인 S-23을 사실상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에 따라, 기술적 국제기구인 IHO에서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었던 한일간 대립이 일단락되게 되었다.

○ 또한, S-23이 일측의 '일본해' 주장의 주요 근거였던 만큼, 금번 총회 결정으로 인해 동해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

○ 아울러, IHO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관련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자해도 선도국으로서의 우리 기술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IHO내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정부는 금번 제2차 IHO 총회 결과에 따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민간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동해표기 확산 외교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우선, 디지털 수로업무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새로운 표준인 S-130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해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해나가며,

○ 외국 정부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과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상 동해표기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인 시정·교섭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외교가 전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외교사업과 적극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우리나라가 총회에 제안한 'IHO 이러닝 센터 구축'과 'IHO 기술결의 개정' 의제가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 이러닝 센터는 IHO 및 회원국 기술자 등이 이용할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주도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국이 만든 가상 교육 공간에서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교육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IHO 제반 업무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수록한 IHO 기술결의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S-100) 관련 내용이 반영될 예정으로 우리가 IHO에서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S-100) 관련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번 의제들의 통과로 인해 IHO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향후 S-130 개발 논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 소통

| 기간 : 2020. 9. 1. ~ 2020. 11. 30.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정책 > 조약·국제법 > 국제법 소통] 게시판 참조

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법률대외관계국장 공석 공고 (2020-10-16)
O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초청 간담회 개최 결과 (2020-11-16)
O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온라인 개최 (2020-11-26)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법률대외관계국장 공석 공고 (2020-10-16)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몬트리올 소재)는 법률대외관계국장(Director, Leg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Bureau, D-2) 직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실 경우 2020.12.9.까지 ICAO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법학 분야 석사학위(또는 동급) 소지자로서, △국제법 및 항공 분야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영어를 능통한 수준으로 구사할 것 등이 요구됩니다.

ICAO 법률대외관계국장은 면접 절차 등을 통해 선발되며 임기는 4년으로서 재선발(최장 8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안내문 및 ICAO 홈페이지(careers.icao.in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초청 간담회 개최 결과 (2020-11-16)

외교부는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이하 ITLOS) 재판관의 성공적인 소장 역임을 기념하고, 국제재판소 운영 경험을 학계 인사들과 외교 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에게 공유하고자 11.5.(목)과 11.11.(수) 양일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5.(목)에 개최된 '백진현 재판관 초청 부내 간담회'에서는 외교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1982년 UN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 및 ITLOS의 기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국제해양분쟁에 대한 일화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 재판관은 국제해양분쟁이 국가 간 소송제도의 발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ITLOS가 해양법협약에 따라 회부되는 분쟁들을 어떻게 관할하고 운영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비대면 소송의 특성, △해양법협약에 따라 회부되는 분쟁의 관할권 인정에 관한 ITLOS의 법리 및 △해양법협약 상의 지역협력의무 해석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1.11.(수)에 개최된 '국제법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전·현직 국제법 교수 및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ITLOS와 해양법협약 간의 관계, 국제재판소 운영 경험 및 최근 국제해양분쟁의 최신 동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백 재판관은 ITLOS가 해양법협약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법협약의 법리 형성

과정에서 여타 사법기관과 어떤 차별화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백 재판관은 과거 ITLOS의 재판 업무와 재판소 행정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공유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판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ITLOS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ITLOS의 해양법협약 내 해양환경 보호 규정에 대한 해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 비대면 방식의 국제소송 확대 가능성, △비당사국의 해양법협약 준수 의무, △해양경계획정 관련 법리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국제해양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법에 대한 유관 인사의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ITLOS 및 해양법 학계와의 교류를 지속 강화하여 국제해양법 관련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해양법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온라인 개최 (2020-11-26)

- 일시: 2020년 12월 3일(목)-4일(금) (비대면 온라인 개최)
- 주제: 유엔해양법협약상 지역협력 및 해양환경보호(Regional Cooperation and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UNCLOS Regime)

외교부는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를 12월 3일(목)과 4일(금) 양일간 개최합니다.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해양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과 유관 국제기구에 관한 최신 동향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이어져 온 국제학술회의입니다.

제5회 국제학술회의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지역협력 및 해양환경보호'를 주제로 선정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에서 발전된 지역협력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법제도와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지성의 장이 될 것입니다.

1일차 회의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협력 의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협력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2일차 회의에서는 중첩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협력, 해양오염의 규율과 예방, 해양환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백진현 재판관을 비롯하여 부소장인 Tomas Heidar 재판관, Markiyan Kulyk, Oscar Cabello Sarubbi, Neeru Chadha 재판관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이외에도 국내외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해양에서의 지역협력과 환경보호를 증진할 수 있는 해법과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올해 학술회의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해양환경의 보호와 지역협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식량'(Food)에 관한 학술 도서 및 논문을 소개합니다.

○ 주요 도서 및 논문

- Adam, É., *Droit International de l'Agriculture: Sécuriser le Commerce des Produits Agricoles*, Paris, L.G.D.J., 2012.
- Akram-Lodhi, A.H., Hungry For Change: Farmers, Food Justice and the Agrarian Question, Halifax, Fernwood, 2013.
- Andersen, R, "The Plant Treaty: Crop Genetic Diversity and Food Security",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12, pp. 134-150.
- Anderson, K., *The WTO and Agriculture*, Cheltenham, Elgar, 2005.
- Bodiguel, L. and M. Cardwell, *The Regul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Comparative Approach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Costato, L. (ed.), *European Food Law*, Padova, Cedam, 2012.
- Cotula, L., *Gender and Law: Women's Rights in Agriculture*, Rome, FAO, 2006.
- Cunha, A. and A. Swinbank, "Exploring the Determinants of CAP Reform: A Delphi Survey of Key Decision-Makers", 47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2009), pp. 235-261.
- Fantu, C. and R. Modi,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in Africa: the Impact of Chinese, Indian and Brazilian Investments*, London, Zed Books, 2013.
- Grant, W.P. and T. Stocker, "Politics of Food: Agro-Industry Lobbying in Brussels", in *Lobbying the European Union: Institutions, Actors, and Issues*, New York, NY, Nova Science Publishers, 2009, pp. 233-255.
- Grossman, M.R. (ed.), *Agriculture and the Polluter Pays Principle*, London,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09.
- Guneratne, C., *Genetic Resources, Equity and International Law*, Chelthenham, Elgar, 2012.
- Hamel, H.H.R., R. Steenhard and H. Thyssen, "Selected Bibliography", in *Food Security and Food Safety*, Leiden, Nijhoff, 2006, pp. 753-868.
- Holzhauser, U., "Agriculture Trade Liberalization: Prospects and Consequences for European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WTO Doha Round*, Baden-Baden, Nomos, 2007, pp. 63-78.
- Jack, B., *Agriculture and EU Environmental Law*, Farnham, Ashgate, 2009.
- Karapinar, B. and Ch. Häberli, *Food Crises and the WTO: World Trade For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Kugelman, M. and S.L. Levenstein (eds.), *The Global Farms Race: Land Grabs, Agricultural Investment, and the Scramble for Food Security*, Washington, DC, Island Press, 2013.
- Lambek, N., *Rethinking Food Systems : Structural Challenges, New Strategies and the Law*, Dordrecht, Heidelberg, New York, London, Springer, 2014.
- Masson-Matthee, M.D.,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nd its Standards*, The Hague, T.M.C. Asser Press, 2007.
- McMahon, J.A., *EU Agricultur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Mechlem, K., "Agricultural Biotechnologies, Transgenic Crops and the Poor: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Human Rights Law Review* (2010), pp. 749-764.
- Meléndez-Ortiz, R., *Agricultural Subsidies in the WTO Green Box: Ensuring Coherenc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ambridge, Cam-

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Mogele, R., and F. Erlbacher (eds.), *Single Common Market Organisation: Article-by-Article Commentary of the Legal Framework for Agricultural Markets in the European Union*, München/Oxford, Beck/Hart, 2011.
- Moscatelli, S., *Il diritto all'alimentazione nel sistema dei diritti umani*, Roma, Aracne, 2014.
- O'Connor, B., "The Food Crisis and the Role of the EC's Common Agricultural Policy", in *Food Crises and the WTO: World Trade For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 187-219.
- Orden, D., D. Blandford and T. Josling (eds.), *WTO Disciplines on Agricultural Support: Seeking a Fair Basis for Tra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Özerdem, A. and R. Roberts, *Challenging Post-Conflict Environments: Sustainable Agriculture*, Farnham, Ashgate, 2012.
- Paarlberg, R.L., S*tarved for Science: How Biotechnology is Being Kept out of Afric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 Palmer, R., *Select Bibliography of Reports on Biofuels, Land Rights in Africa & Global land Grabbing*, Oxfam, 2010.
- Riches, G., Silvasti, T. (eds.), *First World Hunger Revisited : Food Charity or the Right to Food?*,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2014.
- Santilli, J., *Agrobiodiversity and the Law: Regulating Genetic Resources, Food Security and Cultural Diversity*, Abingdon, Earthscan, 2012.
- Shaw, D.J., *Global Food and Agricultural Institutions*, London, Routledge, 2009.
- Shiva, V., *The Violence of the Green Revolution: Third World Agriculture, Ecology and Politics*, London, Zed Books, 1991.
- Tofan, C. (ed.),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Food*, The Hague, International Courts Association, Separate Volumes, 2013.
- Varsney, A., "Poverty and Famines", in *Arguments for a Better World: Essays in Honor of Amartya Se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139-153.
- Verbruggen, P., *Enforcing Transnational Private Regulation : a Comparative Analysis of Case Studies in Advertising and Food Safety*, Cheltenham, Edward Elgar, 2014.
- Walters, R., *Eco Crime and Genetically Modified Food*, Abingdon, Routledge, 2011.
- Winders, B., *The Politics of Food Supply: U.S. Agricultural Policy in the World Econom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9.
- Young, L.M. and K.C. Hansen, "Disconnections in US and EU Agricultural Policy and Trade Negotiations: A Transaction Cost Politics Approach", 12 *Estey Centr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Trade Policy* (2011), pp. 12-28.

ㅇ 기타 문서

- "Agreement on Agriculture", in *Agriculture in WTO Law*, London, Cameron May, 2005, pp. 433-469.
- "Completing the Task: Cairns Group vision for the WTO Agriculture Negotiations: Cairns Group Ministerial Meeting, Sydney, Australia, 3 April 1998", in *Reason versus Emotion*, Seattle, WA, RIRDC, 1999, pp. 131-134.

ㅇ 학술지 및 연속간행물

- Collection FAO: Questions d'éthique
- FAO Ethics Series
- Food and Agricultural Legislation
- San Joaquin Agricultural Law Review

○ 데이터베이스

-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by K. Mechlem.
-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Food, Right to, International Protection, by K. Mechlem.
-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World Food Programme (WFP), by K. Mechlem.

〈국제회의〉

○ **UN at 75: Effective Multilateralism and International Law Conference**

The Office of Leg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German Federal Foreign Office invite participation in the online conference 'UN at 75: Effective Multilateralism and International Law', to be held on 9 October 2020 via Zoom. As part of the celebration of its 75th Anniversary in 2020, the United Nations, reflecting on its evolution since 1945, is aiming to spark a global conversation on future trends in multilateralism,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in addressing new and emerging threats and how to position itself to foment a better world for future generations. More than a commemoration, the 75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aims to be a forum for debate, new inspiration and commitment to tackle the dominant challenges of our time.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conference will examine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law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the achievements of the UN in advancing international law, and its future in supporting multilateralism.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un75-berlin-international-law-conference.de/를 참고.

○ **Covid-19 and International Law—Science and Disinformation, Exceptions and Emergencies: A Joint Online Event of ESIL and Stockholm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and Justice (SCILJ)**

While the 16th ESIL Conference in Stockholm has been postponed until 2021, the traditional "current events" discussion will be held online on 10 September 2020 at 15.00 -17.00 (CEST). Links will be sent to all who have registered by sending an email to scilj {at} juridicum.su(.)se (please write "Covid-19 and IL" in the subject line). The event will include two panels: (1) Science, Tech, Trolls and the Role of Information; and (2) Covid-19 and International Law: Emergencies, Exceptions and Regime Contestation.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sil-sedi.eu/wp-content/uploads/2020/07/2.6-ESIL-Covid-19-and-IL-invitation-draft-4.pdf를 참고.

○ **International Law Weekend 2020**

The America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has announced that International Law Weekend 2020 will take place online from 22 – 24 October 2020, hosted by Arbitration Place, with the theme "International Law in Challenging Times." From shifting political alliances to changing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the world around us is undergoing profound transformations. The backlash against globalization has resulted in increased suspicion of multilateralism – and escalating populism. Yet, the world is more interconnected than ever. What is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this changing and often contradictory world? What could and should international lawyers do? How can international institutions become more successful? ILW 2020 will respond to some of these questions and discuss how international law can help address these new challenges. A number of panels will be designated for continuing legal education. A reduced registration fee applies before 30 September.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la-americanbranch.org/ilw/를 참고.

○ **Webinar: The Roadmap to the ASEAN-EU FTA in the Post-Pandemic Era.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chool of Law; 3-4 December 2020.**

Rising populist protectionism, stalled WTO negotiations and the COVID-19 pandemic have posed challenges to trade and investment ties between the two blocs. Yet, the entry into force of the EU-Singapore FTA in 2019 and the EU-Vietnam FTA in 2020 galvanizes the EU's building-block approach, which guides the roadmap to the prospective EU-ASEAN FTA. The rapidly evolving agreements between ASEAN and the EU not only enrich the theoretical concept of interregionalism, but also advances exogenous influences to new Asian regionalism. Against this backdrop, this conference brings together leading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from Asia-Pacific and European countries. The discussions will cover cutting-edge issues on innovative rules of origin, e-commer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vestor-state arbitration and mediation.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ite.smu.edu.sg/roadmap-asean-eu-fta-webinar#home를 참조.

○ **COVID-19 and International Law Webinar**

The Bocconi University, with the support of the Europ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s organising a webinar on the theme of 'COVID-19 and International law: Novel Strain or old wine in new test tubes?'. The Webinar will be held on 15 December 2020 at 13.30-18.00. As the blogosphere breathlessly attests,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eactions of states to it have thrown up a host of issues of international law. There is talk in the international legal academy of a turning point … as there was last time something big and out of the ordinary occurred. To what extent is this talk justified and to what extent is it just hype? The webinar will examine these and more specific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raised by the current global health crisis. The first panel focuses on issues of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y" and the second panel focuses on "defences".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unibocconi.it/wps/wcm/connect/ef0ac860-9a0a-41ba-a179-30e5379e206a/20201103164127INVITOLAW15DEC.pdf?MOD=AJPERES&CVID=nmOukuv를 참고.

○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Conference**

The bienni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2020 ILA Kyoto, will be held entirely online from 29 November-13 December 2020. There are 24 online live sessions planned, including topics such as Global Health Law, Digital World, and 2017 Nuclear Weapons Treaty. The usual registration fee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Concerned about the time zones? Do not worry! Many of the live sessions will be available for on-demand video viewing during the Conference from the registered-participants only website.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ila2020kyoto.org/program.html를 참고.

〈국제법 관련 강의〉

○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2021 Online Winter Courses**

In view of the persistent global COVID-19 health crisis, the Academy must remain closed in January 2021 and is forced to cancel the "on-site" session of the Winter Courses. As a result, the 2021 Winter

Courses on International Law will exceptionally take place online only, according to the initially planned programme of the courses, from 11 to 29 January 2021. The online courses will be offered exclusively in the form of lectures following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the morning sessions at the Academy via the Zoom platform. They will be delivered in French or in English, with simultaneous translation into the other language. The seminars, Directed Studies and other meetings that the Academy generally organizes will not have their "online" equivalent for practical reasons. Registration for the 2021 Online Winter Courses will officially open on Thursday 8 October 2020 at 0:00 hrs, The Hague Time (GMT + 1). The registration fee for this session of courses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e fee for the regular "on-site" sessions, since the Academy managed to set it at €250. No scholarships will be available to register for the courses.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agueacademy.nl/programmes/winter-courses/2021-online-winter-courses/를 참고.

○ **An Introduction to The Hague Academy's 2021 Programme in Hong Kong**

Due to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the first edition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s Advanced Course in Hong Kong, which was originally scheduled for early December 2020, had to be postponed to the fourth quarter of 2021. Despite this postponement, a few of the lecturers will be speaking at a webinar in English on Monday, December 7th, from 9:00 to 11:00 am, GMT+1, The Hague time (16:00 to 18:00 hrs - GMT+8, Hong Kong time), organised jointly by the Academy, the Department of Justice of the Hong Kong SAR and the Asian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AAIL). This webinar will provide an overview of the 2021 programme, which will be devoted to delving into the means for and current practice of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agueacademy.nl/an-introduction-to-the-hague-academys-2021-programme-in-hong-kong/를 참고.

○ **The Human Rights Law Centre, University of Nottingham 2020 Annual Lecture: Global Health and Human Rights**

This year's lecture will be given by 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Director-General of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and will take place online on Friday 11 December, 13:00-14:00 UK time. 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as elected as WHO Director-General for a five-year term by WHO Member States at the Seventieth World Health Assembly in May 2017. He is the first WHO Director-General to have been elected from multiple candidates by the World Health Assembly, and is the first person from the WHO African Region to serve as WHO's chie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officer.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ventbrite.co.uk/e/global-health-and-human-rights-tickets-122541905137를 참조.

○ **TU Dresden 2nd International Summer Schoo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Open for Registration Now, TU Dresden invite you to the 2nd International Summer Schoo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from 5 – 10 September 2021 in Dresden. The Summerschool will focus on the topic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imes of Crises" and will explor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European Human Rights System arising out of situations of crisis. Themes such as emergency situations, populism, migration, and the rol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context of crisis will be explored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Speakers will include both academics as well as practitioners, offering the opportunity to gain insights into current theoretical discussions as well as the everyday challenges of practicing law.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ud.link/lt4u를 참조.

〈기타 안내〉

○ Call for Papers: Political Legal Theory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2021

Paper proposals are invited for the PluriCourts Annual Workshop on the Political and Legal Theory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2021: "The Input and Output Legitimacy of International Courts" to be held via zoom from Oslo, Norway, on 24 – 25 June 2021. PluriCourts at the University of Oslo is organising a workshop to bring together scholars of philosophy, political theory and legal theory who study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Cs), and in particular issues concerning the input and output legitimacy of ICs. States have established manifold regional and international ICs to resolve disputes, interpret treaties, and deter illegal behaviour. These ICs cover a range of issues, including human rights, trade, investment, border disputes, and international crimes. ICs' competences, level of authority, method of interpretation, and geographical reach vary widely. Their increase in number and influence naturally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and why they are legitimate.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us.uio.no/pluricourts/english/news-and-events/news/2020/political-and-legal-theory-of-international-courts.html를 참조.

○ Call for Abstracts/Paper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ormative Challenges

The Faculty of Law of the Aristotle University of Thessaloniki and the Kalliopi Kouf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Law, with the support of the Europ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have issued a Call for Abstracts/Papers for a colloquium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ormative Challeng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s" to take place on 1-2 April 2021, in Thessaloniki, Greece, or in a hybrid form/as a webinar, depending on the evolution of the current pandemic. Selected papers will be considered for publication in an edited number of a law journal specializing in Artificial Intelligence.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auth.gr/sites/default/files/CALL.pdf를 참조.

○ Webinar on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Bocconi University, in collaboration with the ESIL Interest Group on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s organising a webinar on the theme of 'Contested Fundamentals of the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webinar will be held on 2 October 2020 at 14:00-19:00, with a keynote from Jan Klabbers. The first panel focuses on the concept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second panel focuses on issues of accountability.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sil-sedi.eu/esil-ig-on-international-organisations-bocconi-university-joint-webinar/를 참고.

○ **Glasgow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and Security Webinars**

The Glasgow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and Security has launched a new series of Wednesday Webinars. In the testing times of pandemic, the series aims to provide an online platform for forward-thinking debates on the most pressing issues and challenges in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affairs. All webinars will be held on Wednesday afternoons at 3pm, and are free and open to the public. The first webinar of the series will take place on 30 September 2020, with a panel discussion reflecting on the 75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challenges for the new quarter-century.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gcils.org/webinars/를 참고.

유엔국제법시청각도서관(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의 「강의시리즈」(the Lecture Series)는 다양한 지역, 법체계, 문화 및 특정 법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와 실무가들의 강의를 제공하며, 거의 모든 국제법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 및 첨부 자료는 강사의 개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유엔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시리즈」의 모든 강의는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홈페이지(http://legal.un.org/avl/intro/welcome_avl.html)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새롭게 발표된 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nternational Economic Law > Foreign Investment

Ms. Diane A. Desierto (Associate Professor of Human Rights Law & Global Affairs, Keough School of Global Affairs, University of Notre Dame)

-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Peace and Security > Cybersecurity

Mme Karine Bannelier-Christakis (Maître de conférences en droit international, Directrice-adjointe du Cybersecurity Institute, Université Grenoble Alpes)

- "Enjeux du principe de due diligence dans la prévention et la réaction aux cyber-attaques"

○ Court and Tribunals > Regional Courts

Judge Ivana Hrdličková (President of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 A Tribunal of Many Firsts"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conforms to the long tradition of criminal prosecut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beginning with the Nuremberg and Tokyo tribunals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continuing since the 1990s with tribunals for the Former Yugoslavia, Rwanda, Sierra Leone and Cambodia,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has, nevertheless, several characteristics which are unique, starting with its creation, structure, applicable law, jurisdiction, and levels of hybridization. An insight into the unique features of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will assist judges and lawyers in future cases where these features may be adopted.

○ Environmental Law > Climate Change

Ms. Lavanya Rajamani (Professor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Oxford)

-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Evolution and Challenges"

○ Criminal Law and Procedure >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Ms. Leila Nadya Sadat (James Carr Professor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Director, Whitney R. Harris World Law Institut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 "The Legacy of the Nuremberg Trials: Seventy Years Later",
- "Interpreting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Heads of State and Other Officials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Law of Treaties > Introduction

Ms. Malgosia Fitzmaurice (Professor of Public International Law, Department of Law,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 "The Legal Nature of Article 18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United Nations

Mr. Miguel de Serpa Soares (Under-Secretary-General for Legal Affairs and United Nations Legal Counsel)

- “Seventy-Five Years of International Law-making at the United Nations”
- “Soixante-quinze ans d’élaboration du droit international aux Nations Unies”
- “Setenta y cinco años de elaboración del derecho internacional en las Naciones Unidas”

○ Law of Armed Conflict

Ms. Marja Lehto (Senior Expert of Public International Law,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 Member,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Armed Conflicts”

○ Regional Organizations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Mr. Steven Hill (Former Legal Adviser and Director, Office of Legal Affairs,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Legal Aspects of the Work of NATO”

○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Mr. Donald M. McRae (Emeritus Professor,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Ottawa)

- “Varieties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From Litigation to Conciliation”

○ International Law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r. Manuel Rama Montaldo (Ex Director Adjunto para Investigación y Estudios, y Ex Director Adjunto de la División de Codificación Oficina de Asuntos Jurídicos de las Naciones Unidas)

- “Conceptual and historical aspects of the process of codifica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the United Nation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Aspectos conceptuales e históricos del proceso de codificación y de desarrollo progresivo del derecho internacional en la Naciones Unidas, con especial referencia a la labor de la Comisión de Derecho Internacional”, Parte I, II.

○ International Economic Law > Dispute Settlement

Ms. Andrea K. Bjorklund (Associate Dean of Graduate Studies, Full Professor and the L. Yves Fortier Chair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McGill University)

- “Will an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Restore Legitimacy to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이번 호에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유엔의 주요 일정과 향후 지속 또는 개최 예정인 유엔의 주요 일정을 소개합니다. 유엔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유엔 홈페이지 『Calendar of Conferences and Meetings』 (https://conf.un.org/DGAACS/meetings.ns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표 관련 정보는 날짜 및/또는 장소와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유엔사무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계로 유엔 회의 일정에 많은 변경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 공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 Military Staff Committee, 2021 meetings (once every fortnight thereafter), New York, In continuous session.
- UN-Women, Executive Board, Election of Bureau, New York, 12 January.
- UNICEF, Executive Board, Election of Bureau, New York, 12 January.
-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2021 regular session, New York, 18-29 January.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ighty-sixth session, Geneva, 18 January-5 February.
- Conference on Disarmament, First part (To be confirmed), Geneva, 18 January-26 March.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irty-seventh session, Geneva, 18-29 January.
- UNCTAD, Working Party on the Strategic Framework and the Programme Budget, Eighty-first session, Geneva, 18-20 January.
- Open-ended ad-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representative of all regions to elaborate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unter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or criminal purposes, Organizational session, New York, 20-22 January.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Fifty-third session*, New York, 25 January-12 March.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Thirtieth session, Geneva, 25-29 Januar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Situations, Twenty-seventh session (To be confirmed), Geneva, 25-29 January.
- UNEP,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153rd meeting, Nairobi, 26 January.
- Advisory Board on Disarmament Matters, Seventy-fifth session, New York, 27-29 January.
-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Winter session, New York, January/April.
- Committee for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Award, Organizational meeting (To be confirmed), New York, January.

2021년 2월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Fifty-eighth session, Vienna, 1-12 February.
- Executive Board of UNDP/UNFPA/UNOPS, First regular session, New York, 1-5 February.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130th session, Vienna, 1-5 February.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ty-ninth session, Geneva, 2-5 February.
-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Fifty-ninth session, New York, 8-17 February.
- Committee against Tortur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orty-third session, Geneva, 8-12 February.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venty-eighth session, Geneva, 8 February-5 March.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e-sessional working group, Eighty-eighth session, Geneva, 8-12 Februar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Twenty-seventh session, Geneva, 8-12 February.
- UNCITRAL,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Dispute Settlement), Seventy-third session, New York, 8-12 February.
- UNICEF, Executive Board, First regular session, New York, 9-12 February.
-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2021 regular session, New York, 10 February.
- UNCCD, 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Nineteenth session, Bonn, Germany, 10-12 February.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ixty-ninth session, Geneva, 15 February-5 March.
-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Twenty-fifth session, Geneva, 15-19 February.
- 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its Working Group, Substantive session, New York, 15 February-12 March.
- UN-Women, Executive Board, First regular session, New York, 15-16 February.
- UNEP, Open-ended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Fifth session, Nairobi, 15-19 February.
-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Fifty-third session, New York, 17-19 February.
- Special Committee on the Situation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First part of the 2021 session, New York, 18 February.
- Disarmament Commission, Organizational session, New York, 19 February.
-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Twenty-third session, New York, 22-26 February.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Preparatory process for the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gainst corruption, Vienna, 22-23 February.
- Human Rights Committee, pre-sessional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131st session (to be confirmed), Geneva, 22-26 February.

- Human Rights Council, Forty-sixth session, Geneva, 22 February-19 March.
- Human Rights Council, Forty-sixth session, Geneva, 22 February-19 March.
-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Fifth session, Nairobi, 22-26 February.
- WFP, Executive Board, First regular session, Rome, 22-26 February.
- Investments Committee, 248th meeting, New York, February.
- United Nations Staff Pension Committee, New York, February.

2021년 3월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wenty-fourth session, Geneva, 1 March-1 April.
- Human Rights Committee, 131st session (to be confirmed), Geneva, 1-26 March.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irty-fourth annual meeting, Geneva, 2-4 March.
- Statistical Commission, Fifty-second session, New York, 2-5 March.
-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Fourteenth session, Kyoto, Japan, 7-12 March.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e-sessional working group, Sixty-eighth session, Geneva, 8-12 March.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wenty-fourth session, Geneva, 8 March-1 April.
-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Sixty-fifth session, New York, 15-26 March.
- ICSC, Ninety-first session, New York, 15-26 March.
- UN-Habitat, Executive Board, First regular session, Nairobi, 16-18 March.
- Special Committee on the Situation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First part of the 2021 session, New York, 18 March.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orking Group of Government Experts on Technical Assistance, Thirteenth session (to be confirmed), Vienna, 22-24 March.
- UNCITRAL, Working Group I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rty-fifth session, New York, 22-26 March.
-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Board of Trustees, Fifty-third session, Geneva, 22-26 March.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Twelfth session (to be confirmed), Vienna, 24-26 March.
-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irty-third session (to be confirmed), Geneva, 29 March-9 April.
-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Eleventh session, New York, 29 March-1 April.
- Human Rights Council,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 to Development, Third session (to be confirmed), New York, 30 March-1 April.

- Committee for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Award, First regular meeting, New York, March.
- General Assembly, Fifth Committee, First part of the resumed session (4 weeks), New York, March.
- ECA, Fifty-fourth session, Addis Ababa, March/April.
-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Board of Trustees, Fifty-second session (to be confirmed), Geneva, March.

● 국제법 동향과 실무 ● 2020, Vol. 19, No. 4 통권 제59호

발행일 2020년 12월 25일
발행처 외교부 국제법률국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전화 : (02)2100-7536
전송 : (02)2100-7967
전자우편 : shkwon15@mofa.go.kr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260000-000161-08

인쇄처 주식회사 에이퍼브 (02)2274-3666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외교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본지와 관련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외교부 국제법규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